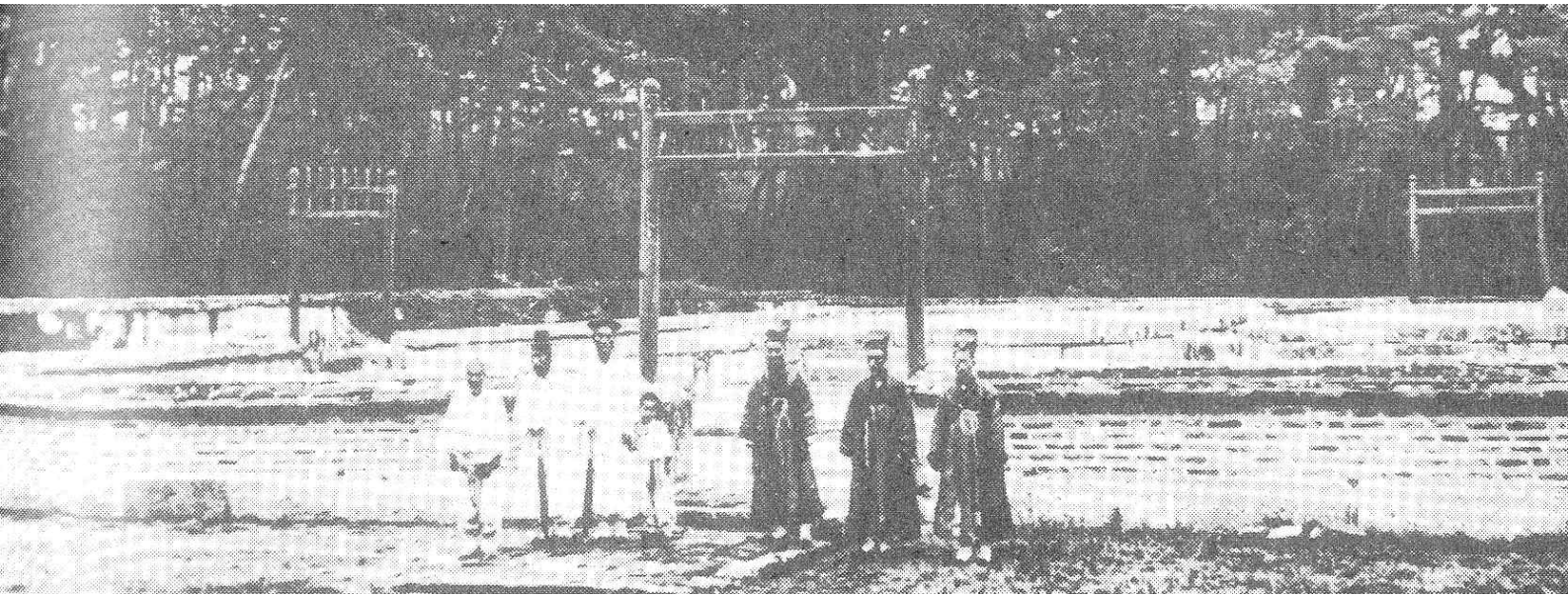

사직단 자료집

1_조선왕조실록 기사 편
(부. 사직서의궤)

2013.11.26

재단법인 예올

1) 조선왕조실록 기사

① 태조-명종

권명	년월일	기사명	국역	원문
태조실록 1권	1년 1392-07-28 丁未	태조의 즉위 교서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一,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制有戾於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태조실록 1권	1년 1392-07-28 丁未	문무 백관의 관제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중략) 사직단직(社稷壇直) 2명	定文武百官之制 (중략) 社稷壇, 直二
태조실록 3권	2년 1393-02-10 乙酉	권중화가 신도에 들어설 종묘 등의 도면을 바치고, 서운관 관원 등에게 지형을 조사, 측량케 하다	삼사 좌복야 영서운관사(三司左僕射領書雲觀事) 권중화(權仲和)가 새 도읍의 종묘(宗廟)·사직(社稷)·궁전(宮殿)·조시(朝市)를 만들 지세(地勢)의 그림을 바치니, 서운관(書雲觀)과 풍수 학인(風水學人) 이양달(李陽達)·배상충(裵尙忠) 등에게 명하여 지면(地面)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김사행(金師幸)에게 명하여 먹줄[繩]로써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	三司左僕射領書雲觀事權仲和進新都宗廟社稷宮殿朝市形勢之圖。 命書雲觀及風水學人李陽達、裵尙忠等, 審視面勢, 判內侍府事金師幸以繩量地。
태조실록 5권	3년 1394-05-06 甲辰	가뭄으로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내다	한재(旱災) 때문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비 오기를 빌었다.	以旱禱雨于宗廟、社稷。
태조실록 6권	3년 1394-09-09 丙午	정도전 등에게 한양의 종묘·사직·궁궐·시장 등의 터를 정하게 하다	판문하부사 권중화(權仲和)·판삼사사 정도전·청성백 심덕부·참찬 문하부사 김주·좌복야 남은·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서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권중화 등은 전조 숙왕(肅王) 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옛터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亥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壬座丙向)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리쯤 되는 곳에 감방(坎方)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에 종묘의 터를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	遣判門下府事權仲和、判三司事鄭道傳、靑城伯沈德符、參贊門下府事金湊、左僕射南誾、中樞院學士李稷等如漢陽, 定廟社宮闕朝市道路之基。 仲和等以前朝肅王時所營宮闕舊址狹隘, 更相其南亥山爲主壬座丙向, 平衍廣闊, 群龍朝揖, 乃得面勢之宜, 又相其東數里之地, 得坎山爲主壬座丙向, 以爲宗廟之基, 皆作圖以獻。
태조실록 6권	3년 1394-11-03 己亥	도평의사사에서 종묘와 궁궐과 성곽 공사를 독촉할 것을 장신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장신(狀申)하였다. "종묘는 조종(祖宗)을 봉안하여 효성과 공경을 높이는 것이요, 궁궐은 〈국가의〉 존엄성을 보이고 정령(政令)을 내는 것이며, 성곽(城郭)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굳게 지키려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천명(天命)을 받아 국통(國統)을 개시하고 여론을 따라 한양으로 서울을 정하였으니, 만세에 한없는 왕업의 기초는 실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묘를 세우지 못하고 궁궐을 짓지 못했으며 성곽도 쌓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서울을 존중하고 나라의 근본을 무겁게 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나, 이 세 가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담당한 관청에 명령하여 공사를 독촉하여서 종묘와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아서 효성과 공경을 조종에게 바치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존엄성을 보이며, 또 국가의 세력을 길이 굳건하도록 해야 한 나라의 규모가 짜여	都評議使司狀申: 寢廟所以奉祖宗而崇孝敬, 宮闕所以示尊嚴而出政令, 城郭所以嚴內外而固邦國, 此皆有國家者所當先也。 恭惟殿下, 受命啓統, 俯從輿望, 以定都于漢陽, 萬世無疆之業, 實基於此。 然而寢廟未成, 宮室未作, 城郭未築, 殆非所以尊京師而重根本也。 殿下雖重民力, 不欲興工, 然此三者, 皆不可不作。 宜命攸司, 董治其役, 以營寢廟, 作宮室, 築都城, 申孝敬於祖宗, 示尊嚴於臣民, 且使國勢永固, 然後一國之規模始備, 而萬世之貽謀, 益遠矣。 伏惟殿下施行焉。

			지고 만세에 길이 전할 계책이 서게 될 것입니다. 삼가 아뢰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행하시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王旨依申。
태조실록 7권	4년 1395-01-29 甲子	사직단을 영조하다	사직단(社稷壇)을 영조(營造)하였다.	營社稷壇。
태조실록 7권	4년 1395-02-24 戊子	사직단의 공사가 있었다	사직단(社稷壇)의 공사가 있었다.	有事于社稷。
태조실록 8권	4년 1395-11-25 乙酉	종묘·사직 등의 향관과 집사의 차정을 판중추·첨서·학사가 논의해 서명케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게 전교하였다. “종묘(宗廟)·사직(社稷)·불우(佛宇)·도전(道殿)·신사(神祠)의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執事)들은 원래 중추원에서 교지를 받아 차정(差定)하던 것인데, 지금은 당후관(堂後官)위임하니 매우 실례(失禮)가 된다. 이제부터는 판중추(判中樞)·첨서(僉書)·학사(學士)가 함께 논의해서 직첩에 서명하도록 하라.”	上敎都評議使司曰: “宗廟・社稷・佛宇・道殿・神祠享官、諸執事, 本中樞院奉敎差定, 今委諸堂後官, 甚爲失禮。 自今判中樞僉書學士, 同議署牒。”
태조실록 13권	7년 1398-04-21 丁酉	종묘·사직·원단과 용추에 비를 빌다	종묘(宗廟)·사직(社稷)·원단(?壇)과 여러 용추(龍湫)에 비를 빌었다.	丁酉/禱雨于宗廟、社稷、圓壇及諸龍湫。
태조실록 14권	7년 1398-08-26 己巳	정도전·남은·심효생·박위·유만수의 졸기	남은은 본관이 진주(晉州) 의령(宜寧)이며 검교 시중(檢校侍中) 남을번(南乙蕃)의 아들이다. 공민왕 갑인년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폐왕(廢王) 경신년에 사직단 직(社稷壇直)에 임명되었다.	閰, 晋州宜寧人, 檢校侍中乙蕃之子。 恭愍甲寅, 中成均試, 僞朝庚申, 拜社稷壇直。
태종실록 1권	1년 1401-04-30 戊子	우사·원단·사직에 비를 빌고 무당을 모아서 기도하다	이달에 가물었다. 임금이 근심하여 사신을 보내서 우사(雩祀)·원단(圓壇)·사직(社稷)에 비를 빌고, 또 여자 무당을 모아서 기도하였다.	是月, 旱。 上軫念, 遣使禱雨于雩祀、圓壇、社稷, 又聚女巫以禱。
태종실록 1권	1년 1401-05-11 己亥	보사제를 행하다	보사제(報祀祭)를 행하도록 명하였으니, 예조(禮曹)의 아룀에 따른 것이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말하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는 재상(宰相)을 명하여야 하고, 여러 신(神)과 용추(龍湫)에는 재상을 시켜 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을 근심하여 이미 재상을 시켜 비를 빌고, 비를 얻고 나서는 낮은 사람을 시켜 보사(報祀)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命行報祀祭, 從禮曹之啓也。 議政府以爲: “宗廟社稷則宜命宰相, 諸神龍湫則不宜使宰相行之。” 上曰: “閔雨, 旣使宰相禱之, 得雨, 乃使微者報之可乎?” 不允。
태종실록 4권	2년 1402-07-02 癸未	종묘·사직·명산 대천 등에 대신을 나누어 보내 비를 빌게 하다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종묘(宗廟)·사직(社稷)·명산(名山)·대천(大川)과 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빌었다.	分遣大臣, 祈雨宗廟、社稷、名山大川及昭格殿也。
태종실록 5권	3년 1403-01-08 丙戌	사헌부에서 종묘와 사직을 개성으로 옮기기를 청했으나 불윤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종묘(宗廟)·사직(社稷)을 구경(舊京)으로 옮기어 제삿일[祀事]을 친히 행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司憲府請移宗廟社稷于舊京, 親修祀事, 不允。
태종실록 7권	4년 1404-05-21 辛酉	종묘·사직·산악·소격전 등에 가서 기우(祈雨)하다.	종묘(宗廟)·사직(社稷)과 악해독(嶽海瀆)·명산 대천(名山大川) 및 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빌고, 원옥(?獄)을 심리(審理)하고, 빈궁(貧窮)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드러난 백골과 시체를 묻어 주고, 또 문가학(文可學)을 시켜 기우(祈雨)하였다.	禱雨于宗廟、社稷、嶽海瀆、名山大川及昭格殿。 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又使文可學祈雨。
태종실록 9권	5년 1405-03-01 丙申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職務分擔)과 소속(所屬)을 상정(詳定)하여 계문(啓聞)하였다. (중략) 예조(禮曹)는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燕享)·공거(貢擧)·복축(卜祝)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계제사(稽制司), 둘째는 전향사(典享司), 세째는 전객사(典客司)이다. (중략) 예조(禮曹)에 속한 것은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경연(經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중략) 禮曹掌禮樂、祀祭、燕享、貢擧、卜祝等事。 其屬有三, 一曰稽制司, 二曰典享司, 三曰典客司。(중략) 禮曹所屬, 藝文館、春秋館、經筵、書筵、成均

			筵)·서연(書筵)·성균관(成均館)·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교서관(校書館)·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司?署)·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사련소(司?所)·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와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淸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廐署)·사직단(社稷壇)·관습 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각도 학교(各道學校)·의학(醫學) 등이고,	館、通禮門、奉常寺、禮賓寺、典醫監、司譯院、書雲觀、校書館、文書應奉司、宗廟署、司醞署、濟生院、惠民局、雅樂署、典樂署、司鬻所、膳官署、道流房、福興庫、東・西大悲院、氷庫、種藥色、太淸觀、昭格殿、圖畫院、架閣庫、典廐署、社稷壇、慣習都監、僧錄司、各道學校・醫學。
태종실록 9권	5년 1405-04-08 癸酉	제복(祭服)과 악기를 구입코자 하는 자문을 명나라 예부에 보내다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의정부(議政府) 장계(狀啓)에 의거하건대, ‘봉상시(奉常寺) 정문(呈文)에 의하면, 「본시(本寺)에서 관장하는 사시(四時)의 조묘(祖廟)와 사직(社稷)·적전(籍田)·문묘(文廟) 등의 제사(祭祀)에 사용하는 배신(陪臣)의 제복(祭服) 및 악기(樂器) 등의 물건이 모두 파손되고 오래 되어서 쓰기 어려울 듯하니, 마땅히 경사(京師)에 가서 구입(購入)하여 새 것으로 바꾸어 써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就咨禮部曰: 據議政府狀啓, 備奉常寺呈照得, 本寺所掌四時祖廟、社稷、籍田文廟等祭, 陪臣祭服及樂器等物, 悉皆損舊, 似難應用。 理宜赴京收買, 換新備用, 具呈狀啓。 得此竊詳, 上項祭服樂器, 不敢擅便赴京收買, 理合咨稟, 煩爲奏達。 如蒙允許, 隨後差人齎價赴京收買, 以備應用。
태종실록 9권	5년 1405-05-08 壬寅	종묘·사직·원단과 명산 대천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宗廟)·사직(社稷)·원단(圓壇)과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비를 빌었다. 임금이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대전(大殿)에 나아가 정사를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 두려워하여 수성(修省)하였다. 문가학(文可學)이 아뢰기를, “신(臣)이 청재(淸齋)에 들어가서 비를 빌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과연 조금 비가 내렸으나, 먼지만 적실 따름이었다.	禱雨于宗廟、社稷、圓壇、名山大川。 上以久旱不御殿聽政, 日益恐懼修省, 文可學啓曰: “臣入淸齋禱雨, 必得。” 上從之。 果有小雨, 然只?輕塵而已。
태종실록 10권	5년 1405-10-20 壬午	이궁의 완성 축하연에서 권근이 화악시(華嶽詩)를 지어 바치다	이궁(離宮)에 좌기하니, 한경(漢京)의 부로(父老)들이 길 옆에서 가요(歌謠)를 드리고, 세자(世子)가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賀禮)를 행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헌수(獻壽)하였는데, 종친(宗親)·공신(功臣)과 정부(政府)·육조(六曹)가 모두 참예하였다.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권근(權近)이 화악시(華嶽詩)를 지어서 바치었는데, 그 서(序)는 이러하였다. (중략) 돌아보건대, 우리 한성(漢城)의 도읍(都邑)은 실(實)로 도록(圖籙)에 응(應)하여 태상왕(太上王)께서 정하신 곳이요, 종묘(宗廟)·사직(社稷)이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옮기기를 어렵게 여기어 살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데, 전하께서 종묘(宗廟)의 중함과 당구(堂構)의 의리로 옮기지 않을 수 없으시어, 종묘에 고하여 길(吉)한 곳을 얻어서 궁실(宮室)을 영건(營建)하고 환도(還都)하시었으니, 종묘를 높이고 백성의 뜻을 정하고, 태상왕의 환심(懽心)을 받는 것입니다. (중략)	御離宮, 漢京父老獻歌謠於道左。 世子率百官行賀禮, 議政府獻壽, 親勳、政府、六曹咸與焉。 議政府贊成事權近, 撰《華嶽詩》以獻。 其序曰: (중략) 顧我漢城之都, 實膺圖籙, 太上王之所定也, 宗廟社稷之所在也。 民乃重遷, 不適有居, 殿下乃以宗廟之重、堂構之義, 不可不遷, 告廟獲吉, 營室而還, 所以尊宗社定民志, 而奉太上之懽心也。 (중략)
태종실록 11권	6년 1406-06-05 癸亥	신도의 성황신에게 제사하고, 각 고을에 사직단을 세우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신도(新都) 성황신(城隍神)을 예전 터에 옮겨 사당(祀堂)을 세우고서 제사하기를 빕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양부(漢陽府)는 성황당(城隍堂)의 옛 터였다. 또 아뢰기를,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건대, ‘부·주·군·현(府州郡縣)에 모두 사직단(社稷壇)을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행하고,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사(里社)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이 제도	禮曹啓: “新都城隍之神, 乞就舊基立堂以祭。” 從之。 漢陽府城隍堂舊基也。 又啓: “按《洪武禮制》, 府州郡縣, 皆立社稷壇, 以春秋行祭; 至于庶民, 亦祭社。 乞依此制, 令開城留後司以下各道各官, 皆立社稷壇行祭。” 允之。

			에 의하여 개성 유후사(留後司) 이하 각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12권	6년 1406-07-25 壬子	종묘 사직에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비 내리기를 빌었다. 또 산천단(山川壇)·양진(楊津)·한강(漢江)에 빌었으며, 무당을 모아 백악(白岳)에서도 비 내리기를 빌었다.	禱雨于宗廟、社稷, 又禱山川壇、楊津、漢江。 聚巫禱雨于白岳。
태종실록 12권	6년 1406-07-21 戊寅	원단·적전·사직·산천단·성황 단을 수리하고, 아울러 지키는 사람을 두다	명하여 원단(圓壇)·적전(籍田)·사직(社稷)·산천단(山川壇)·성황당(城隍堂)의 단장(壇場)과 난원(欄園)을 수리하게 하고, 인하여 수호(守護)하는 인정(人丁)을 차등 있게 주었다.	命修治圓壇、籍田、社稷、山川壇、城隍堂壇場欄園, 仍給守護人丁有差。
태종실록 12권	6년 1406-10-04 庚寅	예조 참의 안노생을 경사로 보내 흰종이 3권장과 자문을 보내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안노생(安魯生)을 경사(京師)에 보내어 순백후지(純白厚紙) 3천 장을 바치게 하고,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조사하여 보니, 본국에서 조상(祖上)의 사당[廟]과 사직(社稷)에 제사하는 제복(祭服)이 만든 지가 오래 되어 모두 다 낡고 해졌는데, 본국에서는 나금 초단(羅錦綃段)이 전혀 생산되지 아니하여 다시 새로 만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안노생을 파견하여 백흑 저마포(白黑紵麻布) 3백 필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제복을 만들 재료를 바꾸어 오게 하니, 이를 조험(照驗)하고, 번거롭지만 〈황제께〉 주문(奏聞)해서, 교역하여 환국(還國)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遣禮曹參議安魯生如京師, 進純白厚紙三千張。 就咨禮部曰: 照得, 本國祭祀祖廟社稷祭服, 製造年久, 盡行舊損。 竊緣本國不産羅錦綃段, 似難重新製造。 就差安魯生, 將齎白黑紵麻布三百匹赴京, 易換祭服裁料, 伏請照驗, 煩爲奏聞, 許令易換還國。
태종실록 13권	7년 1407-04-08 壬辰	승도들을 사직단장과 창고 등을 짓는 일에 사역시키는 것을 정지하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난해 가을부터 승도(僧徒)들을 불러 모아 창고의 쌀[?米]을 내어 공급하고 사직단장(社稷壇場)과 창고(倉庫)·관사(館舍)를 경영(經營)하게 하는데, 내가 일찍이 생각하니 승도(僧徒)도 또한 사람이다. 어찌 이토록 수고롭고 곤(困)하게 할 수 있는가? 제군부(諸君府)와 조방(朝房)은 비바람만 피하면 가(可)하다. 어찌 반드시 저토록 장려(壯麗)하게 할 것이 있는가? (중략)" 하니,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가 대답하기를, "승도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사방에서 놀고 있으니, 지금 먹을 것을 주고 영선(營繕)시키는 것은 정부(政府)의 의논이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고(軍資庫) 같은 것은 없을 수 없는데, 지금 아직 끝도 나지 않아서 또 일시에 이름 없는 역사(役事)를 갑자기 일으켜 자량(?糧)을 소비하는 것이 가한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上又曰: "自去年之秋, 徵聚僧徒, 捐廩米以供之, 使營社稷壇場及倉庫館舍。 予嘗思之, 僧徒亦人也。 豈可使如此其勞困也? 諸君府朝房, 則只避風雨可矣。 何必如彼其壯麗乎? 日本使客及北塞野人, 雖絡繹而至, 有太平館有僧舍, 可以處之, 又何必別立館舍乎? 自去秋至今夏, 無有小暇, 若値霾雨, 則其怨咨極矣。 今以可已之事而役之不已, 甚可恤也。 予欲止之, 但以政府之所爲, 故未能果斷。" 知申事黃喜對曰: "僧徒不務農業, 遊手四方, 今給其食以營繕, 政府之議, 似未失也。" 上曰: "若軍資庫則不可無也, 今尙未畢, 而又一時驟興無名之役, 糜費貲糧, 可乎哉?" 群臣莫敢對。
태종실록 13권	7년 1407-05-14 丁卯	종묘, 사직, 북교, 소격전에서 기우제를 올리다	종묘(宗廟)·사직(社稷)·북교(北郊)·소격전(昭格殿)에 비를 빌[禱雨]었다.	禱雨于宗廟、社稷、北郊、昭格殿。
태종실록 13권	7년 1407-05-22 乙亥	가뭄이 심해 구언(求言)하니, 대사헌 성석인 등이 상소	구언(求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비록 대궐에 나와 조회(朝會)하여 아뢰기는 하나, 또한 말하는 것이 없으니, 금후로는 본사(本司)에 앉아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라." (중략)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이명덕(李明德)을 시켜 아뢰기를, "지금 한재(旱災)로 인하여 역사(役事)하던 무리들을 파(罷)해 보냈으나, 사직단(社稷壇)과 왜객관(倭客館)이 모두 완성되어가니, 각 품(品)에서 인	求言。 上曰: "旱氣太甚, 六曹判書, 雖詣闕朝啓, 亦無所言。 今後坐本司, 各盡其職。" (중략) " 議政府使舍人李明德啓曰: "今以旱災, 罷遣功役之徒, 然社稷壇、倭客館, 俱已垂成, 宜於各品差出人夫訖功。" 上怒曰: "旱甚, 非營繕時也。 何待其畢也!" 遂不許。 (중

			부(人夫)를 차출(差出)하여 공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가뭄이 심하여 영선(營繕)할 때가 아닌데, 어찌 마치기를 기다리겠느냐?"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않았다.	략)
태종실록 13권	7년 1407-06-19 辛丑	사간원에서 하윤 등 재상들의 죄를 논했으나, 이를 무마시키다	(중략) 그리고 환도(還都)한 것은 송도(松都)에 있으면서 여러 번 수한(水旱)의 재앙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를 종묘(宗廟)·사직(社稷)이 모두 신도(新都)에 있으니 마땅히 옮겨야 될 것이라고 여겨, 환도(還都)한 것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승(政丞)이 말하였다고 한다. (중략)	(중략) 還都則在松都屢有水旱之災, 予以爲宗廟社稷, 皆在新都, 故斷然而還, 不知者謂政丞之言。(중략)
태종실록 14권	7년 1407-07-08 己未	대신을 나누어 보내 원단·사직·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원단(圓壇)·사직(社稷)·북교(北郊)에서 바를 빌었다. 임금이 재계청(齋戒廳)에서 나와 원단에서 제사를 행할 무렵, 뜰에 내려가 지배(祗拜)할 때에 잠깐 비가 내렸다.	分遣大臣, 禱雨于圓壇社稷北郊。 上出齋戒廳, 値圓壇行祭之時, 下庭祗拜。 時乍雨。
태종실록 16권	8년 1408-09-04 己酉	대신을 보내어 산릉의 발인을 종묘·사직에 고하다	대신(大臣)을 보내어 산릉(山陵)의 발인(發引)을 종묘(宗廟)·사직(社稷)에 고하였다.	遣大臣, 告山陵發引于宗廟、社稷。
태종실록 18권	9년 1409-07-07 丁丑	예조에서 문선왕과 4배위·십철 등의 위판 규식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문선왕(文宣王)과 4배위(配位)·십철(十哲)의 위판(位板) 규식(規式)을 아뢰었다. "위판(位板)의 식(式)이 예전 명문(明文)이 없습니다.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면, 사직단(社稷壇) 신패(神牌)의 몸 높이가 2척(尺) 2촌(寸)이고, 너비가 4촌(寸) 5푼(分)이며, 두께가 9푼, 좌고(座高) 4촌 5푼이고, 너비가 8촌 5푼, 두께가 4촌(寸) 5푼(分)이며, 제왕(帝王) 능묘(陵墓)의 제물(祭物) 기명(器皿)의 의주(儀註)가 모두 사직(社稷)과 같으니, 문선왕(文宣王)의 위판(位板)을 사직단 신(社稷壇神)의 위판 규식(位板規式)에 의하여 제조하고, 4배위(配位)의 위판은 신고(身高) 2척, 너비 4촌 3푼, 두께 8푼으로, 십철(十哲)의 위판은 신고(身高) 1척 8촌, 너비 4촌 1푼, 두께 7푼으로 하되, 좌(座)의 높이·너비·두께는 모두 같게 하여, 이 차등(差等)에 의해 제조하소서."	禮曹啓文宣王四配位十哲位板規式。 啓曰: 位板之式, 古無其文。 按《洪武禮制》, 社稷壇神牌, 身高二尺二寸, 闊四寸五分, 厚九分; 座高四寸五分, 闊八寸五分, 厚四寸五分。 帝王陵墓, 其祭物器皿儀註, 竝與社稷同。 文宣王位板, 乞依社稷壇神位板規式製造。 四配位板, 身高二尺, 闊四寸三分, 厚八分; 十哲位板, 身高一尺八寸, 闊四寸一分, 厚七分, 座高闊厚皆同。 依此差等製造。
태종실록 19권	10년 1410-02-07 甲辰	전조의 청재감 감찰을 회복시키고 경시감 감찰을 전례에 따르게 하다	청재감 감찰(淸齋監監察)을 회복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신명(神明)을 제사(祭祀)하는 준비는 정결(精潔)히 하지 않을 수 없고, 상고(商賈)가 모이는 곳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사이 내외(內外)의 신소(神所)와 자성(粢盛)·거창(秬鬯)을 평상시에는 살피지 않다가, 제사(祭祀)가 임박하여 갑자기 깨끗하고 바르게 하려 하고, 섭행(攝行) 봉사(奉使)하는 신하도 비록 재계[致齋]를 한다고는 하나, 복식(服食)·거처(居處)가 평일과 다름이 없어 치재(致齋)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시전(市廛)에 있어서는 간사[奸]와 도둑질[盜]이 함부로 행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를 힘쓰니, 물가(物價)가 등귀(騰貴)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폐단이 어찌 작겠읍니까? 그러므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본부(本府) 분대기(分臺記)에 '청재감(淸齋監)·경시감(京市監) 감찰(監察)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의 좋은 법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종묘(宗廟)·원구(圓丘)·사직(社稷)·소격전(昭格殿)·문소전(文昭殿)·계성전(啓聖殿) 및 전사시(典祀寺) 등 각소(各所)에 감찰(監察) 한 사람을 재숙(齋宿)시켜, 때없이 나누어 보내 정(精)하고 정(精)하지 못함을 고찰하게 하고, 또 섭행(攝行) 봉사(奉使)하는 신하가 치재(致齋)하는 곳도 고찰하게 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한다면, 신명(神明)을 섬기는 도리에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 또 경시(京市)에도 일차 감찰(日差監察)을 보내어 저자[市]가 파할 때	復淸齋監監察。 司憲府上言: 祭神之備, 不可不潔; 商賈所聚, 不可不察。 今者內外神所與夫粢盛秬鬯, 常不致察, 及其臨祭, 遽欲潔正。 其攝行奉使之臣, 雖曰致齋, 服食居處, 無異平昔, 未盡致齊之道, 至於市廛, 奸盜縱橫, 務相欺誑。 物價騰湧, 職此之由, 弊豈小哉? 是故自昔所傳本府分臺記, 有曰: "淸齋監京市監監察, 此前朝盛時之良法也。" 請自今宗廟、圓丘、社稷、昭格殿、文昭殿、啓聖殿及典祀寺等各所, 令監察一人齋宿, 無時分遣, 考其精否; 攝行奉使之臣致齋之所, 亦令考察, 以盡誠敬, 庶有合於交神明之道矣。 又於京市, 亦遣日差監察, 罷市爲限, 考其物價, 禁其奸濫, 則市廛整齊而物價均平矣。 判曰: "依申。 其京市監察, 依前例施行。"

			까지 한(限)하여 물가(物價)를 상고하고, 간사[奸]와 횡포[濫]를 금하면, 시전(市廛)이 정제(整齊)되고 물가(物價)가 균평(均平)해질 것입니다." 이에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경시 감찰(京市監察)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21권	11년 1411-05-20 庚辰	예조에서 가뭄에 대처하는 사의를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가뭄을 근심하는 데 필요한 사의(事宜)를 올렸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펴보건대,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의 고제(古制)를 본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무릇 경도(京都)에 맹하(孟夏) 이후에 가뭄이 들면 악(嶽)·진(鎭)·해(海)·독(瀆)에 비를 빌고, 산천(山川)으로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북교(北郊)에서 제사하며, 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빌되, 7일마다 한 번씩 빌며,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악(嶽)·해(海)·독(瀆)에 기우(祈雨)하기를 처음과 같이 행한다. 그리고 가뭄이 심하면 우제(雩祭)를 지내는데, 처음에 빈 뒤 10일이 되어도 비가 안오면, 저자[市]를 옮기고, 도살(屠殺)을 금하며, 산선(傘扇)을 끊고 토룡(土龍)을 만든다.' 하였으며, 또 고전(古典)에 말하기를, '가뭄이 있으면 원통한 옥사(獄事)를 심리(審理)하고,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뼈를 덮고 썩은 고기를 묻으며, 도랑[溝洫]을 치고 척맥(阡陌)을 깨끗이 치운다.'고 하였으니, 고전(古典)에 따라 시행하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上憂旱事宜: 謹按《文獻通考》及前朝《詳定古今禮》, 倣隋、唐古制, 有曰: "凡京都, 孟夏以後旱, 則祈嶽鎭海瀆及祭山川能興雲雨者於北郊, 又祈社稷宗廟, 每七日一祈, 不雨, 還從嶽瀆如初。 旱甚則修雩, 初祈後一旬不雨, 則徙市, 禁屠殺, 斷傘扇, 造土龍。" 又古典, 有旱則審理冤獄、賑恤窮乏、掩骼埋胔、修溝?、淨阡陌等事, 當依古典施行。 從之。
태종실록 21권	11년 1411-05-21 辛巳	여러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명하여 대신(大臣)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 등을 보내어 비를 빌게 하였으니, 장차 22일에 종묘(宗廟)·사직(社稷)·백악(白岳)·목멱(木覓)·한강(漢江)·북교(北郊)에 제사를 지내려 함에서였다. 또 검교 참의(檢校參議) 최덕의(崔德義)를 보내어 화룡제(畫龍祭)를 양진(楊津)에 베풀게 하였다.	命遣大臣星山君李稷等禱雨, 將以二十二日, 致祭于宗廟、社稷、白岳、木覓、漢江、北郊。 又遣檢校參議崔德義, 設畫龍祭于楊津。
태종실록 21권	11년 1411-05-23 癸未	예조에서 보사(報祀) 제도를 상고해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보사(報祀)의 제도를 올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근자에 제철에 와야 할 비가 시기를 어기고 오지 아니하매, 전하께서 백성들을 걱정하시어 종묘(宗廟)·사직(社稷)과 북교(北郊)·목멱(木覓)·양진(楊津)·한강(漢江)·백악(白岳) 등에 기도하게 하시고, 토룡(土龍)과 화룡(?龍)·석척(蜥蜴) 등에 이르기까지 무릇 옛사람이 비를 빌던 방법이란 방법은 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옛 제도에 따라 공문(公文)을 유사(攸司)에 나누어 보내어, 이달 임오일(壬午日)에 삼가 이미 제사를 행하였으며, 토룡제(土龍祭)로 말할 것 같으면 헌관(獻官)은 벌써 갖추어 놓았으나, 아직 제사는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비를 근심하는 정성이 먼저 황천(皇天)에 이르러서 비의 혜택이 넘쳐 흘렀습니다. (중략)	禮曹上報祀之制。 啓曰: 比者, 時雨愆期, 殿下憂閔黎元, 命祈宗廟、社稷及北郊、木覓、楊津、漢江、白岳, 至於土龍畫龍蜥蜴, 凡古人所祈雨者, 靡所不擧。 臣等奉旨, 依古制分牒攸司, 今月壬午, 謹已行祭, 若土龍祭, 則獻官已齊而未祈。 殿下閔雨之誠, 先格皇天, 雨澤滂沱, (중략)
태종실록 21권	11년 1411-06-14 癸卯	가뭄을 근심하여 정사를 보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다	가뭄을 근심하여 정사를 보지 아니하고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지금 한재(旱災)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가뭄을 구(救)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의정부(議政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 말하여 각기 흉년을 구제할 방법을 아뢰게 함이 좋겠다." 하니,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이달 초4일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신 등이 고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1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한가?' 하니,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아니한 지 벌써 10일이 되었사오니,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백악(白岳)·목멱	憂旱不視事。 命承政院曰: "今旱災爲甚, 無一人以救旱爲言者。 議政府以爲何如? 爾等言於政府六曹, 各陳救荒之策可也。" 金汝知對曰: "月初四日有雨, 故臣等不之告也。 先儒曰: '十日不雨可乎? 曰不可。' 今不雨旣十日矣, 殿下之言, 誠是矣。 臣等以謂白岳、木覓、南北郊, 前旣禱雨, 今宜禱於社稷宗廟及土龍。" (중략)

			(木覓)·남교(南郊)·북교(北郊)에 벌써 비를 빌었으니, 지금은 마땅히 종묘(宗廟)·사직(社稷)과 토룡(土龍)에 비를 빌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명목은 구언(求言)한다 해놓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구언(求言)의 체통이 아니니, 아직은 구언(求言)하지 말고, 우선 종묘(宗廟)·사직(社?)과 토룡(土龍)에 정결(精潔)하게 제물(祭物)을 드리고 기우제(祈雨祭)를 행함이 좋겠다." 하였다. 또 공부(孔俯)에게 명하여 동남(童男)을 모아 석척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게 하였다.	上曰: "名爲求言, 而使之勿言, 是亦非求言之體也。 姑除求言, 先於宗廟社稷土龍, 精潔奠物, 行祈雨祭可也。" 又命孔俯聚童男, 行??祈雨。
태종실록 22권	11년 1411-07-15 甲戌	불우(佛宇)에 기우를 행하려다 중지하다	사리전(舍利殿) 기우 행향사(祈雨行香使) 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이 대궐에 나와서, 장차 향(香)을 받으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북교(北郊)·화룡(畫龍)·토룡(土龍)·석척(蜥蜴) 등에 비를 비는 것은 예문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거행하여야 하나, 불우(佛宇)에 비를 비는 것은 예전에 그 예가 없고, 하물며 내가 전번에 부처에게 비를 빌었을 때에도 조금도 응험이 없었다.' 불도가 비록 영험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지공(指空)같은 중이 없는데, 어찌 그 응험이 있겠느냐." 임금이 드디어 정지하였다.	舍利殿祈雨行香使玉川君劉敞, 詣闕將受香, 上曰: "宗廟社稷、山川、北郊、畫龍、土龍、蜥蜴等祈雨, 載諸禮文, 宜擧行。 若佛宇祈雨, 古無其禮。 況予前此祈雨於佛, 略無其應。 佛道雖驗, 世無僧如指空者, 安有其應!" 遂停之。
태종실록 22권	11년 1411-08-25 甲寅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幣帛)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 《증자문(曾子問)》에 고하는 데에 생폐(牲幣)를 쓰는 것에 대한 주(註)에 이르기를, '폐백이 길이가 1장(丈) 8척(尺)이라.'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 또한 말하기를, '폐백은 증(繒)인데 1장 8척이라.'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 주문공(朱文公) 석전의(釋奠儀) 당(唐)·송(宋)의 제도에 모두 1장 8척을 썼고,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주현 사직의(州縣社稷儀)와 전조(前朝)의 상정례(詳定禮)에도 또한 예전 제도를 승습하여 무릇 신명에게 예(禮)하는 폐백은 모두 1장 8척을 썼고, 상제(上帝)에게 제사하는 데는 폐백을 창색(蒼色)으로 하고, 오제(五帝)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으로 하고,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폐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禮曹詳定祭祀用幣之制。 上言: 曾子問告用牲幣註云: "幣長丈八尺。" 《杜氏通典》亦曰: "幣繒丈八尺。" 《文獻通考》及朱文公釋奠之儀, 唐、宋之制, 皆丈八尺; 《洪武禮制》州縣社稷儀、前朝《詳定禮》, 亦承古制, 凡禮神之幣, 皆用丈八尺。 其祀上帝則幣以蒼, 五帝各隨其方之色, 先農以靑, 先蠶以黑, 其餘祀神之幣, 皆用白。 今我朝所供之幣, 有違古制, 其色與長, 一依古制, 皆用朱文公造禮器尺。 從之。
태종실록 22권	11년 1411-11-07 甲子	명년 새해를 하례하고자 명나라에 참찬의정부사 등을 보내다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정탁(鄭擢)·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안성(安省)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으니, 명년 정삭(正朔)을 하례하기 위해서였다. 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하였다. "본국(本國)에서 조묘(祖廟) 및 사직(社稷)·산천(山川)·문묘(文廟) 등 제사에 성조(聖朝)가 제정한 것을 알지 못하여 번국(藩國)의 의식(儀式)이 그대로 전대(前代) 왕씨(王氏)의 구례(舊禮)를 쓰고 있으니, 심히 미편(未便)하다. 윗 항목의 제례(祭禮)를 주청(奏請)하니, 만일 반강(頒降)을 얻는다면 흠의(欽依)하여 준수하겠다."	遣參贊議政府事鄭擢、參知議政府事安省如京師, 賀明年正也。 且咨禮部曰: "本國祖廟及社稷山川文廟等祭, 未知聖朝所制藩國儀式, 仍用前代王氏舊禮, 深爲未便。 上項祭禮, 理合奏請, 如蒙頒降, 欽依遵守。"
태종실록 23권	12년 1412-01-15 庚子	개천을 파는 일로 동원된 5만 2천 8백명의 군사에게 군자감의 곡	대신(大臣)을 보내어 운하[渠]를 파는 일 때문에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 신(神)에 고하였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 2천 8백 명이었다. 임금이,	遣大臣, 以開渠, 告宗廟社稷山川之神。 慶尙、全羅、忠淸三道軍人共五萬二千八百。 上曰: "五萬餘人, 遠路

		식을 주다	“5만여 인이 먼길에 쌀을 지고 온 것이 반드시 넉넉지 못할 것이다.” 하고, 명하여 군자감(軍資監)의 쌀 4만 4백 석을 내어서 군인에게 각각 3두(斗)씩을 주어서 반달 양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군인 중에 부모의 상(喪)을 입은 자의 수가 3백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놓아서 돌려보냈다.	負米, 必不贍矣。” 命出軍資監米萬四百石, 給軍人各三斗, 備半月糧也。 軍中服父母喪者, 數至三百, 皆放還之。
태종실록 23권	12년 1412-05-03 丙戌	임첨년 등이 종묘 사직 제 등을 풍속대로 하라는 예부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	임첨년(任添年)·최득비(崔得霏)가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임첨년 등이 아뢰었다. “황제(皇帝)가 신 등을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여, 각각 고명(誥命) 1통[道]과 내구마(內廐馬) 3필과 보초(寶鈔) 4천 장과 백은(白銀) 1백 냥(兩)과 단초(緞綃) 각각 7필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싸 가지고 온 예부 자문(禮部咨文)은 이러하였다. “근자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자문(咨文)에 의하면, ‘본국(本國)의 조묘(祖廟)와 사직(社稷)·산천(山川)·문묘(文廟) 등의 제사에 중국의 예제를 알지 못하여, 번국(藩國)의 의식을 전조(前朝) 왕씨(王氏)의 구례(舊禮)를 그대로 쓰니 깊이 미편하다. 반강(頒降)하여 준수(遵守)하기를 주청(奏請)한다.’고 하였는데, 이자(移咨)하여 본부(本部)에 이르렀으므로, 영락(永樂) 10년 3월 초2일에 본부관(本部官)이 봉천문(奉天門)에서 제주(題奏)하여 성지를 받들었는데, ‘다만 저의 본래 풍속(風俗)을 따르라. 너희 예부(禮部)에서 문서(文書)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임첨년 등이 모자(毛子) 2필과 색사(色絲)·감초(甘草)를 바치었다.	任添年、崔得霏, 回自京師。 添年等啓曰: “皇帝待臣等甚厚, 各賜誥命一道、內廐馬三匹、寶鈔四千張、白銀一百兩、段綃各七匹。” 其齎來禮部咨曰: “近準朝鮮國王咨開: ‘本國祖廟及社稷山川文廟等祭, 未知聖朝禮制、藩國儀式, 仍用前朝王氏舊禮, 深爲未便。 奏請頒降遵守。’ 移咨到部。 永樂十年三月初二日, 本部官於奉天門, 題奏奉聖旨: ‘只從他本俗。 恁禮部行文書去, 着他知道。’” 添年等進毛子二匹、色絲甘草。
태종실록 24권	12년 1412-07-17 庚子	큰 바람과 비가 와서 곡식을 살피게 하다	큰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렸으므로 나무가 뽑히고 기와[瓦]가 날리며 곡식이 모두 쓰러졌다. 임금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잠을 자지 아니하였다. 대신 등에게 명하여 기청제를 종묘(宗廟)·사직(社稷)·북교(北郊)에서 행하려 했는데, 이튿날 비가 개어 드디어 그만두었다. 내수(內竪)를 들[郊]에 분견(分遣)하여 곡식을 살피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익은 곡식은 수령(守令)이 독촉하여 수확함이 마땅하였는데도 이제 손상케 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중략)	大風以雨, 拔木飄瓦, 禾稼盡偃。 上驚懼不寐, 將命大臣等行祈晴祭于宗廟社稷北郊, 翼日雨晴遂止, 分遣內竪于郊, 以察禾稼。 上曰: “禾之已熟者, 守令宜督收穫, 今致損傷, 何哉?” (중략)
태종실록 24권	12년 1412-08-28 庚辰	중국 역대의 사적을 상고하여 원단 쌓는 일을 파하도록 명하다	원단(圓壇) 쌓는 일을 파하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와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이 원단의 제사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중략) “신 등이 삼가 《예기(禮記)》를 고찰하건대,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노나라의 교체(郊禘)는 예가 아니니, 주공(周公)의 그것이 쇠하였도다!’ 하였고,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에 말하기를, ‘서인(庶人)이 5사(五祀)를 제사할 수 없음과 대부(大夫)가 사직(社稷)을 제사할 수 없음과 제후가 천지(天地)에 제사할 수 없음은 고의로 등쇠(等衰)를 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바꿀 수 없는 정리(定理)인 것이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원단의 제사를 혁파하심으로써 만세(萬世)의 법을 바로 잡게 하소서.” 곧 이를 파하도록 명하였다.	命罷圓壇之築。 禮曹與成石璘、河崙、星山君李稷, 議圓壇之祭以聞曰: (중략) 臣等謹按《禮記》, 孔子曰: ‘魯之郊禘, 非禮也。 周公其衰矣!’ 《春秋胡氏傳》曰: ‘庶人之不得祭五祀, 大夫之不得祭社稷, 諸侯之不得祭天地, 非故爲等衰, 蓋不易之定理也。’ 伏望革圓壇之祀, 以正萬世之典。 乃命罷之。
태종실록 25권	13년 1413-04-13 辛酉	예조에서 여러 제사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여러 제사[諸祀]의 제도를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삼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피건대, 사직(社稷)·종묘(宗廟)·별묘(別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잠(先蠶)· 문선왕(文宣王)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祭) ·칠사(七祀)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 (중략)	禮曹上諸祀之制。 啓曰: “謹按前朝《詳定古今禮》, 社稷、宗廟、別廟爲大祀, 先農、先蠶、文宣王爲中祀, 風師、雨師、雷師、靈星、司寒、馬祖、先牧、馬步、馬社、禜祭七祀、州縣文宣王爲小祀。 (중략)
태종실록 25권	13년 1413-06-08 乙卯	예조에서 사전(祀典)을 개정하여 올리다	사전(祀典)을 개정하여 예조에서 아뢰었다. (중략) 1. 제사(諸祀)의 단유(壇壝) 안에서는 오직 사직단(社稷壇)과 풍운뢰우단	改正祀典。 禮曹啓曰 (중략) 一, 諸祀壇壝內, 唯社稷壇、風雲雷雨

			(風雲雷雨壇)만이 법식대로 축조(築造)되었고, 그 나머지 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중농(仲農)·후농(後農)의 단유는 모두 아직 축조되지 못했으며, 선농(先農)·선잠(先蠶)·노인성(老人星)·북교(北郊)·여제(厲祭)의 단유는 비록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법식과 다르니, 윗항의 단유는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땅을 보아서 축조하소서. 1. 여러 사단(祀壇) 안에 비록 제단을 둔 곳이 있으나, 신주(神廚)와 제기고(祭器庫)와 제관(祭官)의 재소(齋所)가 없는 까닭에 신(神)의 위판(位版)과 축판(祝版)을 제사한 뒤에는 항상 남의 집에다 두게 되고, 혹 비나 눈을 만나면 전물(奠物)의 공비(供備)와 제관이 재숙(齋宿)할 장소조차 없으니, 신(神)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닌듯 합니다. 바라건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신주와 제기고, 제관의 재소를 짓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壇, 如式造築, 其餘靈星、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仲農、後農壇壝, 竝未造築。 先農、先蠶、老人星、北郊厲祭壇壝, 雖已造築, 亦不如式。 上項壇壝, 稽古制, 相地造築。 一, 諸祀壇內, 雖有壇之處, 以無神廚及庫祭官齋所, 故神位版及祝版, 祭後恒置人家, 或値雨雪, 則奠物供備祭官, 齋宿無所, 似非敬神之道。 乞依古制, 作神廚及庫、祭官齋所。" 從之。
태종실록 27권	14년 1414-04-17 庚申	예조에서 건의한 대로 사직단 둘레 담장의 제도를 정하다	예조에서 사직(社稷)의 둘레 담장[周墻]의 제도를 바쳤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둘레 담장[周墻]은 송조(宋朝) 의례국(儀禮局)의 오례 신의(五禮新義)에 의하여 4문(門)이 동일한 유(壝)로서 25보(步)의 제도를 1유(壝)로 삼았고, 소흥(紹興) 13년 양존중(楊存中) 등이 상언(上言)한 것에 의하면 둥근 장유(墻壝) 외에 40보(步)의 제도로서 남쪽·서쪽·북쪽은 산강(山岡)으로 한계를 삼고, 동쪽 한계는 1백 40보(步)를 수축(修築)하여 대차(大次)의 의장(儀仗)과 금위(禁衛)의 배열(排列)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禮曹進社稷周墻之制啓曰: "周墻依宋朝儀禮局《五禮新儀》, 四門同一壝, 二十五步之制爲一壝, 依紹興十三年楊存中等上言, 圜墻壝外四十步之制, 南西北以山岡爲限, 東限一百四十步修築, 爲大次儀仗, 禁衛排列之所。" 從之。
태종실록 27권	14년 1414-05-18 庚寅	예조에서 건의한 우사의 신주 규격 등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우사(雩祀)의 신주(神主) 제도는, 청컨대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사직(社稷)의 제도에 의하여 높이는 2척 2촌으로, 너비는 4촌 5푼으로, 두께는 9푼으로 하고, 부방(趺方)의 높이는 4촌 5푼으로, 저비는 8촌 5푼으로 하여 만드는데,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소서. 제사에 임하여 작은 탁자(卓子)를 단(壇) 위에 설치하여 안치(安置)하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이를 갈무리합니다. 위차(位次)는 구망(句芒)·축융(祝融)·욕수(蓐收)·현명(玄冥)·후직(后稷)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사직(社稷)의 신주(神主)를 갈무리할 곳을 물으니,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중국의 군사(郡社)에는 신주(神主)를 갈무리하는 실(室)이 없으므로, 우리 조정(朝廷)에도 또한 그러합니다. 선농(先農)·선잠(先蠶)의 신주(神主)는 제사를 끝마친 뒤에 도로 싣고 와서 전사시(典祀寺)의 창고에 갈무리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구처(區處)하지 않는다면 변(籩)·두(豆)와 아울러 같이 차중(車中)에 실을까 두려우니, 어찌 밝은 신(神)을 공경하는 도리이겠는가? 그 전적(典籍)을 상고하여서 아뢰어라." 임금이 우사(雩祀)의 신(神)의 명위(名位) 등급(等級)을 물으니, 성석인(成石因)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이미 여러 신(神)의 위차(位次)를 정하였으나, 오직 후직(后稷)의 자리를 정하지 못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禮曹啓: "雩祀神主之制, 請依《洪武禮制》社稷之制, 高二尺二寸, 廣四寸五分, 厚九分, 趺高四寸五分, 廣八寸五分, 裁用營造尺。 臨祭, 設矮卓於壇上以安, 祭畢藏之。 位次則句芒、祝融、蓐收、玄冥、后土、后稷。" 上從之, 因問社稷神主所藏之處, 李膺對曰: "上國郡社, 無藏主之室, 我朝亦然。 先農先蠶神主, 祀畢後, 還載藏於典祀寺庫。" 上曰: "若不區處, 恐併籩豆同載車中, 豈敬恭明神之道乎? 其考典籍以聞。" 上問雩祀之神名位等級, 成石因對曰: "臣等與詳定所已定諸神位次, 唯后稷之位未定。" 上曰: "《書》曰: '水火金木土穀。'則穀在土之下。 稷始播百穀, 後世以穀神祀之, 稷在后土之下宜矣。 卿等與河崙、李稷參酌施行。"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이라.’ 하였으니, 곡(穀)은 토(土)의 아래에 있다. 직(稷)은 비로소 온갖 곡식을 뿌렸으므로 후세에서 곡신(穀神)으로 제사지내니, 직(稷)은 후토(后土)의 아래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경 등은 하윤(河崙)·이직(李稷)과 더불어 참작하여 시행하라.”	
태종실록 28권	14년 1414-12-23 壬辰	침장고와 빙고를 혁파하고, 그 일을 다방과 내시헌에 맡기다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고, 양전(兩殿)의 내주(內廚) 소채(蔬菜)는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였다. 건원릉(健元陵)·문소전(文昭殿)·종묘(宗廟)·사직제(社稷祭)의 소채(蔬菜)는 전사시(典祀寺)에서 공급하게 하고, 모든 연향(宴享)의 용도는 예빈시(禮賓寺)에서 공급하게 하였다. 또 빙고(氷庫)를 혁파하고 내시원(內侍院)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이제 침장고(沈藏庫)를 다방(茶房)에 이속(移屬)하였으니, 청컨대, 침장고의 미포(米布)를 출납(出納)하는 예에 의하여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청대(請臺)하여 출납(出納)하게 하고, 인신(印信)은 다방(茶房)의 인(印)을 쓰고, 그 영사(令史)는 사선서(司膳署)에 속한 자 외에 권지 직장(權知直長) 5인과 영사(令史) 5인을 다방(茶房)에 붙이어 일을 맡기고 부리되, 거관(去官)하기에 이를 때에는 본서(本署)의 차년 개월(差年箇月)을 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革沈藏庫, 兩殿內廚蔬菜, 令茶房供之; 健元陵、文昭殿、宗廟、社稷祭蔬菜, 典祀寺供之; 凡宴享之用, 禮賓寺供之。 又革氷庫, 令內侍院掌之。 禮曹啓曰: “今者沈藏庫移屬茶房, 請依沈藏庫米布出納之例, 令茶房請臺出納, 印信則用茶房之印, 其令史屬司膳署外, 權知直長五人及令史五人, 屬於茶房任使, 至去官時, 用本署差年箇月。” 從之。
태종실록 29권	15년 1415-06-03 戊辰	종묘와 명산 대천에 비를 빌다	종묘(宗廟)와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비를 빌었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수(隋)나라·당(唐)나라의 고제(古制)에 의하면, 대체로 경도(京都)에서 맹하(孟夏) 이후에 가물면 악진(岳鎭)·해독(海瀆)과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운우(雲雨)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게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고, 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빌되, 7일마다 한 번씩 빌었는데,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악진·해독에 비를 빌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비를 빌기를 어느 신(神)에게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늘날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비를 빌기를 고전(古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禱雨于宗廟及名山大川。 禮曹啓: “隋、唐古制, 凡京都孟夏以後旱, 則祈岳鎭、海瀆及祭山川, 能興雲雨者於北郊, 又祈社稷, 又祈宗廟, 每七日一祈, 不雨還從岳瀆如初。 今祈雨靡神不擧, 迨今不雨, 祈雨依古典施行。” 從之。
태종실록 29권	15년 1415-06-08 癸酉	비를 빌다	비를 빌었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전례(前例)에 가뭄[旱氣]이 매우 심하여 일이 절박(切迫)함에 관계되면 7일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祈禱)하였으며, 청컨대, 서운관(書雲觀)에서 택일한 12일에는 북교(北郊)에서 비를 빌고, 14일은 사직(社稷)에, 15일은 삼각산(三角山)·목멱(木覓) ·양진(楊津)·한강(漢江) 등처에 비를 빌게 하소서.” 또 산선(繖扇)을 금단(禁斷)하기를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祈雨。 禮曹啓曰: “前例, 旱氣深重, 事干迫切, 則不待七日祈禱。 請以書雲觀所擇十二日北郊、十四日社稷、十五日三角・木覓・楊津・漢江等處祈雨。” 又請斷繖扇, 皆從之。
태종실록 31권	16년 1416-05-20 辛亥	예조의 건의로 《문헌통고》를 참고하여 기양하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교사기양문(郊社祈禳門)에, ‘집사(執事)가 상하의 신기(神祇)에게 도사(禱祀)한다.’고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집사(執事)는 대축(大祝)과 남무(男巫)와 여무(女巫)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해마다 잇달아 가물고 뇌진(雷震)의 변고가 더하니, 빌건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악(嶽)과 명산(名山)에 무당[巫]을 보내어 기양(祈禳)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교사기양문(郊社祈禳門)을 살펴 보니, 이르기를, ‘무릇 천지(天地)의 큰 재이(災異)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유제(類祭)한다.’고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유제(類祭)는 그 정례(正禮)에 의하여 제사지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요즈음 해마다 잇달아 가물	禮曹啓: “《文獻通考》郊社祈禳門: ‘執事禱祀于上下神祇。’ 註曰: ‘執事, 大祝及男巫女巫也。’ 今連年旱乾, 加以雷震之變, 乞依古制, 於嶽及名山, 遣巫祈禳。” 從之。 又啓: “謹按, 《文獻通考》郊社祈禳門云: ‘凡天地之大災, 類社稷宗廟。’ 註曰: ‘類者, 依其正禮爲之。’ 比者連年旱乾, 加以雷震告變。 乞依古制, 於社稷依春秋大祭攝行例; 於宗廟依四時大享攝行例, 擇日祈禳何如?” 從之。

			고 뇌진(雷震)이 더하여 변고를 알리니, 빌건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사직(社稷)에서는 춘추 대제 섭행례(春秋大祭攝行例)에 의하여, 종묘(宗廟)에서는 사시 대향 섭행례(四時大享攝行例)에 의하여 날을 골라서 기양(祈禳)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1권	16년 1416-05-20 辛亥	종묘·사직과 우사단에 비를 빌다	종묘(宗廟)와 사직(社稷)과 우사단(雩祀壇)에 비를 빌었다.	祈雨於宗廟、社稷、雩祀壇。
태종실록 31권	16년 1416-06-01 辛酉	사직과 종묘에 비를 빌다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비를 빌었다.	祈雨於社稷宗廟。
태종실록 31권	16년 1416-06-05 乙丑	예조에서 기우에 관한 전거와 계목을 올리다	예조에서 기우 계목(祈雨啓目)을 올렸다. "1. 《문헌통고(文獻通考)》 안에, '4월 이후에 가물면 사직(社稷)·산림(山林)·천택(川澤)에 두루 비는데, 연고 있는 곳에 나아가 대우(大雩)할 때 무동(舞童) 14인이 모두 현의(玄衣)를 입고 8렬(列)로 서서 각각 우예(羽?)를 잡고 열(列)마다 운한시(雲漢詩)를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일찍이 재랑(齋郎)으로 하여금 운한편(雲漢篇)을 외우도록 익히게 하였는데, 이제 우사(雩祀)와 원단(圓壇)에 이것을 부르도록 청합니다. 또 북교(北郊)에 망기(望祈)할 때와 풍운뢰우(風雲雷雨)·삼각산(三角山)·한강(漢江)·목멱(木覓)·사직(社稷)·종묘(宗廟)·우사(雩祀)·기우사(祈雨祀)에 나아갈 때에도 또한 모두 이를 부르게 하소서. 1. 동중서(董仲舒)의 기우(祈雨)하는 방법에 말하기를,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어 놓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음(陰)을 창달하게 하는 뜻입니다. 청컨대, 도성(都城)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 것이요 어떠하겠습니까? 1. 동중서가 말하기를, '가물면 군읍(郡邑)으로 하여금 수일(水日)에 백성들로 하여금 사직(社稷)에 빌게 한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가인(家人)은 호신(戶神)에 제사한다.'고 하였으니, 또 이 법을 가지고, 외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里社)에 나아가 빌게 하고, 또한 중외의 가인(家人)으로 하여금 호신(戶神)에 제사하여 비를 빌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禮曹上祈雨啓目: "一, 《文獻通考》內: '四月後旱, 則徧祈社稷、山林、川澤。 就故處大雩, 舞童十四人皆服玄衣, 爲八列, 各執羽翳, 每列歌《雲漢詩》。' 曹曾使齋郎習誦《雲漢篇》, 今雩祀圓壇請歌之。 且於望祈北郊及就風雲雷雨、三角山、漢江、木覓、社稷、宗廟、雩祀、祈雨祀亦皆歌之。 一, 董仲舒祈雨之術曰: '閉南門縱北門。' 蓋亦達陰之意。 請閉都城南門, 開北門何如? 一, 董仲舒曰: "旱則令郡邑, 以水日令民禱社稷。" 又曰: "家人祠戶。" 且將此法, 令外方民就祈里社, 亦令中外家人祠戶祈雨。" 從之。
태종실록 32권	16년 1416-09-12 庚子	예조의 건의로 원단·사직·풍운뢰우·선농단 등에 재실을 짓다	원단(圓壇)·사직(社稷)·풍운 뢰우(風雲雷雨)·선농(先農)의 여러 단(壇)에 재실(齋室)을 지었으니, 예조(禮曹)의 계문(啓聞)에 따른 것이었다. 또, 아뢰기를, "제삿날에 혹 비와 눈을 만나면 충호위(忠扈衛)로 하여금 악차(幄次)를 설치하여 행제(行祭)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원단·풍운 뢰우의 여러 단(壇)을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쌓고 담 밖 사방에 나무를 심고 각각 인정(人丁)을 정하여 지키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營齋室于圓壇、社稷、風雲雷雨、先農諸壇, 從禮曹之啓也。 又啓: "祭日或値雨雪, 則令忠扈衛, 設幄行祭。" 又啓: "圓壇、風雲雷雨諸壇, 乞依古制築之, 壝外四方種木, 各定人丁守之。" 皆從之。
태종실록 33권	17권 1417-05-05 庚申	예조에서 종묘·사직·우사·원단에 기우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예조에서 종묘(宗廟)·사직(社稷)·우사(雩祀)·원단(圓壇)에 기우(祈雨)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였다. "우사(雩祀)에 비를 빌자는 것은 판서(判書) 변계량(卞季良)의 청이다. 옛날에 성탕(成湯)이 가뭄을 근심하여 상림(桑林)에서 기도할 때, 몸으로써 스스로 희생(犧牲)에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비를 근심함이 대단한 것이다." 이원이 아뢰기를,	禮曹請祈雨于宗廟社稷雩祀圓壇, 從之。 上曰: "雩祀祈雨, 判書卞季良之請也。 昔 成湯憂旱, 桑林之禱, 以身自代犧牲, 是閔雨之甚也。" 李原啓曰: "臣聞平安道霖雨連日, 路甚泥濘, 行不易進。 又全羅、慶尙道連日有雨。" 上曰: "各道如此, 獨圻內彌月不雨, 是

			“신이 듣건대, 평안도는 장맛비[霖雨]가 연일 내려 길이 매우 질기 때문에 다니기에 쉽지 않다 하고, 또 전라도·경상도에도 연일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각도(各道)가 이와 같은데 유독 기내(畿內)에서만 한 달이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것이 더욱 두렵다.”	尤可懼也。”
태종실록 35권	18년 1418-04-06 丙戌	좌사간 대부 정상이 토목 역사와 한경으로 돌아갈 것을 진술하다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정상(鄭尙)이 아뢰기를, (중략) “이제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일으켜 크게 조계루(朝啓樓)를 짓고, 여름을 이 도읍(都邑)에서 지낸다면 한경(漢京)의 인민(人民)이 안정(安定)할 바를 알지 못하여 모자(茅茨)·여사(廬舍)가 반드시 조잔(彫殘)하기에 이를 것이니, 폐단이 막심합니다. 더군다나 한경(漢京)은 종묘(宗廟)·사직(社稷)이 있는 곳이니 오래 비워둘 수가 없으며, 송도(松都)는 전조(前朝)의 남긴 폐허(廢墟)이니 액(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온정(溫井)에서 병을 치료한 뒤에 5월에 철이 바뀌거든 속히 한경(漢京)에 돌아가서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액(厄)을 피(避)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왔던 것이다. 처음에 경중(京中)에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다른 의논이 있었으므로 아직 또 서서히 하겠다. 내가 온정(溫井)에 거둥하여 장차 다시 생각해 보겠다. 사간(司諫)의 말이 옳다.”	左司諫大夫鄭尙啓曰: “上不遺草茅賤士, 授以諫官之任, 小臣之所懷, 請悉陳之。” 上曰: “然。 就前說之。” 尙曰: “今起土木之役, 大作朝啓樓。 過夏此都, 則漢京人民未知所定, 茅茨廬舍, 必至彫殘, 弊莫甚焉。 況漢京, 宗社之所在, 不可久曠; 松都前朝之遺墟, 不可避厄。 望殿下溫井治疾之後, 五月入節, 則速還漢京, 以定民志。” 上曰: “予不避厄, 偶然來爾。 初欲還京, 中有別議, 姑且徐之。 予幸溫井, 將更思之, 司諫之言是也。”
세종실록 3권	1년 1419-03-02 丙午	사직단의 담을 수리하다	사직단(社稷壇)의 담을 수리하였다.	修社稷欄墻。
세종실록 5권	1년 1419-09-26 戊辰	백관과 함께 인덕궁에 나아가 곡하다	임금이 소복(素服)·오대(烏帶)·청양산(靑陽傘)·청선(靑扇)의 차림으로 인덕궁에 가자, 백관들은 소복·오대의 차림으로 따라가 문밖에 줄지어 섰고, 판통례(判通禮)가 임금을 인도하여 전문(殿門)안에 들어갔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15마디 곡하시오.” 하니, 임금이 사배하고 곡하고, 통찬(通贊)이, “사배하고 곡하라.” 고 창하니, 백관들이 다 사배하고 곡하였다. 판통례가, “사배하시오.” 하니, 임금이 사배하였다. 통찬이, “사배하라.” 창하니, 백관들이 사배하였다. 판통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악차(幄次)로 가고, 통례문이 군신을 나눠서 인도하고 차례에 따라서 나갔다. 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들이 악차에 찾아 뵈었다. 임금이 환궁하여, 우부대언(右副代言)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상사(喪事)를 감독케 하고, 예문 제학(藝文提學) 탁신(卓愼)과 전 도총제(都摠制) 노필(盧弼)을 빈전 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에, 지돈녕(知敦寧) 김구덕(金九德)과 공안부 윤 유장(柳暲)을 재도감 제조(齋都監提調)에, 예조 참판 김자지(金自知)를 상복색 제조(喪服色提調)에, 호조 참의 정초(鄭招)를 동부제조에 각각 발령하였다. 상왕은 몸이 불편하여, 임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왕이 주상(主喪)이 되고, 조정은 10일 동안, 항시(巷市)는 5일 동안 각각 정지시키고, 음악을 멈추고 도살과 혼인을 금지하여 산릉(山陵)〈에 모시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대소의 제사를 정지시켜 우제(虞祭) 전까지로 한정하고, 사직(社稷)〈의 제사〉만은 정지하는 제한 안에 두지 않	上以素服、烏帶、靑陽傘、靑扇詣仁德宮, 百官以素服、烏帶從之, 班立門外。 判通禮導上入就殿門內, 判通禮啓請四拜哭十五聲, 上四拜哭。 通贊唱四拜哭, 百官皆四拜哭。 判通禮啓請四拜, 上四拜。 通贊唱四拜, 百官四拜。 判通禮導上就幄次, 通禮門分引群臣以次出。 義平君元生、順平君群生等見于幄次。 上還宮, 命右副代言尹淮, 監視喪事。 以藝文提學卓愼、前都摠制盧弼爲殯殿都監提調, 知敦寧金九德、恭安府尹柳暲齋都監提調, 禮曹參判金自知喪服色提調, 戶曹參議鄭招爲副。 上王以未寧不臨, 然上王主喪, 停朝十日, 巷市五日。 斷音樂、禁屠殺及婚嫁, 限山陵前; 停大小祀, 限虞祭前, 社稷不在停限。

			았다.	
세종실록 9권	2년 1420-08-01 丁酉	사직에 제사하다	사직(社稷)에 제사하였다. 예조(禮曹)와 정부(政府)가 같이 의논하기를, “사직은 종묘(宗廟)보다 위에 있는 것이니, 국상중이라 하여 신(脤)을 폐할 수는 없다.” 하고, 봉상 판사(奉常判事)에게 명하여 신(脤)을 받들어 창덕궁 문밖에 나아가게 하였더니, 대언사[代言司]에서 임금에게 계(啓)하여 다른 곳으로 보냈다.	祭社稷。 禮曹與政府同議以爲:“社稷, 宗廟之上, 不可以喪廢脤。”令奉常判事, 奉脤詣昌德宮門外, 代言司啓送他處。
세종실록 9권	2년 1420-09-11 丙子	윤자당과 유관을 종묘와 사직에 보내어 계빈을 고하다	칠원군(漆原君) 윤자당(尹子當)과 찬성사(贊成事) 유관(柳觀)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보내어 계빈(啓殯)함을 고하였다.	遣漆原君尹子當、贊成事柳觀, 以啓殯告于宗廟、社稷。
세종실록 12권	3년 1421-06-14 乙巳	예조의 장마 그치기를 기원하는 제사에 관한 소문	예조에서 계하기를, “고려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에 이르되, ‘무릇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서울의 여러 문(門)에 영제(禜祭)를 올리되, 각 문마다 3일 동안 매일 하고, 한 번 영제를 지내도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이에 산천(山川)·악진(岳鎭)·해독(海瀆)에 3일 동안 기도(祈禱)하며,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기도하며, 주현(州縣)에서는 성문(城門)에 영제를 지내고, 경내(境內)의 산천에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화곡(禾穀)을 손상시켰으니, 국문(國門)과 주군(州郡)에 장맛비가 너무 많은 곳에 영제를 지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高麗《古今詳定禮》云:‘凡霖雨不已, 禜京城諸門, 門別三日。 每日一禜不止, 乃祈山川、岳鎭、海瀆, 三日不止, 祈社稷、宗廟。 若州縣禜城門, 祈界內山川。’今霖雨淹久, 損傷禾穀。 國門及州郡霖雨過多處, 請設禜祭。”從之。
세종실록 12권	3년 1421-06-28 己未	사직과 종묘에 비가 개기를 빌다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비가 개기를 빌었다.	祈晴于社稷、宗廟。
세종실록 16권	4년 1422-05-10 丙寅	졸곡 때까지 제사·정사·시장·혼인·도살 등을 금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태상왕께서〉 돌아가신 뒤부터 졸곡(卒哭)에 이르기까지 사직(社稷)을 제외하고 대·중·소의 모든 제사를 정지하고, 정사는 10일간 정지하고, 시장은 5일간 정지하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살도 금하고 3년 동안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하되, 졸곡 뒤 대사(大祀)에만 음악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自殯後至卒哭, 除社稷外大中小祀, 一皆停之。 停朝十日, 巷市五日。 卒哭前禁嫁娶、屠宰, 三年不用樂, 卒哭後大祀始用樂。”從之。
세종실록 16권	4년 1422-05-12 戊辰	사직과 종묘 등에 상사를 고하다	대신을 나누어 보내어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광효전(廣孝殿)에 상사를 고하였다.	分遣大臣, 告喪于社稷、宗廟、永寧殿、廣孝殿。
세종실록 17권	4년 1422-08-04 戊子	사직제를 거행하다	사직제(社稷祭)를 거행하였다. 전에는 큰 제사 때에 헌관(獻官)이나 집사(執事)들이 서계(誓戒)한 뒤에 산재(散齋)를 4일 동안 하고, 일을 보기는 전과 같이 하였었는데, 이제 헌관이나 여러 집사들이 임시로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고 서계(誓戒)하게 되면, 다시 최복을 입을 수가 없으므로, 모두 길복을 입고 계하도록 하였다.	行社稷祭。 前此大祀, 獻官、諸執事誓戒後, 散齋四日, 治事如故。 今獻官、諸執事權免衰服, 以吉服誓戒, 不可復着衰服, 故皆令以吉服齋戒。
세종실록 17권	4년 1422-08-29 癸丑	계빈할 것을 종묘·사직에 고하다	계빈(啓殯)할 것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하였다.	以啓殯告于宗廟、社稷。
세종실록 17권	4년 1422-09-03 丁巳	일기가 맑기를 사직에 빌다	일기가 청명하기를 사직(社稷)에 빌었다.	祈晴于社稷。
세종실록 17권	4년 1422-09-18 壬申	여러 능에 향을 전달할 때의 복식을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광효전과 헌릉(獻陵) 밖의 영녕전(永寧殿)·종묘(宗廟)·사직(社稷)·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목청전(穆淸殿)·준원전(濬源殿) 및 여러 능에 향(香)을 전달할 때에, 전하(殿下)는 상복(常服)을 입고 흑각대(黑角帶)를 하	禮曹啓:“廣孝殿、獻陵外永寧殿、宗廟、社稷、啓聖殿、文昭殿、穆淸殿、濬源殿及諸陵傳香時, 殿下服常服黑帶, 獻官諸執事, 亦着常服黑帶受香。”從

			고,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들도 또한 상복(常服)에 흑각대의 차림으로 향(香)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之。
세종실록 20권	5년 1423-05-03 癸未	사직에서 비를 빌다	사직(社稷)에서 비를 빌고, 또 삼각(三角)·한강(漢江)·목멱(木覓)에서도 비를 빌었다.	祈雨于社稷, 又祈于三角、漢江、木覓。
세종실록 21권	5년 1423-07-03 辛巳	원단·사직·종묘의 제사에 공복을 사용토록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부터는 원단(圓壇)·사직(社稷)·종묘(宗廟)의 제사에 서계(誓戒)할 적에 모두 공복(公服)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自今圓壇、社稷、宗廟祭誓戒, 皆用公服。" 從之。
세종실록 31권	8년 1426-01-24 己未	종묘 문소전의 예에 의해 수복 3인에게 검정 갓과 붉은 옷을 만들어 주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사직(社稷)은 대사(大祀)이온데, 수복(守僕)이 관대(冠帶)도 없이 일을 보고 있사오니 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종묘 문소전(文昭殿)의 예에 의하여 수복 세 사람에게 검정 갓과 붉은 옷을 만들어 주어 제사의 사무를 엄숙히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社稷, 大祀也, 守僕無冠帶, 以行其任, 實爲未便。 依宗廟、文昭殿例, 守僕三人, 造給黑冠紅衣, 以嚴祀事。" 從之。
세종실록 32권	8년 1426-04-12 乙亥	사직단에서 비오기를 빌다	사직단(社稷壇)에서 비오기를 빌었다.	禱雨于社稷。
세종실록 32권	8년 1426-04-12 乙亥	한해 대책에 대한 우사간 박안신 등의 상소문	우사간 박안신(朴安臣)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큰 재앙은 사람으로부터 연유(緣由)되는 것입니다. 근년에 와서 수재와 한재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었는데,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더욱 심하니 진실로 걱정스럽습니다. 신 등은 직임이 말하는 관직에 있으므로, 감히 한두 가지의 조건을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하오니 성재(聖裁)가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중략) 1.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의 제사는 모두 백성의 일을 위하여 이를 마련한 것이므로, 진실로 중대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도 선농단에 제사를 지낼 때면 몸소 쟁기[耒耜]를 잡고 친히 제삿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을 위하여 그 일을 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원컨대 금년부터는 한결같이 친히 제사지내기를 신명(神明)이 와서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백성의 일을 중히 여길 것. (중략)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 "사직단(社稷壇)과 선농단(先農壇)에 친히 제사지내는 예(禮)는 이미 그 의식이 정해져 있는데, 다만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내가 마침 사고가 있었던 까닭으로 섭행(攝行)하게 한 것이었다. 함길도의 금을 채취하는 것도 그 수량을 정했는데, 지금 이를 아울러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때문이다. 신세포(神稅布)에 이르러서는 나도 그것이 폐단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나, 감히 고치지 못했는데, 그 신세포(神稅布)와 잠실(蠶室)의 일은 정부와 여러 조(曹)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右司諫朴安臣等上疏曰: 竊謂大災由人, 近年以來, 水旱之災, 無歲無之, 今當農月, 旱乾尤甚, 誠爲可慮。 臣等職在言責, 敢以一二條件, 謹錄于後, 伏望聖裁。 一, 講武之擧, 務在訓鍊, 不係獲禽之多少, 今春秋講武, 每於遐方, 弊及生民。 願自今郊關之內, 置場講武, 以倣古制, 以便民生。 一, 社稷先農之祭, 皆爲民事而立之, 固爲重祀, 故古昔帝王祭先農, 則躬秉耒耜, 親行祀事, 所以爲民, 而重其事也。 願自今歲一親祀, 以盡如在之誠, 以重民事。(중략) 上覽疏曰: "社稷、先農親祀之禮, 已定其儀, 但臨祭之時, 予適有故, 使之攝行爾。 咸吉道採金, 亦定其數, 今幷言之, 其未之知耳。 至於神稅之布, 予亦聞其有弊, 而未敢革, 其神稅布及蠶室之事, 政府、諸曹同議以聞。"
세종실록 32권	8년 1426-06-09 辛未	이조에서 사직단·종묘서의 관직 체계에 대해 계를 올리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당나라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교사서(郊社署)의 영(令) 1인은 종 7품으로 태상시(太常寺)에 소속되었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거하여 사직단(社稷壇)을 승격시켜서 서(署)로 삼고, 승(丞) 1인은 종 7품으로 두어 종묘서(宗廟署)의 승(丞) 아래에 서열(序列)시키되, 봉상시 주부(注簿)로	吏曹啓: "謹按唐制, 郊社署令一人從七品, 屬于太常。 乞依此制, 改社稷壇陞爲署, 置丞一人從七品, 序於宗廟署丞之下, 以奉常注簿兼差, 改壇直二, 爲錄事, 其班次依舊。" 從之。

			겸하여 임명하고, 단직(壇直) 2인을 고쳐서 녹사(錄事)로 삼고, 그 반열(班列)의 위차는 그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3권	8년 1426-08-09 庚午	전옥서의 서리 7명 중에서 2명을 사직서에 배정하게 하다	예조에서 사직서(社稷署)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서(本署)를 이미 7품 아문(衙門)으로 신설하였으니, 그 관사의 서리(書吏)를 품등이 같은 전옥서(典獄署)의 서리 7명 중에서 2명을 감하여 본서에 배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據社稷署呈啓: "署旣以七品衙門新設, 其司吏, 請以同品典獄司吏七內, 減其二, 定於本署。" 從之。
세종실록 36권	9년 1427-05-29 丙辰	사직에 비를 빌다. 동자는 광연루, 중은 흥천사, 무녀는 흥인문 밖에 모아 비를 빌다	사직(社稷)에 비[雨]를 빌고, 또 동자(童子)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 모으고, 중들을 흥천사(興天寺)에 모으고, 무녀(巫女)들을 흥인문(興仁門) 밖에 모아서 비를 빌었다.	禱雨于社稷, 又聚童子於廣延樓下, 聚僧徒於興天寺, 聚巫女於興仁門外, 禱雨。
세종실록 37권	9년 1427-09-04 己丑	사직단의 신위를 고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박연(朴堧)이 진언(陳言)하되, '악기(樂器)가 갖추지 못했는 데다가 제단(祭壇)을 흙으로 쌓아 원장(垣墻)이 없으니 더욱 미편하다.' 합니다. 신(臣)은 생각하기를, 담을 쌓고 그대로 집 3간(間)을 지어서 사람을 시켜 보살펴서 지키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사직단(社稷壇)도 또한 협착하여 헌관(獻官)이 오르내리면서 신위(神位)에 너무 가까우니 모름지기 고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단(社稷壇)을 고쳐 만들 것은 이미 일찍이 이를 의논하였다." 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거서(秬黍)로써 율관(律管)을 고쳐 만드는 것은 비록 박연일지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황종(黃鍾)을 본떠서 만든다면 비록 거서(秬黍)가 아니더라도 될 것이다. 중국의 황종(黃鍾)과 박연이 만든 율관(律管)의 소리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조화(調和)되고 조화되지 않음을 알 것이다."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박연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영악학(領樂學) 맹사성(孟思誠)이 이를 도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악기(樂器)는 박연에게 맡긴다면 성음(聲音)의 절주(節奏)는 거의 될 것이다." 하였다. 신상이 말하기를, "풍(風)·운(雲)·뇌(雷)·우(雨)를 한 신주(神主)에 합하여 써서 제사하는 것이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위(位)로 나누어 써서 한 단[一壇]에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변계량은 말하기를, "나누어서 제사지내는 것도 옳으며,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도 또한 옳으니, 음(陰)과 양(陽)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하늘과 땅을 한 단에 합하여 제사지내니 지금 단군(檀君)과 삼국(三國)의 시조도 함께 한 단에 두고 제사지내는 것도 또한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申商啓曰: "朴堧陳言: '樂器未備, 祭壇以土封之, 無垣墻, 深爲未便。' 臣以爲築墻仍造家三間, 令人看守可矣。 至於社稷壇亦窄, 獻官升降, 逼近神位, 須宜改造。" 上曰: "社稷壇改造, 已會議之。" 仍曰: "以秬黍改造律管, 雖朴堧不能矣。 以中國黃鍾, 準而作之, 則雖非秬黍可矣。 以中國黃鍾與朴堧所造律管, 審其音, 則其諧與不諧, 可知矣。" 商曰: "非朴堧獨造, 領樂學孟思誠助之。" 上曰: "樂器委之朴堧, 則聲音節奏, 庶可得矣。" 商曰: "風雲雷雨, 合書一神主祭之, 未便。" 上曰: "分書四位, 置之一壇祭之何如?" 商曰: "如此則可。" 季良曰: "分而祭之可矣, 合而祭之亦可矣, 陰陽不相離也。 且中國, 天地合祭一壇, 今檀君、三國始祖, 共置一壇祭之亦可矣。" 上曰: "三國始祖, 合祭於檀君, 則是去本國, 適他邦, 不可。" 季良曰: "檀君, 吾東方都祀也, 不妨。" 上曰: "檀君統有三國, 予所未聞。 然則聚於京師, 共置一室祭之, 似可矣。"

			“삼국의 시조를 단군(檀君)과 합하여 제사지낸다면 이는 본국(本國)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니 옳지 못하다.” 하였다. 변계량이 아뢰기를, “단군은 우리 동방에서 모두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무방(無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국의 시조를 단군(檀君)과 합하여 제사지낸다면 이는 본국(本國)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니 옳지 못하다.” 하였다. 변계량이 아뢰기를, “단군은 우리 동방에서 모두 합하여 제사지내는 것이 무방(無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군이 삼국(三國)을 통일했는가를 내가 듣지 못한 바이니, 그렇다면 서울에 모아서 한 제실(祭室)에 같이 두어 제사지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10년 1428-01-04 丁亥	원단과 사직의 풍운뢰우제·우사·선농 등의 제사에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종묘(宗廟)의 제사에 향악(鄕樂)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원단(圓壇)과 사직(社稷)의 풍운뢰우제(風雲雷雨祭)·우사(雩祀)·선농(先農)·선잠(先蠶)과 석전(釋奠) 등의 제사에도 또한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曾令宗廟祭, 勿奏鄕樂, 請於圓壇、社稷、風雲雷雨、雩祀、先農、先蠶、釋奠等祭, 亦勿用鄕樂。” 從之。
세종실록 45권	11년 1429-07-06 庚戌	여산 부원군 송거신을 보내어 사직에서 비를 빌게 하다	여산 부원군(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을 보내어 사직(社稷)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	遣礪山府院君宋居信, 禱雨于社稷。
세종실록 47권	12년 1430-02-19 庚寅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와 함께 의논한 박연이 상서한 조건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의논한 봉상 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이 상서(上書)한 조건(條件)을 아뢰었다. 박연이 말하기를, (중략) ‘제단의 제도는, 그 단상(壇上)은 다만 신위(神位)와 전찬(奠饌)만 설치할 뿐이오니, 이를 종묘에 비하면 실(室)의 가운데와 같으므로, 사방이 모두 2장(丈) 남짓하여야 할 것이오니 이에 가감(加減)할 수 없으며, 그 단 아래는 모든 음악을 진설하는 곳이 될 것이니, 모두 두 개의 낮은 담[壝]을 설치하여【유(壝)는 제단의 둘레에 쌓은 낮은 담이다. 정단(正壇) 밑에 낮은 단(壇)을 만든다. 】당상(堂上)과 당하(堂下)의 구분을 분별하고, 등가(登歌)와 준소(樽所)의 자리와, 헌가(軒架)와 일무(佾舞)를 출 장소를 참작하여 한계를 만들되, 조금이라도 틀리며 그릇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이 사직단의 제도를 보건대, 예전 제도에는 사방이 2장 5척이며 높이가 3척이옵고, 단 아래에는 두 개의 낮은 담[壝]을 설치하여 모두 25보(步)로 한계를 삼았사온데, 우리 나라의 사직단은 단하(壇下)에 낮은 담[壝] 하나만을 만들고 위 아래의 구별이 없는 까닭으로, 제사지낼 때에 등가(登歌)의 금슬(琴瑟)을 탈 처소와 당상(堂上)에서 집례(執禮)할 자리를 베풀 곳이 진실로 없게 되어, 집례(執禮)와 공인(工人)이 모두 제단(祭壇) 신위(神位)의 앞으로 오르고, 준소(樽所)도 또한 단상(壇上)에 설치하게 되어, 예(禮)를 행할 즈음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이 예다운 행동을 잃게 되고, 터가 좁고 너무 가까와서 공인(工人)이 다 오르지 못하게 되매, 반은 단상에 앉고, 반은 단하에 일어서서, 앉은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는데도	禮曹與儀禮詳定所議奉常判官朴堧上書條件以啓: (중략) “祭壇之制, 其壇上則只設神位奠饌而已。 比之宗廟, 則室之中也, 方皆二丈餘, 不可損益。 其壇下則凡用樂之所, 皆設兩壝,【壝, 堳, 埒壇也, 正壇下作堳壇也。】以別堂上堂下之分, 酌登歌樽所之位、軒架舞佾之場, 爲之界限, 不可少有差誤也。 臣觀社稷壇制, 古制方二丈五尺、高三尺, 壇下設兩壝, 皆以二十五步爲界限。 我朝社稷之壇, 壇下只作一壝, 無上下之別, 故行祭之時, 登歌琴瑟之所、堂上執禮之位, 固無所施。 執禮及工人, 皆升於祭壇神位之前, 而樽所亦設於壇上, 行禮之際, 進退失儀, 地窄大逼, 工人不得盡登, 半坐壇上, 半立壇下, 坐者奏技, 而立者無爲, 甚違古制, 禮樂皆失其正。

			선 사람은 하는 일이 없게 되니, 옛날 제도와 매우 어긋나서 예(禮)와 악(樂)이 모두 그 정도(正道)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49권	12년 1430-07-04 壬寅	예조에서 영제를 행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조(前朝)에서 제정한 상정 고금례(詳定古今禮)에 이르기를, '무릇 장맛비가 그치지 않으면 서울의 여러 성문마다 3일간 영제(禜祭)를 지내되, 1일 만에 그치지 않으면 곧 산천(山川)·악진(嶽鎭)·해독(海瀆)에 빌고, 3일에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社稷)·종묘(宗廟)에 빌며, 지방 주현(州縣)에 있어서는 그 구역 안의 산천에 빈다.' 하였사온데, 이제 장맛비가 과다하여 장래가 우려됩니다. 청하건대, 서울의 사문(四門)과 지방 주현의 성문에 길한 날을 택하여 영제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前朝《詳定古今禮》云: '凡霖雨不已, 禜京城諸門, 門別三日。 每一日禜不止, 乃祈山川、嶽鎭、海瀆, 三日不止, 祈社稷宗廟。 若州縣, 禜城門, 祈界內山川。' 今霖雨過多, 將來可慮, 請京城四門及州縣城門, 擇吉行禜祭。" 從之。
세종실록 50권	12년 1430-12-08 甲戌	예조에서 각도의 단유의 체제 정비와 담을 쌓을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단유(壇壝)의 체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을 쌓지 아니한 곳도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서 짓밟아서 더럽혀 놓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제사의 의식[諸祀儀式]을 보면, '큰 제사[大祀]인 사직단(社稷壇)은 사방 2장(仗) 5척(尺)·높이 3척 사방으로 낸 계단[階]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壝]을 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중간 제사[中祀]인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과 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은 모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이요, 작은 담이 둘이다. 작은 제사[小祀]인 영성단(靈星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모두 넓이가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요, 작은 담이 하나다. 묻는 구덩이는 모두 묘단(廟壇)의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계단을 내고, 네모지고 깊게 하여 물건을 넣어 둘 만하게 만든다. 그 제도는 벽돌을 층이 지게 쌓아 올려서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드는데, 깊이와 넓이를 3, 4척쯤 되게 하고, 그 남쪽에 밟고 오르내리는 통로를 만들어서, 일이 없을 때에는 흙을 매워 두고, 제사지낼 때에는 흙을 파내고 깨끗이 소제하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서 폐백과 축판(祝版) 등속을 가지고 밟고 다니는 길로 내려가서 구덩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흙을 부어서 꼭꼭 다지고 예에 따라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묘(祠廟)가 없는 중간 제사[中祀]인 악해독단(嶽海瀆壇)은 풍운뇌우단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3척, 높이 2척 7촌, 작은 담[壝]을 둘로 하고, 작은 제사[小祀]인 명산대천단(名山大川壇)과 각 고을에서 제사지내는 제단(祭壇)은 영성단(靈星壇)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1척, 높이 2척 5촌, 작은 담을 하나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리고, 묻는 구덩이도 위의 구덩이의 체제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各道壇壝體制, 非唯長廣高低不一, 或無垣墻, 人畜頗踏毁汚穢。 謹稽本朝諸祀儀式, 大祀社稷壇, 方二丈五尺、高三尺, 四出陛各三級兩壝, 尺用營造尺。 中祀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壇, 竝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 小祀靈星、馬祖、先牧、馬社、馬步壇, 竝廣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 凡瘞坎, 皆在廟壇之北壬地, 南出陛, 方深取足容物, 其制用磚石砌作一小天井, 深闊三四尺許。 其南作踏道上下, 閑時以土實之, 臨祭取去土掃令潔淨, 祭(卑)［畢］, 使人持幣及祝版之屬, 從踏道下送入坎中, 然後下土築實, 依例差人守視。 請無祠廟中祀嶽海、瀆壇, 依風雲雷雨壇制, 方二丈三尺、高二尺七寸兩壝; 小祀名山大川壇及所在官行祭壇, 依靈星壇制, 方二丈一尺、高二尺五寸一壝, 四出陛各三級造築, 而瘞坎亦依上項瘞坎體制造作。" 從之。
세종실록 51권	13년 1431-01-06 辛未	제사·묘향·조회의 출입 승강때 사용하는 음악을 융안으로 통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당제(唐制)를 고찰하오니, 황제(皇帝)가 교사(郊祀)·묘향(廟享)·조회(朝會)에 〈그 마련된 자리에 임어하여〉 출입 승강(昇降)할 때의 음악은 모두 태화(太和)를 연주하였고, 송제(宋制)에는 모두 건안(乾安)을 연주하였사오며, 본조(本朝)에서는 제사(諸祀)의 의식과 사직(社稷)에 친히 제사하실 때 종묘(宗廟)에 제향드리거나 선농(先農)의 의식에 출입 승강하실 때의 음악은 모두 승안(承安)을 쓰고, 이번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에 조하(朝賀)를 받으시려고 출입하실 때는 모두 융안(隆安)을 썼사온데, 향사	禮曹啓: "謹稽唐制, 皇帝郊祀享廟朝會臨軒出入升降之樂, 皆奏《太和》, 宋制皆奏《乾安》, 本朝諸祀儀式, 親祭社稷及享宗廟先農儀, 出入升降之樂, 皆用《承安》。 今正至受朝賀出入之樂, 皆用《隆安》, 享祀樂名與朝會樂異, 有違古制, 乞改《承安》爲《隆安》。" 從之。

			(享祀)할 때의 악명(樂名)이 조회 때의 악명과 서로 다른 것은 고제와 위배됨이 있사오니, 비옵건대 승안을 고쳐 융안으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13년 1431-11-05 丙寅	황희·맹사성 등이 사직신의 위패·칭호를 의논하여 아뢰다	황희·맹사성·허조 등이 사직신(社稷神)의 위패(位牌)에 쓸 칭호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주례》 소사도(小司徒)에 '무릇 나라를 세우면 그 사직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그 소(疏)1770) 에는, '나라에서 그 사직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후도 삼사·삼직(三稷)이 있는데, '국사'(國社)·'후사'(侯社)·'승국사'(勝國社)라 이르며, 모두 직(稷)으로 배향하게 되고, 제법(祭法)에 왕이 여러 성(姓)을 위하여 사(社)를 건립하니, '태사'(太社)라 하고, 왕이 자기가 사를 건립하니, '왕사'(王社)라 하고,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사를 건립하니, '국사'(國社)라 하고, 제후가 자기가 사를 건립하니 '후사'(侯社)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나라 《개원례》의 제주제사직의(諸州祭社稷儀)에는, '사신(社神)은 후토 구룡씨(后土句龍氏)로써 이에 배향하고, 직신은 후직 기(后稷棄)로써 이에 배향한다.' 하였고, 송나라 순희(淳熙) 4년의 《사사직의주(祀社稷儀注)》에는, '제사지내는 날에 제사를 맡은 사람이 신의 위판을 단위에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莞]로써 한다.'고 하였고, 《홍무예제(洪武禮制)》의 부주현 제사직의식(府州縣祭社稷儀式)에는, '돌신주[石主]의 길이는 2척 5촌이고, 나비는 1척인데, 단의 남쪽 한가운데에 묻어 단과의 거리를 2척 5촌으로 하되, 다만 둥근 끝만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흙속에 묻으며, 신의 칭호는 부(府)에는 '부사지신(府社之神)'·'부직지신'(府稷之神)이라 하고, 주(州)에는 「주사지신(州社之神)·'주직지신(州稷之神)'이라 하고, 현에는 '현사지신(縣社之神)'·'현직지신(縣稷之神)'이라 하며, 신의 위패는 두 개인데, 나무로써 만들어 붉은 칠을 하고, 글자는 청색으로 쓰며, 몸둥이의 높이는 2척 2촌이고, 나비는 4촌 5푼이고, 두께는 9푼이며, 좌석의 높이는 4촌 5푼이고, 나비는 8촌 5푼이고, 두께는 4촌 5푼이다.' 하였는데, 제사지낼 때에 단위에 설치하고, 낮은 탁자(卓子)로써 제물을 담아서 두고, 제사를 마치면 이를 간수하였습니다. 건국의 초기에는 사직의 돌신주와 신의 위패를 《홍무예제》와 전조의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고, 신의 위패에 쓰기를, '태사지신(太社之神)'·'태직지신(太稷之神)'이라 했으니, 원컨대, 송나라 제도와 《홍무예제》와 건국 초기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신의 위판을 만들되, 다만 신의 칭호를, '태사지신·태직지신'이라 쓰는 것이 옛날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제법에 의거하여, '국사지신(國社之神)'·'국직지신(國稷之神)'이라 쓰고, 그 후토씨와 후직씨는 그전대로 배향하여 제사지내게 하소서." 하였다. 정초는 아뢰기를, "삼가 옛날의 제도를 살펴보건대, 사의 신주는 돌로 만들어 서리·이슬·바람·비를 받아 천지의 기운에 통하게 하는 까닭으로, 망국의 사는 지붕을 덮어서 하늘의 양기(陽氣)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사는 신주가 있으나, 직은 신주가 없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없지마는, 자기의 의사로써 증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당나라의 《개원례》의 제사직의(祭社稷儀)에도, '다만 신의 자리만 설치하고, 신의 위판은 없다.'하였고, 《홍무예제》의 부주현의 사직 신주 제도에 붉은 칠을 하고 청색 글자를 쓰게 한 것은 옛날의 경서에 보이지 않으니, 아마 도가에서 나온 듯합니다. 또한 만약 신의 위패를 만든다면 반드시 실(室)이 있어 간수	黃喜、孟思誠、許稠等議社稷神牌所書稱號, 以爲: "謹按《周禮》《小司徒》: '凡建邦國, 立其社稷。' 疏曰: '邦國立其社稷者, 諸侯亦有三社三稷, 謂國社、侯社、勝國之社, 皆有稷配之。' 《祭法》: '王爲群姓立社曰太社, 王自爲立社曰王社, 諸侯爲百姓立社曰國社, 諸侯自爲立社曰侯社。' 唐《開元禮》諸州祭社稷儀: '社神以后土句龍氏配之, 稷神以后稷棄配之。' 宋淳熙四年祀社稷儀注: '祀日, 掌事者設神位版於壇上, 席以莞。' 《洪武禮制》府州縣祭社稷儀式: '石主長二尺五寸、方一尺, 埋於壇南正中, 去壇二尺五寸, 只露圓尖, 餘埋土中。 神號, 府稱府社之神、府稷之神, 州稱州社之神、州稷之神, 縣稱縣社之神、縣稷之神。 神牌二, 以木爲之, 朱漆青字, 身高二尺二寸、闊四寸五分、厚九分, 坐高四寸五分、闊八寸五分、厚四寸五分。 臨祭設於壇上, 以矮卓盛頓, 祭畢藏之。' 國初, 社稷石主及神牌, 依洪武制禮及前朝之制製造, 而神牌書曰太社之神、太稷之神。 乞依宋制、《洪武禮制》及國初舊制, 造神位版, 但神號書曰太社之神、太稷之神, 似違古制。 伏望依《祭法》, 書曰國社之神、國稷之神, 其后土氏、后稷氏, 仍舊配祭。" 鄭招以爲: 謹按古制, 社主以石爲之, 以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 是故喪國之社, 屋之, 不受天陽也。 朱子曰: '社有主而稷無主, 不曉其意, 恐不可以爲己意增添。' 唐《開元禮》祭社稷儀, 只設神座, 無神位版。 《洪武禮制》府州縣社稷主制, 朱(添)[漆]青字, 古經不見, 恐出於道家。 且若作神牌, 則必有室以藏, 是屋也。 乞依古制及唐《開元禮》與朱子之說, 以石爲社主, 稷及配位無主, 臨祭設神座, 以擬神位, 祝文書國社國稷。" 從喜等議。

			하게 되니, 이는 지붕으로 덮는 것입니다. 원컨대, 옛날의 제도와 당나라 《개원례》와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돌로써 사의 신주를 만들고, 직과 그 배위는 신주를 없게 하고는 제사지낼 때에 신좌를 설치하여 신위를 대신하게 하고, 축문에 '국사'·'국직'으로 쓰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14년 1432-01-19 己卯	사단직유의 제도를 미비점을 갖추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국초의 사단 직유(社壇稷壝)의 제도에 미비(未備)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따로 사단 직유를 쌓게 하고, 그 단의 넓이와 사면으로 나온 계단과 층계는 일체 옛 제도에 의거하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國初社壇稷壝之制, 有未備, 請別築社壇稷壝, 其壇高廣及四出階級, 一依古制。" 從之。
세종실록 57권	14년 1432-07-24 庚辰	이조에서 사직·종묘에 섭행하는 천조관·종헌관을 당상관으로 차정할 것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건국 초기에는 전조(前朝)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큰 제사를 섭행(攝行)하게 했으니, 태위(太尉)는 양부(兩府)의 장관이 하고, 그 나머지 사도(司徒)·태상 경(太常卿)·광록 경(光祿卿)들은 모두 직사(職事) 정3품으로서 충원(充員) 임명했으니, 사도(司徒)는 곧 지금의 천조관(薦俎官)이요, 태상 경(太常卿)은 곧 아헌관(亞獻官)이요, 광록 경(光祿卿)은 종헌관(終獻官)입니다. 사도(司徒)는 육조 전서(六曹典書)로서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했는데, 영락 13년에 제사(諸祀)의 의식을 상정(詳定)할 때는 사직과 종묘의 천조관(薦俎官)·아헌관(亞獻官)은 모두 2품으로서 임명했으며, 홍희(洪熙) 원년의 수교(受敎)에는 천조관(薦俎官)·종헌관(終獻官)을 정3품으로서 차정(差定)했습니다. 그러나 육조 참의(六曹參議)는 인원 수효가 많지 않은 까닭으로 여러 시(寺)와 감(監)의 판사(判事)로 임명했는데, 지금 육조 참의(六曹參議)는 더 설치했는데도 여러 시(寺)와 감(監)은 사무가 번극(煩劇)하고, 또 판사(判事)가 당상관(堂上官)의 높음과 같지 못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사직(社稷)·종묘(宗廟)에 섭행하는 큰 제사의 천조관(薦俎官)·종헌관(終獻官)은 모두 참의(參議) 이하 부제학(副提學)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낙점(落點)을 받아 차정(差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吏曹啓: "國初承前朝之制, 於社稷宗廟大祭, 攝行太尉則兩府, 其餘司徒太常卿光祿卿, 皆以職事正三品充差。 司徒, 卽今之薦俎; 太常卿, 卽亞獻官; 光祿卿, 則終獻官也。 司徒以六曹典書, 受落點差定。 永樂十三年詳定諸祀儀式之時, 社稷宗廟薦俎官亞獻官, 皆以二品爲之; 洪熙元年受敎, 薦俎官、終獻官, 以正三品差定。 然六曹參議, 員數不多, 故以諸寺監判事差之。 今加設六曹參議, 而諸寺監事務煩劇, 且判事不如堂上之尊, 請自今社稷宗廟攝行大祭, 薦俎官終獻官, 皆以參議以下副提學以上堂上官, 受落點差定。" 從之。
세종실록 57권	14년 1432-07-25 辛巳	사직단에 관한 대제학 정초의 상서문	대제학 정초(鄭招)가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옛날에 사(社)에 제사지낼 때는 돌신주[石主]에 제사하고, 왕골 자리[莞席]를 설치하여 신좌(神座)에 비했을 뿐이온데, 뒷세상에 와서 신의 위패(位牌)가 있었사오니 옛날의 법은 아닌 것입니다. 삼가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주현 사직도(州縣社稷圖)를 보건대, 사(社)와 직(稷)이 단(壇)을 같이하고 돌신주를 단 가운데에 설치하였고, 돌신주의 좌우에 끼워서 신의 위패(位牌)를 설치했으니, 가만히 제작한 뜻을 살펴본다면, 주현의 단은 마땅히 조정보다 등급을 낮추어야 될 것이므로, 단을 다르게 만들지 않고 단을 같이했으며, 돌신주로서 오로지 사(社)의 신주만으로 하지 않고 사(社)·직(稷) 두 신(神)의 신주로 삼았으니, 이로써 돌신주로써 사(社)의 위(位)에 두지 않고 사(社)·직(稷) 두 신의 자리 중간에 두었으며, 제사지낼 때에는 마땅히 두 위(位)에 제사지내야 될 것인데, 두 위(位)를 설치하고 제물을 한 신주의 앞에만 드릴 수 없는 까닭으로 좌우편에 끼워서 신의 위판(位版)을 설치했습니다. 비록 그 제작은 옛날의 법을 본받지 않고 한때의 소견에서 나왔지마는, 그러나 사(社)와 직(稷)이 모두 높아졌으므로, 높음을 잃어버린 병통은 없어졌으니 옛날의 뜻과 같사옵니다.	大提學鄭招上書: 臣謹按古之祭社祭石主, 設(莞)〔莞〕席以擬神座而已, 後世乃有神位牌, 非古法也。 伏觀《洪武禮制》州縣社稷圖, 社稷同壇, 設石主壇中, 挾石主左右設神位牌。 竊尋制作之意, 以州縣之壇, 當降殺於朝廷, 不爲異壇而同壇, 以石主不專爲社主, 而爲社稷二神之主。 以是不以石主置於社位, 而置於社稷二神之位中, 至於祭時, 當祭二位, 不可設二位奠物於一主之前, 故夾左右設神位版。 雖其制作不師古法, 出於一時之見, 然而社稷竝尊, 無有失尊之病, 則猶古意也。 今我朝社稷壇, 旣倣古禮, 社稷各爲一壇, 以專其尊, 置石主於社稷之中, 則當依古禮, 以祭石主也。 今乃移社位, 就於東偏設神牌, 以后土氏神

			지금 우리 조정의 사직단(社稷壇)은 이미 옛날의 예제를 모방하여, 사와 직(稷)을 각기 한 단(壇)으로 만들어 그 높음을 오로지하여 돌신주를 사와 직(稷)의 중간에 두었으니, 마땅히 옛날의 예제(禮制)에 의거하여 돌신주에게 제사지내야 될 것인데, 지금 사(社)의 위(位)를 옮겨 동쪽 구석에다 신패(神牌)를 설치하고, 후토씨(后土氏)의 신패(神牌)로 서쪽 구석에 설치하고, 직단(稷壇)도 또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홍무예제(洪武禮制)》가 이미 옛날의 것에 합하지 않은데 오늘날의 하는 일도 또한 《홍무예제》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홍무예제》에는 사(社)와 직(稷)이 단을 같이하고 돌신주를 가운데 두었으니, 사(社)와 직(稷)이 모두 높은 위(位)이므로, 하나는 구석 자리에 두고, 하나는 정위(正位)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돌신주를 사이에 두고 신패(神牌)를 설치했으니 오히려 옳은 편이온데, 지금의 사와 직은, 사(社)가 배위(配位)인 후토(后土)와 돌신주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양쪽 구석에 나누어 있게 되고, 직단(稷壇)은 직(稷)이 배위(配位)인 후직(后稷)과 동서의 양쪽 구석에 나누어 있게 되니, 이것은 정위가 배위(配位)에게 굴한 바가 되어, 의당 그 중앙에 높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홍무예제》에 부합하겠사옵니까? 지금의 사(社)의 위(位)로 돌신주에 당하지 못하게 하고, 직(稷)의 위(位)로 중앙에 있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설(說)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위(配位)로써 서폐(西陛)의 북쪽에 있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주준(酒樽)을 당·송의 예에 의거하여 단 위에 있게 한다는 것이요, 세째는 공게가공(控揭歌工)을 당(唐)의 예에 의거하여 단에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모두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배위(配位)가 서폐(西陛)의 북쪽에 있게 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개 낮은 것이 높은 것에 눌린 바가 되어 펴지 못한 것은 있으나, 낮은 것을 펴고자 하여, 높은 것으로 하여금 높은 자리를 잃게 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배위(配位)를 서폐(西陛)의 북쪽에 있지 않게 하고, 정위(正位)를 중앙에 있는 높음을 잃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어찌 정위를 중앙에 있게 하고 배위(配位)를 눌리게 함이 없겠습니까? 마지못하면, 동·서폐(東西陛)를 옮겨서 북쪽보다 3척을 작게 한다면, 배위(配位)가 서폐(西陛)의 남쪽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준(酒樽)을 진설하는 것은 땅의 형편에 따르게 되고, 일정하여 고치지 않는 의리는 없는 것입니다. 당·송의 예는 천자의 제도이므로, 단의 넓이가 50척(尺)인 즉, 주준(酒樽)이 단 위에 있게 되고, 홍무(洪武)의 예는 주·현의 제도이므로, 단의 넓이가 25척인 즉, 주준이 단 아래에 있게 되니,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5척의 단으로써 50척 단의 제도를 모방하고자 하니, 둥근 끌로 뚫고서 물건을 모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 준(樽)을 잡은 사람이 있는 데가 배위(配位)에서 떨어지기 겨우 1보(步) 남짓하므로, 서서 내려다 보면 불경한 듯한데, 더군다나 이로 인하여 정위(正位)를 높음을 잃게 함이겠습니까? 만약 가공(歌工)이 단에 오른다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용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당의 예(禮)에는 절고(節鼓)·가종(歌鍾)·가경(歌磬)·공게(控揭)·금슬(琴瑟)·가공(歌工)을 단 위에 오르게 하고, 포죽(匏竹)을 잡는 사람은 단 아래에 서게 하여, 일부(一部) 음악으로 하여금 반은 단위에 있게 하고, 반은 단 아래에 있게 한 것은,	牌, 設於西偏, 稷壇亦然而曰: “此依《洪武禮制》也。” 臣愚以爲《洪武禮制》, 旣不合古, 而今之所爲, 又失《洪武禮制》之意也。 《洪武禮制》, 社稷同壇, 而以石主居中, 社稷竝尊之位, 不可一偏一正, 故夾石主設神牌, 猶之可也, 今社(稷)［壇］, 社與配位后土, 夾石主, 而分處東西兩偏; 稷壇, 稷與配位后稷, 分處東西兩偏, 是正位爲配位所屈, 不得當尊其中矣。 豈合於《洪武禮制》乎? 今之所以使社位不得當石主, 稷位不得當中者, 其說有三焉。 一則以配位在西陛之北, 未便也; 二則使酒尊依唐、宋禮, 在於壇上也; 三則使控揭歌工, 依唐禮登壇也。 臣愚以爲皆未可也。 配位在西陛之北, 誠爲未便。 然而大凡卑者, 爲尊者所壓, 而未伸則有矣, 未聞欲伸卑者, 而使尊者失尊也。 今欲使配位不在西陛之北, 使正位失當中之尊, 無寧使正位當中, 而使配位被壓乎? 無已則移東西陛, 使小北三尺, 則配位得在西陛之南矣。 至於酒尊陳設, 隨地之宜耳, 非有一定不易之義也。 唐、宋禮, 天子之制, 壇廣五十尺, 則酒樽在於壇上。 洪武禮［制］州縣之制, 壇廣二十五尺, 則酒樽在於壇下, 其意可見矣。 今以二十五尺之壇, 欲倣五十尺壇之制, 何異圓鑿而方物乎? 其執樽者所處, 去配位僅一步餘耳。 立而臨視, 似不敬, 況緣此而使正位失尊哉? 若歌工登壇, 則非惟不可, 固不能容矣。 唐禮以節鼓、歌鍾、歌磬、控揭、琴瑟、歌工, 登於壇上, 持匏竹者立於壇下, 使一部之樂, 半在壇上, 半在壇下者, 以五十尺之壇, 尙不能盡容也。 宋禮不用樂, 高麗《詳定古今禮》, 歌工竝在壇下矣。 今社稷壇, 廣二十五尺耳。 神位及奠物排設, 約十許尺, 獻官酌獻位及執事往來行禮之所, 約十許尺, 只餘五尺耳。 登歌陳設節鼓二爲一行, 歌鍾、歌磬、控揭爲一行, 琴六爲一行, 瑟六爲一行, 歌工二十四人爲二行。 以行計之, 則合六行; 以人計之, 則合四十二人。 雖蜂屯蟻集, 促(滕)［膝］如束, 安能容之? 假使容之,

			50척의 단으로서도 오히려 다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송(宋)의 예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려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는 가공(歌工)이 모두 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직단은 너비가 25척뿐이니, 신위(神位)와 전물(奠物) 배설이 대개 10척이나 되고, 헌관(獻官)의 작헌위(酌獻位)와 집사(執事)가 왕래하면서 행례(行禮)하는 곳이 대개 10척이 되니, 다만 5척이 남았을 뿐입니다. 등가(登歌)에 진설(陳設)된 절고(節鼓) 두 개가 한 줄이 되고, 가종(歌鐘)·가경(歌磬)·공게(控揭)가 한 줄이 되고, 금(琴) 6개가 한 줄이 되고, 슬(瑟) 6개가 한 줄이 되고, 가공(歌工) 24인이 두 줄이 되므로, 줄로써 계산하면 합계 여섯 줄이 되고, 사람으로서 계산하면 합계 42인이 됩니다. 비록 벌떼처럼 둔치고 개미떼처럼 모이더라도, 무릎이 서로 맞닿아 묶은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능히 용납되겠습니까? 가령 이를 용납한다 하더라도, 신위에 핍박하여 너무 가까우니, 공인(工人)의 의복이 깨끗한 사람이 적으니, 더러운 때가 찌는 듯하여 더럽게 되면, 신도 또한 듣기를 싫어할 것이온데, 또 더군다나 이로 인하여 정위(正位)로 하여금 높은 자리를 잃게 하겠습니까? 집례(執禮)까지도 당·송의 예에는 모두 단 아래에 있게 되고, 단 위에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의 단 위에 있게 하는 것은 어떠한 전기(典記)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우매하여 소견을 고집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사직이 지존 지중(至尊至重)하여 높은 자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오니, 지금 마땅히 한결같이 옛날의 예제에 의거하여 단과 제단의 담을 고쳐 쌓는 초기에 있어, 직책이 예제(禮制)를 의논하는 데 있으므로, 가진 바 좁은 소견을 감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삼가 성상의 결재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逼迫神位太近, 工人衣服潔淨者少, 汙垢薰蒸穢惡, 恐神亦厭聞之矣。 又況緣此而使正位失尊哉? 至於執禮, 唐、宋禮, 皆在壇下, 無在壇上者。 未知今之使處壇上者出何典記? 微臣愚(味)〔昧〕, 非固執所見, 必欲勝之者, 誠以社稷至尊至重, 不可失尊。 今當一依古禮, 改築壇壝之初, 職在禮議, 所有管見, 不敢緘默, 伏惟睿裁。
세종실록 57권	14년 1432-07-29 乙酉	예조에서 사직에 섭행하는 의주를 아뢰다	예조에서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다시 시일을 의논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서 시일을 갖추어【봄·가을 두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臘日)이다.】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나누어 알려서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를 제사전 7일 동안 하고,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서계(誓戒)를 의정부(議政府)에서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 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되, 초헌관(初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있게 하여 동향하게 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장생령(掌牲令)·아악 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미명(未明) 5 각(刻)에 봉례랑이 행사할 집사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신 읽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무(上戊)에 사직(社稷)에 제사한다.【납일(臘日)에 종묘(宗廟)	禮曹啓社稷攝事儀注: 曹與儀禮詳定所更議時日, 書雲觀預於隔季, 具時日【春秋二仲上戊及臘日】報禮曹, 禮曹啓聞, 散告攸司, 隨職供辦。 齋戒: 前祭七日, 行事執事官, 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初獻官在北南向, 亞獻官終獻官、薦俎官、在南北向西, 上, 監察在西東向, 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未明五刻, 奉禮郎分引行事、執事官就位, 引初獻官就位。 通贊就初獻官, 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上戊, 祭于社稷。【臘日宗廟享官, 同受誓戒, 當云: "祭社稷。"·"享宗廟。"】凡行事、執事官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

			의 향관(享官)이 같이 서계(誓戒)를 받을 적엔 마땅히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종묘(宗廟)에 제향한다.' 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예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책을 처리할 것이니,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한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通贊)이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재배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4일 동안 산재(散齋)할 적엔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할 적엔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사(祭事)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였는데도 빠진 사람과, 섭행(攝行)을 통하여 제위(諸衛)의 수속으로서 유문(壝門)을 수위하는 사람은【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 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자고,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는 봉상시(奉常寺) 앞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1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로 모인다.【무릇 제사에 참예할 사람은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게 하며,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服)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진설(陳設)은 제사 전 2일에 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하는데, 사직승(社稷丞)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서문(西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을 단(壇) 북쪽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한다. 사직승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좌(神座)를 각기 단 위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한다. 후토씨(后土氏)의 신좌(神座)를 국사(國社)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고, 후직씨(后稷氏)의 신좌를 국직(國稷)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향하게 하고, 돗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은 제기위(祭器位)를 준소(尊所)에 설치하고【무릇 제기(祭器)를 설치할 적에는 모두 돗자리를 깔고 수건과 덮개를 올려 놓는다. 】청결(淸潔)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린다.【이미 마치면 임시로 걷어 치운다. 】집례(執禮)가 초헌관의 자리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단 한가운데에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천조관의 자리를 서문 안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북문 안의 서북 모퉁이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모시고 서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유문(壝門) 안에, 하나는 유문(壝門) 밖에 있게 하고,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유문 밖 집례(執禮) 자리의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북쪽으로 해서 동향	常刑。”讀訖, 通贊贊再拜, 在位者皆再拜乃退。 凡行事、執事官, 竝散齋四日, 宿於正寢, 致齋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祭所。 凡散齋, 治事如故, 致齋, 唯行祭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壝門者【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各於本司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齊一宿於奉常寺, 前致齋一日, 竝集議政府肄儀; 前祭一日, 竝集祭所。【凡預祭者, 皆前祭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祭所者權斷。】 陳設: 前祭二日, 忠扈衛設諸祭官次於齊坊之內, 社稷丞帥其屬, 掃除壇之內外, 設饌幔於西門外, 隨地之宜。 前一日, 雅樂令帥其屬, 設登歌之樂於壇北, 設軒架於北門內, 俱南向。 社稷丞帥其屬, 設國社國稷神座各於壇上近南, 北向; 后土氏神座於國社神座之左, 后稷氏神座於國稷神座之左, 俱東向, 席皆以莞。 掌牲令牽牲詣祭所, 典祀官設祭器位於尊所,【凡設祭器, 皆藉以席, 加以巾蓋。】以俟告潔。【旣畢, 權撤。】執禮設初獻官位於北門內, 當壇南向, 設亞獻官、終獻官、薦俎官位於西門內道北, 東向; 執事者位於其後, 每等異位, 俱重行東向南上, 設監察位於北門內西北隅東向, 書吏陪其後, 設執禮位二, 一於壝門內, 一於壝門外, 俱近西東向。 謁者、贊者、贊引在壝門外執禮之後稍北, 東向南上, 協律郞位於社壇下近東, 西向, 雅樂令位於軒懸之南, 南向, 設初獻官飮福位於稷壇上神座之東北, 南向, 設門外位祭官及諸執事於西門外道北, 每等異位, 俱重行南向東上, 設牲牓於西門外當門東向, 以北爲上, 設掌牲令位於牲東北, 設諸大祝位於牲西, 各當牲後, 祝史各在其後, 俱東向, 設亞獻官省牲位於牲前近南, 設監察位於亞獻官之東, 俱北向,【監察位稍却】 開瘞坎二於壇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陛, 設望瘞位於瘞坎之南, 初獻官在南北向, 執禮、大祝、贊者在西, 俱重行東向北上。 祭日

			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협률랑의 자리는 사단(社壇) 아래에 있게 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헌현(軒懸)의 남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초헌관의 음복위(飮福位)는 직단(稷壇) 위 신좌(神座)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문밖의 자리[門外位]와 제관(祭官) 및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서문 밖의 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남향하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생방(牲牓)을 서문 밖에 설치하되, 문 앞에 동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생(牲)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를 생(牲)의 서쪽에 설치하되, 각각 생(牲)의 뒤에 있게 하고, 축사(祝史)는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동향하게 한다. 아헌관이 생(牲)을 살필 자리는 생(牲) 앞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는 아헌관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감찰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예감(瘞坎) 둘을 단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예감(瘞坎)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초헌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서쪽에 있게 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제일(祭日)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를 신위(神位)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놓고,【각기 점(坫)이 있다.】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각기 하나씩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위(位)마다 각기 변(籩) 12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上)이 되고,【첫째 줄에는 형염(刑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鱐)·건조(乾棗)·율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춘자(椿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녹포(鹿脯)가 그 다음이요, 세째 줄은 백병(白餠)이 앞에 있고, 흑병(黑餠)·구이(糗餌)·분자(粉餈)가 그 다음이다.】두(豆) 12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이 되고,【첫째 줄에는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혜해(醯醢)·무우 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끼 고기젓·죽순 김치·물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세째 줄에는 비석(脾析)이 앞에 있고, 돈박(豚拍)·이식(酏食)·삼식(糝食)이 그 다음이다.】조(俎) 3개 중에서 2개는 변(籩)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변(籩) 앞의 조(俎) 한 개는 소의 날고기를 담고, 한 개는 양의날고기·칠체(七體)·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골을 담는데, 넙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羊)의 상(牀)과 같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무릇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름이라 한다.】두(豆) 오른쪽의 조(俎)는 3개이다.【한 개는 소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는 모두 성갑(胜匣)이 있다.】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궤에는 메기장과 피를 담는데, 피가 메기장	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入, 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 陳幣篚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幷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籩十二在左, 爲三行右上,【第一行, 形鹽在前, 魚乾棗栗黃次之。 第二行, 捺子在前, 菱仁、芡仁、鹿脯次之。 第三行, 白餠在前, 黑餠、糗餌、粉餈次之。】 豆十二在右, 爲三行左上。【第一行, 韭菹在前, 醓醢菁菹鹿醢次之。 第二行, 芹菹在前, 兔醢筍菹魚醢次之。 第三行, 脾析在前, 豚拍、酏食、糝食次之。】 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籩前俎一實牛腥, 一實羊腥七體、兩脾兩肩兩脅幷脊, 而髀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羊牛次之。 凡俎皆有牲匣。】 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鉶三在簠簋後,【實以和羹, 加芼滑】 爵三在簠簋前。【各在坫】 又設尊罍國社大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著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 爲三行,【第一行大尊, 第二行著尊, 第三行山罍。】 皆加勺冪, 在壇下西北隅。 后土氏象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著尊二【一實明水, 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 於國社酒尊之西, 俱南向東上。【凡尊實明水, 玄酒爲上。 凡祭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 國稷后稷氏尊罍, 幷如國社后土氏之儀。設福酒爵【有坫】 胙肉俎各一於國社國稷尊所, 又設國社俎一於饌幔內, 設洗於壝門外之西北南向,【盥洗在西, 爵洗在東。】 罍在洗西加勺, 篚在洗東北, 肆實以巾。【若爵洗之篚, 則又實以爵, 有坫。】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西北, 南向, 執尊罍篚冪者位於尊罍篚冪之後。 受香祝: 前祭一日, 晝漏上水一刻, 有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 南

			앞에 있다. 】형(鉶) 3개는 보(簠)·궤(簋) 뒤에 있고,【형(刑)에는 화갱(和羹)을 채우는데 모활(芼滑)을 더한다. 】작(爵) 3개는 보·궤 앞에 있다. 【각기 점(坫)이 있다. 】또 준(尊)과 뇌(罍)를 설치하는데, 국사(國社)에는 대준(大尊) 2개,【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醴齊]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앙제(盎齊)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를 설치하여 세 줄로 하되,【첫째 줄은 대준(大尊), 둘째 줄은 저준(著尊), 세째 줄은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멱(羃)을 얹어 놓아 단(壇) 아래 서북쪽 모퉁이에 둔다. 후토씨(后土氏)에는 상준(象尊) 2개,【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앙제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를 국사(國社) 주준(酒尊)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무릇 준(尊)과 뇌는 명수와 현주(玄酒)를 채운 것이 상(上)이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서 대신한다. 】 국직(國稷)과 후직씨(后稷氏)의 준(尊)·뇌도 모두 국사(國社)·후토씨(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福酒爵)과【점(坫)이 있다. 】조육조(胙肉俎) 각각 1개씩을 국사·국직의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국사의 조(俎) 1개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하고, 세(洗)는 유문(壝門) 밖의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서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동북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만약 작세(爵洗)의 비(篚)이면 또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점(坫)이 있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헌관의 세(洗)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罍)·비(篚)·멱(羃)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멱의 뒤에 설치한다. 향과 축문은 제사 전날 주루(晝漏) 상수(上水) 1각(刻)에 받는데, 유사가 향과 축문의 안(案)을 근정전(勤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2인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좌우 시신(侍臣)의 자리는 동·서계(東西階)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초헌관 이하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는 전정(殿庭)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노부(鹵簿)는 대궐 문밖에 설치하고, 시신(侍臣)이 각기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3각(刻)에 헌관 이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대궐 문밖에 모인다. 전하가 관(冠)과 포(袍)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린다. 전하가 이를 쓰고 나면, 근신이 축판과 향을 받들어 안(案) 위에 둔다. 5각(刻)에 봉례랑이 좌우 시신(侍臣)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	向, 香案於其前, 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 北向。 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 通贊二人在南少退, 俱西向, 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 相對異位重行, 俱北上, 設初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位於殿庭道東, 異位重行, 北向西上, 設鹵簿於闕門外。 侍臣各具朝服。 三刻, 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 竝集闕門外, 殿下具冠袍。 校書館員以祝版捧進, 近臣傳捧以進, 殿下署訖, 近臣捧祝版及香, 置於案上。 五刻, 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 次引獻官以下入就位。 奉禮郎引初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 判通禮導殿下, 出就拜位北向立, 啓請再拜, 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 近侍一人捧香合西向跪進, 一人捧香爐東向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近侍捧香祝東向跪進, 判通禮啓請取香祝授初獻官, 初獻官西向跪受興, 還置於案上。 判通禮啓請俛伏興, 導殿下復位, 啓請再拜, 導殿下退立於月臺西東向。 初獻官捧香祝降自西階, 判通禮啓請鞠躬, 初獻官沒階, 殿下平身。 初獻官出門, 置香祝於舁擔。 亞獻官以下, 隨初獻官以次出門上馬, 軍士捧舁擔鹵簿前導, 至齊坊門外, 下馬入門, 各就齊所, 香祝安於卓上。 省牲器: 前祭一日未後二刻, 社稷丞帥其屬, 掃除壇之內外, 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 加以巾蓋, 如陳設儀。 未後三刻, 亞獻官以下應省牲器者, 俱以常服就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壇下, 掌牲令牽牲就位。 贊引引監察詣社壇西階升, 行掃除於上, 升稷壇, 亦如之, 降行樂懸於下訖復位。 謁者引亞獻官, 贊引引監察詣社壇, 升自西階, 祼滌濯。 執事者皆擧冪告潔, 升稷壇, 亦如之。 訖, 引降省牲位北向立。 掌牲令少前曰:“請省牲。”退復位。 亞獻官省牲, 掌牲令又前擧手曰:“腯。”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 東向擧手曰:“充。”俱復位。 諸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 詣廚授典祀官。 謁者引終獻官, 詣廚省鼎鑊, 申祼滌溉, 監取明水火。【取水於陰鑑, 取火於陽燧。 陰鑑未能

			음은 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오고,【봉례랑은 섬돌 아래에서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재배(再拜)하기를 계청(啓請)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신이 향로를 안(案)에 놓고, 근신이 향과 축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과 축문을 집어서 초헌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초헌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案) 위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와 월대(月臺) 서쪽에 동향하여 서게 한다. 초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면, 판통례가 〈전하께〉 몸을 굽히기를 계청하고, 초헌관이 다 내려서면 전하께서 몸을 편다. 초헌관이 문을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舁擔)에 두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초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을 나가서 말에 오른다. 군사가 여담(舁擔)과 노부(鹵簿)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서 각기 재소(齋所)에 나아간다. 향과 축문은 탁자(卓子) 위에 안치하여 놓고 생기(牲器)를 살핀다. 제사 전 1일 미시(未時) 후 2각(刻)에, 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사자는 제기(祭器)를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진설하고, 수건과 덮개를 덮어 놓기를 진설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후 3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마땅히 생기(牲器)를 살펴야 할 사람이 모두 평상시의 의복을 입고 서문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 서계(西階)에 나아가서 올라가 소제를 행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내려온다. 악현(樂懸)은 섬돌 아래에 베풀어 놓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척탁(滌濯)을 살피는데, 집사자가 모두 멱(羃)을 들어 정결함을 알린다.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생(牲)을 살피는 자리로 내려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청컨대 생을 살피소서.'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헌관이 생을 살핀다.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면서 '둔(腯)'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동향하여 손을 들면서 '충(充)' 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생을 이끌고 주방(廚房)에 청하여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정(鼎)·확(鑊)을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고 명수와 불을 취한다.【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燧)에서 취하는데, 음감에서 창졸히 취할 수 없으면 정수(井水)로써 이를 대신한다. 불은 때는 데 쓰고 물은 준(尊)에 채운다.】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게 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재	猝辦, 以井水代之。 火以供爨, 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 各還齊所。 晡後一刻, 典祀官率宰人, 以鑾刀割牲, 祝史以盤取毛血, 置於饌所, 遂烹牲。【連皮煮熟, 其餘毛血以淸器盛貯, 祭畢埋之。】社稷丞帥其屬, 掃除壇之內外。 尊幣: 祭日丑前五刻,【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 用丑時一刻。】典祀官帥其屬入, 實饌具畢, 退就次服其服。 社稷丞服其服升, 設國社后土氏國稷后稷氏神位版於座。 贊引引監察詣社壇, 升自西階, 按視壇之上下, 糾察不如儀者, 升稷壇, 亦如之, 還出。 前三刻, 諸祭官各服其服,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西門, 先就懸南拜位, 重行南向東上四拜訖, 各就位。 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 文舞入陳於懸南, 武舞立於懸北道東。 謁者贊引各引祭官, 俱就西門外位。 前一刻, 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社稷丞、協律郎、捧俎官, 入就懸南拜位, 重行南向東上。 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傳喝,【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帨〕訖各就位。 贊引引齋郎詣洗爵位, 洗爵拭爵訖, 置於篚, 捧詣尊所, 置於坫上。 謁者引初獻官, 贊引引亞獻官、終獻官、薦俎官入就位, 執禮曰: "四拜。" 衆官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白: "有司謹具請行事。" 退復位。 協(津)〔律〕郎俛伏擧麾興,【凡取物者皆跪, 俛伏而取以興。 尊物則跪奠, 俛伏而復興。】工鼓柷軒架作《順安之樂》, 烈文之舞作。 八成, 協律郎偃麾戛敔。 樂止,【凡樂, 協律郎跪俛伏擧麾興, 工鼓柷而後作, 偃麾戛敔而後止】 執禮曰: "瘞毛血於坎。" 執禮曰: "再拜。" 衆官在位者皆再拜。 執禮曰: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南向立, 贊搢笏盥水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社壇, 升自北陛, 詣國社神位前南向立, 登歌作肅安之樂, 烈文之舞作。 贊跪搢笏。 執事者一人捧香合,

			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晡時) 후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을 거느리고 난도(鑾刀)로서 생을 베는데, 축사(祝史)가 쟁반으로 털과 피를 취하여 찬소(饌所)에 두고 마침내 생을 삶는다.【가죽째 삶고, 그 나머지 털과 피는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땅에 묻는다.】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한다. 폐백은 제일(祭日) 축시(丑時) 전 5각에 드리는데,【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고, 이를 마치면 물러가서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자기 제복(祭服)을 입으며, 사직승(社稷丞)도 자기 제복을 입고 올라와서 국사후토씨(國社后土氏)·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의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단의 위 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도로 나온다. 3각(刻) 전에 여러 제관(祭官)들이 각기 자기의 제복(祭服)을 입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악현(樂懸)의 남쪽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樂懸)의 북쪽 길 동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각각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사직승(社稷丞)·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하여,【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랑을 인도하여 세작위(洗爵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篚)에 넣어, 준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는 초헌관을, 찬인은 아헌관·종헌관·천조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무릇 물건을 취하는 사람은 모두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적에는 꿇어앉아서 드리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난다.】공인이 축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되어 팔성(八成)이 되면, 협률랑이 휘(麾)를 눕히고, 어(敔)를 긁어 풍악이 그친다.【무릇 풍악은, 협률랑이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친 후에 시작되고, 휘를 눕히고 어(敔)를 긁은 뒤에 그친다.】집례가, '털과 피를 구덩이에 묻으라.' 한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	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受爵奠爵, 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 引初獻官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一人捧香合, 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登歌止, 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 樂作, 上香奠幣,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登歌止, 謁者引降復位。 進熟: 初獻官旣升奠幣, 贊引引典祀官出,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鼏, 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每位牛羊豕, 各一匣。】入設於饌幔內。 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捧俎官隨之, 俟初獻官奠幣訖復位。 執禮曰: "進饌。" 謁者引薦俎官, 捧國社之俎, 捧俎官各捧牲匣, 典祀官引饌入。 國社、國稷之饌, 入自正門, 配位之饌, 入自左闥。 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 國社、國稷之饌, 升自北陛; 配位之饌, 升自西陛, 諸大祝迎引於壇上。 薦俎官詣國社神位前南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 先薦牛, 次薦羊, 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 啓牲匣蓋。 謁者引薦俎官降自西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俸奠, 竝如國社后土氏之儀。 樂止, 謁者引薦俎官以下, 降自西陛復位, 諸大祝還尊所, 執禮曰: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國社尊所東向立, 登歌作壽安之樂, 烈文之舞作。 執尊者擧冪酌醴齊,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初獻官升自北陛, 詣神位前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少退南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西向跪讀祝文。 訖, 樂作, 謁者贊俛伏興。 樂止, 引初獻官降自北陛, 詣后土氏尊所東向立, 樂作, 執

			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꽂으라.’ 찬(贊)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홀을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사단(社壇)으로 나아가서 북계(北階)로 올라가서, 국사 신위(國社神位)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贊)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幣]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무릇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초헌관에게〉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고, 풍악을 연주한다. 향을 피우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은 제수를 드린다.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비(匕)로서 소를 확(鑊)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은 양(羊)과 돼지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담아【매 위(位)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고, 초헌관이 폐백을 드림을 기다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왼쪽 문[閨]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올 때 헌가(軒架)에서 옹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오는데, 여러 대축(大祝)이 단 위에서 맞아 인도한다. 천조관이 국사(國社)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여러 대축이 드리는 데 도운다.】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를 연다. 다음은 후토씨(后土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	尊者擧冪酌醴齊,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初獻官升自北陛, 詣神位前西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西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北向跪讀祝文。 訖, 樂作, 謁者贊俛伏興。 樂止, 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 樂作, 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曲終樂止。 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復位。 文舞退, 武舞進, 軒架作《舒安之樂》。 舞者立定, 樂止。 亞終獻: 初獻官將復位, 執禮曰: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南向立, 贊搢笏, 盥手帨手, 贊執笏, 引詣國社尊所東向立, 軒架作壽安之樂, 昭武之舞作。 執尊者擧冪酌盎齊,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升自西陛, 詣神位前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謁者引亞獻官降自西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 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 樂止, 引降復位。 亞獻官獻將畢, 執禮曰: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執禮曰: “飮福受胙。” 大祝詣國社國稷尊所, 以爵酌罍福酒, 合置一爵。 又大祝持俎進, 減國社、國稷神位前, 俎肉合置一俎。 謁者引初獻官詣稷壇, 升自北陛, 詣飮福位南向立, 贊跪(進)搢笏。 大祝進初獻官之右東向, 以爵授初獻官, 初獻官受爵飮卒爵, 大祝進受虛爵, 復於坫。 大祝東向, 以俎授初獻官, 初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受俎, 降自北陛出門。 謁者贊執笏俛伏興, 引降復位。 執禮曰: “再拜。” 衆官在位者, 皆再拜。 執禮曰: “徹籩豆。” 諸大祝進徹籩豆。【徹者, 籩豆各一, 少移於古處。】登歌作雍安之樂, 徹訖, 樂止。 軒架作順安之樂, 執禮曰: “四拜。” 衆官在位者, 皆四拜。 樂一成止, 執禮曰: “望瘞。”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 執禮帥贊者詣望瘞位東向立。 諸大祝取黍稷飯, 藉用白茅, 束之以篚, 取祝版及幣, 各由其陛降

			를 드린다.【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을 연다.】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은 준소(尊所)로 돌아온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등가(登歌)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멱(羃)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남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俛), 복(伏), 흥(興)'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멱(羃)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복,흥'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면, 풍악을 연주한다. 올라가서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곡(樂曲)이 끝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문무(文舞)는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오는데,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서면 풍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초헌관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꽂으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을 잡으라.' 찬하여, 인도해서 국사(國社)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舞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멱(羃)을 들고 앙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壇, 置於坎, 執禮曰: "可瘞。"(窴)〔填〕土半坎, 典祀官監視。 謁者進初獻官之左, 白禮畢。 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 以次出。 執禮帥贊者還本位, 贊引引監察及諸執事, 俱復懸南拜位。 立定, 執禮曰: "四拜。" 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 贊引以次引出, 雅樂令帥工人二舞出,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就懸南拜位, 四拜而出。 社稷丞藏神位版, 典祀官帥其屬徹禮饌以降乃退。 復命: 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 各還齊所住一刻。 坎有司陳鹵簿於齊坊南門外如來儀。 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 以次上馬, 行至闕門外下馬, 入門序立復命, 四拜訖退。 從之。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멱(羃)을 들고 앙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그리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獻爵)을 마치려 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음복(飮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 뇌(罍)의 복주(福酒)를 따라 한 작(爵)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국사·국직(國稷) 신위 앞에 있는 조육(俎肉)을 덜어서 조(俎)에 합해 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직단(稷壇)에 나아가, 북계로 올라가서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앞으로 나와서 홀을 꽂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점(坫)에 다시 둔다. 대축이 동향하여 조(俎)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북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걷어 치우라.' 하면, 여러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 변(籩)·두(豆)를 걷어 치운다.【걷어 치우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등가(登歌)에서 옹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다 걷어 치우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풍악은 일성(一成)이 되면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하고, 여러 대축이 서반(黍飯)·직반(稷飯)을 취하여 띠[白茅]로서 깔고 비(篚)로 묶고,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돌로 하여 단에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는데, 전사관이 감시(監視)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면, 알자와 찬인이 각기 초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악현	

			(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나가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社稷丞)은 신위판(神位版)을 간수하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 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나와, 전하에게 복명(復命)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각기 재소(齋所)에 돌아가서 1각(刻) 동안 머무른다.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진열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외문 밖에 이르러, 차례대로 말에 올라 대궐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서 전하에게 복명(復命)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14년 1432-09-1 丙辰	예조에서 집현전에서 아뢴 단유의 제도에 대해 가부를 의논한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집현전에서 아뢴 단유(壇壝)의 제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그 가부를 의논했는데, 1. 원사(元史)에는 단(壇)의 나비가 5장(丈), 유(壝)의 나비가 30장이었으며, 주자(朱子)의 주현(州縣) 사직단설(社稷壇說)에는 단(壇)의 사방이 25척이고, 유(壝)의 사방이 25보라 하였는데, 장으로 계산한다면 6척이 1보가 되니,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壝)의 안의 동·서·남·북이 모두 10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협작하니, 원컨대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나비를 5장을 더 넓혀서, 사방이 15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맹사성은 말하기를, '처음에 주자(朱子)의 설(設)에 의거하여 주척(周尺) 25척으로 단(壇)의 나비로 하고, 주척 25보로써 유내(壝內)의 상거(相去)로 하니, 그 진설(陳設)할 때에 단상(壇上)이 좁아서 찬기(饌器)를 용납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해서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영조척(營造尺) 25척으로써 단(壇)의 나비를 삼은 후에야 겨우 찬기를 용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의 나비를 이미 영조척으로써 상거(相去)도 또한 영조척 25보로 해야만이 서로 맞게 됩니다. 만약 주척(周尺) 외에 영조척이 보수(步數)를 쓰는 법이 없다면, 그 토지를 측량하는 3등(等)의 척(尺)도 모두 보수로서 계산하게 되니, 이것은 제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壝)의 상거(相去)도 영조척 25보로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유(壝)의 높이도 또한 영조척으로써 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고, 1. 원사(元史)에는 단(壇)의 높이가 5장(丈)이고, 유(壝)의 높이가 5장(丈)이였는데,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단의 높이가 3척이고, 유(壝)의 높이도 3척이라.' 했으므로, 유의 높이가 모두 단(壇)과 가지런하였습니다. 지금은 단의 높이는 3척인데도 유의 높이는 2척 반이므로, 단·유의 높고 낮음이 가지런하지 않으니, 또한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유의 높이도 단의 높이와 같이 3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권진 등은 말하기를, '본래는 주척으로 쌓았으므로 높이가 3척이었는데, 지금 집현전의 관원은 영조척으로 이를 재게되므로 3척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하였고, 1. 《문헌통고(文獻通考)》 사유(社壝) 주(註)에는, '사변(四邊)에는 흙을 쌓아 유(壝)로 한다.' 했는데, 주문공(朱文公)은 말하기를, '사각(四角)에 흙을 쌓아 유(壝)로 하고 기와로 덮지 않으며, 다만 벽돌을 양면(兩面)으로 섬돌을 놓아 물이 흐르게 하므로 더욱 견고하게 한다.' 하였는데, 지금	禮曹啓: "今以集賢殿所啓壇壝之制, 僉議可否。 一。 "《元史》, 壇廣五丈, 壝廣三十丈。 朱子州縣社稷壇說曰: '壇方二十五尺, 壝方二十五步。' 以丈計之, 六尺爲一步, 則爲十五丈也。 今壝內東西南北, 皆不過十丈, 規模狹隘, 乞依古制增廣五丈爲方十五丈何如?" 孟思誠以爲: "初依朱子說, 以周尺二十五尺爲壇廣, 以周尺二十五步爲壝內相去, 其於陳設之際, 壇上狹隘, 不能容饌器, 故不得已而依《洪武禮制》, 以營造尺二十五尺爲壇廣, 然後僅可容饌數。 壇廣旣以營造尺爲之, 壝之相去, 亦以營造尺二十五步爲之, 乃可相稱。 若曰周尺外營造尺無用步之法, 則其於量田三等之尺, 皆以步數計之, 是不可謂無設也。 然則壝之相去, 以營造尺二十五步爲之, 何害? 壝高亦以營造尺爲之。" 一。 "《元史》, 壇高五丈, 壝高五丈。 朱子曰: '壇高三尺, 壝高三尺。' 壝之高皆與壇齊, 今壇高三尺而壝高二尺半, 壇壝高下不齊, 亦依古制如壇高爲三尺何如?" 權軫等以爲: "本以周尺造築高三尺, 今集賢殿官, 以營造尺度之, 以爲不準三尺。" 一。 "《文獻通考》社壝註曰: '四邊委土爲壝。' 朱文公曰: '四角築土爲壝, 不用瓦蓋, 但以磚兩面砌之, 使其走水, 尤爲堅固。' 今社壝皆用磚, 似非古法, 然《元史》壇垣, 以磚爲之。 朱子亦云: "壇飾不用磚砌, 無所考, 南方土疎, 不砌, 恐易毁。' 今倣此說, 仍舊爲之, 但

			사유(社壝)에 모두 벽돌을 쓰게 되니 옛날의 법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원사(元史)에는 단(壇)과 원(垣)을 벽돌로 만들었는데, 주자(朱子)는 또한 말하기를, '단(壇)의 장식에 벽돌을 쓰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남방(南方)은 흙이 거칠므로, 섬돌을 쌓지 않으면 쉽사리 무너질 것이오니, 지금 이 설(說)에 의방하여 그전대로 만들되, 다만 백색 석회(石灰)를 사용하여 틈을 바르지 말게 함이 어떠하겠는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 제도에는 유(壝)의 빛깔과 모양을 논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전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1.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단(壇)의 높이는 3척이고【이미 단의 높이가 3척이라 하고, 또 단을 3급(級)으로 나눈다고 했으니, 이것은 1척을 1급으로 하는 것이다.】사방으로 섬돌을 내고,【이 섬돌의 층계는 곧 단의 층계이다. 다만 사면 섬돌의 양쪽 옆에 각기 돌섬돌로써 비스듬한 길을 만들어 서로 막아서, 그 가운데를 섬돌 층계로 하고, 밖을 단의 층계로 함이 옳다.】단(壇)의 면(面)이 2장(丈) 5척(尺)이라.' 했으니, 곧 맨 위의 1급(級)의 수(數)를 하면(下面)에는 다시 두 층계로 하고, 1급에 마땅히 1척이 드니, 곧 단(壇)의 다리[脚]가 마땅히 2장 9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壇)의 높이가 다만 직하(直下)로 3척이 될 뿐이고, 3급(級)의 한정이 없으니 전연 체제(體制)를 잃었습니다. 원컨대 주자(朱子)의 설에 의거하여 맨 위의 단 25척을 1급으로 하여, 높이를 1척으로 하고, 또 1척을 제 2급으로 하여, 높이를 1척으로 하고, 또 1척을 제 3급으로 하여, 높이를 1척으로 하고, 그 가운데를 섬돌 층계로 하고 밖을 단의 층계로 함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권진 등이 말하기를, '당제(唐制)의 제주 제사직의(諸州祭社稷儀)와 송(宋)나라 정화(政和) 연간의 신의(新儀)와 《진씨예서(陳氏禮書)》에도 모두 3급(級)이 없으니 그전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고, 1. 원사(元史)에는 대사(大社)와 대직(大稷) 두 단(壇)의 나비가 5장(丈)이고, 사(社)는 동쪽에 있고 직(稷)은 서쪽에 있어, 상거(相去)가 5장인데, 지금은 단(壇)의 나비가 25척인데도 두 단(壇)의 사이가 5척이니,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두 단(壇) 사이의 상거(相去)를 또한 단(壇)의 사방 나비와 같이 25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원나라 제도에는 단(壇)의 높이가 5장이므로, 상거(相去)도 또한 5장인 것이 적당했지마는, 지금은 단(壇)의 높이가 3척이니, 상거(相去)가 8척이라야만 거의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1.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사문에 유(壝)를 같이하되, 한가운데에 문을 여는 데는 마땅히 1장 남짓하게 넓게 해야만, 행례(行禮)함에 있어 집례인(執禮人)이 왕래하는 데 통로가 넓어서 서로 방애(妨礙)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양쪽 옆에 각기 한 개의 1장(丈)되는 화표(華表)를 세우고 위에는 횡목(橫木)을 걸어서 문(門)의 형상과 같이 한다.'【화표(華表)는 예(禮)에 글이 없는데, 다만 주현(州縣)에 이와 같은 것이 보인 것은, 혹 쉽사리 얻어도 손해가 되며, 짓지 않아도 또한 얻게 되는 것 같다.】했는데, 지금 유문(壝門)은 6척 남짓하게 되니 좁은 것 같습니다. 원컨대 주자(朱子)의 설(說)에 의거하여 화표문(華表門)을 만들지 말고, 비록 혹시 문을 만들더라도 조금 2, 3척만 넓히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권진 등이 말하기를, '문을 넓히는 데 이미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격식에 의거해 만들었는	毋用白色石灰塗隙何如?" 僉曰: "古制不論壝之色樣, 宜仍舊。" 一。 "朱子曰: '壇高三尺,【旣言壇高三尺, 又言壇分三級, 則是以一尺爲一級也。】 四出陛,【此陛之級, 卽壇之級也。 但於四面陛之兩旁, 各以石砌作漫道隔斷, 使其中爲陛級, 外爲壇級可也。】 壇面二丈五尺, 乃最上一級之數。 下面更兩級, 一級須展一尺, 卽壇脚須經二丈九尺。' 今壇高, 但直下三尺, 而無三級之限, 殊失體制。 乞依朱子之說, 最上壇二十五尺爲一級, 高一尺, 又一尺爲第二級, 高一尺, 又一尺爲第三級, 高一尺, 使其中爲陛級, 外爲壇級何如?" 軫等以爲: "唐制諸州祭社稷儀、宋政和新儀、陳氏《禮書》, 竝無三級, 宜仍舊。" 一。 《元史》, 大社大稷二壇廣五丈, 社東稷西, 相去五丈, 今壇廣二十五尺, 而兩壇間五尺, 似乎太近。 依元制兩壇間相去, 亦如壇之方廣爲二十五尺何如?" 僉曰: "元制壇高五丈, 故相去亦五丈, 宜矣。 今壇高三尺, 相去八尺, 庶幾得中。" 一。 "朱子曰: '四門同一壝, 當中開門, 須闊一丈餘, 庶幾行禮執事之人, 往來寬展, 不相妨礙。 兩旁各立一華表高〔一〕丈許, 上以橫木貫之, 如門之狀。'【華表, 於禮無文, 但見州縣有如此者, 恐或易得損害, 不作亦得。】 今壝門六尺餘, 似爲狹隘, 乞依朱子之說, 不作華表門。 雖或作門, 稍增闊二三尺何如?" 軫等以爲: "門闊已用周尺, 依式造排。 今以營造尺度之, 曰不準。" 一。 "朱子曰: '北門壝外空地, 須令稍寬, 可容獻官席位。' 今若增壝廣, 則壝外稍隘, 北外垣, 亦隨宜增廣何如?" 申商以爲: "壝廣已依古制造排, 何用增廣?" 一。 "章圖壝垣有四門, 而外垣唯有北門, 以瓦蓋之。 今壝外垣四面, 皆有列戟紅門, 亦依朱子之說, 外垣但說蓋瓦北門何如?" 僉曰: "唐制及《洪武禮制》, 府州縣社稷圖, 皆有四門。" 一。 "元制外壝內北垣下屋七間, 南望二壇 以備風雨。 朱子曰: '壝外空地之北, 乃作齋廳, 以備風雨, 設獻官位。'【(南)

			데, 지금 영조척(營造尺)으로 재게되니 맞지 않는다 합니다.' 하였고, 1.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북문의 유(壝) 밖의 빈 땅은 마땅히 조금 넓혀서 헌관(獻官)의 자리를 용납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만약 유(壝)의 나비를 더 넓힌다면 유(壝) 밖이 조금 좁아지니, 북쪽 밖의 원장(垣墻)도 또한 적당하게 더 넓게 함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신상(申商)이 말하기를, '유(壝)의 나비는 이미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만들었는데, 어찌 더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1. 장도(章圖)에는 유(壝)의 원장(垣墻)에 사문(四門)이 있는데, 밖의 원장에는 다만 북문만 있어 기와로서 덮었는데, 지금 유(壝)의 밖의 원장은 사면(四面)에 모두 창[戟]을 벌여 놓은 홍문(紅門)이 있으니, 또한 주자(朱子)의 설(說)에 의거하여 밖의 원장에는 다만 북문에만 기와를 덮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당제(唐制)와 《홍무예제(洪武禮制)》의 부(府)·주(州)·현(縣)의 사직도(社稷圖)에 모두 사문이 있습니다.' 하였다. 1. 원나라 제도에는 외유(外壝) 안의 북쪽 원장 아래에 집 7간을 세워 남쪽으로 두 단(壇)을 바라보아 풍우를 방비하게 했는데,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유(壝) 밖의 빈 땅의 북방에 바로 재청(齋廳)을 지어 풍우를 방비하게 하고, 헌관(獻官)의 자리를 설치한다.' 하였는데, 【남관(南官)은 남향하여 행사한다. 】 지금은 재청(齋廳)이 없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거하여 유(壝) 밖의 북문 안에 재청(齋廳)을 지어서, 비 오고 눈 오는 날에 행사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맹사성(孟思誠) 등이 말하기를, '만약 비 오고 눈 오는 날이 있으면, 혹은 장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우산을 사용하여 행사(行事)할 것이지, 어찌 집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허조(許稠)는 말하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주자 주현 사직단(朱子州縣社稷壇)의 설(說)을 살펴보건대, 「사문에 유를 같이 한다.」 하였고, 주(註)에는, 「사각(四角)에 흙을 쌓아서 유(壝)를 만들되, 높이는 3척 쯤으로 하며, 양쪽 옆에 각기 한 개의 1장(丈)이나 되는 화표(華表)를 세우고, 위에는 횡목(橫木)을 걸어 문의 형상과 같이 하고, 북문의 유의 밖의 빈 땅은 조금 넓혀서 헌관(獻官)의 자리를 용납하게 한다.」 했으며, 당(唐)·송(宋)의 대사(大社)·대직(大稷)의 행사의(行事儀)를 상고한다면 유(壝)는 없으니, 신(臣)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두 의식의 규모가 같지 않음을 의심하여 되풀이하면서 참고하여도, 당·송의 행사 의식에는 조금도 한 길[一路]도 유의 안팎에 미친 것이 없으니, 대사(大社)에 유(壝)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당·송 전후의 역대(歷代)의 제도를 두루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의 건무(建武) 2년에 대사직(大社稷)을 낙양(洛陽)에 세워 종묘의 오른쪽에 있게 했는데, 단(壇)에는 집이 없고 문과 원장(垣墻)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려(高麗)의 사직단(社稷壇)도 또한 유(壝)는 없었는데, 신이 일찍이 이를 보았습니다. 그 전해 오는 터가 지금도 오히려 있습니다. 고려의 모든 제작은 반드시 당·송을 본뜬 것인데, 사직(社稷)에 있어서는 유(壝)를 설치하지 않았으니, 어찌 본 바가 없었겠습니까. 건국 초에 사(社)를 세울 적에도 유(壝)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천자와 제후(諸侯)의 사직의 제도는 주현(州縣)의 제도와는 같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저 삼대는 멀어서 제도의 상세한 것을 상고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상고할 만한 것은 다만 당·송의 문적(文籍)뿐이온데, 지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당·송의 제도를 본뜨지 않는다면 신은	〔獻〕宮南向行事】 今無齋廳, 乞依此制, 壝外北門內作齋廳, 以爲雨雪日行事之所何如?" 思誠等以爲: "如有雨雪日, 或設幕或用傘行事, 何必造屋?" 許稠以爲: "謹按《文獻通考》, 朱子州縣社稷壇說, 四門同一壝, 註云: "四角築土爲壝, 高三尺許。 兩旁各立一華表, 高一丈許, 上以橫木貫之, 如門之狀。 北門壝外空地, 須令稍寬, 可容獻官席位。" 考之唐、宋大社大稷行事儀, 則無壝焉。 臣竊疑二儀規模所以不同, 反覆參詳, 唐、宋行事儀略, 無一路及於壝之內外者, 大社無壝明矣。 歷考唐、宋前後歷代之制, 漢光武建武二年, 立大社稷于洛陽, 在宗廟之右方, 壇無屋, 有門墻而已, 高麗社稷壇, 亦無壝, 臣嘗親見之, 其遺基今尙存。 高麗凡所制作, 必法唐、宋, 於社稷不設壝, 豈無所見乎? 國初立社, 亦不設壝。 臣妄意天子諸侯社稷之制, 與州縣不同。 夫三代遠矣, 制度之詳, 無得而考, 其可考者, 唯唐、宋文籍而已, 今立制度, 不法唐、宋, 臣未知其可也。 況今朝廷州縣社稷不設壝, 臣竊謂壝之有無, 不干於祀事, 非如配位之不可不合祭, 社稷壇之不可不各築, 則雖依《洪武禮制》, 不復設壝, 無缺於祀事, 不遵其制而築之, 無乃不可乎? 國初所立社稷壇, 不設壝, 而四面有門墻, 猶有唐、宋大社之遺制, 今復築壝, 無乃與王侯之社不同, 而近於州縣乎? 其壇之上用營造尺, 壇下用周尺, 一壇上下, 用尺各異, 尤爲未便。 且宗廟社稷, 禮法之所自出, 議禮之時, 雖毫髮不可以臆見增損於其間。 社稷壇若成, 則殿下必親祭之矣。 禮官撰儀注之際, 臣不識將依唐·宋大社之儀乎? 依朱子州縣社稷壇說乎? 殿下位版, 設於壝內乎? 壝外乎? 軒架設於壝內乎? 壝外乎? 何所據而定制乎? 伏望命禮官, 略抄《文獻通考》內《白虎通》陳氏之說及漢光武社稷之制、唐·宋大社行事儀、唐州縣社稷儀、朱子州縣社稷說與高麗社稷之制、《洪武禮制》府州縣社稷之式, 幷圖其體制, 特賜睿覽, 令攸司去其壝, 而存四面門墻,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조정과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에 유(壝)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데, 신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유(壝)가 있고 없는 것은 사사(祀事)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배위(配位)를 합제(合祭)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사직단을 각각 쌓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지 않다면, 비록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다시 유(壝)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사(祀事)에는 결점이 없을 것이니, 그 제도를 따라서 쌓지 않더라도 옳지 않은 점은 없겠습니다. 건국 초기에 세운 사직단은 유(壝)를 설치하지 않고 사면(四面)에 문과 원장만 있어도 오히려 당·송의 대사(大社)의 유제(壝制)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유(壝)를 쌓게 되니 왕후(王侯)의 사(社)와는 같지 않고 주현(州縣)의 사(社)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단(壇)의 위에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고, 단(壇)의 아래는 주척(周尺)을 사용하게 되니, 한 단의 위아래에 척(尺)을 쓰는 것이 각기 다르니 더욱 옳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종묘와 사직은 예법(禮法)이 나오는 곳이니, 예절을 의논할 때에는 비록 터럭만치라도 자기 혼자의 견해로서 그 사이에 증감(增減)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직단이 만약 이루어지면 전하께서 반드시 친히 제사지낼 것이오니, 예관(禮官)이 의주(儀注)를 찬술(撰述)할 즈음에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차 당·송 대사(大社)의 의식에 의거하겠습니까. 주자(朱子)의 주현 사직단(州縣社稷壇)의 설(說)에 의거하겠습니까. 전하의 위판(位版)을 유(壝)의 안에 설치하겠습니까, 유(壝)의 밖에 설치하겠습니까. 헌가(軒架)를 유의 안에 설치하겠습니까, 유의 밖에 설치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의거하여 제도를 정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예관에게 명하여 《문헌통고(文獻通考)》 안에 있는 백호통(白虎通)의 진씨(陳氏)의 설(設)과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사직(社稷)의 제도와 당·송 대사(大社) 행사의(行事儀)와 당나라 주현 사직의(州縣社稷儀)와 주자(朱子)의 주현 사직설(州縣社稷說)과 고려의 사직제도(社稷制度)와 《홍무예제(洪武禮制)》의 부·주·현 사직(府州縣社稷)의 법식을, 모두 그 체제(體制)를 그림으로 그려서 특별히 전하께서 보시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유(壝)를 없애고 사면의 문과 원장만 둔다면 당·송과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태조(太祖) 시대에 쌓은 사직단의 규모도 오히려 보존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맹사성과 권진의 의논에 따르게 하였다.	則不背於唐、宋及時王之制, 而太祖代所築社稷壇之規模, 尙存矣。 命從思誠、軫等議。
세종실록 63권	16년 1434-01-19 丁酉	공인의 관목을 구별하여 다시 만들 것을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제사에 착용하는 악공들의 관복(冠服)을 〈그대로〉 사직 원단(社稷圓壇)·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문묘(文廟) 등 각처에 두루 통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사오니, 각처마다 공인들의 관복을 한 벌씩 따로 만들게 하되,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본시에서 수납한 노비 공포(奴婢貢布)를 가지고 당상 공인들의 옷은 명주[紬]를 사용하게 하며, 당하 공인들의 옷은 베[綿布]를 사용하게 하고, 이내 종묘와 영녕전의 옛 관복을 보수해 놓고, 비가 오면 이를 입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宗廟永寧殿祭樂工人冠服, 通用於社稷圓壇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文廟等諸處未便, 別製各處工人冠服一件, 令奉常寺, 用本寺所收奴婢貢布, 堂上工人之服用紬, 堂下工人之服用綿布, 仍修宗廟、永寧殿舊冠服, 雨則服之。" 從之。
세종실록 65권	16년 1434-07-27 壬寅	예조와 상정소에서 사직에 기도하고 고유하는 의주를 편찬하여 바치다	예조와 상정소에서 사직(社稷)에 기고(祈告)하는 의주를 찬진(撰進)하니, 보사(報社)와 같되 다만 음복만 다르었다. "하루 전에 여러 기관(祈官)들이 청재(淸齋)하고 기소(祈所)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만약 일이 급박하지 않으면,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	禮曹與詳定所, 撰進祈告社稷儀注: 【報祀同, 唯飮福爲異。】前一日, 諸祈官淸齋一宿於祈所。【若事非迫切, 散齋二日, 致齋一日。】典祀官帥其屬,

			안 치제(致齋)한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 안팎을 청소하고, 국사와 국직의 신좌(神座)를 각각 단 위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마련하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좌는 국사 신좌의 왼쪽에, 후직씨(后稷氏)의 신좌는 국직 신좌의 왼쪽에 마련하되, 모두 동향으로 하고, 자리[席]는 왕골자리[莞席]로 한다. 헌관(獻官)의 자리는 북문 안 단(壇)의 앞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는 서문 안 길 북쪽에 마련하되,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북문 안 서북 구석에 동향으로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시고 있게 한다.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유문(壝門) 밖에 마련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예감(瘞坎) 둘을 단 위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넣을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망예위(望瘞位)를 예감의 남쪽에 마련하고, 헌관은 남쪽에서 북향하게 하고, 대축(大祝)과 찬자(贊者)는 서쪽에서 동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기고(祈告)하는 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축시 5각 전은 바로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 전을 쓴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그 글은, 수재·한재·여질(癘疾)·황충(蝗蟲)·전쟁 등 각각 그 때를 당하여 짓는다. 】각각 하나씩 신위의 오른편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폐백 상자[幣篚]를 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놓으며, 향로·향합을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은 제기와 제찬을 담은 그릇을 진설하되, 매위(每位)에 각각 왼쪽에 변(籩)이 둘이고, 【밤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가 다음에 있다. 】오른쪽에 두(豆)가 둘이며, 【청저(菁菹)는 앞에 있고, 녹해(鹿醢)는 다음에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둘씩인데, 변·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궤는 오른쪽에 있도록 한다. 【보에는 도(稻)·양(粱)을 담아, 양이 앞에 있게 하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아, 직을 앞에 있게 하였다. 】조(俎)가 하나인데, 보·궤의 앞에 놓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작(爵)이 하나인데, 조 앞에 둔다. 【점이 있다. 】또 준(尊)·뇌(罍)를 설치하되, 국사에는 대준(大尊)이 둘이고, 【하나는 명수(明水)를 담고, 하나는 단술[醴齊]을 담는다. 】산뢰가 둘인데, 【하나는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모두 국자[勺]와 보자기를 더하여 단 아래 서북 모퉁이에 둔다. 후토씨에는 상준(象尊)이 둘이고, 【하나는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 】산뢰가 둘인데, 【하나는 현주(玄酒)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 】국사(國社)의 술그릇[酒尊] 서쪽에 두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가 되게 한다. 【무릇 준과 뇌에 담은 명수와 현주가 위가 된다. 】국직(國稷)과 후직씨의 준과 뇌는 모두 국사와 후토씨의 의식과 같다. 씻는 곳[洗]을 유문(壝門) 밖 서북쪽에다 남향하게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게 한다. 】뇌(罍)는 세(洗)의 서쪽에 두고, 국자[勺]를 더한다. 광주리는 세(洗)의 동북쪽에 두고 수건을 담는다. 【술잔을 씻는 광주리에는 또 작점(爵坫)을 담는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수하는 곳[盥洗]은 헌관의 세(洗) 서북쪽에 남향으로 마련한다. 전사관이 물러가서 자리[次]에 나아가 해당한 옷을 입고, 사직승(社稷丞)도 역시 해당한 옷을 입고 올라가서 국사 후토씨·국직 후직씨 등의 신위판을 좌석에 안치한다. 3각(刻) 전에, 헌관 및 여러 집사들이 각각 직위에 상당한 옷을 입는다. 알자(謁者)와 찬자(贊者)는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북쪽 문 안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남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사배(四拜)하기를	掃除壇之內外, 設國社、國稷神座, 各於壇上近南北向, 后土氏神座於國社神座之左, 后稷氏神座於國稷神座之左, 俱東向, 席皆以莞, 設獻官位於北門內當壇, 南向, 設執事者位於西門內道北, 東向南上, 設監察位於北門內西北隅, 東向, 書吏陪其後, 謁者贊者位於壝門外, 俱近西, 東向南上, 開瘞坎二於壇之北壬地方, 深取足容物, 南出陛, 設望瘞位於瘞坎之南, 獻官在南北向, 大祝贊者在西, 東向北上。 祈日丑前五刻。【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 用丑前一刻。】典祀官帥其屬, 入奠祝版【其文若水旱、癘疾、蝗蟲、戰伐, 各臨時撰之。】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陳幣篚各一於尊所, 設香爐香合幷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每位各左二籩, 【栗黃在前, 鹿脯次之。】右二豆。【菁菹在前, 鹿醢次之。】簠簋各二, 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 粱行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俎一在簠簋前,【實以豕腥。】 爵一在俎前。【有坫】 又設尊罍, 國社大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 皆加勺冪, 在壇下西北隅。 后土氏象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 於國社酒尊之西, 俱南向東上。【凡尊罍, 實明水, 玄酒爲上。】國稷后稷氏尊罍,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設洗於壝門外之西北南向,【盥洗在西, 爵洗在東。】罍在洗西加勺, 篚在洗東北肆, 實以巾。【若爵洗之篚, 則又實以爵, 有坫。】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西北, 南向。 典祀官退就次服其服, 社稷丞服其服升, 設國社后土氏、國稷后稷氏神位版於座前。 三刻, 獻官及諸執事各服其服, 謁者贊者入自西門, 先就北門內拜位, 南向東上, 四拜訖就位。 謁者引獻官以下, 俱就西門外位。 前一刻, 謁者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社稷丞, 入就北門內拜位, 重行南向東上。 立定, 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 謁者引監察

			마치고는,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서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郞)·사직승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먼저 북쪽 문 안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늘어선다. 찬자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기를 마친다.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재랑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작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광주리에 넣어 가지고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준비를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고 아뢰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再拜)하라.' 하면,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한다. 찬자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꽂으라.' 찬(贊)하여,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게 한다.【손을 씻고 손을 닦는 일은 찬하지 아니한다.】'홀을 잡으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북계(北階)로 올라 국사 신위(國社神位)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면,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을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贊)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상자[幣篚]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향합을 받드는 자와 폐백 상자를 주는 자는 모두 헌관의 오른편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자와 폐백을 드리는 자는 모두 헌관의 왼편에 있다. 작을 주는 자와 드리는 자도 이에 준한다.】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하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 상자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잡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향합을 받드는 자와 폐백 상자를 주는 자는 모두 헌관의 오른편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자와 폐백을 드리는 자는 모두 헌관의 왼편에 있다. 작을 주는 자와 드리는 자도 이에 준한다.】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 하라.' 찬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려 놓는다. 대축이 폐백 상자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백을 잡아서 드리되,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두 번 절하라.' 찬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酌)을 드리는 예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국사의 준소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선다.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就位, 引諸執事詣盥洗位, 盥帨訖各就位。 齋郞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篚, 奉詣尊所, 置於坫上。 謁者引獻官入就位, 贊者曰:“四拜。”獻官四拜。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 贊者曰:“再拜。”在位者皆再拜。 贊者曰:“行奠幣禮。” 謁者引獻官, 詣盥洗位南向立, 贊搢笏, 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 引詣社壇, 升自北陛, 詣國社神位前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凡奉香授篚,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 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再拜, 引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再拜, 引獻官降自北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 上香奠幣,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謁者引降復位。 小頃, 贊者曰:“行酌獻禮。”謁者引獻官詣國社尊所東向立, 執尊者擧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升自北陛, 詣神位前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南向跪, 大祝進神位之右, 西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再拜。 引獻官降自北陛, 詣后土氏尊所東向立, 執尊者擧冪酌酒, 執事者以爵授酒。 謁者引獻官升自北陛, 詣神位前西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西向跪, 大祝進神位之右, 北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再拜, 引獻官降自北陛, 詣國稷后稷氏神位前升獻, 竝如國社后土氏之儀。 訖, 引獻官降自北陛復位, 諸大祝進徹籩豆如式。 贊者曰:“四拜。”獻官四拜。 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작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작을 주어 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남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再拜)하라.' 찬하고는,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내려서 후토씨의 준소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爵)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작을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서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아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再拜)하라.' 찬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과 후직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오르며 드리는 절차가 모두 국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한다. 이를 마치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이 나아가서 변(籩)·두(豆)를 거두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찬자는 망예위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대축이 광주리에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돌로 해서 단으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찬자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넣어 채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식을 마쳤다. '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오고, 찬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와 찬자가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은 신위판을 간직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물러나온다." 하였다.	贊者詣望瘞位東向立, 大祝以篚取祝版及幣, 各由其陛降壇, 置於坎。 贊者曰:"可瘞。" 置土半坎, 謁者進獻官之左, 白禮畢, 遂引獻官出。 贊者還本位, 謁者引監察及諸執事, 俱復拜位。 立定, 贊者曰:"四拜。" 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 謁者以次引出。 謁者贊者, 就拜位四拜而出。 社稷丞藏神位版, 典祀官率其屬, 徹禮饌以降乃退。
세종실록 72권	18년 1436-05-07 壬申	사직 신위판을 다시 만들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사직 신위판(社稷神位版)은 몸 높이가 2척 2촌이고, 너비가 4촌 5분, 두께가 9분이며, 좌판(坐版)의 높이가 4촌 5분이고, 너비가 8촌 5분, 두께가 4촌 5분이라.' 하였으나, 위와 끝[上端]을 모지게 한다든가 둥글게 한다든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조(本朝)의 사직 신위패의 제도는 위 끝을 모가 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홍무예제의 사직 신패도(社稷神牌圖)를 다시 상고해 보니 모두 위가 둥그오니, 사직 신패도에 의하여 다시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啓:"《洪武禮制》, 社稷神位版, 身高二尺二寸, 闊四寸五分, 厚九分, 座高四寸五分, 闊八寸五分, 厚四寸五分, 而不言上端方圓, 故本朝社稷神牌之制上方。 今更考《洪武禮制》社稷神牌圖, 皆上圓, 請依圖改造。"從之。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변사	◎ 변사(辨祀) ○ 대사(大祀)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다.	◎ 辨祀 ○ 大祀: 社稷、宗廟。 ○ 中祀: 風雲雷雨【山川、城隍附。】嶽、海、瀆【智異山, 全羅道南原南; 三角山, 漢城府中; 松嶽山, 開城府西;

			○ 중사(中祀) 풍운뢰우(風雲雷雨)와【산천(山川)과 성황(城隍)도 붙여 제사한다.】악·해·독(嶽海瀆)【지리산(智異山)은 전라도 남원(南原)의 남쪽에 있고, 삼각산(三角山)은 한성부(漢城府)의 중앙에 있고, 송악산(松嶽山)은 개성부(開城府)의 서쪽에 있고, 비백산(鼻白山)은 영길도(永吉道) 정평(定平)의 북쪽에 있고, 동해(東海)는 강원도(江原道) 양주(襄州)의 동쪽에 있고, 남해(南海)는 전라도 나주(羅州)의 남쪽에 있고, 서해(西海)는 풍해도(豐海道) 풍천(豐川)의 서쪽에 있다. 웅진(熊津)은 충청도의 연기(燕岐)에 있고, 가야진(伽倻津)은 경상도의 양산(梁山)에 있으니, 이상은 남쪽이요, 한강(漢江)은 한성부 안에 있고, 덕진(德津)은 경기(京畿) 임진(臨津)에 있고, 평양강(平壤江)은 평안도 평양부(平壤府)에 있고, 압록강(鴨綠江)은 평안도 의주(義州)에 있으니, 이상은 서쪽이다. 두만강(豆滿江)은 함길도(咸吉道) 경원(慶源)에 있다.】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와【구망(句芒)은 목정(木正)이요, 축융(祝融)은 화정(火正)이요, 후토(后土)는 토정(土正)이요, 욕수(蓐收)는 금정(金正)이요, 현명(玄冥)은 수정(水正)이요, 후직(后稷)이다.】문선왕(文宣王)·조선(朝鮮) 단군(檀君)·후조선(後朝鮮) 시조(始祖) 기자(箕子)·고려 시조(高麗始祖)이다. ○ 소사(小祀) 영성(靈星)·명산 대천(名山大川)과【치악산(雉嶽山)은 강원도 원주(原州)의 동쪽에 있고, 계룡산(鷄龍山)은 충청도 공주(公州)에 있고, 죽령산(竹嶺山)은 충청도 단양(丹陽)에 있고, 우불산(于弗山)은 경상도 울산(蔚山)에 있고, 주흘산(主屹山)은 경상도 문경(聞慶)에 있고, 전주 성황(全州城隍)은 전라도에 있고, 금성산(錦城山)은 전라도 나주(羅州)에 있으니, 이상은 남쪽이요, 목멱산(木覓山)은 한성부 안에 있고, 오관산(五冠山)은 송림(松林)에 있고, 우이산(牛耳山)은 풍해도(豐海道) 해주(海州)에 있으니, 이상은 서쪽이요, 감악산(紺嶽山)은 경기(京畿) 적성(積城)에 있고, 의관령(義館嶺)은 강원도 회양(淮陽)에 있고, 영흥 성황은 영길도(永吉道)에 있으니, 이상은 북쪽이요, 장진 명소(場津溟所)는 충청도 충주(忠州)에 있고, 양진(楊津)은 경기 양주(楊州)에 있으니, 이상은 남쪽이요, 장산곶(長山串)은 풍해도 장연(長淵)에 있고, 아사진송곶(阿斯津松串)은 풍해도 안악(安岳)에 있고, 청천강(淸川江)은 평안도 안주(安州)에 있고, 구진익수(九津溺水)는 평안도 평양부에 있으니, 이상은 서쪽이요, 덕진 명소(德津溟所)는 강원도 회양(淮陽)에 있고, 비류수(沸流水)는 영길도(永吉道) 영흥부(永興府)에 있으니, 이상은 북쪽이다.】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칠사(七祀)·영제(禜祭)【영(禜)의 음(音)은 영(永)이다.】 ○ 무릇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 '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 '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한다.	鼻白山, 永吉道定平北。 東海, 江原道襄州東; 南海, 全羅道羅州南; 西海, 豊海道豊川西; 熊津, 忠淸道燕岐; 伽倻津, 慶尙道梁山。 已上南。 漢江, 漢城府中; 德津, 京畿臨津; 平壤江, 平安道平壤府; 鴨綠江, 平安道義州。 已上西。 豆滿江, 咸吉道慶源。】、先農、先蠶、雩祀【句芒木正, 祝融火正, 后土土正, 蓐收金正, 玄冥水正, 后稷。】、文宣王、朝鮮檀君、後朝鮮始祖箕子、高麗始祖。 ○ 小祀: 靈星、名山、大川【雉岳山, 江原道原州東; 鷄龍山, 忠淸道公州; 竹嶺山, 忠淸道丹陽; 亏弗山, 慶尙道蔚山; 主屹山, 慶尙道聞慶; 全州城隍, 全羅道錦城山、全羅道羅州。 已上南。 木覓, 漢城府中; 五冠山, 松林; 牛耳山, 豐海道海州。 已上西。 紺嶽山, 京畿積城; 義館嶺, 江原道淮陽; 永興城隍, 永吉道。 已上北。 場津溟所, 忠淸道忠州; 楊津, 京畿楊州。 已上南。 長山串, 豐海道長淵; 阿斯津松串, 豊海道安岳; 淸川江, 平安道安州; 九津弱水, 平安道平壤府。 已上西。 德津溟所, 江原道淮陽; 沸流水, 永吉道永興府。 已上北。】、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七祀、禜【音永。】祭。 ○ 凡祭祀之禮, 天神曰祀, 地祇曰祭, 人鬼曰享, 文宣王曰釋奠。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단유	◎ 단유(壇壝) 사직단(社稷壇)은 남쪽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니, 방(方)이 2장(丈) 5척(尺)이요,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이 나와 있는데, 각각 3층(層)이다. 방색(方色)의 흙으로써 꾸몄으며, 황토(黃土)로써 덮었다. 석주(石主)의 길이는 2척 5촌(寸)이요, 방은 1장인데, 그 윗쪽을 뾰족하게 하고, 그	◎ 壇壝 社稷壇坐南向北, 方二丈五尺, 高三尺, 四出陛各三級, 飾以方色土, 蓋以黃土。 石主長二尺五寸, 方一丈, 剡其上培其下半當壇上南陛之上。 兩壝, 每壝

			아랫쪽의 반을 흙으로 북돋우었으며, 단(壇) 위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양유(兩壝)는 매유(每壝)마다 25보(步)이니, 이것을 장(丈)으로써 계산하여 6척으로써 1보(步)로 삼는다면 15장이나 된다.【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은 방이 2장 3척이요, 높이가 2척 7촌인데, 양유가 있다. 영성단(靈星壇)은 너비[廣]가 2장 1척이요, 높이가 2척 5촌인데, 한 개의 유(壝)가 있다. 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 등 이상의 여러 단(壇)은 모두 방이 2장 3척이요, 높이가 2척 7촌인데, 양유가 있다. 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너비[廣]가 2장 1척이요, 높이는 2척 5촌인데, 한 개의 유가 있다. 무릇 예감(瘞坎)은 모두 묘(廟)와 단(壇)의 북방 임지(壬地)에 있는데, 남쪽으로 섬돌을 내게 하고, 방과 깊이는 매장될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한다. 그 제도는 벽돌[磚石]을 사용하여 섬돌을 만들고 하나의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들어, 깊이와 넓이는 3, 4척 정도로 하고, 그 남쪽은 밟고 다니는 길[踏道]을 만들어 오르내리게 하고, 일이 없을 때[閑時]는 흙으로 메워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에 와서 흙을 취하여 버리고 소제하여 깨끗하게 하며,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 폐백과 축판(祝版)의 등속을 가지고 와서 밟고 다니는 길을 따라 내려가서 구덩이 속에 들여보내고 난 연후에, 흙을 내려 쌓아 메우기를 예식(禮式)대로 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지키고 감시한다. 여러 제사지내는 신의 단·묘·원(園) 밖의 30보 안에서는 나무하고 농사짓는 일과 행인(行人)의 내왕을 금단(禁斷)한다.	二十五步, 以丈計之, 六尺爲步, 則爲十五丈也。【尺用營造尺。】風雲雷雨壇, 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壝。 靈星壇, 廣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壝。 先農壇、先蠶壇、雩祀壇已上諸壇, 竝方二丈三尺, 高二尺七寸, 兩壝。 馬祖、先牧、馬社、馬步壇, 竝廣二丈一尺, 高二尺五寸, 一壝。 凡瘞坎, 皆在廟壇之北壬地, 南出陛, 方深取足容物。 其制用磚石砌, 作一小天井, 深闊三四尺許。 其南作踏道上下, 閑時以土實之。 臨祭取去土, 掃令潔淨, 祭畢, 使人持幣及祝版之屬, 從踏道下, 送入坎中, 然後下土築實, 依禮差人守視。 諸祀神壇廟園外三十步內, 禁斷樵木耕種及行人。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축판	◎ 축판(祝版) 축판(祝版)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1척(尺) 2촌(寸)이요, 너비는 8촌, 두께는 6푼(分)이다.【자[尺]는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사직(社稷)에는, “조선 국왕(朝鮮國王) 성(姓) 서명(署名) 감소고(敢昭告)” 라 일컫고, (중략)	◎ 祝版 祝版以松木爲之, 長一尺二寸, 廣八寸, 厚六分。【尺用造禮器尺。】社稷, 稱朝鮮國王姓署, 敢昭告。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폐백	◎ 폐백(幣帛) 무릇 폐백의 제도는 모두 길이는 1장(丈) 8척(尺)인데,【자[尺]는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지금 관부(官府)의 포백척(布帛尺)에 비교하면 6촌(寸) 4푼(分)에 준하고 3촌 6푼을 감하는데, 1장 8척은 지금의 포백척 11척 5촌 2푼에 해당된다. 척도(尺圖)는 후면(後面)에 있다.】모두 저포(苧布)를 사용한다. 사직(社稷)에는 흑색(黑色)을 사용하고, 종묘(宗廟)에는 백색(白色)을 사용하고, 선농(先農)에는 청색(靑色)을 사용하고, 선잠(先蠶)에는 흑색을 사용하고, 악·해에는 각기 방위(方位)의 빛깔에 따라 사용하고,【동해(東海)에는 청색(靑色)을 사용하고, 지리산(智異山)과 남해(南海)에는 적색(赤色)을 사용하고, 삼각산(三角山)에는 황색(黃色)을 사용하고, 송악산(松嶽山)과 서해(西海)에는 백색을 사용하고, 비백산(鼻白山)에는 흑색(黑色)을 사용한다.】독(瀆)에는 모두 흑색을 사용하며, 그밖의 신에게 예물(禮物)로 드리는 폐백은 모두 백색으로 한다.	◎ 幣帛 凡幣之制, 皆長一丈八尺,【尺用造禮器尺。 校今官府布帛尺, 準六寸四分而減三寸六分, 則一丈八尺, 準今布帛尺十一尺五寸二分。 尺圖在後。】竝用苧布。 社稷以黑, 宗廟以白, 先農以靑, 先蠶以黑。 嶽海, 各隨方色,【東海用靑, 地異山、南海用赤, 三角山用黃, 松嶽山、西海用白, 鼻白山用黑。】瀆皆用黑。 自餘禮神之幣, 以白。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찬실도 / 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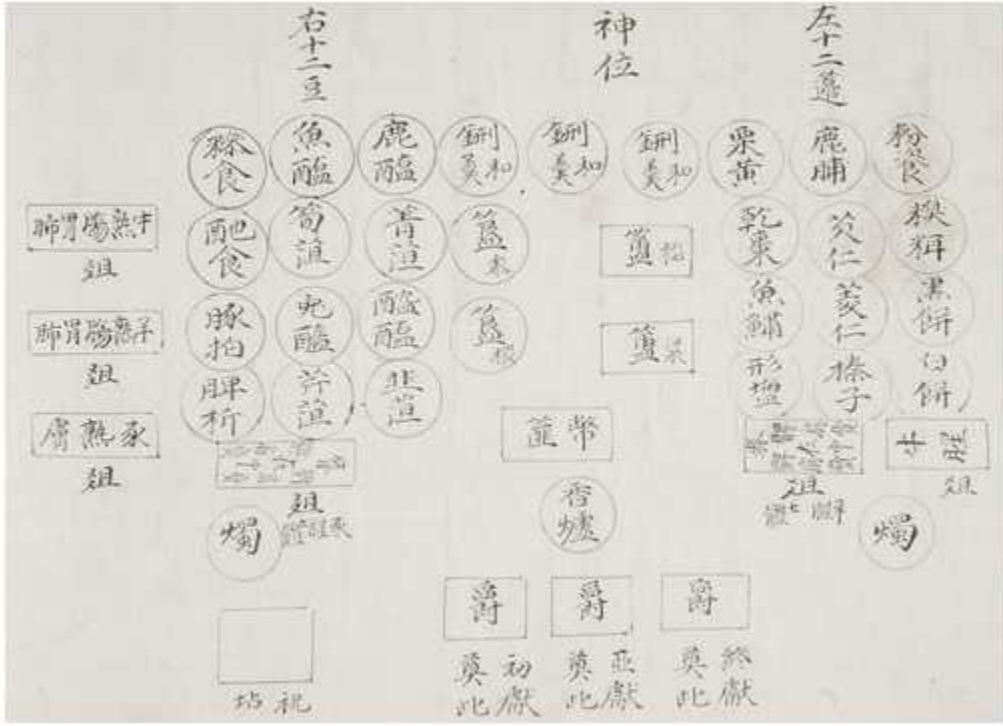
神位
右十二豆
魚醢
鹿醢
芹菹
菁菹
兎醢
醓醢
笋菹
韭菹
糝食
酏食
豚拍
脾析
肺胃熟牛
俎
肺胃腸熟豕
俎
膚熟豕
俎
俎
燭
左十二籩
鹿脯
栗黃
乾棗
魚鮨
形鹽
茨仁
菱仁
栢子
俎
燭
剛鬣
剛鬣
剛鬣
簠
簋
幣篚
香爐
爵
爵
爵
奠此
初獻
奠此
亞獻
奠此
終獻
坫
祝
사직 정배위 찬실도

대사 대직 준뢰도

후토 후직 준뢰도

기고 보사 찬실도

기고 보사 대사 대직 준뢰도

기고 보사 후토 후직 준뢰도

神位
右四豆
左四籩
魚醢
鹿醢
簠黍
簠稻
乾棗
鹿脯
芹菹
菁菹
簋稷
簠粱
形鹽
栗黃
豕腥
俎
幣篚
燭
香爐
燭
爵
爵
爵
初獻
莫此
亞獻
莫此
終獻
莫此
祝坫

주현 사직 찬실도

			 설준도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악현도 / 사직 헌가·등가·무	◎ 사직(社稷) 헌가(軒架)·등가(登歌)·무(舞) ○ 헌가(軒架) 【도표】사직 헌가 삼방(三方)에 각각 편종(編鐘) 3개와 편경(編磬) 3개를 설치한다. 서방(西方)의 편종은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편경이 사이마다 끼이고 서향하게 되며, 동방의 편경은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편종이 사이마다 끼이고 동향하게 되며, 남방의 편경은 서쪽에서 시작되는데 편종이 사이마다 끼이고 남향하게 된다. 영고(靈鼓) 3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는 남가(南架)의 남쪽에 있어 한복판에 있게 되고, 한 개는 서남 모퉁이에 있고, 한 개는 동남 모퉁이에 있다. 축(柷)과 어(敔)를 남가(南架)의 안에 설치하는데, 축은 서쪽에 있고, 어는 동쪽에 있으며, 관(管) 10개는, 축·어의 북쪽에 있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약(籥), 그 다음은 생(笙), 그 다음은 우(竽), 그 다음은 소(簫), 그 다음은 적(篴), 그 다음은 지(篪), 그 다음은 부(缶), 그 다음은 훈(壎)이 각기 10개씩 각각 한 줄이 되어 모두 남쪽을 향하게 된다. ○ 등가(登歌) 【도표】사직 등가 가종(歌鐘)의 1개는 서쪽에 있고, 가경(歌磬)의 1개는 동쪽에 있으며, 슬(瑟) 6개와 금(琴) 6개가 한 줄이 되어 종(鐘)·경(磬)의 북쪽에 있는데, 슬은 서쪽에 있고, 금은 동쪽에 있으며, 가(歌)는 두 줄로서 각각 12인인데, 금·슬의 북쪽에 있어 모두 남향하게 된다. ○ 무(舞) 【도표】사직 무 정(旌) 1개와 둑(纛) 1개가 단하(壇下)에 있어 악현(樂懸)의 남쪽에 있는데, 정(旌)은 서쪽에 있고, 둑(纛)은 동쪽에 있으며, 휘(麾) 2개가, 1개는 정(旌)의 서북쪽에 있고, 1개는 둑(纛)의 동북쪽에 있다. 육일(六佾)4618)은 두 휘(麾)의 북쪽에 있는데, 매 일(佾)마다 8인이며 모두 남쪽을 상으로 한다. 순(錞) 1개, 탁(鐸) 1개, 요(鐃) 1개, 탁(鐸) 1개는 무일(舞佾)의 서쪽에 있고, 응(應) 1개, 아(雅) 1개, 상(相) 1개, 독(牘) 1개는 무일(舞佾)의 동쪽에 있는데, 모두 남쪽을 상(上)으로 한다.	◎ 社稷軒架、登歌、舞 ○ 軒架 三方各設編鐘三, 編磬三。 西方編鐘起南, 編磬間之, 西向; 東方編磬起南, 編鐘間之, 東向; 南方編磬起西, 編鐘間之, 南向。 設靈鼓三, 一在南架之南當中, 一在西南隅, 一在東南隅。 設柷敔於南架內, 柷在西, 敔在東。 管十在柷敔之北爲一行, 次籥、次笙、次竽、次簫、次篪、次篪、次缶、次壎, 各十各爲一行, 俱南向。 ○ 登歌 歌鐘一在西, 歌磬一在東。 瑟六琴六爲一行, 在鐘磬之北; 瑟在西, 琴在東。 歌二行各十二十人, 在瑟琴之北, 俱南向。 ○ 舞 旌一纛一在壇下, 當樂懸南, 旌在西纛在東。 麾二, 一在旌西北, 一在纛東北。 六佾在兩麾之北, 每佾八人, 俱南上。 錞一鐲、一鐃、一鐸、一在舞佾西, 應一、雅一、相一、牘一在舞佾東, 俱南上。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서례 / 헌관 / 사직에 임금이 몸소 제사할 때의 집사관	◎ 사직에 임금이 몸소 제사할 때의 집사관 사직(社稷)에 임금이 몸소 제사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아헌관(亞獻官),【왕세자(王世子). 】종헌관(終獻官),【영의정(領議政)이 사고(事故)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이	◎ 社稷親祭行事執事官 社稷親祭行事執事官: 亞獻官【王世子。】終獻官【領議政有故, 則次官。】進幣爵酒官【吏曹判書有故, 則

			조 판서(吏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 】천조관(薦俎官)【호조 판서(戶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전폐작주관(奠幣酌酒官),【이조 참의(吏曹參議). 】전사관(典祀官),【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판윤(判尹)이 한다. 】집례(執禮) 2인,【단상(壇上)에는 3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4품관이 한다. 】정위(正位)·배위(配位)의 사위(四位)에 대축(大祝)이 각 1인,【내지제고(內知製誥)와 외지제고(外知製誥)가 한다. 】정위(正位)·배위(配位)의 사위에 축사(祝史)가 각 1인,【4품관. 】정위·배위의 사위에 재랑(齋郞)이 각 1인,【5품관. 】정위·배위의 준소(尊所)에 각 1인,【6품관. 】정위·배위의 사위에 봉조관(捧俎官)이 3인,【참외(參外). 】장생령(掌牲令),【전구서 령(典廐署令)이 사고가 있으면, 승(丞)이 한다. 】협률랑(協律郞),【예조 좌랑(禮曹佐郞). 】아악령(雅樂令),【아악서 전악(雅樂署典樂)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副典樂)이 한다. 】작세위(爵洗位),【6품관. 】관세위(盥洗位) 2인,【6품관. 】아헌관 관세위(亞獻官盥洗位),【참외가 한다. 만약 영의정이 아헌관이 된다면, 종헌관 관세도 함께 일위(一位)에 설치한다. 】종헌관 관세위,【참외. 】알자(謁者) 2인【6품관. 】찬자(贊者) 2인,【통례문(通禮門)의 판관(判官)과 통찬(通贊)이 한다. 】찬인(贊引) 2인,【1인은 6품관이 하고, 1인은 참외(參外)가 한다. 】감찰(監察) 2인, 응봉관 예의사(應奉官禮儀使)【예조 판서(禮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외가 한다. 】근시(近侍) 4인,【대언(代言). 】내시(內侍) 2인,【대호군(大護軍). 】판통례(判通禮) 2인이다. 왕세자(王世子)의 시종관(侍從官) 인진사(引進使)【통례문. 】는 본관(本官)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진폐작주관·천조관·예의사는 모두 유사시(有事時)에 쓸 차비관(差備官)을 미리 정해 둔다.	參議。】薦俎官【戶曹判書有故，則參議。】奠幣酌酒官【吏曹參議。】典祀官【典祀判事有故，則尹。】執禮二。【壇上三品，壇下四品。】正配四位，大祝各一。【內外製。】正配四位，祝史各一。【四品。】正配四位，齋郞各一。【五品。】正配四位，尊所各一。【六品。】正配四位，捧俎官各三。【參外。】掌牲令【典廐署令有故，則丞。】協律郞【禮曹佐郞。】雅樂令【雅樂署典樂有故，則副典樂。】爵洗位【六品。】盥洗位二。【六品。】亞獻官盥洗位【參外。 若領議政爲亞獻，則終獻官盥洗，共設一位。】終獻官盥洗位。【參外。】謁者二【六品。】贊者二【通禮門判官通贊。】贊引二【一六品、一參外。】監察二、應奉官禮儀使。【禮曹判書有故則參議。】近侍四【代言。】內侍二【大護軍。】判通禮二、王世子侍從官引進使。【通禮門。】本官有〔故〕，則以他官充。 亞終獻官，進幣爵酒官、薦俎官、禮儀使，皆有預差。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길례 의식 / 기고 사직의	◎ 기고 사직의(祈告社稷儀) 【보사(報祀)와 같다. 오직 음복(飮福)하고 조육(胙肉)을 받는 것이 다르다. 】 하루 전에 모든 기관(祈官)이 청재(淸齋)하고 기소(祈所)에서 하룻밤을 잔다.【만약 일이 박절(迫切)하지 아니하면, 산재(散齋) 2일이요, 치재(致齋) 1일이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내외를 소제하고, 대사(大社)의 신좌(神座)를 단상(壇上)의 남방에 동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좌를 대사의 신좌 왼쪽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그리고, 대직(大稷)의 신좌를 단상의 남방에 서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후직씨의 신좌를 대직의 신좌 왼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莞]로 한다. 헌관의 자리는 북문 안에 단에 당해서 남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서문(西門) 안에 길 북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로 하고, 감찰의 자리는 북문 안의 서북쪽 모퉁이에 동향하여 설치하는데, 서리(書吏)가 그 뒤에 있게[陪]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단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예감(瘞坎)을 단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되, 넓이와 깊이는 족히 물건을 넣을 수 있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陛]을 낸다. 망예위(望瘞位)를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헌관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게 하고, 대축·찬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기일(祈日) 축시(丑時) 전 5각에【축시 전 5각은 곧 3경 3점이니,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祝版)을 올려 놓는데,【그 글이 만약 수한(水旱)·여질(厲疾)·황충(蝗蟲)·전벌(戰伐)이라면 각기 임시(臨時)하여 짓는다. 】각각 하나씩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	◎ 祈告社稷儀【報祀同，唯飮福受胙爲異。】 前一日，諸祈官淸齋一宿於祈所。 【若事非迫切，散齋二日，致齋一日。】 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設大社神座於壇上南方近東，北向；后土氏神座於大社神座之左，東向；設大稷神座於壇上南方近西，北向；后稷氏神座於大稷神座之左，東向，席皆以莞；設獻官位於北門內當壇，南向；設執事者位於西門內道北，東向南上；設監察位於北門內西北隅，東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位於壇下近西，東向；開瘞坎於壇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陛；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大祝贊者在西東向北上祈日丑前五刻【丑前五刻，郞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典祀官帥其屬人奠祝版【其文，若水旱癘疾蝗蟲戰伐，各臨時撰之。】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陳幣篚各一於尊所，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每位各左二籩，【栗黃

			는다.【각각 점(坫)이 있다.】폐비(幣篚) 각각 하나씩을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 및 촉(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를 설치하는데, 매위(每位)마다 각기 왼쪽에 변(籩)이 2개, 【율황(栗黃)이 앞에 있고, 녹포(鹿脯)가 다음에 있다.】오른쪽에 두(豆)가 2개이요,【청저(菁菹)가 앞에 있고, 녹해(鹿醢)가 다음에 있다.】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으며, 보는 왼쪽에 있고, 궤는 오른쪽에 있다.【보에는 도(稻)·양(粱)을 담는데, 양이 도 앞에 있고, 궤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데, 직이 서 앞에 있다.】조(俎)가 1개인데, 보·궤 앞에 있고,【시성(豕腥)을 담는다. 송나라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함은 다 남쪽을 이름이다." 하였다.】작(爵)이 1개인데, 조 앞에 있다.【점(坫)이 있다.】또 준(尊)·뇌(罍)를 진설하는데, 대사에는 대준이 2개,【하나는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산뢰가 2개로서,【하나는 현주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다작과 멱을 얹어 놓는다. 신위의 왼쪽에 있게 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후토씨에는 상준이 2개,【하나는 명수를 담고, 하나는 예제를 담는다.】산뢰가 2개로서,【하나는 현주를 담고,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대사 주준(酒尊)의 서쪽에 있게 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무릇 준·뇌는 명수와 현주를 담은 것이 위가 된다.】대직 후직씨(大稷后稷氏)의 준·뇌도 대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세(洗)를 북계[北陛]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다.】뇌는 세(洗)의 서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의 동북쪽에 늘어놓되, 수건[巾]을 담아 놓는다.【만약 작세의 비(篚)라면 또 작을 담아 놓는다. 점이 있다.】전사관(典祀官)이 물러가 막차[次]로 나아가서 복색을 갖추고, 올라가서 대사 후토씨와 대직 후직씨의 신위판을 신좌(神座) 앞에 설치한다. 3각 전에 헌관과 여러 집사가 각기 그 복색을 갖추고, 알자·찬자가 서문으로 들어와 먼저 단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남향하고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랑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의 북쪽 배위로 나아가, 겹줄로써 남향하고 동쪽을 위로 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나아가고, 재랑(齋郞)이 작세위로 나아가 작을 씻고 작을 닦아서, 비에 담아 받들고 준소로 나아가서 점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찬자가 "재배하라." 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다 재배한다. 찬자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여,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在前, 鹿脯次之。】右二豆。【(靑俎)〔菁菹〕在前, 鹿醢次之。】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 粱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俎一在簠簋前,【實以豕腥。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爵一在俎前。【有坫。】又設尊罍大社大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齊。】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皆加勺冪, 在神位之左近北, 南向東上。 后土氏象尊二,【一實明水, 一實醴齋。】山罍二,【一實玄酒, 一實淸酒。】於大社酒尊之西, 俱南向東上,【凡尊罍實明水, 玄酒爲上。】大稷后稷氏尊罍, 如大社后土氏之儀。 設洗於北陛之西, 南向;【盥洗在西, 爵洗在東。】罍在洗西加勺, 篚在洗東北肆, 實以巾。【若爵洗之, 則又實以爵, 有坫。】典祀官退就次, 服其服升, 設大社后土氏、大稷后稷氏神位版於座前。三刻, 獻官及諸執事, 各服其服。 謁者、贊者入自西門, 先就壇北拜位, 南向四拜訖就位。 謁者引獻官以下, 俱就西門外位。 前一刻, 謁者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郞, 入就壇北拜位, 重行南向東上。 立定, 贊者曰: "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謁者引監察及諸執事各就位。 齋郞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篚, 捧詣尊所, 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南向立, 贊者曰: "四拜。" 獻官四拜。 謁者進獻官之左白: "有司謹具, 請行事。" 退復位。 贊者曰: "再拜。" 在位者皆再拜。 贊者曰: "行奠幣禮。" 謁者引獻官詣盥洗位南向立, 贊搢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謁者贊執笏, 引詣壇升自北陛, 詣大社神位前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 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 引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 贊跪

			“홀을 꽂으라.” 찬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으면,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 알자가 “홀을 잡으라.” 고 찬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서, 북계[北陛]로 올라가서 대사 신위 앞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 찬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비를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집폐 헌폐(執幣獻幣)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린다. 【무릇 봉향(捧香)·수폐는 다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전로(奠爐)·전폐는 다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수작(授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 알자가 “홀을 잡고 면복하였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세 번 상향하라.” 찬하여,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비를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집폐 헌폐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면복하였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대직 후직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상향·전폐하기를 모두 대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하여,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陛]로 올라가서 대사 준소로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멱을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남향하여 꿇어앉으라.” 하고,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면복하였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후토씨의 준소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搢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引詣大稷后稷氏神位前, 上香奠幣, 竝如大社后土氏之儀訖, 引降復位。 小頃, 贊者曰: “行酌獻禮。” 謁者引獻官升自北陛, 詣大社尊所東向立, 執事者擧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 俛伏興少退南向跪。 大祝進神位之右, 西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 引詣后土氏尊所東向立, 執尊者擧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西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西向跪。 大祝進神位之右, 北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 引詣大稷后稷氏神位前酌獻, 竝如大社后土氏之儀訖, 引降復位。 諸大祝進徹籩豆如式。 贊者曰: “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 贊者詣望瘞位東向立, 大祝以篚取祝版及幣, 各由其陛降壇, 置於坎。 贊者曰: “可瘞。” 實土半坎。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 遂引獻官出, 贊者還本位。 謁者引監察及諸執事, 就壇北拜位, 贊者曰: “四拜。” 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 謁者以次引出。 謁者、贊者就壇北拜位, 四拜而出。 典祀官帥其屬, 藏神位版, 徹禮饌以降乃退。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집작 헌작(執爵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서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하고,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면복하였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대직 후직씨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작헌(酌獻)하기를 모두 대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변두(籩豆)를 거두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여, 감찰과 여러 집사가 다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찬자가 단 북쪽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가고,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위판을 간직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내 물러간다.	
세종실록 오례		오례 / 가례 의식 / 전향의	◎ 전향의(傳香儀)【대사(大祀)는 춘추(春秋)의 중월(仲月) 상무(上戊)와 납일(臘日)에는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사시(四時)와 납일에는 종묘에 제향하고, 춘추의 맹월(孟月)에는 영녕전(永寧殿)에 제향(祭享)하며, 중사(中祀)는 춘추의 중월에는 풍운뢰우(風雲雷雨)에 제사하고, 중춘(中春)의 상해(上亥)에는 선농(先農)에 제향하고, 계춘(季春)의 상사(上巳)에는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맹하(孟夏)에는 우사(雩祀)하고, 춘추의 중월 상정(上丁)에는 문선왕(文宣王)에게 석전(釋奠)을 지내며, 그 나머지의 상사(常祀)에는 모두 내전(內殿)에서 임금이 친히 전향(傳香)하며, 소사(小祀)에는 외정(外庭)에서 승지가 대신 전향한다.】 전기(前期) 2일에 예조에서 내외관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무를 다하게 한다. 전기 1일에 액정서에서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의 한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만약 같이 제사지낸다면, 매 향축(香祝)마다 각각 안(案)을 설치한다.】향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전악서의 전악이 악기(樂器)를 전정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고취악(鼓吹樂)은 진설(陳設)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협률랑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액정서에서 전하의 배위를 전계 위의 한복판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의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하며,【종친은 매 품등마다 반열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감찰 자리 둘은 문·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만약 중사(中祀)이면 다만 좌우 시신의 자리만 설치하고, 백관들과 감찰의 자리는 설치하지 않는다.】계상(階上)의 전의 자리를 중계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계하의 전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문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동쪽	◎ 傳香儀【大祀, 春秋仲月上戊及臘祭社稷、四時及臘享宗廟、春秋孟月享永寧殿; 中祀, 春秋仲月祭風雲雷雨、仲春上亥享先農、季春上巳享先蠶、孟夏雩祀、春秋仲月上丁釋奠文宣王。 其餘常祀, 皆於內殿親傳, 若小祀則外庭承旨代傳。】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香祝案於勤政殿正中, 南向; 【若竝祭, 則每香祝, 各設案。】 香案於其前。 典樂署典樂陳樂於殿庭近南, 北向; 【鼓吹樂陳而不作。】 設協律郎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掖庭署設殿下拜位於殿階上當中, 北向。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若中祀, 則只設左右侍臣位, 不設百官及監察位。】 階上典儀位於中階近東, 西向; 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郎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郎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奉禮郎設門外位, 文官二品以上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如殿庭位。】 初獻官以下行

			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 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종친은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되, 전정의 자리와 같이 한다.】초헌관(初獻官)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執事官) 자리를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와 충의위를 중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충순위·별시위의 갑사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를 의장의 뒤에 설치하고, 창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향정을 근정문 안에 설치하고, 세장(細仗)을 문 밖에 설치한다.【만약 중사(中祀)이면 향정과 의장은 없다.】종친과 문무백관들은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추고, 초헌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은 평상복 차림으로 집합한다. 고가 2엄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헌관(獻官) 이하의 집사관들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도진무 1인, 내금위 절제사 2인, 충의위·충순위·별시위의 절제사 각각 1인, 운검을 찬 중추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를 받든 상호군·운검을 받든 대호군·책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몸을 방비하는 호군 각각 8인, 사복관 6인이다.】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여,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문(祝文)을 받들어 올리고, 근시(近侍)【승지(承旨).】가 전해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서명(署名)하고, 이를 마치면, 근시가 받들고 나가서 교서관의 관원에게 주어, 교서관의 관원이 홍색 보로써 축문과 향합(香合)을 싸서 안(案)에 둔다.【만약 같이 제사지내면, 각 곳의 향축을 1개의 함에 담는다.】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을 알리면, 전의·통찬·봉례랑·감찰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초헌관(初獻官)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전계 위의【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오른다.】동북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정전의 서쪽 가에 이르러 여에서 내리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판통례 2인이 전하의 좌우에 부복한다.】여러 호위관들이 배위의 뒤에 죽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와 사관이 그 뒤에서 부복하고, 사금이 전계 위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죽 늘어선다.【산·선·화개·수정장(水精杖)·금월부(金鉞斧)를 먼저 정계 아래의 동쪽·서쪽에 진열한다.】전의가	事執事官位於勤政門外道東, 每等異位重行, 西向北上。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忠義衛於中階東西; 忠順衛別侍衛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設香亭於勤政門內; 細仗於門外。 【若中祀, 則無香亭及儀仗。】 宗親及文武百官俱集朝堂, 各具朝服; 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以常服集到。 鼓二嚴, 宗親百官及獻官以下, 皆就門外位。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跪, 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纛扇侍衛如常儀。 校書館官以祝文捧進, 近侍【承旨。】 傳捧以進, 殿下署訖, 近侍捧出, 以授校書館官, 校書館官以紅袱裹祝文及香合, 置於案。 【若竝祭, 則各處香祝, 盛於一函。】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郎入就擧麾位。 鼓三嚴, 典儀通贊奉禮郎監察先入就位;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次引初獻官, 由東偏門入升, 就殿階上【由東偏階升。】 東北, 西向立。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纛扇侍衛如常儀。 至勤政殿西邊降輿, 判通禮導殿下就拜位, 【判通禮二人俯伏於左右。】 諸護衛官列立於拜位之後, 次承旨史官俯伏於其後, 司禁分列於殿階上及庭之東西, 【纛扇華蓋水精杖金鉞斧, 先陳於正階下左右。】 典儀曰: “再拜。” 判通禮俯伏跪, 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鞠躬再拜興平身, 宗親及百官同。 【通贊亦唱。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判通禮啓請跪, 殿下跪。 宗親及百官同。 【通贊亦唱。】 司香二人 【內直別監公服。】 進香案前跪三上香, 俯

			“재배(再拜)하라.” 말하고,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하에게 “국궁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고 계청하여, 전하가 국궁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통찬이 또한 창한다. 무릇 통찬이 찬하고 창할 적에는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꿇어앉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통찬이 또한 창한다. 】사향 2인이【내직 별감이 공복을 입는다. 】향안 앞에 나아가서 삼상향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고, 내직 별감이【공복을 입는다. 】향축안(香祝案) 앞에 나아가서 향축을 가지고 중문을 지나 나가서 꿇어앉아 승지에게 주어, 승지가 전해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 전하에게 올린다.【만약 같이 제사지낸다면, 각 곳의 향축을 차례대로 받들어 올린다. 】전하가 향축을 받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나아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받고, 일어나 중문을 지나 나가서 다시 안(案)에 놓고,【만약 같이 제사지낸다면, 여러 헌관이 향축을 차례대로 안에 진열한다. 】향축안의 동남쪽에 물러나서 서향하여 선다.【만약 대신 전한다면, 승지가 향축안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초헌관에게 준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고 계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통찬이 또한 창한다. 】판통례가 예를 끝마쳤음을 아뢰고,【통찬이 또한 창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조금 서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초헌관이 향축을 받아 중문을 지나 나오는데, 판통례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전하에게 국궁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국궁하고, 초헌관이 지나가면, 전하에게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몸을 바로 한다.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왕세자와 문관이 서향하여 국궁하는 것이 다르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근정문에 이르고, 초헌관이 향축을 향정 안에 두고 문을 나가는데, 의장이 앞에서 인도하고, 초헌관 이하의 관원이 뒤따라 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돌아가는데,【전하가 지나가면, 종친과 백관들은 도로 북향한다.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고,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伏興退。 內直別監 【公服。】 進香祝案前北向跪, 取香祝由中門出, 跪授承旨, 承旨傳捧, 東向跪進, 【若竝祭, 則各處香祝, 以次捧進。】 殿下受香祝, 以授初獻官, 初獻官進西向跪受興, 由中門入, 復置於案, 【若竝祭, 則諸獻官以香祝, 依次陳列於案。】 退於香祝案東南西向立。 【若代傳, 則承旨詣香祝案前, 東向跪, 授初獻官。】 判通禮啓請俯伏興再拜興平身, 殿下俯伏興再拜興平身。 宗親及百官同。 【通贊亦唱。】 判通禮啓禮畢, 【通贊亦唱。】 判通禮導殿下少西東向立, 初獻官捧香祝由中門出, 判通禮俯伏跪, 啓請鞠躬, 殿下鞠躬, 過則啓請平身, 殿下平身。 宗親百官同。 【唯王世子及文官西向鞠躬爲異。】 判通禮導殿下降自西階, 送至勤政門。 初獻官以香祝置於香亭中出門, 儀仗導前, 初獻官以下隨行。 判通禮導殿下還內, 【殿下過則宗親及百官還北向。】 侍衛如來儀。 奉禮郎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세종실록 지리지		지리지 / 경도 한성부	◎ 경도 한성부(京都漢城府)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南平壤城)이니, 일명(一名) 북한산군(北漢山郡)이다.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이,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2년(372) 임신에 남한산(南漢山)으로부터 와서 도읍을 정하여【남한산은 지금의 광주(廣州). 】1백 5년을 지내고, 문주왕(文周王)이 고구려의 난을 피하여 고마나루[熊津]로 옮겨 도읍하였고, 고려 초에 양주(楊州)로 고쳤다. 숙종(肅宗) 때 술사(術士) 사의령(司儀令) 김위제(金謂磾)가 옥룡 선사(玉龍禪師)의 《도선밀기(道詵密記)》를 증거로 하여 아뢰기를, “양주(楊州)에 목멱양(木覓壤)이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합니다.” 하고, 일자(日者) 소부감(少府監) 문상(文象)이 따라서 그 말대로 아뢰니, 4년 기묘 9월에 임금이 친히 거둥하여 땅을 살펴보고, 평장사(平章事) 최	◎ 京都漢城府: 本高句麗南平壤城, 一名北漢山郡。 百濟 近肖古王以東晋簡文帝 咸安二年壬申, 自南漢山來都, 【南漢山, 卽今廣州。】 歷一百五年, 文周王避高句麗之難, 移都熊津。 高麗初, 改爲楊州。 肅宗時, 有術士司儀令金謂磾者, 據玉龍禪師 《道詵密記》上言:“楊州有木覓壤, 可立城。”日者少府監文象從而和之。 四年己卯九日, 王親幸相地, 命平章事崔思諏、知奏事尹瓘董其役, 經始于五年辛巳, 訖功于九

사추(崔思諏)와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에게 명하여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해서, 5년 신사에 시작하여 9년 갑신에 역사를 마치니, 곧 송(宋)나라 휘종(徽宗) 숭녕(崇寧) 3년(1104)이다. 8월에 임금이 와서 살펴보고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시켰다. 이로부터 인종(仁宗)·의종(毅宗)·충렬왕(忠烈王)·공민왕(恭愍王)·공양왕(恭讓王)이 모두 순행하여 이곳에 머물렀다. 충렬왕 34년 무신에【곧 원(元)나라 무종(武宗) 지대(至大) 원년(元年).】한양부(漢陽府)로 고쳐서 부윤(府尹)·판관(判官)을 두었고, 본조(本朝)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憲大王) 3년 갑술【곧 명(明)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홍무(洪武) 27년.】10월 갑오에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한성부(漢城府)로 고쳐서, 판사(判事)·윤(尹)·소윤(少尹)·판관(判官)·참군(參軍)을 두고, 을해 2월에 비로소 종묘(宗廟)와 궁실(宮室)을 경영하여 9월에 모두 낙성되었다.

도성(都城)의 둘레가 9천 9백 75보(步)인데, 북쪽 백악사(白嶽祠)로부터 남쪽 목멱사(木覓祠)에 이르는 지름이 6천 63보요, 동쪽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서쪽 돈의문(敦義門)에 이른 지름이 4천 3백 86보가 되며, 정동(正東)을 흥인문, 정서(正西)를 돈의문, 정북(正北)을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을 홍화문(弘化門)【곧 동소문(東小門).】, 동남(東南)을 광희문(光熙門)【곧 수구문(水口門).】, 서남(西南)을 숭례문(崇禮門)【곧 남대문.】, 소북(小北)을 소덕문(昭德門)【곧 서소문(西小門).】, 서북(西北)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태조(太祖) 5년 병자 봄에 각도의 민정(民丁) 11만 8천 76명을 모아 도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니, 번와(燔瓦) 및 석회군(石灰軍)이 또 1천 7백 59명이었다. 가을에 이르러 또 민정 7만 9천 4백 31명을 모아서 8월 13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9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였으며, 금상(今上) 4년 임인에 태종의 명으로 성을 수축하여 토성(土城)을 모두 돌로 바꾸었는데, 8도의 군사 총 32만 2천 4백 명을 모아,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에 마치었다. 성 동쪽에, 처음에 수문(水門) 3을 열었는데, 장마를 만나면 〈문이〉 막히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2문을 더 만들었다.】

동부(東部) 12방(坊)【숭신(崇信)·연화(蓮花)·서운(瑞雲)·덕성(德成)·숭교(崇敎)·연희(燕喜)·관덕(觀德)·천달(泉達)·흥성(興盛)·창선(彰善)·건덕(建德)·인창(仁昌).】

남부(南部) 11방(坊)【광통(廣通)·호현(好賢)·명례(明禮)·대평(大平)·훈도(薰陶)·성명(誠明)·낙선(樂善)·정심(貞心)·명철(明哲)·성신(誠身)·예성(禮成).】

서부(西部) 8방(坊)【인달(仁達)·적선(積善)·여경(餘慶)·황화(皇華)·양생(養生)·신화(神化)·반석(盤石)·반송(盤松).】

북부(北部) 10방(坊)【광화(廣化)·양덕(陽德)·가회(嘉會)·안국(安國)·관광(觀光)·진장(鎭長)·명통(明通)·준수(俊秀)·순화(順化)·의통(義通).】

중부(中部) 8방(坊)【징청(澄淸)·서린(瑞麟)·수진(壽進)·견평(堅平)·관인(寬仁)·경행(慶幸)·정선(貞善)·장통(長通).】

종묘(宗廟)【중부 정선방(貞善坊)과 동부 연화방(蓮花坊) 중앙에 있으니, 담 둘레에 소나무를 심었다.】영녕전(永寧殿)【종묘의 담 안 서쪽에 있다. 태조(太祖)가 하늘의 명[天命]을 받아 〈왕이 되매〉 왕(王)으로 목(穆)·익(翼)·도(度)·환(桓)의 네 조상을 추존하고, 종묘를 세워 제사를 받들다가, 태종(太宗)을 부묘(祔廟)하게 되매, 목조(穆祖)를 체천(遞遷)해야 하

年甲申, 卽宋 徽宗 崇寧三年也。 八月, 王來遠觀, 陞爲南京留守官。 自是仁宗、毅宗、忠烈王、恭愍王、恭讓王, 皆巡駐于此。 忠烈王三十四年戊申, 改爲漢陽府, 置府尹判官。 【卽元 武宗至大元年。】 本朝太祖康獻大王三年甲戌十月甲午, 定都于此, 改爲漢城府, 置判事尹少尹判官參軍。 【卽大明 太祖高皇帝 洪武二十七年。】 乙亥二月, 始營宗廟宮室, 九月, 皆告成。 都城周回九千九百七十五步。 北自白嶽祠, 南至木覓祠, 徑六千六十三步。 東自興仁, 西至敦義門, 徑四千三百八十六步。 正東曰興仁門, 正西曰敦義門, 正北曰肅淸門, 東北曰弘化門, 【卽東小門】 東南曰光熙門, 【卽水口門】 西南曰崇禮門, 小北曰昭德門, 【卽西小門】 西北曰彰義門。 【我太祖五年丙子春, 徵各道民丁一萬八千七十六, 始築都城, 以正月十五日起役, 至二月晦日罷役。 燔瓦及石灰軍, 又一千七百五十九。 至秋, 又徵民丁七萬九千四百三十一, 以八月十三日始役, 至九月晦日罷役。 今上四年壬寅, 太宗命修築之, 其土城, 皆易以石。 徵八道軍摠三十二萬二千四百名, 以正月十五日始役, 二月而畢。 城東初開水門三, 每遇霖潦, 或致壅遏, 故增作二門。】 東部凡十二坊, 【崇信、蓮花、瑞雲、德成、崇敎、燕喜、觀德、泉達、興盛、彰善、建德、仁昌。】 南部凡十一坊, 【廣通、好賢、明禮、大平、薰陶、誠明、樂善、貞心、明哲、誠身、禮成。】 西部凡八坊, 【仁達、積善、餘慶、皇華、養生、神化、盤石、盤松。】 北部凡十坊, 【廣化、陽德、嘉會、安國、觀光、鎭長、明通、俊秀、順化、義通。】 中部凡八坊。 【澄淸、瑞麟、壽進、堅平、寬仁、慶幸、貞善、長通。】 宗廟 【在中部貞善坊、東部蓮花坊中央。 周樹之以松。】 永寧殿 【在宗廟周垣內西。 太祖受命, 追王穆、翼、度、桓四祖, 立宗廟以奉享祀。 及太宗祔廟, 穆祖當遷, 乃別建是殿, 移安穆祖之主。 翼、度、桓三祖,

			므로, 따로 이 전각을 세우고 목조의 신주를 옮겨 모시었으며, 익(翼)·도(度)·환(桓)의 세 조상도 또한 이곳에 차례로 옮겨 모시었다. 】사직(社稷)【인달방(仁達坊)에 있으니, 둘레의 담에 소나무를 심었다. 】문소전(文昭殿)【처음에 문소전을 창덕궁 서북쪽에 세우고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憲大王)과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화상[神御]을 모시고, 또 광효전(廣孝殿)을 창덕궁 동북쪽에 세우고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과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화상을 모시었다가, 그 후에 송(宋)나라 경령궁(景靈宮)의 제도에 의하여 원묘(原廟)를 경복궁 성안 동북쪽에 고쳐 지었는데, 앞에는 묘(廟), 뒤에는 침(寢)으로 하여 한결같이 고례(古禮)를 따르고, 이름을 문소전이라 하여, 두 임금(태조·태종)의 화상을 옮겨 모시었다. 】문묘(文廟)【숭교방(崇敎坊)에 있고, 뜰에 비(碑)가 있다.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을 두어 선비를 가르치는데, 2백 사람으로써 액수를 정하였다. 옆에 양현고(養賢庫)를 두어 섬학전(贍學田) 1천 35결(結)을 주었고, 금상(今上) 13년(1431) 신해에 9백 65결을 더 주었다. 】 경복궁(景福宮)【백악산(白岳山) 남쪽에 있다. 】연침(燕寢)을 강녕전(康寧殿), 동쪽 작은 침전(寢殿)을 연생전(延生殿), 서쪽 작은 침전을 경성전(慶成殿), 또 그 남쪽을 사정전(思政殿)【정사를 보는 곳. 】, 또 그 남쪽을 근정전(勤政殿)【조회를 받는 곳. 】, 안문[內門]을 근정(勤政), 안 동문(東門)을 일화(日華), 동각루(東閣樓)를 융문(隆文), 서각루(西閣樓)를 융무(隆武)라 한다. 영제교(永濟橋)【근정문 밖에 있다. 】홍례문(弘禮門)【영제교 남쪽에 있다. 】경회루(慶會樓)【궁 서쪽 담안에 있는데, 둘레가 못으로 되어 있다. 】동궁(東宮)【건춘문(建春門) 안에 있다. 】 궁성(宮城)【둘레가 1천 8백 13보(步)이다. 】동문(東門)을 건춘(建春), 서문(西門)을 영추(迎秋), 남문(南門)을 광화(光化)라 한다.【문루(門樓)가 2층이요, 누 위에 종고(鍾鼓)를 달고 새벽과 저녁에 울리어 때알림을 엄하게 한다. 문 남쪽 좌우에 의정부(議政府)·중추원(中樞院)·육조(六曹)·사헌부(司憲府) 등 각사(各司)의 공해(公廨)를 벌려 놓았다. 】 창덕궁(昌德宮)【정선방(貞善坊)에 있다. 태종(太宗) 5년(1405) 을유에 세워서 이궁(離宮)으로 삼았다. 】인정전(仁政殿)【조회를 받는 곳. 】안문을 인정(仁政), 중문을 진선(進善), 바깥문을 돈화(敦化)라 한다. 광연루(廣延樓)【궁 동쪽에 있다. 】수강궁(壽康宮)【연화방(蓮花坊)에 있다. 태종(太宗) 18년(1418) 무술에 왕위를 물려주고, 따로 이 궁을 지어 거처하였다. 】선양정(善養亭)【궁 남쪽 언덕에 있다. 】 혜정교(惠政橋)【중부 서린방(瑞麟坊) 북쪽에 있다. 】운종가(雲從街)【곧 서린방과 수진방(壽進坊)의 중앙이다. 】통운교(通雲橋)【관인방(寬仁坊) 남쪽에 있다. 】북광통교(北廣通橋)【광통방 북쪽에 있다. 】남광통교(南廣通橋)【태평방(太平防)에 있다. 】 큰 저자[大市]【중부 장통방(長通坊)과 경행방(慶幸坊) 중앙에 있다. 】종루(鍾樓)【도성 중앙에 있다. 2층으로 되어 있고, 누 위에 종을 달아서 새벽과 저녁을 깨우쳐 준다. 】도성 좌우 행랑(都城左右行廊)【대략 2천 27간이다. 】 태평관(太平館)【숭례문(崇禮門) 안 황화방(皇華坊)에 있다. 이곳에서 중국 사신(使臣)을 접대하는데, 옆에다 별전(別殿)을 지어서 임금이 쉬는 곳으로 삼았다. 】모화관(慕華館)【돈의문(敦義門) 밖 서북쪽에 있다. 본이름	亦當遽遷于此也。】 社稷 【在仁達坊, 周垣樹之以松。】 文昭殿 【初建文昭殿於昌德宮西北, 奉安太祖康獻大王、神懿王后神御。 又建廣孝殿於昌德宮東北, 奉安太宗恭定大王、元敬王后神御。 後依宋景靈宮之制, 改營原廟于景福宮城內之東北, 前廟後寢, 一遵古禮, 因名文昭殿, 移安兩殿神御。】 文廟 【在崇敎坊, 廟庭有碑。置成均館學官, 敎養士子, 以二百人爲額。 旁置養賢庫, 給贍學田一千三十五結。 今上十三年辛亥, 加給九百六十五結。】 景福宮。 【在白嶽山南。】 燕寢曰康寧殿, 東小寢曰延生殿, 西小寢曰慶成殿, 又其南曰思政殿, 【視事之所】 又其南曰勤政殿, 【受朝之所】 內門曰勤政內, 東門曰日華, 東閣樓曰隆文, 西閣〔樓〕曰隆武。 永濟橋 【在勤政門外。】、弘禮門 【在永濟橋南。】、慶會樓 【在宮西垣內, 環樓爲池。】、東宮【在建春門之內】、宮城。【周回一千八百十三步。】 東門曰建春, 西曰迎秋, 南曰光化。【門樓二層, 樓上懸鍾皷, 以限晨夕, 警中嚴。 門南左右分列議政府、中樞院、六曹、司憲府等各司公廨。】 昌德宮 【在貞善坊。 太宗五年乙酉, 始建以爲離宮。】、仁政殿。【受朝之所】 內門曰仁政, 中門曰進善, 外門曰敦化。 廣延樓 【在宮東。】、壽康宮 【在蓮花坊。 太宗十八年戊戌, 內禪, 別作此宮以御之。】、善養亭 【在宮南岡。】、惠政橋 【在中部瑞麟坊北。】、雲從街 【卽瑞麟壽進坊中央。】、通雲橋 【在寬仁坊南。】、北廣通橋 【在廣通坊此。】、南廣通橋 【在太平坊。】、大市 【在中部長通、慶幸坊中央。】、鐘樓 【在都城中央, 構爲二層, 樓上懸鐘, 以警晨昏。】、都城左右行廊【凡二千二十七間。】、太平館 【在崇禮門內皇華防, 以館待朝廷使臣。 旁作別殿, 以爲殿下歇次。】、慕華館。【在敦義門外西北, 本名慕華樓。 以爲朝廷使臣迎接之所。 今上十二年庚戌, 改創爲館, 南有方池, 築垣種

			은 모화루(慕華樓)이니, 중국 사신(使臣)을 영접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금상(今上) 12년(1430) 경술에 고쳐 짓고 관(館)으로 하였다. 남쪽에 네모진 못이 있는데, 낮은 담을 쌓고 버들을 심었다. 】 오부(五部)의 호수(戶數)는 1만 7천 15호, 성저십리(城底十里)의【동쪽은 양주(楊州)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에 이르고, 서쪽은 양화도(楊花渡) 및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에 이르고, 남쪽은 한강 및 노도(露渡)에 이른다. 】호수는 1천 7백 79호이다. 간전(墾田)은 1천 4백 15결(結)이다. 삼각산(三角山)【도성 밖 정북(正北)에 있으니, 일명(一名)은 화산(華山)이다.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 일컬었다. 】도성(都城)의 진산(鎭山)은 백악(白岳)이다.【산정(山頂)에 사당[祠宇]이 있어서 삼각산의 신을 제사 지내는데, 백악을 붙여서 지낸다. 중사(中祀)로 한다. 】 목멱사(木覓祠)【도성 남산 꼭대기에 있으니, 소사(小祀)이다. 봉화(烽火)가 5곳이 있으니, 제일(第一)은 함길도(咸吉道)와 강원도(江原道)로부터 온 양주(楊州) 아차산(峨嵯山) 봉화에 응하고, 제이(第二)는 경상도로부터 온 광주(廣州) 천천산(穿川山) 봉화에 응하고, 제삼(第三)은 평안도·황해도로부터 육로(陸路)로 온 무악(毋岳) 동쪽 봉우리의 봉화에 응하고, 제사(第四)는 평안도와 황해도로부터 해로(海路)로 온 무악 서쪽 봉우리의 봉화에 응하고, 제오(第五)는 전라도와 충청도로부터 온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 봉화와 아차산(峨嵯山) 봉화에 응하고, 또 함길도(咸吉道)와 강원도로부터 온 풍양(豐壤) 대이산(大伊山) 봉화에 응한다. 】무악(毋岳)【모화관 서쪽에 있다. 위에 봉화가 두곳이 있으니, 동쪽 봉우리는 평안도와 황해도로부터 육로로 온 고양(高陽) 소달산(所達山) 봉화에 응하고, 서쪽 봉우리는 평안도와 황해도로부터 해로로 온 영서역(迎曙驛) 서산(西山) 봉화에 응한다. 】 연희궁(衍禧宮)【무악 남쪽에 있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일찍이 “이 땅이 무악의 명당(明堂)이 되어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하다.”고 하였는데, 세종 3년(1421) 신축에 태종이 그 말을 생각하고 이궁(離宮)을 짓게 하였다. 】 우사단(雩祀壇)·동방 토룡단(東方土龍壇)·선농단(先農壇)【모두 흥인문(興仁門) 밖 평촌(坪村)에 있다. 】마보단(馬步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모두 흥인문 밖 사근사리(沙斤寺里)에 있다. 】선잠단(先蠶壇)【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 】노인성단(老人星壇)·원단(圓壇)·영성단(靈星壇)·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모두 숭례문 밖 둔지산(屯地山)에 있다. 】남방 토룡단(南方土龍壇)【한강 북쪽에 있다. 】서방 토룡단(西方土龍壇)【가을두(加乙頭)에 있다. 】북교단(北郊壇)·북방 토룡단(北方土龍壇)·여제단(厲祭壇)【모두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다. 】 동적전(東籍田)【흥인문 밖에 있다. 종묘·사직·산천(山川) 백신(百神)의 제미[粢盛]를 제공한다. 또 구도(舊都)의 문교(門郊)에 서적전(西籍田)이 있다. 】 한강도(漢江渡)【목멱산 남쪽에 있다. 너비 2백 보. 예전에는 사평도(沙平渡) 또는 사리진도(沙里津渡)라 하였다. 북쪽에 단(壇)이 있는데, 봄·가을에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며, 중사(中祀)로 한다. 도승(渡丞) 1인을 두어서 드나드는 사람을 조사한다. 나루 머리[渡頭]에 제천정(濟川亭)이 있다. 】 용산강(龍山江)【숭례문 밖 서남쪽 9리에 있다. 배로 실어 온 세곡(稅穀)	柳。】 五部戶一萬七千一十五。 城底十里 【東至楊州松溪院及大峴, 西至楊花渡及高陽德水院, 南至漢江及露渡。】 戶一千七百七十九, 墾田一千四百一十五結。 三角山、 【在都城外正北, 一名華山。 新羅時, 稱負兒嶽。】 都城鎭山曰白嶽、 【山頂有祠宇, 祀三角之神, 附以白嶽爲中祀。】 木覓祠、 【在都城南山之頂, 小祀。 有烽火五處, 第一所準咸吉、江原道來楊州峩嵯山烽火。 第二所準慶尙道來廣州穿川山烽火。 第三所準平安、黃海道陸路來毋嶽東峯火〔烽火〕。 第四所, 準平安、黃海道海路來毋嶽西峯烽火。 第五所, 準全羅、忠淸道海路來陽川開花烽火。峩嵯山烽火, 準咸吉、江原道來豐壤大伊山烽火。】 毋嶽、 【在慕華館之西, 上有烽火二處。 東峯準平安、黃海道陸路來高陽所達山烽火, 西峯準平安、黃海道海路來迎曙驛西山烽火。】 衍禧宮、 【在母嶽之南。 晉山府院君河崙嘗以此地爲毋嶽明堂, 可建都邑。 歲辛丑, 太宗思其言, 爲營離宮。】 雩祀壇、東方土龍壇、先農壇、 【皆在興仁門外坪村】 馬步壇、馬祖壇、先牧壇、馬社壇、 【皆在興仁門外沙斤寺里】 先蠶壇、 【在東小門外沙閑伊】 老人星壇、圜壇、靈星壇、風雲雷雨壇、 【皆在崇禮門外屯地山。】 南方土龍壇、 【在漢江北。】 西方土龍壇、 【在加几頭】 北郊壇、北方土龍壇、厲祭壇、 【皆在彰義門外。】 東籍田、 【在興仁門外, 以供宗廟社稷山川智神之粢盛。 又於薦都門郊, 有西籍田。】 漢江渡、 【在木覓山南, 廣二百步。 古稱沙平渡, 俗號沙里津渡。 北有壇, 春秋行國祭, 爲中祀。置渡丞一人, 譏察出入, 渡頭有濟川亭。】 龍山江、 【在崇禮門外西南九里, 收貯漕運之所。 有軍資江監、豐儲江倉。】 西江、 【在西小門外十一里, 亦收貯漕運之所。 有廣興江倉、豐儲江倉。】 加乙頭、 【在西小門外十二里, 突兀奇秀, 南臨大江, 壁立百仞, 攀木俯視, 毛髮竪然。】 冰庫二、 【卽古

			을 거둬들이는 곳으로서, 군자 강감(軍資江監)과 풍저 강창(豐儲江倉)이 있다. 】 서강(西江) 【서소문 밖 11리에 있다. 또한 배로 실어 온 세곡(稅穀)을 거둬들이는 곳으로서, 광흥 강창(廣興江倉)과 풍저 강창(豐儲江倉)이 있다. 】 가을두(加乙頭) 【서소문 밖 12리에 있다. 오똑하고 기이하게 빼어났고, 남쪽으로 큰 강을 임하여 벽처럼 서서, 백 길이나 되는데, 나무를 휘어잡고 아래를 굽어보면 터럭끝이 오싹해진다. 】 빙고(氷庫) 2 【곧 예전의 얼음집[淩陰]이다. 하나는 두모포(豆毛浦)에 있으니, 나라 제향에 쓸 얼음을 바치고, 하나는 한강 아래 백목동(栢木洞)에 있으니, 어선(御膳), 나라 손님 접대 또는 백관(百官)에게 나누어 줄 얼음을 바친다. 】 조지소(造紙所) 【장의사동(壯義寺洞)에 있다. 처음에는 사대(事大)의 표(表)·전(箋)·주(奏)·계(啓)·자문(咨文)에 쓸 종이를, 전라도 전주(全州)와 남원부(南原府)에서 해마다 세밑에 바쳤는데, 많이 쓰는 것을 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금상 2년에 특명으로 조지소를 두어 종이를 만들었는데, 품질이 옛 것에 견주어 훨씬 곱고 좋았다. 이로 말미암아 전주와 남원 두 부(府)의 세공(歲貢) 독촉의 폐단이 비로소 없어졌다. 】 물방아[水輾] 【장의사(壯義寺) 동구(洞口)에 있다. 】 동활인원(東活人院) 【동소문 밖에 있다. 】 서활인원(西活人院) 【서소문 밖에 있다. 옛 이름은 대비원(大悲院)이다. 제조(提調)와 별좌(別坐)를 두고, 또 의원과 무당을 두어서, 서울 안에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모두 이곳에 모아 놓고, 죽·밥·국·약을 주며, 아울러 옷·이불·자리를 주어 편하도록 보호해 주고, 만일 죽는 이가 있으면 잘 묻어 준다. 】 귀후소(歸厚所) 【용산강 가에 있다. 제조(提調)와 별좌(別坐)를 두고, 또 중들로 일을 주장하게 하여, 관(棺)·곽(槨)을 만들어 팔아서 초상집의 급작스럽게 당한 일을 예비하게 한다. 】 흥천사(興天寺) 【황화방(皇華坊)에 있는데, 선종(禪宗)에 속한다. 3층탑이 있고, 〈그 속에〉 석가여래(釋迦如來)의 사리(舍利)를 안치하였다. 태조가 세우고 밭 2백 50결(結)을 주었다. 】 흥덕사(興德寺) 【연희방(燕喜坊)에 있는데, 교종(敎宗)에 속한다. 태조가 궁(宮)을 버리고 절을 만들어서 밭 2백 50결(結)을 주었다. 】 장의사(壯義寺)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는데, 교종(敎宗)에 속한다. 밭 2백 50결을 주었다. 】 봉경(封境) 【동쪽으로 양양(襄陽)에 이르기 5백 40리, 서쪽으로 풍천(豐川)에 이르기 6백 리, 남쪽으로 해진(海珍)이르기 9백 80리, 북쪽으로 여연(閭延)에 이르기 1천 4백 70리, 동북쪽으로 경원(慶源)에 이르기 2천 1백 90리, 동남쪽으로 동래(東萊)에 이르기 8백 70리, 서남쪽으로 태안(泰安)에 이르기 3백 90리, 서북쪽으로 의주(義州)에 이르기 1천 1백 40리이다. 】	之凌陰。 一在豆毛浦, 以供祭享; 一在漢江下栢木洞, 以供御膳賓食, 且頒百官。】 造紙所、【在壯義寺洞。 在先事大表箋奏啓咨文所用紙劄, 全羅道全州南原府歲貢之, 多不中用。 今上二年, 特命置所, 抄造工善支良, 紙品比舊甚精。 由是全南二府責貢之弊始除。】 水輾、【在壯義寺洞口】 東活人院、【在東小門外。】 西活人院、【在西小門外, 古名大悲院。 有提調及別坐。 又置醫巫, 凡都內病人之無歸者, 皆令聚此, 給粥飯湯醬藥餌, 幷給衣被薦席, 隨宜調護。 如有物故, 使仵作埋之。】 歸厚所、【在龍山江。 有提調別坐, 且使僧徒之有志者幹事。 造棺槨以鬻之, 以備喪家之倉卒。】 興天寺、【在皇華坊, 屬禪宗。 寺有三層塔, 安釋迦如來舍利, 乃太祖所建, 給田二百五十結。】 興德寺、【在燕喜坊, 屬敎宗。 太祖捨宮爲寺, 給田二百五十結。】 壯義寺。【在彰義門外, 屬敎宗。 給田二百五十結。】 封境 【東至襄陽五百四十里, 西至豐川六百里, 南至海珍九百八十里, 北至閭延一千四百七十里, 東北至慶源, 東南至東萊八百七十里, 西南至泰安三百九十里, 西北至義州一千一百四十里。】
문종실록 4권	즉위년 1450-11-12 壬戌	박연이 단묘의 보수, 가동의 양성, 여악의 폐지, 악보의 간행 등을 상언하다	처음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연(朴堧)이 상언(上言)하였다. “삼가 신(臣)이 봉직(奉職)한 이래로 어명(御命)을 받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나 중지(中止)할 수 없는 일들과 개수(改修)하고 경장(更張)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임(一任)할 수 없는 일들을 다음에 조목별로 갖추어서 우매(愚昧)한 것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첫째, 향사(享祀)는 나라의 큰 일이요, 단묘(壇廟)는 신(神)의 의지하는 바이므로 제왕(帝王)은 모두 이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도읍(都邑)을 정하던 초기에 여러 사당에 단(壇)을 설치하였으니 대개 고제(古制)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신의 망견(妄見)으로써 유윤(兪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명(命)을 내리던 처음에 먼저 종묘	初中樞院副使朴堧上言曰: “謹將臣奉職以來, 受命未竟, 不可中止之事, 及可以修改更張, 不可一任之事, 條具于左, 冒昧以聞。 一曰祀享, 國之大事; 壇廟, 神之所依。 帝王皆重之。 我朝定都之初, 諸祀置壇, 率略不古。 逮我世宗時, 以臣妄見, 得蒙允兪, 命下之初, 先正宗廟、社稷, 其餘諸祀之壇, 因循未擧, 迄今二十餘年, 舊弊猶存。 每當行事之際, 軒架、舞(侑)〔佾〕, 不得盡陳, 登

			(宗廟)·사직(社稷)을 바로잡았으나, 그 나머지 여러 사당의 단(壇)은 그대로 두고 거행하지 못한 지 지금까지 20여 년인데 구폐(舊弊)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사(行事)를 당할 때마다 헌가(軒架)와 무일(舞佾)이 다 베풀어지지 못하고, 등가(登歌)와 준소(樽所)가 그릇된 곳에 설치되어, 예를 행하고 악(樂)을 쓰는 것이 모두 그 의례(儀禮)를 잃어서 설만(褻慢)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단소(壇所)는 흙이 성기어 무너지기 쉬워, 비가 오면 즉시 허물어지고, 또 난장(欄墻)이 없어서 사람이 지킬 수가 없으니, 소·양·개·돼지가 함부로 더럽히므로, 그것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게 됨이 또한 심합니다. 그 중에 소사(小祀) 7, 8곳은 인력(人力)이 넉넉지 못하여 사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염려되니, 정지하여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중사(中祀) 4단(壇)이라면, '풍운 뢰우(風雲雷雨)'이고, '우사(雩祀)'이고, '선농(先農)'이고, '선잠(先蠶)'인데, 이것은 모두 찬화(贊化)와 관계가 있고 민생(民生)에 의뢰하는 것이 있으므로 옛날 제왕(帝王)이 더욱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전(祀典)에 있어서도 봄에 기도하고 가을에 보사(報祀)하는 제사는 성주(聖主)가 제명(齊明)하고 제사를 받들어 그 정성과 공경함이 지극한데, 신(神)의 의지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으니, 어찌 사리(事理)의 어그러지고 온당치 못함이 이와 같겠습니까? 지난 적에 세종(世宗)께서 처음에 종묘(宗廟)·사직(社稷)을 고쳐서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판서 허조(許稠)가 헌의(獻議)하기를,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으로 향사(享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고 하여, 대개 이를 삼가고 중하게 여겼으나, 신은 생각하기를, '고제(古制)는 합당치 못하므로 행사(行)하기에 미안하였다.'고 하여 세 번이나 다시 신주(申奏)하였더니, 세종(世宗)께서 즉시 명하여 고쳐서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제사의 단(壇)은 한결같이 신(臣)의 청한 바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농(先農)과 우사(雩祀)는 돌을 떠낸 것이 여러 장이었는데, 마침 영선(營繕)할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역사를 정지한 지 여러 해가 지나므로, 신은 공역(功役)을 끝마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때 우의정 신개(申槪)가 헌의(獻議)하기를, '단(壇)의 고제(古制)는 봉토(封土)하는 것이 옳으며, 돌을 쓰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마땅히 다시 상세하게 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고 하여, 이 때문에 저지되었고, 인하여 다시 거론하지 못하고 이미 준비되었던 돌은 갑자기 다른 데에 쓴 것을 신은 항상 한(恨)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世宗)께서 즉시 신에게 명하여 역대(歷代)의 단(壇)의 제도를 상세하게 고증하게 하였으므로, 신이 이에 위로 주(周)나라·노(魯)나라·한(漢)나라·진(晉)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에서부터 송조(宋朝)에 이르기까지 찾아 모아서 아뢰었습니다. 그 돌을 썼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고, 단(壇) 높이의 숫자도 혹은 2장(丈), 3장(丈)에서부터 4장(丈)에까지 이른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세종(世宗)께서 말하기를, '단(壇) 높이가 1장(丈)이하라도 오히려 흙으로 쌓기가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그 2, 3장(丈)의 높이이겠는가? 옛사람이 돌을 쓴 것이 분명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종(世宗)께서 이미 결단하여 이미 정(定)한 명(命)이었습니다. (중략)	歌、樽所, 設於非處, 行禮用樂, 皆失其儀, 褻慢極矣。 且其壇所土, 踈易崩, 經雨卽頹, 又無欄墻, 人不能守, 牛、羊、犬、豕, 縱橫作穢, 其爲不完不潔, 亦甚矣。 就中小祀七、八所, 則人力未贍, 慮所不逮, 停以待時, 可也。 若其中祀四壇, 曰: '風雲雷雨', 曰: '雩祀', 曰: '先農', 曰: '先蠶'。 是皆有關於贊化, 有賴於民生, 古昔帝王, 尤重之。 在我國祀典, 春祈秋報之祭, 聖主之齊明承祀, 致其誠極矣, 而依神之所, 乃若是, 夫何事理乖舛, 若是哉? 往者世宗初, 欲改正宗廟、社稷, 時判書許稠獻議曰: '祖宗成憲, 享祀已久, 不可輕改', 益謹重之也。 臣則以爲, 古制不合, 行事未安, 三復申奏, 世宗卽命改正。 其後諸祀之壇, 一如臣請。 先農、雩祀, 伐石, 幾石適有營繕事緊, 停役經年, 臣請畢功。(중략)
문종실록 7권	1년 1451-04-17 乙酉	사직서에 도제조와 제조를 두기로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사직서(社稷署)에 제조(提調)를 두지 않는 것은 미편하니, 청컨대 종묘(宗廟)의 예에 따라 실제로 일을 살피는 도제조(都提調)를 두되, 좌의정(左議政)으로 이를 삼고, 또 제조 한 사람을 더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啓: "社稷署不設提調, 未便。 請依宗廟例, 設實案都提調, 以左議政爲之, 又設提調一。" 從之。

문종실록 8권	1년 1451-07-20 丙辰	의정부 건의로 사직의 제기들을 보관할 창고를 짓기로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보궤(簠簋)·준뢰(樽罍) 등 속은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집사(執事)의 방에 놓아두는 것은 참으로 불가합니다. 청컨대 따른 창고를 지어 보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禮曹呈, 啓: “社稷簠、簋、樽、罍之屬, 無庫可藏置, 諸執事房舍, 誠爲不可。 請別立庫, 藏之。” 從之。
단종실록 12권	2년 1454-11-28 乙亥	지진이 나다	지진(地震)이 있었으므로,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내어 고(告)하였다.	地震, 祭告于宗廟、社稷。
세조실록 6권	3년 1457-01-08 癸酉	이조에서 사직서의 예에 따라 환구서의 설치를 청하니 따르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환구서(圜丘署)를 설치하는 데 사직서(社稷署)의 예에 의거하여 권무 녹사(權務錄事) 2명과 겸승(兼丞) 1명을 설치하되, 겸승은 예조(禮曹) 전향사(典享司)의 좌랑(佐郞)으로써 겸차(兼差)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吏曹啓: “設圜丘署, 依社稷署例, 置權務錄事二及兼丞一, 兼丞則以禮曹典享司佐郞兼差。” 從之。
세조실록 38권	12년 1466-01-15 戊午	신숙주·정인지·정현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제를 다시 정하다	신숙주(申叔舟)를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정인지(鄭麟趾)를 하동군(河東君)으로, 정현조(鄭顯祖)를 의빈부 의빈(儀賓府儀賓)으로, 전균(田畇)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하음군(河陰君)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서(李墅)를 좌윤(左尹)으로, 이파(李坡)를 우윤(右尹)으로, 신승선(愼承善)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예승석(芮承錫)을 변정원 판결사(辯定院判決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영유(金永濡)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한치례(韓致禮)를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으로, 권맹희(權孟禧)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이때에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였다. (중략) 사직서(社稷署)는 겸승을 없애고 서령(署令)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종5품이다, 동부 유학(東部儒學)을 동학(東學)으로 일컫고, 겸교수관(兼敎授官)을 고쳐서 교수(敎授)로 하고, 겸훈도관(兼訓導官)을 훈도(訓導)로 하여서 모두 녹관을 만들었다. 남학(南學)·서학(西學)·중학(中學)도 같았다.	以申叔舟爲議政府領議政, 鄭麟趾河東君, 鄭顯祖儀賓府儀賓, 田畇崇政大夫河陰君, 李石亨漢城府尹, 李墅左尹, 李坡右尹, 愼承善兵曹參知, 芮承錫辨定院判決事, 申末舟司諫院大司諫, 金永濡成均館大司成, 韓致禮訓鍊院都正, 權孟禧司憲府執義, 成允文司諫院司諫。 時, 更定官制。(중략) 社稷署, 革兼丞, 置署令一, 秩從五品。東部儒學稱東學, 兼敎授官改爲敎授, 兼訓導官爲訓導, 竝作祿官。 南、西、中學同。
성종실록 11권	2년 1471-08-03 癸卯	예조에서 사직단의 구덩이를 고치도록 건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주자사직단설(朱子社稷壇說)》 에, ‘예감(瘞坎)은 제단(祭壇)의 북쪽 임방(壬方)으로 한다.’ 하고, 그 주(註)에, ‘예감이 제단의 임방에 있다는 것은, 바로 북쪽 토담[北壝] 안의 양쪽 제단 가에 각각 중앙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직단(社稷壇)을 보건대, 양쪽 제단의 북쪽 토담 문 밖의 서북쪽 모퉁이에 구덩이를 파니, 옛날 제도가 아닙니다. 청컨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북쪽 토담 안의 제단 가에다 고쳐 설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文獻通考》《朱子社稷壇說》: ‘瘞坎於壇之北壬地。’ 註: ‘瘞坎在壇之壬地, 卽是合在北壝內兩壇邊各於中央。’ 見今社稷壇, 於兩壇北壝門外西北隅開坎, 非古也。 請依古制北壝內壇邊改設。” 從之。
성종실록 29권	4년 1473-04-26 丙戌	의금부에 전지하여 형조 좌랑 김민·김세신·김의형 등을 추국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형조 좌랑(刑曹佐郞) 김민(金旼), 이조 좌랑(吏曹佐郞) 김세신(金世臣)·김의형(金義亨)·김윤(金崙),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김휘(金暉)는 기생과 공인(工人)을 데리고 쇠고기와 술을 많이 준비하여, 사직(社稷)의 담 밑에서 사후(射侯)하며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심은 소나무를 밟아 손상시켰는데, 춘천 부수(春川副守) 이효돈(李孝敦)이 와서 금하자 도리어 욕하고 꾸짖었으니, 추국(推鞫)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傳旨義禁府曰: “刑曹佐郞金旼、吏曹佐郞金世臣・金義亨・金崙、義禁府都事金暉, 携妓工人, 多辦牛酒, 會于社稷壇底射侯, 動樂縱飮, 踏損栽松, 春川副守孝敦來禁, 而反加詈罵, 推鞫以啓。”
성종실록 237권	21년 1490-02-26 戊申	사직서·소격서·둑소 등에서 행동이 무례한 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에는 늘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일	傳于承政院曰: “宗廟、文昭殿、延恩殿, 則每遣人審察諸事, 如社稷署、昭

		를 적발토록 승정원에 전교하다	을 자세히 살피고 있으나, 사직서(社稷署)·소격서(昭格署)· 둑소(纛所) 또한 제향(祭享)을 드리는 곳인데, 조심하지 않고 설만(褻慢)한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사람을 보내어 간악한 일을 적발(摘發)토록 하라." 하였다.	格署、纛所, 亦祭享之所, 恐有不謹褻慢之事, 可遣人摘奸。"
성종실록 251권	22년 1491-03-27 癸卯	종묘 제기 도감 당상 노사신 등이 제기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아뢰다	종묘 제기 도감 당상(宗廟祭器都監堂上) 노사신(盧思愼) 등이 제기(祭器)를 다 만들었다고 아뢰자, 전교하기를, "대제(大祭)뒤에 충훈부(忠勳府)에 잔치를 내려 주고 아울러 공장(工匠)들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제기도 옛날 제도(制度)에 맞지 않으며, 정결하지 않고 깨지거나 훼손된 것이 있으면, 청컨대 아울러 고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사직 제조(社稷提調)로 하여금 그것을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宗廟祭器都監堂上盧思愼等啓祭器畢造。 傳曰:"大祭後賜宴于忠勳府, 幷饋工匠。" 思愼等啓曰:"社稷祭器亦不合古制, 不精潔破毁者有之, 請幷改之。" 傳曰:"可令社稷提調監之。"
성종실록 252권	22년 1491-04-11 丙辰	경연이 파하자 사간 권경우가 윤은로는 군기시 제조로 적합하지 않음을 논핵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권경우(權景祐)가 윤은로가 군기시 제조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군기시 제조는 조종조(祖宗朝)에 더러 종친(宗親)으로 삼은 적이 있었으니, 지금 윤은로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신이 순행(巡行)하면서 여러 포구(浦口)에 이르렀는데, 고공(篙工)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왜선(倭船)·제주선(濟州船)·조선(漕船)을 새로 만들도록 하여 동시에 출발시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 내려가게 하였더니, 왜선이 가장 빨랐고 제주선이 그 다음이었으며 조선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하였는데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선은 판자가 얇아 빨리 가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선인 경우는 가운데 판자를 굽게 하기 때문에 안의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든 왜선은 가운데 판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이 좁으니, 청컨대 왜선의 체제(體制)를 다시 모방하여 더 만들어 시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신이 사직 제조(社稷提調)로서 제기(祭器)를 감독하여 주조(鑄造)하였는데, 그 중에서 옛날 제도에 맞지 않은 것은 이미 고쳐서 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쳐서 주조하지 않은 것이 또한 새로 주조한 제기와 같지 않으니, 청컨대 아울러 고쳐서 주조하게 하소서. 이에 앞서 제기를 간직하는 곳은 단지 한 간(間) 뿐이며 또 판자를 늘어놓을 곳도 없으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두어 칸을 더 짓고 또 장롱을 설치하여 간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御經筵。 講訖, 司諫權景祐啓:"尹殷老不宜提調軍器事。" 上曰:"軍器提調, 祖宗朝或有以宗親爲之, 今任殷老何妨?" 領事洪應啓曰:"臣巡到諸浦, 令篙工試令新造倭船、濟州船、漕船, 一時發之, 順流而下, 則倭船最疾, 濟州船次之, 漕船最遲; 逆流而上亦然, 此無他, 倭船板薄便疾故也。 然倭船則中板曲故內面廣, 今造倭船, 則中板不然, 故內狹。 請更倣倭船體制, 加造試之。 且臣以社稷提調, 監鑄祭器, 其不合古制者已改鑄, 其不改鑄者, 亦不如新鑄之器, 請幷改鑄。 前此, 藏祭器但一間, 又無地排板未便, 請加造數間, 又設櫥藏之。" 上曰:"可。"
성종실록 278권	24년 1493-05-08 辛丑	토목일에 대해 공조에 전지하다	공조(工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무릇 토목일과 영선(營繕)하는 것은 본조(本曹)에서 맡은 것인데, 외방(外方)의 공해(公廨)를 수리하고 영조(營造)하는 것은 관유(關由)로 본조에서 계품(啓稟)하여 시행하나, 경중(京中)의 제사(諸司)는 전혀 거치지 않고 그 제조(提調)가 긴요한 일인지를 헤아리지 않고서 어지러이 아뢰어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하므로 체통이 아주 없으니, 지극히 소요(騷擾)스럽다. 이 뒤로는 사직(社稷)·종묘(宗廟)·궁궐(宮闕) 등 중요한 곳 밖의 모든 제사(諸司)의 수리 따위 일은 본조에 신보(申報)하게 하여 본조에서 마땅한 일	傳旨工曹曰:"凡工作營繕, 本曹所管, 外方公廨修理營造, 則關由本曹啓稟施行, 而京中諸司, 則全不關由, 其提調不計緊歇, 紛紜啓達, 一時竝擧, 殊無體統, 至爲騷擾。 今後社稷、宗朝、宮闕重處外, 一應諸司修理等事, 竝令申報本曹, 本曹審其當否, 啓聞施行。"

			인지를 살피고 아뢰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86권	25년 1494-01-27 丁巳	사직단을 그려오도록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사관(史官)을 보내어 사직단(社稷壇)을 그려 오게 하라." 하니, 검열(檢閱) 강덕유(姜德裕)가 사직단 자리에 나아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傳曰: "遣史官圖社稷壇以來。" 檢閱姜德裕詣社稷壇位圖來以啓。
성종실록 287권	25년 1494-02-10 己巳	사직단에 비를 피할 설비를 갖추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직단(社稷壇)에는 사우(祠宇)가 없으니,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모든 집사(執事)들이 의복을 적시어 용모를 잃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집사(執事)가 배위(拜位)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산을 받도록 하지만, 단상(壇上)을 오르내릴 때는 우산을 제거하기 때문에, 모두 옷을 적시어 〈제관의〉 용모를 잃게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후에는 우구(雨具)와 유둔(油芚)을 설비하여 옷을 적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傳曰: "社稷壇無祠宇, 雨雪日諸執事無乃沾服失容乎?" 承政院啓曰: "執事於拜位, 則令人捧雨傘, 壇上乘降時去雨傘, 故皆沾服失容。" 傳曰: "今後令設雨具、油芚, 俾勿沾服可也。"
연산군일기 29권	4년 1498-06-14 己卯	사직서 제조 노사신 등이 담장을 수축할 것을 건의하다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노사신·구수영(具壽永)이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담장이 건국 초기에 쌓은 것이라서, 모두가 낮고 무너졌으므로, 수축하소서. 또 담장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담장과 연대어 집을 지은 자가 있어 너무나 설만(褻慢)한 듯하오니, 아울러 철거하게 하옵소서." 하니, 왕은 '가하다.'고 전교하였다.	社稷署提調盧思愼、具壽永啓: "社稷垣墻, 國初所營, 皆低微頹圮, 請修築。 且墻外居人, 或有連墻造家者, 似褻慢, 竝令撤去。" 傳曰: "可。"
연산군일기 61권	12년 1506-01-08 戊子	친히 성터를 살피고자 이르는 곳의 인가를 전부 몰아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내일은 마땅히 친히 성터를 살펴볼 것이니, 이전(李詮)의 집 앞길 이북과, 향교동(鄕校洞) 군보(軍堡) 이북과, 대사동(大寺洞) 사산군(蛇山君)의 집 이북과, 전의 감동(典醫監洞) 남편 병문(屛門) 이북과, 수진방(壽眞坊) 남리문(南里門) 이북과, 제용 감동(濟用監洞) 병문 이북과, 경복궁 하마비(下馬碑) 이북과, 삼칸 병문(三間屛門) 이북과, 송침교(松針橋)에서 사직(社稷)에 이르는 이북과, 서부 행랑(西部行廊)에서 현고 병문(懸鼓屛門)에 이르는, 이상의 인가는 전부 몰아내라." 하였다.	傳曰: "明日當親審城基, 自李詮家前路以北, 鄕校洞軍堡以北, 大寺洞蛇山君家以北, 典醫監洞南邊屛門以北, 壽眞坊南里門以北, 濟用監洞屛門以北, 景福宮下馬碑以北, 三間屛門以北, 松針橋至社稷以北, 西部行廊, 至懸鼓屛門以上, 全家刷出。"
중종실록 25권	11년 1516-06-28 戊寅	종묘·사직·문소전·연은전·영경전의 수복에게 수직을 철저히 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종묘(宗廟)·사직(社稷)·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영경전(永慶殿)의 수복(守僕)이 상시에 수직하는 것이 허술하고 밤에 순경(巡更)하지 않으므로 혹 뜻밖의 변이 있게 되니, 이제부터는 밤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순경하고 무사한지를 그 곳 관원에게 고하도록 해야 하고, 이 뒤로는 수복 등의 자리가 비는 대로 간택하여 차정(差定)하는 것이 옳으리라."	傳于政院曰: "宗廟、社稷、文昭、延恩殿、永慶殿守僕, 常時守直虛疎, 夜不巡更, 故或有意外之變。 自今以後, 每夜巡更達明, 無事與否, 告于其處官員, 可也。 今後守僕等, 隨闕揀擇差定, 亦可。"
중종실록 25권	11년 1516-07-09 戊子	사직에 지진이 일다	사직(社稷)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社稷地震。

② 선조-철종

권명	년월일	기사명	국역	원문
선조실록 26권	25년 1592-05-10 己巳	종묘 사직의 신주를 영숭전 협실에 봉안하다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를 개성에서 받들고 와서 영숭전(永崇殿) 좌우 협실(左右夾室)에 봉안했다. 대신이 제관을 보내어 위안제(慰安祭)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宗廟、社稷神主, 來自開城府, 奉安于永崇殿左右夾室。 大臣請遣官, 祭告慰安。
선조실록 27권	25년 1592-06-14 壬寅	대신들에게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문을 발송하도록 명하다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내부(內附) 할 자문(咨文)을 작성하여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영의정 최흥원, 참판 윤자신(尹自新) 등에게 명하여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세자를 배종하여 강계로 가서 보전하도록 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나누어 세자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상이 문밖으로 나와 말을 타고 박천(博川)으로 떠날 무렵에, 상례(相禮) 유조인(柳祖訒)이 말 앞에서 울면서 아뢰기를, “세자로 하여금 대가(大駕)를 따르도록 하여 환난을 함께 하소서.” 하니, 상이 가엾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서서 위로하고 타이르자 세자가 지송처(祗送處)에 서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였다.	上命大臣, 修內附咨文, 送遼東都司, 命領議政崔興源, 參判尹自新等, 奉廟社主, 陪世子, 往保江界, 分朝臣以從之。 上出門, 將乘馬, 向博川, 相禮柳祖訒, 泣啓於馬前曰:“願令世子隨大駕, 以共患難。”上惻然久立, 慰諭之, 世子立祗送處泣下, 諸臣皆揮淚以辭。
선조실록 34권	26년 1593-01-20 乙亥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사직과 종묘의 신주에 절을 하다	상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사직(社稷)의 신주를 전알(展謁)하고 전후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또 종묘 신주에 곡림(哭臨)하고 전후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였다.	上與世子, 率百官, 展謁社稷主, 行前後四拜禮, 又於廟主哭臨, 行前後四拜禮。
선조실록 35권	26년 1593-02-17 壬寅	대가가 가산에 머물다	대가가 이날 정주(定州)를 출발하여 가산군(嘉山郡)에 머물렀다. 상이 출발하려고 하면서 종묘 사직의 신주(神主)에 분향하여 예를 행하고, 동궁으로 하여금 그대로 머물면서 종묘 사직을 받들게 하였다.	大駕, 是日發定州, 次于嘉山郡。 上將發, 焚香行禮于廟社主, 令東宮仍在, 東宮陪奉廟社。
선조실록 48권	27년 1594-02-09 戊午	좌찬성 최황이 사직 대제를 원래의 사직을 수리해서 지낼 것을 건의하다	좌찬성 최황(崔滉)이 아뢰기를, “신이 사직(社稷) 대제(大祭)의 헌관(獻官)에 뽑혔는데, 이른바 사직이란 곳을 보니 바로 고(故) 장흥군(長興君)의 집이었습니다. 뜰 가운데 제단을 세웠는데 지세가 낮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 인마(人馬)가 밟고 다니던 더러운 곳으로서 존신(尊神)을 공경하는 뜻이 전연 없었습니다. 듣건대 본래 사직 자리에는 단유(壇壝)가 완연하고, 신주실(神主室)·전사청(典祀廳)·주방·풍물고(風物庫) 등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옛터를 수리하여 정결하게 제사지내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해 처리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左贊成崔滉啓曰:“臣差社稷大祭獻官。 所謂社稷, 卽故長興君家也。 設壇於庭中, 非但地勢卑下, 乃平時人馬踐踏汚穢之地, 其於尊神至敬之義蔑如也。 聞社稷本處, 壇壝宛然, 神主室、典祀廳、廚所、風物庫, 亦有之, 仍修舊基, 精潔享祀, 似合義理。 幸 命大臣議處。”上從之。
선조실록 55권	27년 1594-09-10 乙酉	좌찬성 정탁이 사단의 수리에 대해서 아뢰다	좌찬성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신이 동궁(東宮)을 배행(陪行)하고 복명한 후에 비로소 사직(社稷)의 유허(遺墟)를 봉심(奉審)할 수 있었습니다. 구단(舊壇)이 아직 있었는데 간가(間架)와 담장은 병화(兵火)에 잔파되어 거의 다 없어졌으므로 신의 마음이 꽉 메이는 것 같아 소리를 내어 곡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해조가 우찬성 최황(崔滉)의 서계로 인하여 수리할 일로서 이미 공사(公事)를 만들어 계하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해조의 공사를 가져다 보았더니, 실은 2월의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수리하여 고친 곳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난리를 겪은 후에 물력(物力)이 탕진되어 해조가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것인가 봅니다. 신이 하루 종일 두루 돌며 간심(看審)하였더니 무너진 데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다 거행하려면 역역(力役)이 아마도 모자랄 듯합니다. 또 생각하니 종묘(宗廟)도 아직 수리하지 못했는데 먼저 사단(社壇)의 간가를 일일이 수즙(修葺)하는 것은 혹 해야	左贊成鄭琢啓曰:“臣陪行東宮, 復命後, 始得奉審社稷遺墟, 則舊壇猶在, 而間架、垣墻, 兵火之餘, 殘破殆盡, 臣中心如噎, 不能出聲而哭。 卽聞該曹, 因右贊成崔滉書啓, 修治事, 已爲公事啓下云。 仍取該曹公事見之, 則實在二月日, 而至今不見修改處。 恐是經亂之後, 物力蕩盡, 該曹雖欲擧行而未及也。 臣仍彌日周廻看審, 則有頓處甚多。 若欲一時竝擧, 則力役恐有所難辦。 且念祖廟未修, 先擧 社壇間架, 一一修葺, 則或疑其非時。 臣意以爲, 姑令先就其中最急, 不得已先擧處外,

			할 때가 아닌 듯도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그 중에 제일 급하여 먼저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곳 외에는 적이 평정되고 난리가 끝나기를 기다려 종묘가 다 수리되는 날 아울러 거행하여 조종(祖宗)의 구업(舊業)을 복구하는 것이 시의(時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탁이 당시에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를 겸하였다. 】 하니, 상이 따랐다.	惟待賊平亂定, 祖廟修完之日, 同時竝擧, 以復祖宗之舊, 則恐合時宜。"【琢時兼 社稷署提調。】上從之。
선조실록 81권	29년 1596-10-07 庚午	예조가 종묘 신위의 위차와 제사 복색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중략) 당초 대가(大駕)가 환도했을 적에는 새로 병화(兵火)를 겪어 탕잔된 뒤라서 열성(列聖)의 신위를 봉안할 곳이 없었으므로 우선 개인 집으로서 조금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 그 청사(廳事)를 가려 임시로 모신 것이었으니, 본래가 법도에 맞는 당(堂)도 아니었거니와 오래 머무르게 할 계획도 아니었다. 이는 실로 조정이 처음부터 이것을 염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형편상 부득이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신은 일찍이 사직(社稷)의 위패를 옛 단소(壇所)로 이안(移安)할 적에 이런 미안한 뜻을 아울러 서계(書啓)하였고, 나중에 연중(筵中)에서도 아뢰었다. 지금 친제(親祭)의 거둥에 미쳐서 복일(卜日)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신은 이미 우러러 염려하였던 것인데, 해조에서 의처(議處)하기를 계청(啓請)한 것도 부득이해서 그랬을 것이다. "	禮曹啓曰: "' 當初大駕還都, 新經兵火蕩殘之餘, 列聖神位, 奉安無所, 姑就其私室稍完者, 擇其廳事權奉焉, 本非有制之堂, 亦非經久之計。 此則實非朝廷初不慮此而然也, 蓋亦勢迫於不得已者也。 臣嘗因社稷位版, 移安舊壇時, 以此未安之意, 竝爲書啓, 後於筵中, 又啓之矣。 今臨親祭擧動, 卜日節次之難, 臣固已仰慮也, 該曹之啓請議處者, 亦所不得已者也。'"
선조실록 91권	30년 1597-08-13 辛未	종묘와 사직의 신위를 각별히 호위할 것을 지시하다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의 신위(神位)를 평상시에는 어떻게 수직(守直)하였는가? 이와 같이 흉흉하고 위급한 때를 당하여서는 시위(侍衛)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믿을 만한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여 주야로 숙직(宿直)하면서 이탈하지 말고 호위하도록 해야 한다. 종묘에는 종실(宗室)로 하여금 당번을 나누어 숙직하여 의외의 변에 대비케하고 만일 국사가 어렵게 되면 그대로 숙직하던 사람이 바로 호위하게 하라. 이러한 일은 상세하게 살펴서 미리 시행해야 한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서 일의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할 수 없다. 마침 생각이 떠올랐기에 하는 말이니, 할 수 있으면 시행하고 할 수 없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뜻을 제조에게 은밀히 고하라."	備忘記, 傳于政院曰: 社稷、宗廟神位, 常時守直之事, 何以爲之? 當此洶洶危急之際, 侍衛不可疎脫, 宜別定可信人, 晝夜直宿, 不離扈衛。 如宗廟則或令宗室, 分番直宿, 以備意外, 而萬一國事蒼黃, 則仍以其人, 卽爲侍衛。 此等曲折, 察而預爲之可也。 予精神茫然, 事之是非, 未能知之。 適有所思故言之, 可爲則爲之, 不可爲則勿爲, 亦似無妨。 此意密告于提調。
선조실록 92권	30년 1597-09-12 己亥	사헌부가 종묘·사직의 봉환을 간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종묘와 사직이 옮겨지면 국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궁(東宮)이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떠나갔으니, 이것은 고금(古今)에 없는 큰 변입니다. 지금 삼가 듣건대 동궁을 소환하시었다고 하는데 종묘와 사직은 아직 봉환(奉還)하라는 명이 없으시니, 모르겠습니다만 장차 종묘와 사직을 대신(大臣)에 맡기려 하시는 것입니까? 동궁이 호종(扈從)하고 간 것도 이미 대단한 실례(失禮)가 되는 것인데, 대신이 받들고서 장차 어디에 안치할 것입니까? 성상(聖上)께서 여기에 계시니 종묘와 사직을 하루라도 밖에 둘 수 없습니다. 속히 봉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 어떻게 도로 받들고 오겠는가.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司憲府啓曰: "國以廟社爲主。 廟社遷則無國。 東宮之奉廟社以行, 此古今未有之大變。 今者, 伏聞召還東宮, 而廟社尙未有奉還之命。 臣等未知將以廟社, 付之大臣以行乎。 東宮之扈行, 已爲失禮之甚, 大臣奉之, 將置諸何地乎? 聖上在此, 一廟社, 不可一日在外。 請亟命奉還。" 答曰: "今何以還爲奉來? 似難矣。"
선조실록 92권	30년 1597-09-13 庚子	종묘·사직의 봉환, 중전 호위 인원의 감축, 죽산·이천의 방어를 사헌부가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성비(聖批)를 보건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도로 받들고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으니, 신들은 몹시 의혹스럽습니다. 국가는 종묘와 사직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참으로 외방(外方)에 봉안	司憲府啓曰: "臣等伏見聖批, 以還爲奉來似難。 臣等竊惑焉。 國以廟社爲主。 固不可在外, 而東宮旣已召還, 則奉行事, 決非大臣之所爲。 豈可以奉來

			(奉安)할 수 없습니다. 동궁을 이미 소환하셨다면 종묘와 사직을 봉행하는 일은 결코 대신(大臣)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받들고 오는 것을 어렵게 여겨 봉안해서는 안 될 지역에 그대로 봉안하십니까. 속히 받들고 돌아오도록 명하소서. 중전(中殿)께서 서쪽으로 거둥하실 때 응당 호위(扈衛)하는 관원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임시 관원을 차출하기도 하고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차송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분주하게 청탁하여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서(兩西)에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도리어 백관(百官)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재신(宰臣) 이하로 마땅히 호종해야 할 사람 이외에는,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일체 도태(淘汰)하여 돌아오도록 하게 하소서. 훈련 도감(訓鍊都監)을 특별히 설치하여 5~6년 동안 군사들을 조련시킨 것은 다만 오늘날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 내전께서 서쪽으로 거둥하실 때에 호위한다고 핑계하여 보낸 숫자가 무려 2백 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위하는 군사는 이미 본도(本道)에서 조발(調發)한 것이 있는데, 어찌 꼭 전쟁에 나갈 병사를 많이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정(物情)이 놀라고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도감(都監)의 차지 당상(次知堂上)과 낭청(郎廳)을 모두 피직시키고, 초군(哨軍)은 속히 불러 돌아오도록 하여 전쟁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명하소서. 왜적의 기세가 호서(湖西)에 꽉 차 장차 경기(京畿)에 들이닥칠 형편입니다. 수원(水原) 일로(一路)에는 이경준(李慶濬)과 조경(趙儆)을 보냈지만, 죽산(竹山)과 이천(利川) 길에는 아직까지 한 장수도 보내어 파수하도록 한 일이 없습니다. 왜적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고 상류(上流)를 방어하는 것도 믿을 데가 없으므로 앞으로의 일을 말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급히 조치하도록 하소서. 제도(諸道)에서 징집한 병사는 본래 적을 방어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요사이 4도(道)의 군사들이 모두 성 안에 모였는데도 비변사는 그들을 운용할 줄 몰라 병사를 보내 무찌르는 일을 모른 체하고 있으며, 병조는 그저 꼴을 베고 쇄마(刷馬)하는 따위의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軍情)이 일제히 분개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왜적이 이르기도 전에 인심이 먼저 무너졌으니, 혈기(血氣)가 있는 사람들은 통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비변사 유사 당상과 병조 당상을 모두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일은 이미 의논해서 처리한 것이다. 초군(哨軍)에 대한 일은 그 자세한 곡절은 모르겠지만 이미 호위하라고 보냈으니 지금 불러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爲難, 而仍爲奉安於不當安之地乎? 請亟命奉還。 中殿西幸, 應在扈衛之官, 未爲不足, 而此外或差假官, 或有不應行而差送, 至有奔走請囑而往者, 非徒貽弊於兩西, 京師則反不成百官模樣, 極爲寒心。 請宰臣以下應爲扈從者外, 令吏、兵曹, 一切汰還。 別設訓鍊都監, 五六年操鍊軍兵者, 只爲今日之用, 而 內殿西幸時, 托以扈衛, 發送之數, 多至二百五十餘名。 扈衛之軍, 旣有本道之調發, 豈必多送赴戰之士乎? 物情莫不駭憤。 請都監次知堂上, 郎廳, 竝命罷職, 哨軍則速爲徵還, 以備戰用。 賊勢充斥湖西, 將迫畿輔。 水原一路, 雖遣李慶濬、趙儆, 而竹山、利川之路, 尙無遣一將把截之事。 賊之所向, 了不得知, 上流防守, 亦無所恃, 前頭之事, 有不忍言。 請令備邊司, 急急措置。 諸道徵兵, 本爲禦敵之用。 近者四道之軍, 俱集城中, 而備邊司則不知運用, 發送勦截之擧, 置之相忘, 兵曹則只令驅使於刈草刷馬等役, 軍情齊憤, 怨讟盈路。 寇賊未至, 人心先潰, 凡有血氣, 莫不痛惋。 請備邊有司堂上、兵曹堂上, 幷命推考。" 答曰: "廟社事, 已爲議處。 哨軍事, 雖不知其間曲折, 而已因扈衛發送, 今不可徵還。 餘依啓。"
선조실록 92권	30년 1597-09-16 癸卯	사헌부가 종묘·사직의 봉환, 부제학 신식의 추고를 주장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동궁(東宮)을 소환(名還)하면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은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그대로 봉행하게 하니, 이것이 과연 대신이 봉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을 수 없는데 성상(聖上)께서는 여기에 계시고 종묘와 사직은 밖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고 인심을 결집시키는 방도이겠습니까. 정리(情理)로 헤아려 보건대 지극히 미안스러우니, 속히 봉환(奉還)하도록 명하소서.	司憲府啓曰: "今者召還東宮, 而廟社則使大臣, 仍爲奉行, 此果大臣之所當奉行者乎? 國不可一日無廟社, 而聖上在此, 廟社在外, 此豈格天意萃人心之道乎? 揆之情理,極爲未安, 請亟命奉還。 特遣近臣, 宣召東宮, 事體極重。 旣受此命, 則決非人臣顧私之日, 且於還駕

			근신(近臣)을 특별히 보내 동궁의 소환을 선유하는 일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대하니, 일단 이 명령을 받았으면 절대로 신하가 사사로운 일을 돌아볼 때가 아니며 또 환가(還駕)할 때에도 호위하여 서울에 들어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제학 신식(申湜)은 동궁을 소환하러 가는 것을 빌미로 마침내 근친(覲親)할 계획을 세워 상소까지 하였으니, 너무도 형편이 없습니다. 추고(推考)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종묘 사직에 대한 일은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신식을 추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之時, 所當隨衛入京, 而副提學申湜, 因東宮宣召之行, 遂爲覲親之計, 至於陳疏, 其無謂甚矣。 請(一)命推考。" 答曰: "廟社事已爲議定。 申湜推考, 依啓。"
선조실록 92권	30년 1597-09-17 甲辰	사헌부가 홍여순·조정립·이심·민선·홍경신의 처벌과 종묘·사직의 봉환을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워 잠시도 보장할 수 없으니, 이런 때를 당하여 신하가 된 자는 심력(心力)을 다하여 생사를 돌보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적의 소식이 급박하다고 보고된 후로는 조정의 여러 신료(臣僚)들이 서로 잇따라 도망갈 뿐 아니라, 재시(宰侍)로서 유식한 사람들까지도 외방(外方)에서 어정거리면서 관망하는 자가 많아 군부(君父)의 급난(急難)을 보고도 달려오지 아니하니, 군신(君臣)의 대의가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동지중추부사 홍여순(洪汝諄)은 정경(正卿)의 반열에 있는 신분으로서 해가 지나도록 시골에 물러가 있으며, 전 전적(典籍) 조정립(趙正立)과 직강(直講) 이심(李諶)은 모두 시종(侍從)하는 사람으로서 정사(呈辭)하고 한번 떠나간 뒤로는 오래도록 조정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종묘(宗廟)·사직(社稷)이 이미 옮겨지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달여오지 아니하니, 여론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모두 파직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전 정(正) 민선(閔善)은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하여 바로 도망갈 계책을 꾸며 가족을 거느리고 먼저 빠져나갔으므로 현저하게 탄핵당하여 파직되었으나 도로 서용(敍用)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으니 여론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쓰여진 이름은 삭제하는 등의 일을 승전(承傳)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이조 좌랑 홍경신(洪慶臣)은 양 찰원(楊察院)의 접반사 종사관(接伴使從事官)으로 서울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뒤에 처져 바로 복명(復命)하지 않았으니 사명(使命)을 받든 신하로서의 의리를 자못 잃어버렸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신들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봉환(奉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전후에 걸쳐 의논드린 것이 지금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동궁(東宮)을 이미 소환하고서도 아직까지 봉환하라는 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정례(情禮)로 헤아려보건대, 지극히 미안스러우니 속히 봉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여순 등은 다만 파직만 시키고 홍경신과 민선에 대해서는 아뢴 대로 하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일은 다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司憲府啓曰: " 國勢岌岌, 朝夕莫保。 當此之時, 爲人臣子者, 所當盡瘁, 死生以之, 而賊報告急之後, 非但在朝庶僚, 相繼逃竄, 以至宰侍有識之人, 亦多徘徊觀望於外方,不赴君父之急難, 君臣大義, 掃地盡矣。 此而不懲, 何以爲國? 同知中樞府事洪汝諄, 身居正卿之列, 經年退在鄕曲,前典籍趙正立、直講李諶, 俱以侍從之人, 呈辭一去之後, 久不還朝, 至於廟社旣遷, 而尙不奔赴, 物情莫不駭愕。 請竝命罷職不敍。 前正閔善, 當此危急之時, 便生逃竄之計,挈家先出, 顯被劾罷, 而旋蒙敍命, 物情極以爲未便。 請削去書名等事, 依承傳施行。 吏曹佐郎洪慶臣, 以楊察院接伴使從事官, 入京已久, 而任然落後, 不卽復命, 殊失人臣奉使之義。 請命罷職。 臣等將廟社不可不奉還之意, 前後論列, 今已累日, 尙未蒙允, 臣等不勝悶鬱焉。 國不可一日無廟社, 而東宮旣已召還之後, 猶未聞奉還之命。 揆之情禮, 極爲未安。 請亟命奉還。" 答曰: "洪汝諄等, 只罷職。 洪慶臣、閔善, 依啓。 廟社事, 更議大臣處之。"
선조실록 92권	30년 1597-09-27 甲寅	종묘·사직의 신주들을 내관 방준호의 집에 임시로 모시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나라에는 하루라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만 성밖으로 나가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래에 왜적이 몹	禮曹啓曰: "國不可一日無廟社。 一日出城則其國亡矣。 近因賊鋒甚逼, 爲此不得已之擧, 及賊小退, 則所當卽爲奉

			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일을 하였지만, 왜적이 조금 물러가기만 하면 바로 봉영(奉迎)해 와야 하는데 중국 병사가 가득 차 봉안(奉安)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의 의견이 잠시 신묘(新廟)가 완공되기를 기다렸다가 봉영해 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력(物力)이 고갈되고 백성들도 모이지 아니했으므로 부득이 병조(兵曹)로 하여금 징병(徵兵)과 도방군(到防軍)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그 숫자대로 뽑아 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京畿) 등 각도의 도체찰사(都體察使)에게 말하는 한편 의엄(義嚴)을 불러 전일에 부역나온 승군(僧軍) 60~70명을 거느리고 급히 나오도록 하였지만 의엄도 역시 미처 오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큰 역사(役事)를 얼음이 얼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신묘(新廟)의 문 밖에 내관(內官) 방준호(方俊豪)의 집이 있으니 이 집을 수리하여 어실(御室)을 삼을까 합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종묘와 사직을 일로(一路)의 협소하고 누추한 여염집에 봉안하였다고 하니, 차라리 먼저 방준호의 집을 수리하여 임시로 봉안하였다가 묘역(廟役)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봉안하면, 신민(臣民)들의 마음에도 위안되는 바가 있을 듯합니다. 이 뜻을 대신에게 하문하여 만약 옳다고 한다면 급급히 날을 가려 봉영(奉迎)해 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흥원(崔興源)이 이미 묘사 제조(廟社提調)를 겸하고 있으나 내전(內殿)이 머무르는 곳에도 역시 대신이 없을 수 없으니, 여기에 있는 대신 한 사람에게 양서(兩署)의 도제조(都提調)를 겸임시켜 본조(本曹)의 당상 및 승지 각 1명과 함께 가서 맞이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듯싶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迎, 而爲緣天兵充滿, 無處奉安。 大臣之意以爲, 少待新廟修完, 始爲奉迎云, 而物力罄竭, 人民未集, 不得已令兵曹, 定送徵兵、到防軍, 而徵兵已散諸處, 到防軍則今日始爲點考, 未知此後定送, 能如其數否也。 言于京畿等道都體察使, 又招義嚴, 領前役僧軍六七十名, 火迫進來, 而義嚴亦未及到。 如是而其何能辦此大役於未氷之前乎? 伏見新廟門外, 有內官方俊豪家, 欲修理此家, 以爲御室矣。 臣等伏聞廟社, 一路奉安閭家狹陋之地云。 寧先修理方俊豪家, 早爲奉安, 以待廟役完畢奉安, 則臣民之心, 似有所慰。 此意問于大臣, 如以爲可, 則急急擇日奉迎。 而崔興源旣兼廟社提調, 內殿留住之處, 亦不可無大臣。 以在此大臣一員, 兼差兩署都提調, 與本曹堂上及承旨各一員, 往迎前來, 似爲便當。 敢稟。" 上曰: "依啓。"
선조실록 93권	30년 1597-10-17 甲戌	종묘와 사직을 봉환하는 예문에 대해 정언 이이첨이 이의를 제기하다	정언 이이첨(李爾瞻)이【천성이 영특하고 기개가 있으며 간쟁하는 풍도가 있었다. 사간은 이상신(李尙信)인데 유약하여 강직하지 못했다. 정언은 조즙(趙濈)이다.】 와서 아뢰기를, "흉적이 조금 물러가고 종묘 사직이 다시 돌아왔으니 온 나라 신민(臣民)의 비감(悲感)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상께서 교외에 나아가 직접 맞는 것이 예의상 당연한 것인데 삼가 해조의 공사를 듣건대, 열성(列聖)의 신주가 밤에 들어오고 분향례(焚香禮)도 그 이튿날 거행한다 하니,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때 지극히 미안합니다. 옛적에는 군행(軍行)에 신주를 싣고 다녔다 하니, 오늘의 일을 어찌 이와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儀仗)을 갖추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구차히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교외에서 친영(親迎)하시는 예를 행하여 미진한 일이 없도록 하소서. 또한 사직을 도로 편안히 모시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인데 봉안한 후에 제사지내는 의전이 없고 또 상께서 분향하는 예도 없으면 미안합니다. 예문에 이러한 절목이 없더라도 변례(變禮)를 당하면 어찌 참작해서 중도에 맞게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급히 해조에 명하여 다시 의론해서 시행하소서. 중국 장수를 접대함은 사체가 매우 중대하니 가고 올 때에 전송하고 맞는 예절을 정원에서 미리 아뢰어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마 제독(麻提督)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 상께서 직접 한강까지 나가서 전송하시는 것이 예의상 마땅한데, 정원에서 전혀 살피지 않아 성상의 중국 장수를 우대하는 성의가 사세의 총망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행해지지 못하게 되었으니, 직	正言李爾瞻【天資英雅, 性又慷慨, 有諫諍風。 司諫李尙信, 和柔少剛。 正言趙濈。】來啓曰: "兇賊少退, 宗社重還, 一國臣民之悲感, 寧有極乎? 自上出郊親逆, 禮所當然, 伏聞該曹公事, 列聖神位, 冒夜入來, 而焚香之禮, 在於翌日。 揆諸情禮, 極爲未安。 古者軍行, 載主以行。 今日之事, 何以異此? 不可以儀仗之草草, 而爲此苟簡之擧。 請於郊行親迎, 俾無未盡之事。 且社稷還安, 國之大事, 而奉安之後, 別無設祭之典, 又無自上焚香之禮, 亦爲未安。 禮文內, 雖無此節目, 而當變禮, 豈無參酌得中之事乎? 請亟令該曹, 更議(馳)［施］行。 接待天將, 事體極重, 往來迎餞之節, 政院所當預爲稟定, 而頃日麻提督南下時, 自上親餞江上, 禮亦宜之, 政院專不致察, 使聖上優待天將之盛意, 因事勢匆遽, 終不得及行, 其不職甚矣。 請色承旨及都承旨, 竝命推考。" 答曰: "令該曹, 議大臣處之。

			무를 수행치 못함이 심합니다. 청컨대 색승지와 도승지를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대신과 의론해서 처리하게 하고 추고도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推考, 依啓。"
선조실록 93권	30년 1597-10-21 戊寅	사직의 신실을 지키는 군사를 증원해 달라고 사직서가 간청하다	사직서(社稷署)가 아뢰기를, "사직 신실(社稷神室)이 사람도 없는 궁벽한 산골짜기에 있는데 난리를 겪은 후에 담장을 모두 철거했고 사방에 이웃도 없으니, 만약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뜻밖의 걱정이 꼭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태평할 때 군사가 16명이나 되었어도 오히려 부족한 걱정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에 와서 2명의 군사로 어떻게 무사함을 바라겠습니까. 전부터 아뢰어 더 증원해 달라고 청했는데 해조에서 으레 방계(防啓)하니 어찌 군사가 없다는 이유로 극히 중대한 사직의 지역을 이와 같이 허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군사가 귀한 때으므로 비록 전과 같이 정해서 보낼 수는 없지만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정하게 하소서. 또한 신위(神位)를 받들어 온 후에 중국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서 소나무를 도벌하고 혹은 신실(神室)에도 돌입하여 매번 부수고 하니 이같은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끝내 뜻밖의 걱정이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통사(通事)를 차출하여 그로 하여금 타이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社稷署啓曰: "社稷神室, 僻在山谷無人之地, 經亂之後, 攔墻盡撤, 四無隣比, 若不嚴飭守直, 則意外之患, 難保其必無。 昇平時, 軍人之多, 至於十六, 猶患不足, 況今二名之軍, 安望其無事乎? 自前啓請加定, 而該曹例爲防啓。 豈可諉以無軍, 而使社稷至重之地, 若此其虛疎哉? 當此乏軍之際, 雖未能如前定送, 而令該曹, 量宜加定。 且自神位奉還之後, 唐人攔入墻內, 斫伐松木, 或突入神室, 每欲打破開見。 若此不已, 恐有意外之患。 請令該司, 差定通事, 使之開諭何如?" 傳曰: "依啓。"
선조실록 136권	34년 1601-04-17 甲申	제기 도감이 각종 제기와 의물을 만드는데 물자가 부족함을 보고하다	제기 도감(祭器都監)이 아뢰기를, "묘사(廟社)와 각능의 각종 제기와 의물(儀物)을 만들 것으로 계하하셨는데 그에 소요되는 주철(鑄鐵) 등 물자는 대개 수만 근이 있어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물력이 바닥이 난 때에 그만한 것을 마련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혼전(魂殿) 제기의 예와 같이 작(爵)·보(簠)·궤(簋)·용작(龍勺) 등 사물(四物)만 마련한다면 소요되는 주철은 3천여 근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작과 용작만 먼저 만들고, 보와 궤는 주철이 마련되는 대로 형편을 보아 가면서 점차로 만들되, 기타는 우선 사기로 구워서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영녕전(永寧殿)과 종묘(宗廟) 양전(兩殿)의 의물(儀物) 중 청홍개(靑紅蓋)는 명주로 마련하려면 8백 필이 있어야 하고 홍화(紅花)와 청대(靑黛)도 수효대로 맞추어 마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는 해사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봉작(鳳雀)과 함께 시기를 기다려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사직(社稷)의 제기가 마련되면 문묘(文廟)만 빠져 구비되지 못하니, 미안할 듯합니다. 아울러 준비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祭器都監啓曰: "廟社各陵, 各樣祭器儀物造成事啓下, 故所入鑄鐵等物, 大概數萬斤, 可以成形, 而當此物力薄竭之時, 辦出無路。 依魂殿祭器例, 爵簠簋龍勺等四物磨鍊, 則該用鑄鐵, 當至三千餘斤, 而亦難卒備。 爵及龍勺, 爲先造成, 簠簋, 隨鑄鐵所得多寡, 漸次措備, 其餘則姑以沙器燔造爲當。 永寧殿宗廟兩殿儀物, 靑紅蓋以綿紬磨鍊, 則其數八百匹。 紅花靑黛, 準數措備, 其勢未由。 此則令該司預備, 幷與鳳雀, 待時造作, 亦似便當。 社稷祭器造成, 則獨於文廟, 闕而不備, 似爲未安, 幷爲措備宜當。 敢啓 。" 傳曰: "知。"
선조실록 160권	36년 1603-03-27 癸未	사직서가 사온서의 노비를 이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다	사직서(社稷署)가 아뢰기를, "사직서는 다른 각사(各司)에 비할 것이 아닌데 난 후 전복(典僕)이 흩어져 버리고 단지 소격서(昭格署)의 노자(奴子) 2명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다른 관사의 노자를 이속(移屬)시켜달라고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마저 모두 나이가 많아서 제하(除下)하고 단지 동노(童奴) 1명이 있을 뿐입니다. 제물(祭物)을 장만하는 일을 동자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온서(司醞署)의 노자는 남아 있는 자가 자못 많으니 3~4명을 뽑아서 본서에 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社稷署啓曰: "社稷, 非他各司之比, 而亂後典僕散亡, 只有昭格署奴子二名, 入啓移屬, 今皆年老除下, 止有童奴一名。 祭物烹飪之事, 非一童子所可堪。 司醞署奴子, 存者頗多, 抽出三四名, 移屬本署何如?" 傳曰: "言于刑曹, 回啓處之。" 【史臣曰: "內需司奴婢, 其數極多, 宗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에 일러서 회계(回啓)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내수사 노비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종사(宗社)의 전복은 이와 같이 빈약한데도 1명의 이속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종사를 아끼는 것이 내수사를 아끼는 것만 못한 것이다. 더구나 군액(軍額)이 아주 없는 때를 당해서도 궐액(闕額)을 보충해 주려 하지 않으니, 종사가 망하고 나서도 내수사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社典僕, 苟簡若此, 而不許移屬一名。 是愛宗社, 不如愛內需司也。 況當此軍額板蕩之日, 亦不肯許補闕額。 宗社旣亡, 而能保內需司乎?”】
선조실록 212권	40년 1607-06-09 庚子	사직단 소나무를 송충이가 갉아 먹다. 예조에서 장무 관원의 처벌을 요청하다	좌승지 이선복(李善復)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사직단(社稷壇) 밖 남·서·북(南西北) 3면의 허다한 소나무를 송충이가 잎을 갉아먹어 보기에 매우 놀라운데, 본서(本署)의 관원(官員)은 시종 제조(提調)에게 말하지 않아 단수(壇樹)가 거의 고사(枯死)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자들에게 위촉(委屬)할 수 없습니다. 장무 관원(掌務官員)을 먼저 추고하여 치죄하고, 벌레잡는 일은 해당 관원이 전혀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으니, 한성부 낭청으로 하여금 방민(坊民)을 많이 거느리고서 본서의 관원과 함께 기어이 다 잡아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左承旨李善復以禮曹言啓曰: “社稷壇外, 南西北三面許多松樹, 蟲食其葉, 所見極爲可駭。 而本署官員終始不言於提調, 以致壇樹幾盡枯死, 委屬未便。 掌務官員爲先推考治罪, 捕蟲之事, 該官專不動念擧行, 令漢城府郎廳, 多率坊民, 與本署官員眼同, 刻期盡捕何如?” 傳曰: “允。”
선조실록 212권	40년 1607-06-15 丙午	헌부에서 수원 부사 성윤문·사직서 관원·만경 현령 송계록 등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성윤문(成允文)은 성품이 본래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전에 관서(關西)에 있을 때 군졸을 침학하였고, 본직에 제수됨에 미쳐 온 부(府)의 정사를 오로지 간리(奸吏)에게 맡겼으며, 거기다가 징렴(徵斂)이 끝이 없어 경내가 시끄러우니 이러한 사람을 하루라도 관(官)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거듭 해를 끼치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근래에 모든 신하들이 업무에 태만하여 맡은 일을 폐기하니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서(社稷署)에 2백 년 된 교목(喬木)이 하루 아침에 다 충해(蟲害)를 입어 보기에 참혹하고 슬픈데도 본서(本署)의 관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즉시 보고하여 잡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의 장무관을 파직하소서. 만경 현령(萬頃縣令) 송계록(宋啓祿)은 도임한 후에 날마다 자신 살찌우기만을 일삼아 관고(官庫)의 물건을 공공연히 훔쳐 내어 그의 집으로 실어 보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憲府啓曰: “水原府使成允文, 性本貪縱, 前在關西, 侵虐軍卒。 及授本職, 一府之政, 專委奸吏, 加以徵斂無藝, 闔境嗷嗷。 如此之人不可一日在官, 重貽民害, 請命罷職。 近來百隷怠官, 廢棄職事, 識者之寒心久矣。 今者社稷署, 二百年喬木, 一朝盡爲蟲損, 所見慘惻。 本署官員置之相忘, 不卽轉報捕滅, 其不職之罪, 不可不治。 當初掌務官, 請命罷職。 萬頃縣令宋啓祿, 到任之後, 日以肥己爲事, 官庫之物, 公然偸出, 輸送其家, 極爲駭愕。 請命罷職。” 答曰: “依啓。”
광해군일기(중초본) 27권	2년 1610-03-28 癸酉	사직 영건청을 설치하여 무너진 단문과 유문을 보수케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국사(國社)는 중요한 곳인데 단문(壇門)과 유문(壝門)이 모두 무너졌으니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근래 수선하는 곳이 매우 많아 해사(該司)의 재정이 지탱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만둘 수 없는 공사입니다. 앞으로 친제(親祭)가 멀지 않으니, 속히 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관원에게 맡겨 두어서는 필시 전과 같이 안일하게 세월만 보낼 것이니 결코 완성될 리가 없습니다. 호조와 공조의 당상 각 1원(員)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사직 영건청(社稷營建廳)을 설치하고, 부묘(祔廟)한 뒤에 즉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승전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癸酉禮曹啓曰: “國社重地, 壇門、壝門無不崩頹, 極爲未安。 近來營繕處甚多, 該司物力, 雖曰難支, 此則不可廢之役也。 前頭親祭不遠, 尤不可不速爲修治。 付之於該官, 則必如前玩揭, 決無得成之理。 戶、工曹堂上各一員, 次知句管社稷營建廳稱號, 祔廟後, 卽爲始役(事, 捧承傳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정초	2년 1610-03-28 癸酉	사직 영건청을 설치하여 무너진 단문과 유문	예조가 아뢰기를, “국사(國社)는 중요한 곳인데 단문(壇門)과 유문(壝門)이 모두 무너졌으니	禮曹啓曰: “國社重地, 壇門、壝門, 無不崩頹, 極爲未安。 近來營繕處甚多,

본) 27권		을 보수케 하다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근래 수선하는 곳이 매우 많아 해사(該司)의 재정이 지탱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만둘 수 없는 공사입니다. 앞으로 친제(親祭)가 멀지 않으니, 속히 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관원에게 맡겨 두어서는 필시 전과 같이 안일하게 세월만 보낼 것이니 결코 완성될 리가 없습니다. 호조와 공조의 당상 각 1원(員)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사직 영건청(社稷營建廳)을 설치하고, 부묘(祔廟)한 뒤에 즉시 공사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該司物力, 雖曰難支, 此則不可廢之役也。 前頭親祭不遠, 尤不可不速爲修治。 付之於該官, 則必如前玩揭, 決無得成之理。 戶、工曹堂上各一員, 次知句管社稷營建廳稱號, 祔廟後, 卽爲始役。” 傳曰: “允。”
광해군일기(중초본) 30권	2년 1610-06-03 丙子	사직제 행사시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들을 처벌케 하다	전교하였다. “지난날 사직제(社稷祭)를 지낼 때에, 어막(御幕)의 휘장에 진흙이 잔뜩 묻어 꼴이 말이 아니었으니, 매우 불경한 일이었다. 궁내에서 배설을 맡은 사약(司鑰)을 추문(推問)하니 ‘상급 아문에서 힘으로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결했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의 기강을 이 일을 통하여 알 만하다. 일단 어막을 설치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멋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가. 전설사(典設司) 관원과 배설 사약 등을 모두 먼저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라. 앞으로 어막에 쓰이는 물품들은 완전하게 갖추어 따로 비치하고, 전날의 폐습을 답습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어기거나 태만한 자가 있다면 엄중하게 다스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傳曰: “頃日社稷祭時, 御幕帳帷, 泥土滿塗, 汚穢無形, 事甚不敬。 自內推問排設司鑰, 則上司衙門, 以威力取用, 故如是不潔云云。 人心國綱, 此可知矣。 旣曰御幕所排, 則何敢恣意取用而無忌憚乎? 典設司官員及排設司鑰等, 竝爲先推考治罪。 今後御幕所用之具, 精備別置, 勿踵前習。 如有違慢者, 重治不饒。”
광해군일기(정초본) 30권	2년 1610-06-03 丙子	사직제 행사시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들을 처벌케 하다	전교하였다. “지난날 사직제(社稷祭)를 지낼 때에, 어막(御幕)의 휘장에 진흙이 잔뜩 묻어 꼴이 말이 아니었으니, 매우 불경한 일이었다. 궁내에서 배설을 맡은 사약(司鑰)을 추문(推問)하니 ‘상급 아문에서 힘으로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결했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의 기강을 이 일을 통하여 알 만하다. 일단 어막을 설치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멋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가. 전설사(典設司) 관원과 배설 사약 등을 모두 먼저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라. 앞으로 어막에 쓰이는 물품들은 완전하게 갖추어 따로 비치하고, 전날의 폐습을 답습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어기거나 태만한 자가 있다면 엄중하게 다스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傳曰: “頃日社稷祭時, 御幕帳帷, 泥土滿塗, 汚穢無形, 事甚不敬。 自內推問排設司鑰, 則上司衙門, 以威力取用, 故如是不潔云云。 人心國綱, 此可知矣。 旣曰御幕所排, 則何敢恣意取用, 而無忌憚乎? 典設司官員及司鑰等, 竝爲先推考治罪。 今後御幕所用之具, 精備別置, 勿踵前習。 如有違慢者, 重治不饒。”
광해군일기(중초본) 35권	2년 1610-11-20 辛酉	사직단의 수리와 감독을 맡은 자를 모두 서계하라고 이르다	전교하였다. “사직단(社稷壇)의 수리 및 그 감독과 관계된 당상·낭청·하인·공장(工匠) 등을 모두 서계(書啓)하라고 〈영건청(營建廳)에 말하라.〉”	傳曰: “社稷修理監董堂上、郎廳、下人、工匠等竝書啓(事, 言于營建廳)。”
광해군일기(정초본) 35권	2년 1610-11-20 辛酉	사직단의 수리와 감독을 맡은 자를 모두 서계하라고 이르다	전교하였다. “사직단(社稷壇)의 수리 및 그 감독과 관계된 당상·낭청·하인·공장(工匠) 등을 모두 서계(書啓)하라.”	傳曰: “社稷修理監董堂上、郎廳、下人、工匠等, 竝書啓。”
광해군일기(중초본) 54권	4년 1612-06-06 己巳	사직 제조가 미비한 사직 제기를 갖추는 것에 대해 아뢰다	〈사직 제조(社稷提調)가 아뢰기를, “난리 후 미비한 사직 제기(社稷祭器)의 숫자가 20여 건에 이르러 자못 흠전(欠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 도감(祭器都監)이 종묘와 각 능소의 미비한 제기를 만들고 있는데, 사전(社典)의 중한 바는 종묘와 사직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잃으면 다시 조성할 희망이 없으니, 미비한 제기를 도감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조치하여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社稷提調啓曰: “社稷祭器, 亂後未備之數, 至於二十餘件, 殊爲欠典。 今者祭器都監, 方造宗廟、各陵未備祭器, 祀典所重, 廟社一體, 若失此時, 更無造成之望, 未備祭器, 令都監竝爲一體措備何如?” 傳曰: “依啓。”)

광해군일기(중초본) 95권	7년 1615-09-24 丁酉	임금이 사직동에 있는 대원군 사묘에 가 친제하다	진시에 왕이 사직동(社稷洞)에 있는 대원군 사묘(私廟)에 가 친히 제사지내고 〈신시에 환궁하였다.〉	辰時, 幸王詣社稷洞大院君祠/私廟親祭。 (申時, 還宮。)
광해군일기(정초본) 95권	7년 1615-09-24 丁酉	임금이 사직동에 있는 대원군 사묘에 가 친제하다	진시에 왕이 사직동(社稷洞)에 있는 대원군 사묘(私廟)에 가 친히 제사를 지내셨다.	辰時, 王詣社稷洞大院君祠廟, 親祭。
광해군일기(중초본) 101권	8년 1616-03-24 甲午	영의정이 새 궁궐터 잡는 일에 관상감 제조 박홍구를 동참하게 할 것을 청하다	영의정이 아뢰기를, “이번에 인왕산 아래에다 터를 잡는 일은 사체가 중대한데, 실로 그 말이 흠이 없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단지 기자헌 혼자만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좌찬성 박홍구(朴弘耉)는 관상감 제조이니, 그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성지(性智)는 미친 중으로, 스스로 지리(地理)에 대한 방서(方書)를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언문으로 풍수(風水)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말이 예전 방술대로 하지 않아 괴이하고 어긋나서 가소로웠다. 그는 ‘인왕산은 돌산으로 몹시 기이하게 솟아 있으며, 또 인왕(仁王)이란 두 글자가 바로 길한 참언(讖言)이다. 그러므로 만약 왕자(王者)가 그곳에 살 경우 국가의 운수를 늘릴 수 있고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떠들어 대었으며, 또 ‘국초(國初)에 사직단(社稷壇)의 터를 이곳에 잡은 것은 당시의 술사(術士)가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였다. 그러니 사직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 그 터에다 궁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임금이 편안하게 지내면 사직 역시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옮겨야지 무슨 의심을 둘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크게 놀랐다. 이에 드디어 사단(社壇)의 담장 바깥에다 궁궐의 터를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제(社祭)에 쓰는 시루[甑]가 저절로 소리를 내어 그 소리가 1리 밖까지 들렸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궁궐의 터로 잡아 담장을 무너뜨리고 터를 닦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응험이라고 하였다. 인왕(仁王)은 석가(釋迦)의 미칭(美稱)으로 산에 예전에 인왕사(仁王寺)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었다. 성지가 일찍이 그의 어미의 뼈를 창원(昌原) 안골포(安骨浦) 불모동(佛母洞)에 장사지내고는 말하기를 ‘나의 후신(後身)은 부처가 될 것으로, 포와 동의 이름이 모두 그에 앞선 조짐이다.’고 하였다. 대개 불모동의 본이름은 ‘불못[火池]’으로 노야(爐冶)의 이명(異名)이었다. 동에 예전에 철로(鐵爐)가 있었으므로 ‘불못’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불모(佛母)’와 속음(俗音)이 비슷하므로 그렇게 칭한 것이었다. 성지가 방서(方書)에 대해 모르므로 속설(俗說)로 꾸며대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領議政意舍人啓曰:“今此仁王山下相基之事, 事體重大, 實未知其言之無欠與否。 而政府只有臣奇自獻極爲未安。 左贊成朴弘耉乃是觀象監提調, 使之同參爲當。 敢啓。”【性智, 狂僧也。 自言能解地理方書, 而目不知文字, 以諺書論風水, 其言不依古方, 怪謬可笑。 倡言:“仁王山石山突起甚奇, 又仁王二字, 乃是吉讖。 若王者居之, 曆數可延而太平可興。”又曰:“國初卜社稷基于此, 當時術士, 必有意見。 宜遷社稷於他所, 而卜宮其址。 君父享安, 則社稷亦固, 當遷何疑?”聞者大駭。 遂卜基於社壇墻外。 先是, 社祭飯甑自鳴, 聲聞一里, 未幾卜宮, 壞墻拓址, 人以爲其應。 仁王釋迦之美稱也, 山舊有仁王寺故名。 性智嘗葬其母骨于昌原安骨浦佛母洞曰:“吾後身爲佛, 浦洞名, 皆先兆也。”蓋洞本名火池, 乃爐冶之異名。 洞舊有鐵爐故名火池, 與佛母俗音相似, 故幻而稱之。 性智不曉方書, 故文以俗說, 皆此類也。】
광해군일기(정초본) 101권	8년 1616-03-24 甲午	영의정이 새 궁궐터 잡는 일에 관상감 제조 박상구를 동참하게 할 것을 청하다	영의정이 아뢰기를, “이번에 인왕산 아래에다 터를 잡는 일은 사체가 중대한데, 실로 그 말이 흠이 없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단지 기자헌 혼자만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좌찬성 박홍구(朴弘耉)는 관상감 제조이니, 그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성지(性智)는 미친 중으로, 스스로 지리(地理)에 대한 방서(方書)를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언문으로 풍수(風水)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말이 예전 방술대로 하지 않아 괴이하고 어긋나서 가소로웠다. 그는 ‘인왕산은 돌산으로 몹시 기이하게 솟아 있으며, 또 인	領議政啓曰:“今此仁王山下相基之事, 事體重大, 實未知其言之無欠與否。 而政府只有臣奇自獻, 極爲未安。 左贊成朴弘耉, 乃是觀象監提調, 使之同參爲當。 敢啓。”【性智, 狂僧也。 自言能解地理方書, 而目不知文字, 以諺書論風水, 其言不依古方, 怪謬可笑。 乃倡言:“仁王山, 石山突起甚奇, 又仁王二字, 乃是吉讖。 若王者居之, 曆數可延

			왕(仁王)이란 두 글자가 바로 길한 참언(讖言)이다. 그러므로 만약 왕자(王者)가 그곳에 살 경우 국가의 운수를 늘릴 수 있고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떠들어 대었으며, 또 '국초(國初)에 사직단(社稷壇)의 터를 이곳에 잡은 것은 당시의 술사(術士)가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였다. 그러니 사직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 그 터에다 궁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임금이 편안하게 지내면 사직 역시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옮겨야지 무슨 의심을 둘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크게 놀랐다. 이에 드디어 사단(社壇)의 담장 바깥에다 궁궐의 터를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제(社祭)에 쓰는 시루[甑]가 저절로 소리를 내어 그 소리가 1리 밖까지 들렸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궁궐의 터로 잡아 담장을 무너뜨리고 터를 닦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응험이라고 하였다. 인왕(仁王)은 석가(釋迦)의 미칭(美稱)으로 산에 예전에 인왕사(仁王寺)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었다. 성지가 일찍이 그의 어미의 뼈를 창원(昌原) 안골포(安骨浦) 불모동(佛母洞)에 장사지내고는 말하기를 '나의 후신(後身)은 부처가 될 것으로, 포와 동의 이름이 모두 그에 앞선 조짐이다.'고 하였다. 대개 불모동의 본이름은 '불못[火池]'으로 노야(爐冶)의 이명(異名)이었다. 동에 예전에 철로(鐵爐)가 있었으므로 '불못'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불모(佛母)'와 속음(俗音)이 비슷하므로 그렇게 칭한 것이었다. 성지가 방서(方書)에 대해 모르므로 속설(俗說)로 꾸며대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而太平可興。" 又曰: "國初卜社稷基于此, 當時術士, 必有意見。 宜遷社稷於他所, 而卜宮其址。 君父享安, 則社稷亦固, 當遷, 何疑?' 聞者大駭。 遂卜基於社壇墻外。 先是, 社祭飯甑自鳴, 聲聞一里, 未幾卜宮, 壞墻拓址, 人以爲其應。 仁王, 釋迦之美稱也, 山舊有仁王寺, 故名。 性智嘗葬其母骨于昌原安骨浦佛母洞曰: "吾後身爲佛, 浦洞名, 皆先兆也。" 蓋洞本名火池, 乃爐冶之異名也。 洞舊有鐵爐, 故名火池, 與佛母俗音相似, 故幻而稱之。 性智不曉方書, 故文以俗說, 皆此類也。】
광해군일기(중초본) 115권	9년 1617-05-29 壬辰	선수 도감이 사직의 담장을 쌓은 일을 의논하다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새 대궐의 남쪽 담장이 사직(社稷)의 담장과 연이어져 있어서 순라도는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사직을 궁궐 담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창덕궁과 종묘(宗廟)의 제도와 같게 한다면, 사직 남쪽 담장 밖이 바로 대원군(大院君)의 사우(祠宇)로, 사우를 이설하는 것 역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의논해 정할 때 부득이 사직의 북쪽 담장 안에다가 또다시 겹으로 담장을 쌓아서 순라길을 뚫기로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간의 물의가 자자하여, 모두들 '나라에 사직이 있는 것은 조종께서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를 높여 받드는 의리가 아주 중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곳의 초목을 베어내고 그 토지를 침범하는 것은 사리로 헤아려 볼 때 몹시 온당치 못하다. 그 땅을 침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원군의 사우를 옮겨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혹자는 '사직의 담장은 예전대로 그대로 두고 신궐의 남쪽 담장을 조금 안쪽으로 들이어서 순라길을 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혹자가 말한 대로 궁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 쌓는다면 정전(正殿)의 뒷편이 몹시 좁아서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들이 백 번 생각해 보아도 조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아서 속히 결정을 지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을 일이 아니다. 도감에서 다시금 상세히 의논해서 결정지어 하라." 하였다.	丁巳五月二十九日壬辰繕修都監啓曰: "新宮南墻, 連於社稷墻垣, 巡邏之路不通。 若以社稷入于宮墻之內, 如昌德宮、宗廟之制, 則社稷南墻之外, 卽是大院君祠宇, 祠宇移設, 亦爲重難。 故當初議定時, 不得已社稷北墻之內, 又築重墻, 以開巡邏之路事, 入啓蒙允, 今將始役矣。 外間物議藉藉, 皆以爲: '國之有社稷, 肇自祖宗定鼎之初, 其所以崇奉之義重矣。 一朝斬伐其草木, 侵犯其土地, 揆諸事理, 極爲未安。 與其侵犯其寸土/土地, 無寧移設大院君祠宇。' 云。 或以: '社稷墻垣因舊存之, 新闢南墻, 稍進于裏面, 以通巡路。' 云。 若以或者之說, 而進築宮墻, 則正殿之後, 餘地極狹, 不成形樣。 臣等百爾思之, 罔知所處。 請廣收廷議, 速爲定奪。" 傳曰: "此非廣收廷議之事也。 自都監更加詳議, 定奪爲之。"
광해군일기(정초본) 115권	9년 1617-05-29 辛卯	선수 도감이 사직의 담장을 쌓은 일을 의논하다	선수 도감이 아뢰기를, "새 대궐의 남쪽 담장이 사직(社稷)의 담장과 연이어져 있어서 순라도는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사직을 궁궐 담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창덕궁과 종묘(宗廟)의 제도와 같게 한다면, 사직 남쪽 담장 밖이 바로 대원군(大院	繕修都監啓曰: "新宮南墻, 連於社稷墻垣, 巡邏之路不通。 若以社稷, 入于宮墻之內, 如昌德宮、宗廟之制, 則社稷南墻之外, 卽是大院君祠宇, 祠宇移設,

			君)의 사우(祠宇)로, 사우를 이설하는 것 역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의논해 정할 때 부득이 사직의 북쪽 담장 안에다가 또다시 겹으로 담장을 쌓아서 순라길을 뚫기로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간의 물의가 자자하여, 모두들 '나라에 사직이 있는 것은 조종께서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를 높여 받드는 의리가 아주 중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곳의 초목을 베어내고 그 토지를 침범하는 것은 사리로 헤아려 볼 때 몹시 온당치 못하다. 그 땅을 침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대원군의 사우를 옮겨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혹자는 '사직의 담장은 예전대로 그대로 두고 신궐의 남쪽 담장을 조금 안쪽으로 들이어서 순라길을 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혹자가 말한 대로 궁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 쌓는다면 정전(正殿)의 뒷편이 몹시 좁아서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들이 백 번 생각해 보아도 조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아서 속히 결정을 지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을 일이 아니다. 도감에서 다시금 상세히 의논해서 결정지어 하라." 하였다.	亦爲重難。 故當初議定時, 不得已社稷北墻之內, 又築重墻, 以開巡邏之路事, 入啓蒙允, 今將始役矣。 外間物議藉藉, 皆以爲: '國之有社稷, 肇自祖宗定鼎之初, 其所以崇奉之義重矣。 一朝斬伐其草木, 侵犯其土地, 揆諸事理, 極爲未安。 與其侵犯其土地, 無寧移設大院君祠宇。' 云。 或以: '社稷墻垣因舊存之, 新闢南墻, 稍進于裏面, 以通巡路。' 云。 若以或者之說, 而進築宮墻, 則正殿之後, 餘地極狹, 不成形樣。 臣等百爾思之, 罔知所處。 請廣收廷議, 速爲定奪。" 傳曰: "此非廣收廷議之事也。 自都監更加詳議, 定奪爲之。"
광해군일기(중초본) 127권	10년 1618-04-16 甲戌	신궐 영건 도감에서 경덕궁의 북문을 물려 쌓는 일로 아뢰다	신궐(新闕)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비망기로 '경덕궁(慶德宮)의 북문(北門)이 대내(大內)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순라(巡邏)가 통행하는 임무가 없어질 듯하다. 담 밖으로 더 내서 쌓으면서 외북문(外北門)을 만들어 세우면 일이 온당하겠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어제 회동하여 살펴 보았더니, 바깥 담 서북쪽에는 독송정(獨松亭)이 있고 그 정자 아래로 나 있는 작은 길이 돌아서 사직동(社稷洞)으로 통해 있었습니다. 지금 물려서 쌓을 경우, 바깥 담 서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송정을 따라 동쪽으로 권반(權盼)의 집에 이르고 윤유신(尹惟愼)의 집으로 돌아 올라가서 내수사 동쪽 산과 연결되게 한 뒤에야 대내와 너무 근접하게 되는 염려가 없어지겠습니다. 이를 별지(別紙)에 그림으로 그려 입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북문이 대내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려서 쌓으라고 하는 것이지, 인가를 많이 철거하는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듣자하니 권반의 집에 흉구(凶咎)가 있다는데 바깥 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될지 다시 살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新闕營建都監啓曰: "備忘記: '慶德宮北門, 與大內太近, 而巡邏似無通行之路, 墻外加築, 造立外北門, 則便當。' 傳敎矣。 臣等昨日會同看審, 則外墻西北, 有獨松亭, 亭下有細路, 轉通于社稷洞。 今之退築, 起自外墻西北隅, 循獨松亭, 東至權盼家, 轉上于尹惟愼家, 屬于內需司東山, 然後大內無太近之患矣。 別紙圖畫入啓矣。" 答曰: "知道。 北門太近於大內, 故欲爲退築。 多撤人家則非予本意也。 聞權盼家有凶咎, 不可入于外墻之內。 更察以啓。"
광해군일기(정초본) 127권	10년 1618-04-16 甲戌	신궐 영건 도감에서 경덕궁의 북문을 물려 쌓는 일로 아뢰다	신궐(新闕)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비망기로 '경덕궁(慶德宮)의 북문(北門)이 대내(大內)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순라(巡邏)가 통행하는 임무가 없어질 듯하다. 담 밖으로 더 내서 쌓으면서 외북문(外北門)을 만들어 세우면 일이 온당하겠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어제 회동하여 살펴 보았더니, 바깥 담 서북쪽에는 독송정(獨松亭)이 있고 그 정자 아래로 나 있는 작은 길이 돌아서 사직동(社稷洞)으로 통해 있었습니다. 지금 물려서 쌓을 경우, 바깥 담 서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송정을 따라 동쪽으로 권반(權盼)의 집에 이르고 윤유신(尹惟愼)의	新闕營建都監啓曰: "備忘記, 慶德宮北門, 與大內太近, 而巡邏似無通行之路, 墻外加築, 造立外北門, 則便當事傳敎矣。 臣等昨日會同看審, 則外墻西北, 有獨松亭, 亭下有細路, 轉通于社稷洞。 今之退築, 起自外墻西北隅, 循獨松亭, 東至權盼家, 轉上于尹惟愼家, 屬于內需司東山, 然後大內無太近之患矣。 別紙圖畫入啓矣。" 答曰: "知

			집으로 돌아 올라가서 내수사 동쪽 산과 연결되게 한 뒤에야 대내와 너무 근접하게 되는 염려가 없어지겠습니다. 이를 별지(別紙)에 그림으로 그려 입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북문이 대내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려서 쌓으라고 하는 것이지, 인가를 많이 철거하는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듣자하니 권반의 집에 흉구(凶咎)가 있다는데 바깥 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될지 다시 살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道。 北門太近於大內, 故欲爲退築。 多撤人家則非予本意也。 聞權盼家有凶咎, 不可入于外墻之內。 更察以啓。"
광해군일기(중초본) 169권	13년 1621-09-02 庚子	밤의 거둥시의 호위를 엄히할 것을 청하다	전교하였다. "사직단의 제사를 신궁에서 지내게 되어 밤에 거둥할 터이니, 호위 따위의 일을 엄밀히 해야 하겠다. 새로 설치한 좌·우 포도 대장은 경덕궁(慶德宮)과 사직단(社稷壇) 내외의 근처를 나누어 지키면서 각별히 살피고, 실제 좌·우 포도 대장은 창경궁(昌慶宮)·창덕궁(昌德宮)·동궁(東宮)의 사면 담 밖을 밤새도록 일일이 순행하여 살피고, 궐내는 호위 대장이 수궁 장사(守宮將士)들과 함께 더욱 엄밀히 수직하고, 각영 별장들과 합번하여 숙직하도록 할 것으로 병조로 하여금 각기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게 하라."	庚子傳曰: "社稷祭新宮犯夜擧動, 扈衛等事, 不可不嚴密爲之。 新設左右捕盜大將則慶德宮、社稷內外近處分守, 各別譏察, 實左右捕盜大將則昌慶、昌德、東宮四面墻外, 夜間一一巡邏譏察, 而闕內則扈衛大將與守宮將士, 更加嚴密守直, 各營別將竝合番直宿。 事, 令兵曹各別着實擧行。"
광해군일기(정초본) 169권	13년 1621-09-02 庚子	밤의 거둥시의 호위를 엄히할 것을 청하다	전교하였다. "사직단의 제사를 신궁에서 지내게 되어 밤에 거둥할 터이니, 호위 따위의 일을 엄밀히 해야 하겠다. 새로 설치한 좌·우 포도 대장은 경덕궁(慶德宮)과 사직단(社稷壇) 내외의 근처를 나누어 지키면서 각별히 살피고, 실제 좌·우 포도 대장은 창경궁(昌慶宮)·창덕궁(昌德宮)·동궁(東宮)의 사면 담 밖을 밤새도록 일일이 순행하여 살피고, 궐내는 호위 대장이 수궁 장사(守宮將士)들과 함께 더욱 엄밀히 수직하고, 각영 별장들과 합번하여 숙직하도록 할 것으로 병조로 하여금 각기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게 하라."	傳曰: " 社稷祭新宮犯夜擧動, 扈衛等事, 不可不嚴密爲之。 新設左右捕盜大將, 則慶德宮、社稷內外近處, 分守各別譏察, 實左右捕盜大將, 則昌慶、昌德、東宮四面墻外, 夜間一一巡邏譏察, 而闕內扈衛大將與守宮將士, 更加嚴密守直, 各營別將竝合番直宿。"
광해군일기(중초본) 169권	13년 1621-09-20 戊午	경덕궁의 작은 문의 제작을 서두를 것을 명하다	〈전교하였다. "경덕궁의 작은 문을 만드는 일이 매우 급한데, 서투른 공장 몇 사람에게 맡겨 두고 서까래와 돌은 쓰지도 못할 것을 가져다 놓았으니, 사직제(社稷祭) 전에 일을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조와 도청(都廳)은 날마다 사진하여 종일토록 감독할 것은 물론, 서까래·돌·기와도 서둘러 들여와 속히 일을 마칠 것을 도감으로 하여금 특별히 살펴 거행하게 하라."〉	(傳曰: "慶德宮小門功役甚急, 而以拙工若干名付役, 椽木、石子, 以不用者充入, 社稷祭前畢役, 似難矣。 提調、都廳逐日仕進, 終日監董, 木、石、瓦子急急輸入, 速爲畢役事, 令都監另察擧行。")
광해군일기(중초본) 174권	14년 1622-02-26 壬辰	궁터 안에 아문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논하다	〈신궐 영건 도감(新闕營建都監)이 아뢰기를, "비망기에〉 '삼가 듣건대, 경복궁 터 안에 각 아문을 조성하는 일에 대하여 서울과 외방에서 모두들 「또 이 궁을 지어 요망한 말을 선동한다.」 고 한다 하니, 각 아문을 이 궁의 터 안에 지어 사람들의 의혹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인경궁(仁慶宮) 남문 밖 빈 대지에 3, 4아문을 지을 만하니, 남쪽 담장을 물려서 쌓게된들 어떻겠는가. 내사복(內司僕)의 경우는 사직천(社稷川)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승문원(承文院)은 총부(摠府) 근처에 조성할 수 있으니, 빨리 상의하여 미리 터를 닦기 시작하여 초석을 놓고서 재목을 올려 온 후에 즉시 기둥을 세워 짓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경복궁에 각 아문을 짓지 말라는 전교는 실로 뜬말을 진정시키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인경궁의 남쪽 담장을 물려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물려서 쌓을 터는 반드시 도제조 이하가 회동하여 살펴서 정한 후에야 미진하다는 〈후회가〉 없을 수 있으니, 무고한 날 빨리 다같이 모여 중사(中使)와 함께 살펴 정하여 계하한 후에 물려 쌓는 것이	(新闕營建都監啓曰: 備忘記)○傳曰: "竊聞以景福宮基內, 各衙門造成事, 中外以爲: '又營(造)此宮, 煽動妖言。' 云。 不必造各衙門於此宮基內, 惹起人心之疑惑也。 仁慶宮南門外空代, 可造三四衙門, 南墻退築何關也? 至如內司僕, 則社稷川水可以引用, 承文院則摠府近處, 可以造成也。 急急詳議, 預爲開基定礎, 材木上來後, 卽爲立柱以造(事)。" (傳敎矣。)都監回啓曰: "景福宮內各衙門勿造之敎, 實出於鎭浮言之聖意, 仁慶宮南墻, 將爲退築矣。 退築基址, 必須都提調以下, 會同審定, 然後可無未盡, 請(之悔)無故日, 急速齊會,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인가가 또 들어가게 되면 남쪽 담장 밖 내자시의 터에 아무 아문만 지어서 인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내사복은 경복궁 터 안에, 승문원과 상의원은 이 궁의 아무 곳에 조성할 일을 빨리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경궁 안의 지세가 원래 좁은 것은 아니지만 서북쪽 담장 근처는 응당 금원(禁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아문을 지을 만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 경복궁 안에 다섯 아문을 지으라는 하교를 내리신 것인데 이 하교가 한번 내려짐에 유언 비어가 선동하였으니, 어찌 너무도 상서롭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상께서 이것을 염려하여, 남쪽 담장을 물려 쌓고서 네 아문을 아울러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경복궁의 공사는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보고 들은 자들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의혹이 이로부터 진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남쪽 담장 밖 내자시의 빈 땅에는 세 아문을 들일 수 있고, 사복시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곳의 경우는 여염의 집을 헐어야 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또 옛 재상의 유기(遺基)와 내관의 집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 박홍도(朴弘道)의 생각으로는, 감군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영선(營繕)하기가 불편하니 여러 공사를 아울러 끝마치는 것이 하루가 급하며 경복궁의 침역(寢役)은 오늘날의 막대한 거조이니 여염집이 헐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따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의 〈소견도 여기에서 나왔는데,〉 진실로 이 말을 하면 원망의 소리가 모여들 줄 압니다만 중요한 바가 여기에 있으므로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상의 결단에서 비롯되어 비망기로 이르셨던 말씀이 정녕하니, 다시 계하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인가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서 네 아문을 짓는다면 남쪽 담장을 물려 쌓아도 될 것이다. 상세히 살펴 잘 처리하라.” 하였다.	中使眼同審定啓下後, 退築(宜當。 敢啓。)”傳曰:“依啓。 人家又入, 則南墻外內資基址, 只造某衙門, 而勿入人家。 內司僕則景福宮基內, 承文院、尙衣院則此宮內某處造成事, 急速議處。”又啓曰:“仁慶宮內, 地勢無非狹窄, 而西北墻近處, 則應入禁苑。 故五衙門無可造之處, 不得已景福宮內, 五衙門造成之敎一下, 則訛言煽動, 豈非不(詳)〔祥〕之甚乎? 聖上爲是之慮, 特下退築南墻, 竝設四衙門之命, 而除却景福之役, 瞻聆所及, 孰不歡忭? 人心疑惑, 自此可定。 第念南墻外內資空地, 可容三衙門, 而至於司僕引流之處, 則不無閭家毁撤之弊。 舊相遺基、內官第宅, 亦在其中(矣)。 臣弘道愚妄之意, 監軍到京, 營繕難便, 倂工完役, 一日爲急。且景福宮寢役, 爲今日莫大之擧, 則些少閭家之毁撤, 有不足計也。 臣(之所見, 亦出於此,) 固知言發怨集, 而所重在此, 不敢不達。 (況出自聖斷, 備忘丁寧, 則似不當更待啓下。 敢啓。)”傳曰:“知道。 勿入人家, 而造設四衙門, 則南墻退築可矣。 詳察善處。”
광해군일기(정초본) 174권	14년 1622-02-26 壬辰	궁터 안에 아문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논하다	‘삼가 듣건대, 경복궁 터 안에 각 아문을 조성하는 일에 대하여 서울과 외방에서 모두들 「또 이 궁을 지어 요망한 말을 선동한다.」 고 한다 하니, 각 아문을 이 궁의 터 안에 지어 사람들의 의혹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인경궁(仁慶宮) 남문 밖 빈 대지에 3, 4아문을 지을 만하니, 남쪽 담장을 물려서 쌓게된들 어떻겠는가. 내사복(內司僕)의 경우는 사직천(社稷川)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고, 승문원(承文院)은 총부(摠府) 근처에 조성할 수 있으니, 빨리 상의하여 미리 터를 닦기 시작하여 초석을 놓고서 재목을 올려 온 후에 즉시 기둥을 세워 짓도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경복궁에 각 아문을 짓지 말라는 전교는 실로 뜬말을 진정시키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인경궁의 남쪽 담장을 물려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물려서 쌓을 터는 반드시 도제조 이하가 회동하여 살펴서 정한 후에야 미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무고한 날 빨리 다같이 모여 중사(中使)와 함께 살펴 정하여 계하한 후에 물려 쌓게 하소서. ”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인가가 또 들어가게 되면 남쪽 담장 밖 내자시의 터에	傳曰:“竊聞以景福宮基內各衙門造成事, 中外以爲又營此宮, 煽動妖言云, 不必造各衙門於此宮基內, 惹起人心之疑惑也。 仁慶宮南門外空代, 可造三四衙門, 南墻退築, 何關也? 至如內司僕, 則社稷川水可以引用, 承文院則摠府近處, 可以造成也, 急急詳議, 預爲開基定礎, 材木上來後, 卽爲立柱以造。 都監回啓曰:“景福宮內各衙門勿造之敎, 實出於鎭浮言之盛意, 仁慶宮南墻, 將爲退築矣。 退築基址, 必須都提調以下, 會同審定然後, 可无未盡, 請無故日, 急速齊會, 中使眼同審定啓下後, 退築。”傳曰:“依啓。 人家又入, 則南墻外內資基址, 只造某衙門, 而勿入人家。 內司

			아무 아문만 지어서 인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내사복은 경복궁 터 안에, 승문원과 상의원은 이 궁의 아무 곳에 조성할 일을 빨리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경궁 안의 지세가 원래 좁은 것은 아니지만 서북쪽 담장 근처는 응당 금원(禁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아문을 지을 만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 경복궁 안에 다섯 아문을 지으라는 하교를 내리신 것인데 이 하교가 한번 내려짐에 유언 비어가 선동하였으니, 어찌 너무도 상서롭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상께서 이것을 염려하여, 남쪽 담장을 물려 쌓고서 네 아문을 아울러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경복궁의 공사는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보고 들은 자들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의혹이 이로부터 진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남쪽 담장 밖 내자시의 빈 땅에는 세 아문을 들일 수 있고, 사복시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곳의 경우는 여염의 집을 헐어야 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또 옛 재상의 유기(遺基)와 내관의 집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 박홍도(朴弘道)의 생각으로는, 감군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영선(營繕)하기가 불편하니 여러 공사를 아울러 끝마치는 것이 하루가 급하며 경복궁의 침역(寢役)은 오늘날의 막대한 거조이니 여염집이 헐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따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이 진실로 이 말을 하면 원망의 소리가 모여들 줄 압니다만 중요한 바가 여기에 있으므로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인가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서 네 아문을 짓는다면 남쪽 담장을 물려 쌓아도 될 것이다. 상세히 살펴 잘 처리하라." 하였다.	僕則景福宮基內, 承文院、尙衣院, 則此宮內某處造成事, 急速議處。" 又啓曰: "仁慶宮內, 地勢无非狹窄, 而西北墻近處則應入禁苑, 故五衙門, 无可造之處, 不得已景福宮內, 五衙門造成之敎一下, 則訛言煽動, 豈非不祥之甚乎? 聖上爲是之慮, 特下退築南墻, 竝設四衙門之命, 而除却景福之役, 瞻聆所及, 孰不歡忭? 人心疑惑, 自此可定。 第念南墻外內資空地, 可容三衙門, 而至於司僕引流之處, 則不無閭閻毁撤之弊。 舊相遺基、內官第宅, 亦在其中。 臣弘道愚妄之意, 監軍到京, 營繕難便, 倂工完役, 一日爲急, 且景福宮寢役, 爲今日莫大之擧, 則些少閭家之毁撤, 有不足計也。 臣固知言發怨集, 而所重在此, 不敢不達。" 傳曰: "知道。 勿入人家而造設四衙門, 則南墻退築可矣。 詳察善處。"
인조실록 31권	13년 1635-07-13 辛酉	전국에 큰 바람이 불어 피해를 입다	큰 바람이 아침부터 종일토록 불다가 다음날에야 그쳤다.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안에 있는 고목(古木)이 꺾이고 뽑힌 것이 60~70그루이며, 여러 능의 나무가 부러지고 뽑힌 것도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삭이 팬 벼는 남김없이 손상되었고, 목화(木花) 열매도 거의 전부가 떨어졌다. 전라도의 나주(羅州)·전주(全州)·여산(礪山)·임피(臨陂)·고부(古阜)·무장(茂長)·순창(淳昌)·옥과(玉果)·낙안(樂安)·장흥(長興) 등 고을에는 큰 비바람이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져 사람과 가축들이 깔려 죽었다. 함경도와 경상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삼도(三道)의 감사가 서로 잇달아 치계하여 아뢰었다.	大風自平明竟日, 至翌日乃止。 屋瓦皆飛, 社稷、宗廟之內, 古木摧拔者六七十株, 各陵樹木之摧拔者, 亦難悉記。 禾穀發穗者, 傷損無餘, 木綿結花者, 凋落殆盡。 全羅道羅州、全州、礪山、臨陂、古阜、茂長、淳昌、玉果、樂安、長興、等邑大風雨, 折木拔屋, 人物壓死。 咸鏡道、慶尙道亦然, 三道監司, 相繼馳啓以聞。
사직서의궤 3권 고사상 (古事上) 경란사실 (經亂事實)	인조 14년 1636.丙子		12월 10일에 청(淸)나라 군사가 갑자기 경성(京城)에 밀어닥쳤다. 14일 아침에 먼저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강화(江華)로 옮겨 들였다. 오시(午時)에 대가(大駕)가 이어서 출발하여 숭례문에 이르렀는데, 청나라 기병(騎兵)이 이미 홍제원(弘濟院)에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15일 저녁에 산성이 포위되었다.	원문은 A95페이지 참조.
사직서의궤 3권 고사상 (古事上)	인조 15년 1637.丁丑		1월 22일에 청나라 군사가 갑곶(甲串)을 건너 강도(江都)를 함락하였다. 29일에 신주를 받들고 남한산성 아래에 이르렀다. 이윽고 대가가 환도하여 창경궁에 나아가 임시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시민당(時敏堂)-동궁(東宮)의 서연(書筵) 장소이다.-에 봉안하였다.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옮	원문은 A96페이지 참조.

경란사실 (經亂事實)			겨 봉안할 길일을 5월 6일 묘시로 하는 것으로 계하받았다.	
숙종실록 11권	7년 1681-05-17 己巳	사직단 제사를 위해 장전에서 유숙하였으나 약방의 신하들이 만류하다. 사관을 보내어 제물과 제정을 살피게 하다	임금이 사직단(社稷壇) 재소(齋所)에 나아갈 때에 구례(舊例)에는 장전(帳殿)에서 하룻밤을 유숙(留宿)하였는데, 약방(藥房)에서 옥체(玉體)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 본서(本署)의 관원(官員)이 숙직(宿直)하는 집을 재전(齋殿)으로 삼을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정원(政院)에 명하여 시종(侍從)하는 여러 신하와 제사에 참여하는 집사관(執事官)에게 몸을 정결히 하고 정성을 다할 것을 신칙(申飭)하게 하고, 중사(中使)와 사관(史官)을 보내어 제물(祭物)과 제정(祭井)을 살펴보게 하였다.	上詣社稷壇齋所。 舊例, 經宿於帳殿, 藥房慮傷玉體, 啓請以本署官直舍爲齋殿。 命政院申飭侍從諸臣及參祭執事官, 澡潔致誠, 遣中使史官, 撿視祭物及祭井。
숙종보궐정오 17권	12년 1686-04-12 乙丑	송충이가 사직의 솔잎을 먹자 서울 백성을 동원하여 잡게 하다	蟲食社稷松, 發都民捕之。	
숙종실록 18권	13년 1687-09-12 丁亥	예조에서 산과 사직 및 각릉의 솔잎을 먹는 벌레를 백성을 시켜 잡기를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서울 주변의 산과 사직(社稷) 및 각릉(各陵)의 솔잎을 벌레가 먹는 것을 이유로 백성을 시켜 잡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禮曹以蟲食京山及社稷各陵松葉, 請令民補滅之。 上從之。
숙종실록 27권	20년 1694-09-22 丁亥	사직의 신실의 개축을 위한 도감을 설치하다	사직(社稷)의 신실(神室)이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어졌는데,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바야흐로 본서(本署) 일을 맡아 보다가 말하니, 드디어 대신들과 의논하여 다시 지으라는 명이 있었다. 드디어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社稷神室, 歲久傾側, 左議政朴世采, 方領本署事, 爲言之, 遂議于大臣, 有改建之命, 遂設都監, 以董其役。
숙종실록 27권	20년 1694-09-27 壬辰	부사직 김세익이 영남의 사정을 상소하다	부사직(副司直) 김세익(金世翊)이 명을 받고 영남(嶺南)에 내려가 선비들을 시험보였다. 돌아와서 상소하여 본도(本道)의 사정을 논의하기를,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에 관한 언서 공문(諺書公文)이 대소의 주현(州縣)마다 파급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저 여러 궁가에서는 매번 양전(量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핑계대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전을 한 지가 이미 60년이나 되어 그전에는 주인이 없던 것이 이제는 모두가 주인이 있어 그 자손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단지 양전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산맹(山氓)들이 불을 놓아 혹 2년 혹은 3년씀 경작하던 것을 그만 모두 버리고 떠나는데, 지부(地部)에서는 또한 상례의 부세(賦稅)로 논하지도 못하고 모두 절수(折受)하는 가운데로 돌아가니, 이는 더욱 이전에 있지 않던 일입니다. 하양(河陽)에서는 민중들이 밭 개간(開墾)에 힘을 다하여 2백 20여 호가 함께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을 사람 정취도(鄭就道)란 자의 자손들이 1장의 입안(立案)을【주인이 없는 땅은 관에 정고(呈告)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데, 그 문서를 입안이라 한다.】 가지고 스스로 정취도가 일찍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하며 여러 궁가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수사(內需司)의 관원이 바야흐로 고을로 와서 제멋대로 수확하므로, 민중들이 모두 생업(生業)을 잃어버리고 곳곳에서 울부짖고 있어 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臣)이 듣거나 본 것 이외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근심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지난날에 수교(受敎)한 대로【무진년8321)에 대신이 입주(入奏)하여 규식(規式)을 정해 놓았다.】 시행하게 하시고, 규식을 벗어나 절수(折受)한 것은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사직(社稷)의 신실(神室)을 다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고요	副司直金世翊受命試士于嶺南, 及歸, 上疏論本道事曰: “諸宮折受, 公文諺書, 大小州縣, 無不蔓及, 夫諸宮每托以不入於量田而取之, 然量田已六十年矣。 昔之無主者, 今皆有主, 傳其子孫, 秖以不量之故, 一朝失其地, 則安得無冤乎? 況山氓火而耕之, 或二年或三年, 輒皆去而之他, 地部亦不能以恒賦論, 而竝歸於折受之中, 此尤前所未有也。 河陽之民, 盡力墾田, 二百二十餘戶, 共主之。 鄭就道者, 縣人也。 其子孫持一紙立案,【無主之地, 呈官爲已有, 其文曰立案。】自謂就道所嘗成之者, 而賣于諸宮, 內司之官, 方到縣中惟意收穫, 民皆失業, 處處號哭, 亦足傷心。 臣耳目之外, 必多有此患, 願殿下, 一從前日受敎【戊辰大臣入奏定式。】施行, 格外折受, 竝還本主焉。 且言社稷神室, 改建有命, 旣乖尙靜之義, 且有非時之譏, 百年舊制, 未必遽壞, 天災孔棘, 尤所當愼, 宜有以徐之。” 上答曰: “戊辰受敎, 定以職田, 勢所難行, 而格外折受, 竝禁之。 河陽之田, 還賜民人, 神室改建, 不容少緩也。”

			하게 하기를 숭상해야 하는 의리에도 어그러지거니와 또한 시기가 아니라는 기롱이 있으니, 1백 년이 된 옛 제도를 급작스럽게 무너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天災)가 매우 심한 참이라 더욱 마땅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니,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무진년에 수교하여 직전(職田)으로 정해 놓은 것은 사세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규식을 벗어난 절수(折受)는 모두 금하도록 하고, 하양(河陽)의 전지(田地)는 민중들에게 돌려 주게 하라. 신실을 다시 짓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다." 하였다.	
숙종실록 33권	25년 1699-02-11 辛亥	숙명 공주의 병이 위중하니 친림하여 위문하다	임금이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으로 친림(親臨)하여 보기 위해 예조(禮曹)에게 택일(擇日)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또 하교(下敎)하기를, "듣건대 병이 매우 위급하다고 하니 즉각 거행하라. 마땅히 소여(小輿)로 무덕문(武德門)을 경유하여 나가겠으니, 입직 군사(入直軍士)들만 무덕문에서 기다리게 하라. 환궁할 때에는 마땅히 야주현(夜晝峴)의 길을【바로 경덕궁(慶德宮) 앞 거리의 이름이다.】 경유하여 올 것이니, 각영(各營)의 군병들은 야주현에서 대령(待令)하게 하라." 하고, 즉시 보련(步輦)으로 무덕문을 나아가 친림하여 병을 묻고 해가 기울어서야 돌아왔다. 공주는 바로 효묘조(孝廟朝)의 둘째 공주인데, 집이 무덕문 밖 사직동(社稷洞)에 있었다.	上以淑明公主病重, 欲親臨視之, 命禮曹擇日擧行。 俄而又下敎曰: "聞病甚危急, 卽刻擧行, 而當以小輿, 由武德門出, 只入直軍士, 待候於武德門。 還宮時, 當由夜晝峴【卽慶德宮前街名也。】作路, 各營軍兵待令於夜晝峴。" 卽以步輦, 出武德門, 親臨問疾, 日昃始還。 公主卽孝廟朝第二公主, 而家在武德門外社稷洞矣。
숙종실록 35권	27년 1701-05-13 己亥	의금부에 몸소 나가 과옥 죄인들을 심문하여 각각 판결하다	임금이 사직 양단(社稷兩壇)에 나아가 제사를 끝낸 뒤에 장차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금부의 호두각(虎頭閣)에 들러 여수(慮囚)하려고 하자, 대신과 금부 당상(禁府堂上)·정원(政院) 및 삼사(三司)가 모두 입시(入侍)하였다. 판의금(判義禁) 김구(金構)가 문안(文案)을 가지고 나왔다. (중략)	上詣社稷兩壇, 行祀訖, 將還宮, 歷御義禁府虎頭閣慮囚。 大臣、禁府堂上、政院、三司竝入侍。 判義禁金構持文案以進。(중략)
숙종실록 36권	28년 1702-02-05 丁巳	사직단의 추향을 행하려고 재소에 나아가 자다	임금이 사직단(社稷壇)의 추향(秋享)을 행하려고 재소(齋所)에 나아가 잤는데, 동가(動駕) 할 때에 하교하기를, "막중한 친사(親祀)에 대신이 없을 수는 없는데, 좌의정은 조식(調息)을 청고(請告)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아픈 곳이 반드시 차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한결같이 인입(引入)할 수는 없다. 즉일로 출사(出仕)하라." 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니, 이세백(李世白)은 나와서 명에 응하였고, 영의정 서문중은 병으로 배종(陪從)하지 못하고 차자(箚子)로 대죄(待罪)하기를 진달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上將行社稷秋享, 詣宿齋所。 動駕時下敎曰: "莫重親祀, 不可無大臣, 而左議政請告調息, 爲日已久。 所患想必差減, 不可一向引入。 卽日出仕事, 遣史官傳諭。" 李世白出而應命。 領議政徐文重以病未陪從, 陳箚待罪, 上答以優批。
숙종실록 39권	30년 1704-06-26 甲午	기우제의 차례를 개정하다	기우제(祈雨祭)의 차례를 개정(改定)하기를, "첫번째로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 3품관(三品官)을 보낸다. 두번째로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 재신(宰臣)을 보낸다. 세번째로 풍운 뇌우(風雲雷雨)·산천(山川)·우사(雩祀)에 재신을 보낸다. 네번째로 북교(北郊)에는 재신을 보내고 사직(社稷)에는 중신(重臣)을 보낸다. 다섯번째로 종묘(宗廟)에 중신을 보낸다. 여섯번째로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근시(近侍)를 보낸다. 일곱번째로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낸다. 여덟번째로 풍운 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낸다. 아홉번째로 북교에는 중신을 보내고 모화관(慕華館) 못가의 석척 동자(蜥蜴童子)는 무신(武臣)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보내며, 여염(閭閻)에는 병류	改定祈雨祭次第。 初次三角山、木覓山、漢江, 遣三品官; 再次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三次風雲雷雨山川雩祀, 遣宰臣; 四次北郊, 遣宰臣, 社稷, 遣重臣; 五次宗廟, 遣重臣; 六次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 七次龍山、楮子島, 遣重臣; 八次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九次北郊, 遣重臣, 慕華館池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閭閻屛柳; 十次祀稷, 遣大臣, 慶會樓池

			(屛柳)한다. 열번째로 사직에는 대신(大臣)을 보내고, 경회루(慶會樓) 못가의 석척 동자는 무신 가선 대부를 보낸다. 열한번째로 종묘에는 대신(大臣)을 보내고 춘당대(春塘臺) 못가의 석척 동자는 무신 가선 대부를 보내며,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며 저자[市]를 옮긴다. 열두번째로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고, 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감악(紺岳)·송악(松岳)·관악(冠岳)·박연(朴淵)·화적연(禾積淵)·도미진(渡迷津)·진암(辰巖)에는 분시(焚柴)하되, 모두 본도(本道)로 하여금 설행(設行)하게 한다." 하였는데,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일찍이 기우제의 차례가 착란(錯亂)되었으므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개정하라 명한 것이다.	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十一次宗廟, 遣大臣, 春塘臺池邊蜥蜴童子, 遣武臣嘉善, 閉南門開北門, 遷市; 十二次五方土龍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冠岳、朴淵、禾積淵、渡迷津、辰巖焚柴, 皆令本道設行。 禮曹判書閔鎭厚, 嘗言祈雨祭次序錯亂, 宜加釐正, 命議于大臣改定。
숙종실록 40권	30년 1704-10-14 辛巳	황단과 제사지내는 의식에 대해 김진규가 품정하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진규(金鎭圭)가 황단(皇壇)의 높이, 너비와 제사를 지내는 의식(儀式)을 임금 앞에서 품정(稟定)하였다. 명하여 너비는 우리나라의 사직단(社稷壇)에 의하여 사방 25척으로 하고, 높이는 중국의 사직단에 따라 5척으로 하고, 단폐(壇陛)는 땅에서 단면(壇面)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아홉 계단으로 하고, 등가(登歌)·헌가(軒架)는 한결같이 사직단(社稷壇)의 제도를 본받고, 제물(祭物)의 품식(品式)은 명조(明朝)의 의식(儀式)을 준용(遵用)하고, 제기(祭器)는 《집례(集禮)》의 도식(圖式)에 의거하고, 신좌(神座)인 황장방(黃帳房)은 《회전(會典)》의 도설(圖說)에 의거하고, 팔일무(八佾舞) 등의 기구는 남교(南郊)·북교(北郊)에서 쓰던 것을 추이(推移)하여 쓰고, 제사를 지내는 의문(儀文)은 《집례(集禮)》의 친왕(親王)이 인종(仁宗)을 향사(享祀)하는 예(禮)로써 참작하여 마련하게 하였다.	禮曹參判金鎭圭以皇壇高廣, 行祭儀式, 稟定於上前。 命廣依我國社稷壇, 方二十五尺, 高從中朝社稷壇爲五尺, 壇陛自地至壇面, 通爲九級, 登歌、軒架, 一倣社壇之制, 祭物品式, 遵用皇朝之儀, 祭器依《集禮》圖式, 神座黃帳房, 依《會典》圖說, 八佾等器, 則以南、北郊所用, 推移用之, 行祭儀文, 則以《集禮》親王享仁(祖)［宗］之禮, 參酌磨鍊。
숙종실록 40권	30년 1704-12-21 丁亥	대보단이 준공되니 제사 지낼 때와 악의 사용·단상의 장전 등에 대해 의논하다	대보단(大報壇)이 준공(竣工)되었는데, 단(壇)은 창덕궁 금원(禁苑)의 서쪽 요금문(曜金門) 밖 옛날 별대영(別隊營)의 터에 있었다. 단의 제도는 좌의정 이여(李畬)의 말에 따라 우리 나라 사직의 제도를 모방하여 유(壝가 있고 장(墻)이 있는데, 담장 높이는 4척(尺)으로서 사직단에 비하여 1척이 높고 사방 넓이가 25척이며 네 면에 모두 9급의 층계(層階)가 있었다. 유(壝)와 장(墻)의 네 면은 모두 37척이요, 단소(壇所)로부터 외장(外牆)을 쌓아 행인(行人)이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10월 초3일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이때에 이르러 공사를 마쳤는데,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공조 판서(工曹判書) 서종태(徐宗泰)·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 등이 시종 감독했다. 그 사이 민진후(閔鎭厚)는 수어사(守禦使) 직임의 일로 남한 산성에 나가 있었고 김진규(金鎭圭)가 차관(次官)으로 명을 받들고 공역을 감독한 지 매우 오래 되었다. 제사 지낼 때를 정한 의논은 아래에 덧붙여 보이는데, 여러 대신들이 모두가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며, 제사를 행하는 기일에 있어서는 혹은 정월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3월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혹은 2월이 마땅하다 하고 혹은 4월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3월로 결정되었다. 단호(壇號)는 처음에 민진후의 말로 태단(泰壇)으로 정하고자 했으나, 또 2품 이상의 관원을 패초(牌招)하여 의논해서 정하게 했는데, 우의정 이유(李濡)의 말로 인해 대제학 송상기(宋相琦)에게 명하여 찬정(撰定)하게 했으니, 곧 지금의 이름이다. 악(樂)은 팔일(八佾)을 쓰고 악장(樂章)은 또한 송상기가 지어 올린 것이다. 이여(李畬)는 문묘(文廟)의 석채(釋菜) 때의 악장을 모방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대신	大報壇成。 壇在昌德宮禁苑之西曜金門外, 舊別隊營之地。 壇制用左議政李畬言, 倣我國社稷之制, 有壝有墻, 墻高四尺, 比社壇加高一尺, 方廣二十五尺, 四面皆爲九級。 壝、墻四面, 皆三十七尺, 自壇所築外墻, 以防行人俯視。 自十月初三日始役, 至是訖工, 禮曹判書閔鎭厚、工曹判書徐宗泰、戶曹判書趙泰采, 終始監董。 其間鎭厚以守禦使職事, 出往南漢, 金鎭圭以次官, 承命董役者, 頗久。 祭祀時定議, 附見于左, 諸大臣, 皆以一年一祭爲宜, 行祭日期, 或謂宜用孟春, 或謂宜用三月, 或謂宜用二月, 或謂宜用四月, 終以三月爲定。 壇號, 初以閔鎭厚言, 欲稱泰壇, 又命牌招二品以上, 議定之, 因右相李濡言, 今大提學宋相琦, 撰定卽今號也。 樂用八佾而樂章亦相琦所撰進也。 畬以爲宜倣文廟釋菜時樂章, 諸大臣請依社稷祭樂章, 上從其言。 壇上帳殿, 用黃色紬段, 爲內帳, 如我國帳殿, 滿頂骨之規, 以一片木, 加漆, 長廣如我國闕字版及

			이 사직제(社稷祭)의 악장에 의거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단상의 장전(帳殿)은 황색 명주를 써서 내장(內帳)을 만들었으니, 우리 나라의 장전(帳殿)과 같았고, 만정골(滿頂骨)의 규격은 일편(一片)의 목판(木板)에 옻칠을 했는데 길이와 넓이는 우리 나라의 궐자판(闕字版)과 외방에 있는 전패(殿牌)의 제도와 같이 하고 부방(跗方)을 더하여 탁상에 받들어 두었다가 여기에 황지방(黃紙牓)을 붙여서 서사관(書寫官)을 시켜 그 면(面)마다 제호(題號)하기를 '대명 신종 황제 신위(大明神宗皇帝神位)'라 썼으며, 제사를 지낸 뒤에는 지방(紙牓)을 불태우고 나무조각은 궤 속에 간직했다가 제사 때마다 꺼내어 쓰기로 했다.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모두 그러하니 임금이 이를 따랐다. 등가(登歌)와 헌가(軒架)는 사직단(社稷壇)의 제도에 의하여 배치(排置)하였고 제물(祭物)의 품수(品數)는 황조(皇朝)의 의식(儀式)에 의거했으며, 제기(祭器) 역시 《대명집례(大明集禮)》의 도식(圖式)에 의거했는데, 제기는 고례(古禮)의 죽변(竹籩)등의 제도에 따라 만들었다. 신실(神室)과 황장방(黃帳房)은 명나라 《회전(會典)》의 도설(圖說)에 의해서 조성했고 제문(祭文) 중에는 청나라 연호를 쓰지 말도록 분부했으며, 단소(壇所)의 수직관(守直官)은 차정(差定)하지 않고 단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등가(登歌) 이하의 절목은 모두 김진규가 대신과 의논하여 면전에서 품의하여 정한 것이다. 이여(李畬)가 《대명집례》의 글에 의거하여 삼작(三酌)을 잇따라 올리기를 청하였고 천조(薦俎)의 한 조항에 있어서 이여는 시행함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대신들이 모두 시행함이 옳다고 주장했으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성생(省牲)과 천조(薦俎)는 몸소 시행할 필요가 없고 지방(紙牓)을 불사라 묻는 것을 바라보는 등의 절차는 사체가 더욱 중대하니, 친행(親行)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혹자의 말에 '황조(皇朝)에서는 화덕(火德)을 숭상하므로 희생(犧牲)도 붉은 빛깔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오니, 청컨대 붉은 소[騂牛]를 쓰소서." 하니, 또한 그대로 따랐다. 사리를 자세히 아는 수인을 가리어 정하고 제사를 행할 때 임무를 맡겨 수행토록 했다. 절목을 강정(講定)할 때에 예관(禮官)이 청대(請對)하여 신품(申稟)함이 전후에 매우 빈번했는데, 대저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여 한것이다.	外方殿牌之制, 加以跗方, 奉置卓上, 付以黃紙牓, 而使書寫官, 題其面曰大明神宗皇帝神位, 祭後燎其紙牓, 木片則藏之櫝中, 每於祭時出用。 諸議皆以爲然, 從之。 登歌、軒架, 依社壇制排置, 祭物品數, 依皇朝儀式, 祭器亦依《大明集禮》圖式, 而祭器, 依古禮竹籩等制爲之。 神室、黃帳房, 依《會典》圖說造成, 祭文中, 命勿書淸國年號, 命勿差壇所守直官, 只使禮官主管焉。 登歌以下節目, 皆金鎭圭議大臣, 面陳稟定者也。 畬請依《集禮》之文, 連奠三酌, 而薦俎一款, 畬以爲不可行, 諸大臣皆以爲可行, 命行之。 鎭厚以爲。 "省牲、薦俎, 不必親行, 而望瘞燎、紙牓等節, 事體尤重, 似當親行。" 從之。 鎭厚又以爲: "或云: '皇朝尙火德, 犧牲當用赤色。' 請用騂牛。" 亦從之。 擇定解事者數人, 行祭時任使焉。 節目講定時, 禮官請對申稟, 前後甚數, 大抵收議大臣而爲之。
숙종실록 46권	34년 1708-05-24 己亥	사직단에 나아가 장전에 거처하다	임금이 보련(步輦)으로 납시어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하루동안과 밤새도록 장전(帳殿)에 그대로 거처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재실(齋室)에 옮겨 거처하기를 간절하게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날에 비가 내리더니 이튿날 아침에 개었다.	上御步輦, 詣社稷, 終日終夜, 仍御帳殿。 諸臣苦請移御齋室, 上終不許。 是日, 雨, 翌朝始霽。
숙종실록 47권	35년 1709-06-29 戊辰	종묘 직장 이상휴가 종묘서와 사직서의 명칭을 고치기를 건의하다	종묘 직장(宗廟直長) 이상휴(李相休)가 상소하기를, "종묘서(宗廟署)와 사직서(社稷署)를 '서(署)'라고 명칭하여 혜민서(惠民署)와 전사서(典祀署)의 사이에 동등하게 하고 차례를 시감(寺監)과 창고(倉庫)의 아래에 거꾸로 해놓은 것은 일이 매우 잘못된 것이니, '서'를 전(殿)으로 고치고 전액(殿額)도 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어 북한산(北漢山)·홍복(洪福)에 성을 쌓는 것이 합당함을 아뢰니, 임금이 답하기를,	宗廟直長李相休上疏, 言太廟、社稷之名之以署等, 列於惠活、典(司)〔祀〕之間, 倒次於寺監、倉庫之下, 事甚謬戾, 請改署爲殿, 奉揭殿額, 仍陳北漢、洪福築城之宜, 上答以太廟、社稷, 皆以署稱號, 且省記書於諸司之下, 心常不安, 欲一釐正矣。 覽爾疏辭, 實合予

			“종묘서와 사직서를 모두 ‘서’로 부르고, 또한 생기(省記)에도 제사(諸司)의 아래에다가 쓰게 되므로, 마음에 항시 미안스러워 한 번 시정하고 싶었다. 그대의 상소의 말을 보건대 진실로 나의 뜻과 맞으니, 마땅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으나, 편액(扁額)에 있어서는 내가 불가하게 여긴다. 논한 2곳의 성(城)에 관한 일은 대개 시절을 근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경솔하게 의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였다.	意。 宜令禮官稟處, 而至於扁額, 予以爲不可也。 所論二城事, 蓋出憂時, 而有難輕議也。
숙종실록 51권	38년 1712-02-11 甲子	큰 바람으로 사직의 신실 갈대 발이 찢기고, 사단의 신문이 주춧돌째 쓰러지다	사직(社稷)의 신실(神室)의 4면(面)의 갈대 발이 모두 큰 바람에 찢기는 바 되고, 단(壇) 북쪽의 신문(神門) 3칸[間]이 모두 주춧돌째로 쓰러져서 부서졌다.	社稷神室四面蘆簾, 盡爲大風裂破, 壇北神門三間, 竝礎顚仆破碎。
숙종실록 65권	46년 1720-03-01 戊辰	사직단의 신문이 무너지다	사직단(社稷壇)의 신문(神門)이 무너졌다. 이날 서울과 지방에 큰 바람이 불어 사직단의 신문 3간이 넘어져 부서졌고 주춧돌이 모두 뽑혀 넘어졌다.	社稷壇神門崩。 是日京外大風, 社壇神門三間傾倒破碎, 礎石皆拔倒。
영조실록 9권	2년 1726-01-07 庚子	기곡하려고 사직에 나아가 재숙하다	임금이 사직(社稷)에 나아가 재숙(齋宿)하니, 장차 기곡(祈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上詣社稷齋宿。 將祈穀也。
영조실록 37권	10년 1734-01-05 壬午	숙장문에 불이 나서 죽은 군사를 구휼하고 해당 낭청을 가리게 하다	임금이 명정문(明政門)에 나가니 백관(百官)들이 예법(禮法)대로 조참(朝參)을 행하였다. 지난밤에 숙장문(肅章門)의 시각을 알리는 군사가 실화(失火)로 인하여 불에 타서 죽었는데, 병조(兵曹)에서 잘 검칙(檢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낭청(郎廳)은 사태(沙汰)시키고 죽은 사람은 구휼하라고 명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를 불러 하유하기를, “인명(人命)을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 오늘의 조참(朝參)은 인정문(仁政門)에서 행할 수 없으니, 명정문(明政門)으로 옮겨서 설행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인정문이 숙장문과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기 위해 행사(行事)하는 즈음에 예문관(藝文館)의 의막(依幕)에 불이 나서 사직단(社稷壇) 곁의 소나무에까지 연급(延及)되었었다. 그랬는데 이때에 이르러 군사가 또 금문(禁門) 안에서 불타 죽었다. 재이(災異)의 경계가 이와 같았는데도 정신(廷臣) 가운데 진계(陳戒)하는 사람이 없었다.	上御明政門, 百官朝參如禮。 前夜, 肅章門傳漏軍失火燒死, 以兵曹不能檢飭, 命汰該郎, 恤其死者。 召諭禮房承旨曰:“其在重人命之道, 今日朝參, 不可行於仁政門, 其令移設於明政門。” 蓋以仁政門近於肅章門也。 先是, 祈穀祭將事之際, 藝文館依幕火, 延及社壇傍松木。 至是, 軍人又燒死於禁門之內。 災異之警如此, 而廷臣無陳戒者矣。
영조실록 42권	12년 1736-09-02 癸巳	남태온이 숙종의 어필을 목판에 새길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이때 어떤 역관(譯官)이 숙종(肅宗)의 어필(御筆)을 진헌하였는데, 곧 사직단(社稷壇) 곁에 있는 노송(老松)에 대해 읊은 시였다.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내가 이 시에 대해 삼가 차운(次韻)한 것이 있다.” 하니, 승지 남태온(南泰溫)이 선조의 어제에 각부(刻附)하여 목판으로 만들어 걸어 놓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時有譯官進肅廟御筆, 卽詠社稷老松詩也。 上覽之, 敎曰:“予有敬次此詩者。” 承旨南泰溫請刻附於先朝御製以揭板, 上不許。
영조실록 44권	13년 1737-07-13 己亥	임금이 사직단에 나아가 재실에 들어가다	임금이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재실(齋室)에 들어갔다.	上詣社壇, 入齋室。
영조실록 51권	16년 1740-01-09 辛亥	기곡제를 행하다. 예가 끝나고 재실에 들어가 대신을 입시하게 하다	기곡제(祈穀祭)를 행하였다. 예(禮)가 끝나고서 재실(齋室)에 들어가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송인명(宋寅明)에게 묻기를, “바야흐로 동조(東朝)께 존호(尊號)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는데, 이것은 예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경(卿)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송인명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의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누가 감히 공경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行祈穀祭。 禮畢, 入齋室, 命大臣入侍。 問判府事宋寅明曰:“方議東朝上號, 此非悖於禮者, 卿以爲何如?” 寅明對曰:“此天理人情之不可已者, 孰敢不欽承乎?” 上又曰:“自予在沖年, 多依賴寧嬪, 曾入社稷也, 或以飮食饋予, 怳若隔晨。 其宮密邇, 欲一見木主, 以伸予懷也。” 仍命歷臨寧嬪宮。 向夕還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 때부터 영빈(寧嬪)을 많이 의뢰하였다. 일찍이 사직(社稷)에 들어왔을 때에 혹 음식을 나에게 먹여 주기도 하였는데, 언뜻 엊그제 일 같다. 그 궁(宮)이 아주 가까우니, 목주(木主)를 한 번 보아 내 회포를 풀고자 한다.” 하고, 이어서 영빈궁(寧嬪宮)에 들를 것을 명하였다. 저물녘에 환궁(還宮)하는 길에 청평 위주(淸平尉主) 집에 들러 주련(駐輦)하여 하교하기를, “선조(先朝)의 어제인 ‘줄행랑 앞에 구슬 발이 드러워졌으니 틀림없이 공주가 내 거둥을 바라보는 것이리라.[長廊下低珠箔垂 分明貴主望羽旄]’라는 시(詩)를 돌이켜 생각하니 갑절이나 흥감(興感)한다.” 하고, 그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宮, 路過靑平尉主第駐輦, 敎曰: “追惟先朝御製長廊下低珠箔垂, 分明貴主望羽旄之詩, 一倍興感也。” 特命錄用其奉祀孫。
영조실록 53권	17년 1741-02-22 丁巳	영의정 김재로가 황단의 악기에 대한 일로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황단(皇壇)의 악기(樂器)에 대한 일로 아뢰기를, “사직(社稷)·종묘(宗廟)·문묘(文廟)의 악기는 옮겨서 사용한 예가 없고, 여러 산천(山川)의 악기는 단지 1건(件)뿐인데, 황단에 친향할 날짜가 선잠제(先蠶祭)와 서로 겹치게 되었으니, 사용할 악기를 미루어 옮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악기를 구비하지 못한다 하여 대제(大祭)를 물려서 행해야 하겠는가? 문묘의 악기를 옮겨다 쓰되, 사체가 구간(苟簡)하니 황단의 악기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예조로 하여금 즉시 만들게 하여 장악원(掌樂院)에 비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호남의 나리포(羅里舖)는 포항(浦項)의 예에 의거하여 별장(別將)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자벽(自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광양(光陽)의 송전(松田)을 실화(失火)하였습니다. 지방관과 해당 수사를 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남방은 인심이 교활하고 포악하여 혹시라도 관장(官長)에게 죄를 얻게 되고 산지기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송전에 일부러 불을 지를 것입니다. 만약 수령을 죄주면 간사한 주민들의 계교에 걸려 들게 될 것이니 논죄하지 말고 지방관을 곤장으로 다스려 경계시켜야 합니다.”	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 以皇壇樂器事奏曰: “社稷、宗廟、文廟樂器, 無移用之例, 諸山川樂器只一件, 而皇壇親享日期與先蠶祭相値, 所用樂器, 無以推移也。” 上曰: “豈以樂器不備, 退行大祭乎? 以文廟樂器移用, 而事體苟簡, 皇壇樂器, 待秋令禮曹卽爲造成, 置之掌樂院。” 在魯言: “湖南羅里舖, 當依浦項例, 置別將。 令監司自辟。” 從之。 在魯又言: “光陽松田失火。 地方官、該水使當罪, 而南土人心巧惡, 或得罪官長, 或結嫌山直, 則必衝火松田。 若罪守令, 適中奸民之計, 宜勿論而棍治地方官, 以警之。” 上可之。
영조실록 54권	17년 1741-07-11 癸酉	승지 김상성이 장악원의 옛 석경을 황단의 악기에 사용하도록 아뢰다	승지 김상성(金尙星)이 말하기를, “장악원(章樂院)의 누각[樓] 위에 옛 석경(石磬)이 계축년에 제조되었다고 새겨진 것이 있는데 혹자는 사직단(社稷壇)의 옛터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비변사(備邊司)의 옛터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를 상고해 본다면 바로 세종(世宗) 15년입니다. 황조(皇朝)에서 악(樂)을 하사한 것이 어느 해에 있었던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축년에 비로소 아악(雅樂)을 바르게 하였으니, 이 석경은 바로 그 당시에 제조된 것입니다. 황단(皇壇)의 악기(樂器)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몇 매(枚)나 되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거의 10여 매인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매라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承旨金尙星言"“樂院樓上, 有古石磬, 刻以癸丑造者, 或云得之社稷舊基, 或云得之備邊司舊基。 考其年則, 乃世宗十五年也。 未知皇朝賜樂在於何年, 而癸丑始正雅樂, 則此磬乃其時所造也。 用於皇壇樂器宜矣。” 上曰: “幾枚乎?” 對曰: “幾十餘, 而可用者四枚云。” 上曰: “令樂工, 洗而用之也。”

			“악공(樂工)으로 하여금 세척하여 쓰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56권	18년 1742-08-02 戊子	임금이 추향 대제를 지내고 이연덕에게 북경에서 아악을 배워 오게 하다	임금이 친히 추향 대제(秋享大祭)를 지냈다. 예(禮)를 마치자, 하교하기를, “올해는 마침 임술년인데, 선조(先朝)의 춘향이 임오년 2월 2일에 있었으니, 봄과 가을의 계절은 비록 같지 않지만, 날짜가 우연히 꼭 부합됨은 그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하고, 드디어 7언 절구(七言節句) 1수를 짓고 새겨서 재실(齋室)에 걸어 두라고 명하였다. 그 기구(起句)에 이르기를, “임오년 뒤 40년 만에 옛일 자취 따라 사단(社壇) 앞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에게 갱진(賡進)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필선(弼善) 이연덕(李延德)이 음률(音律)을 잘 안다 하여 아악(雅樂)을 이정(釐正)하게 했는데, 사단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에 소(簫)의 소리가 몹시 작고 또 율(律)에 맞지 않았다. 임금이 이연덕에게 묻기를, “12율(律)에는 각자 궁성(宮聲)이 있는가?” 하니, 이연덕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종묘악(宗廟樂)의 경우에는 황종궁(黃鍾宮)을 쓰고 사직악(社稷樂)의 경우에는 임종궁(林鍾宮)을 쓰는데, 그 가운데 각각 12율이 있으니, 이것이 8율을 사이에 두고 상생(相生)하는 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음악이란 신명(神明)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지금 아악이 이와 같으니, 그 태만함을 신칙함이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이연덕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다시 익도록 명하였다. 악원 제조(樂院提調) 민응수(閔應洙)가 말하기를, “임진년 이후로 악기(樂器)가 망가지고 없어져 지금의 성률(聲律)은 거의 다 훼손되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나간 해에 악공(樂工) 황세대(黃世大)가 북경(北京)에 들어가 생황(笙簧)을 배워 가지고 왔으니, 이번의 사행(使行)에도 또한 들여보내어 배워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上親行秋享大祭。 禮畢, 敎曰: “今年適壬年, 而先朝春享, 在壬午二月二日, 春秋雖不同, 而日偶相符, 其亦異矣。” 遂製下七言一絶, 命刊揭于齋室。 其起句曰: 壬午以來四十年, 追蹤古事社壇前。 令諸臣賡進。 初上以弼善李延德能知音律, 使釐正雅樂, 及社壇奏樂, 簫聲甚微, 且不中律。 上問延德曰: “十二律, 各自有宮聲耶?” 延德曰: “然矣。 如宗廟樂用黃鐘宮, 社稷樂用林鐘宮, 其中各有十二律, 是隔八相生之義也。” 上曰: “樂者, 所以感神祇, 而今之雅樂如此, 宜飭其慢。” 遂命重推延德, 更令肄習。 樂院提調閔應洙曰: “壬辰以後, 樂器崩亡, 今之聲律, 壞盡無餘。 頃年樂工黃世大入去北京, 學得笙簧以來, 今番使行亦令入送, 學來宜矣。” 上從之。
영조실록 58권	19년 1743-10-09 戊午	비와 우박이 내리고, 또 사직단의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다	비와 우박이 내리고, 또 사직단(社稷壇)의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雨雹, 又電震社壇松樹。
영조실록 61권	21년 1745-03-05 丁丑	호조 판서 서종옥이 청대하여 황단의 어재실의 영건 문제를 논하다	호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어재실(御齋室)을 영건(營建)하는 일로써 분부를 내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신이 운대관(雲臺官)을 데리고 간심(看審)했더니, 삼문(三門) 안은 좁고 또 동서 양쪽 가장자리는 모두 연운(年運)에 불리합니다. 조종문(朝宗門) 밖에 조용하고 넓은 곳이 있는데 황단과는 멀지 않으니 터전으로 정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으로는 중단(中壇) 위 어막(御幕)을 친 곳에다 세 칸 집을 지어 세마평(洗馬坪)의 들어가 거처하는 방과 같게 하고자 하였다. 제향(祭享)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깨끗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 조종문 밖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세 칸은 제도의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사직단(社稷壇) 재실처	戶曹判書徐宗玉請對奏曰: “皇壇御齋室營建事, 成命已久。 臣率雲臺官看審, 則三門內狹窄, 且東西兩邊, 俱不利於年運。 而朝宗門外, 有閑曠處, 與壇所不遠, 可以定基址矣。” 上曰: “予意欲於中壇之上御幕排設處, 作三間屋子, 如洗馬坪入處之室矣。 祭享時, 果有多人不潔之慮, 定以朝宗門外可也。” 宗玉曰: “三間則不成制樣, 必如社稷齋室左右房各二間, 廳事四間, 然後方成規模矣。” 上曰: “以三間長二間廣, 中二間爲廳事可也。” 宗玉又曰: “親臨望位禮時, 版位當設於末臺上乎?” 上曰:

			럼 좌우의 방(房) 각 두 칸씩으로 하고, 청사(廳事)를 네 칸으로 한 연후에야 규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 칸 길이에 두 칸 넓이로 하여 가운데 두 칸을 청사로 하면 된다." 하였다. 서종옥이 또 말하기를, "망위례(望位禮)에 친림(親臨)하실 때 판위(版位)는 마땅히 말대(末臺) 위에 설치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대(末臺)의 아래 어로(御路)의 길이 굽은 곳에 하나의 넓은 돌을 한정해서 하면 된다." 하니, 서종옥이 말하기를, "재실의 좌향(坐向)은 마땅히 축좌 미향(丑坐未向)으로 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땅을 쓸고 제사지낸다.'는 뜻으로 하면 재실의 계단이 어찌 높아야 하겠는가? 단지 2층으로 하고 장석(長石)을 쓰지 말아야 한다." 하니, 서종옥이 말하기를, "모자 부전(茅茨不剪)하는 성상의 뜻을 신이 마땅히 우러러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 재실에는 문(門)이 둘인데, 여기에는 세 문을 내어 동궁(東宮)이 동쪽문으로 출입하게 해야 한다." 하니, 서종옥이 말하기를, "동궁께서 출입하는데 앞길로 다니는 것은 불편할 듯하니, 동쪽가에 좁은 문 하나를 내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말하였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담장은 조심하는 도리로 보아 높이 쌓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둥할 때 협연(挾輦)이 편리한데 담장을 어찌 높이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末臺之下, 御路路曲處, 限一廣石可也。" 宗玉曰: "齋室坐向, 當爲丑坐未向矣。" 上曰: "其在掃地以祭之義, 齋室階砌, 何可高乎? 只二層而勿用長石可也。" 宗玉曰: "茅茨不剪之聖意, 臣當仰體矣。" 上曰: "廟齋室有二門, 此則置三門, 東宮由東門出入可矣。" 宗玉曰: "東宮出入, 由前路似不便, 東邊置一挾門似便。" 上曰: "唯。" 宗玉曰: "墻垣則其在審愼之道, 宜高築也。" 上曰: "擧動時挾輦便是, 墻垣何必高築乎?"
영조실록 69권	25년 1749-06-27 癸卯	비로소 종묘의 제기장을 만들어 협실에 두고 제기를 간직하다	비로소 종묘(宗廟)의 제기장(祭器欌)을 만들어 협실(夾室)에 두고 제기를 간직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제기를 간직하는 곳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황단(皇壇) 및 사직(社稷)에 장롱을 만들어 제기를 간직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종묘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임금이 선조(先祖) 받들기에 정성을 다하여 일마다 공경을 이룸이 이와 같았다. 이 때에 호조 판서 박문수가 아뢰기를, "궁전(宮殿) 뜰에 옛날에 깔았던 벽돌이 없어진 것이 많으므로 지금 수보(修補)해야 마땅한데, 전중(殿中)에는 감히 사람을 시켜서 계적(計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 제도에 아무리 시어전(時御殿)이라 할지라도 역시 계적(計摘)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벽돌이 없어진 것은 훔쳐간 자가 있을 것인데, 형률에 궁전의 벽돌을 훔쳐간 자에 대해서는 일률(一律)을 적용한다 하였기 때문에 찾아 내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始作宗廟祭器欌, 安於夾室, 以藏祭器。 初, 上以祭器所藏處欠潔, 命皇壇及社, 以欌藏祭器, 至是宗廟亦如之, 上誠於奉先事事致敬如此。 時, 戶曹判書朴文秀奏言: "殿庭舊鋪磚石多亡失, 今當修補, 而殿中不敢使人計摘。" 上曰: "舊制, 雖時御殿, 亦聽計摘而修之, 此無傷也。 但磚石之亡, 以有偸去者矣, 在法偸殿石者用一律, 故今不欲搜出耳。"
영조실록	29년 1753-05-25 庚辰	사직단에 거둥하여 단	임금의 사직단(社稷壇)에 거둥하여 단상(壇上)을 봉심(奉審)하고 희생과	上幸社壇, 奉審壇上, 省牲省器。

79권		상을 봉심하고 희생과 제기를 살펴보다	제기를 살펴보았다.	
영조실록 95권	36년 1760-05-23 丙寅	부제학 서명응이 차자를 올려 기우제를 경전의 내용에 의해 지낼 것을 청하다	부제학 서명응(徐命膺)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기우제는 반드시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에 먼저 지내고 나서 용산강·저도에 지내고, 그 다음에 산천(山川)과 우사단(雩祀壇)에 지내며 그 다음에 북교(北郊)와 사직단(社稷壇)에 지내고, 마지막으로 종묘에 지내게 되어 있으며, 제관 역시 반드시 먼저 3품의 종정(從正)을 차정하며, 그 다음에 근시(近侍)를 차정하고 그 다음에 의정을 차정하며, 마지막으로 친행(親行)을 하는데, 이는 대개 경전(經傳)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한 것입니다. 지금 사산(四山)과 삼강(三江)에 겨우 한 번 제사하였고, 3품관과 2품관이 겨우 한 번 거행하였는데, 곧바로 옥지(玉趾)를 수고롭혀 태묘에 제사를 올린다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2품관을 우사단과 북교에 보내고 대신을 사직과 종묘에 보내어 오방(五方)의 토룡제(土龍祭)와 경회루(慶會樓) 연못 가의 석척제(蜥蜴祭)의 설행도 하나같이 전서(典序)를 따라 하여 보아서, 이렇게 하고도 감응이 없으면 친행의 예(禮)를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은탕(殷湯)의 기우제도 차례가 있었던가? 아조(我朝)의 친행 역시 차례를 따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번의 일은 이뿐만 아니라, 선왕을 추모하고 백성을 위하는 뜻을 태실(太室)에 호소하고자 하여 이미 대신에게 하유한 것이다. 이 마음이 이미 신명에게 전달되었는데, 만약 대신에게 섭행(攝行)을 명한다면 애당초에 성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또 친행을 하고자 하면서 태실에 먼저 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도 속일 수 없거든, 더구나 신명이겠는가? 이 일을 세 번이나 하유하여 스스로 불만족스럽다는 뜻을 내보였다. 비록 삼척 동자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 알 터인데, 더구나 경전의 뜻을 끌어다 대는 옥당의 장관이겠는가? 평상시의 언행이 믿음을 받았다면, 오늘의 전교에 그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이는 나의 과실이다.”
하였다.	副提學徐命膺。 上箚, 略曰:
“我國祈雨之祭, 必先三角木覓, 次龍山楮島, 次山川雩壇, 次北郊社壇, 然後至於宗廟, 其官亦必先三品從正, 次二品從正, 次近侍, 次議政, 然後始親行焉, 蓋有考於經旨也。 今四山三江, 僅一祭焉, 三品二品, 僅一行焉, 而旋勞玉趾, 薦圭璧于太廟, 不已遽乎? 臣愚謂, 宜遣二品於雩壇北郊, 遣大臣於社稷宗廟, 祀五方之土龍, 設池邊之蜥蜴, 一準之于典序, 如是而有不應, 則親禱之禮, 可以議也。” 答曰: “殷湯之禱, 其有次序乎? 我朝親禱, 亦有不計其次之例。 今番之事, 非徒此也, 追慕爲民, 欲籲太室, 已諭大臣。 此心已徹陟降, 若命大臣攝行, 初以誠乎? 欲爲親行, 不先太室, 此心不可欺, 況陟降乎? 此事三巡下諭, 以示自慊之意, 雖三尺童子, 庶知予心, 而況引經據義之玉署長乎? 常時言行, 其若有信, 今日之敎, 孰不感動? 寔予之過也。”
영조실록 101권	39년 1763-03-20 丁丑	각사의 입직한 관원 50여 명을 소견하여 직장을 두루 물어보다	임금이 각사(各司)의 입직(入直)한 관원 50여 명을 소견(召見)하여 직장(職掌)을 두루 물어보았다. 사직단(社稷壇) 담의 수리와 소제를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 하여 사직 영(社稷令) 노언방(盧彦邦)을 태거(汰去)하고, 귀후서 별제(歸厚署別提) 김인서(金麟瑞)는 전조(銓曹)에 수령으로 조용(調用)할 것을 명하였다. 무신년의 공신(功臣) 언성군(彦城君) 김중만(金重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上召見各司入直官五十餘人, 歷詢職掌。 以壇壝修掃之不勤, 汰去社稷令盧彦邦, 歸厚別提金麟瑞, 命銓曹守令調用。 以戊申功臣彦城君金重萬之子也。
영조실록 113권	45년 1769-08-08 丁巳	예방 승지와 헌관에게 사직단에 나가 희생을 살펴 볼 것 등을 명하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예방 승지에게 명하여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희생(犧牲)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사직단에 쓸 향을 지영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마침내 하교하기를,
“임금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일에 허물을 바로잡아 고친 후에야 마음이 느슨해졌으니, 어찌 누워서 날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곧 문에 나아가 승지가 복명(復命)하기를 기다렸다가 제물 단자(祭物單子)와 집사관(執事官)의 거안(擧案)을 읽도록 명하고 부복(俯伏)하여 들었다. 충자문(冲子文)을 지어서 써서 보이고 승지로 하여금 정서(淨書)하게 하였다. 또 유신(儒臣)에게 《문헌통고(文獻通考)》 교사권(郊社券)을	上御建明門, 命禮房承旨詣社稷, 與獻官省牲。 時上欲爲社壇香祇迎而未果, 遂敎曰: “君之所重, 廟與社。 予自幼, 凡事補過然後心乃弛, 豈可臥而度日?”
卽御門待承旨復命, 命讀祭物單子及執事擧案, 俯伏以聽。 製書示沖子文, 令承旨書之。 又令儒臣讀奏《文獻通考》郊社卷, 還內。

			독주(讀奏)하게 하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영조실록 113권	45년 1769-11-16 甲午	육상궁 등에 전배와 전작례를 행하고 양성헌에서 《대학》을 강하다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갔는데, 왕세손이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계체(繼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니, 종통(宗統)을 정한 후 원량(元良)은 마땅히 이날에 효장묘(孝章廟)에 전배(展拜)해야 할 것이며, 백관(百官)도 또한 전례에 의거하여 예(禮)를 행해야 할 것이다.” 하고, 임금이 왕세손과 육상묘(毓祥廟)에 전배한 후 창의궁(彰義宮)에 나아가 효장묘(孝章廟)와 의소묘(懿昭廟)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양성헌(養性軒)에 나아가 《대학(大學)》 경(經) 1장(章)을 강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19세에 이 양성헌에서 사부(師傅) 이현익(李顯益)에게 《대학(大學)》을 배웠는데, 59년 후에 이 양성헌에 올라 이 책을 강하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고, 경연관에게 녹비[鹿皮]를, 사관에게 현궁(弦弓)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세손과 의열궁(義烈宮)에 들어갔다가, 회란(回鑾)하여 연화문(延和門)에 이르러, 만회문(萬懷文)을 짓고 승지에게 명하여 인경궁(仁慶宮)의 옛터를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이는 대개 《선원보략(璿源譜略)》에 인목 왕후(仁穆王后)가 인경궁에서 승하(昇遐)하였다는 글이 있었으므로, 옛터를 찾아보도록 명한 것이었다. 승지가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노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인왕산(仁王山) 아래 사직단(社稷壇)의 왼쪽에 있었던 듯한데,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上詣毓祥宮, 王世孫隨駕 上曰: “人君以繼體爲重, 定宗統之後, 元良宜於此日, 展拜於孝章之廟, 百官亦依例行禮。” 上與王世孫, 展拜於毓祥廟後, 詣彰義宮, 行奠酌禮于孝章廟・懿昭廟。 上御養性軒, 講《大學》經一章, 上曰: “予於十九歲, 於此軒受讀《大學》于師傅李顯益, 豈意五十九年後, 復躡此軒, 講此書乎? 命賜經筵官鹿皮, 史官弦弓。 上與世孫, 歷入義烈宮, 回鑾至延和門, 述萬懷文, 命承旨往審仁慶宮舊基。 蓋譜略有仁穆王后昇遐于仁慶宮之文, 故命尋舊基也。 承旨回奏曰: “臣訪之故老, 似在仁王山下社稷之左, 而不可詳也。”
영조실록 121권	49년 1773-12-10 甲午	향을 맞이하는 예식을 행하고, 이시정을 첨지중추로 승진시키다	임금이 연화문 밖에 나아가서 향(香)을 공경히 맞이하는 예식을 행하였다. 이어서 무덕문(武德門)에 나아가서 사직단(社稷壇)을 첨망(瞻望)하고, 광명전(光明殿)으로 돌아왔다. 통례(通禮) 이시정(李蓍廷)을 특별히 첨지중추(僉知中樞)로 승진시켰다.	上詣延和門外, 行香祗迎禮。 仍詣武德門瞻望社壇, 還御光明殿。 通禮李蓍廷特陞僉中摳。
정조실록 6권	2년 1778-12-2 戊午	사직단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단사와 수복에게 진설 방법 등을 묻다	임금이 사단(社壇)에 나아가 직접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다시 재전(齋殿)에 나아가 단사(壇司)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서(社稷署)에는 본래 재실(齋室)이 없기 때문에 으레 대차(大次)로 임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대차로 들어가지 않고 입직(入直)하게 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니, 단사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수복(守僕)에게 하문하니 숙묘조(肅廟朝) 때 정식을 삼았다고 앙대(仰對)하였다. 진설도(陳設圖)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제향의 진설은 모두 서쪽을 상(上)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유독 단향(壇享)에만 동쪽을 상으로 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수복이 대답하기를, “신위(神位)가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을 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단(壇) 위에 돌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돌인가?” 하니, 수복이 대답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사(社)가 있으면 석주(石柱)가 있다는 글이 있는데, 단 위의 돌은 대개 이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였다.	上詣社壇, 親省牲器, 還御齋殿, 召見壇司。 上曰: “社署本無齋室, 故例御大次。 今不入大次, 而入直所, 創自何時?” 壇司不能對。 問于守僕, 以肅廟朝定式, 仰對。 命持入陳設圖。 上曰: “祭享陳設, 皆以西爲上, 而獨於壇享, 以東爲上何也?” 守僕對曰: “神位北向, 故以東爲上也。” 曰: “壇上有石何石?” 守僕對曰: “《五禮儀》, 有社有石主之文。 壇上之石, 蓋倣此也。”
정조실록 11권	5년 1781-01-05 戊寅	기곡제를 지내기에 앞서 유문 안의 관리에	임금이 사직(社稷)에서 기곡제(祈穀祭)를 지내려고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가서 살펴보고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사관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上將祈穀于社稷, 命史官摘奸往審。 史官回奏言: “墻門內全不修掃。” 命汰入

		소홀한 입직관 홍윤호를 중종 감처시키다	“유문(壝門) 안을 전혀 수리하고 깨끗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입직관(入直官) 홍윤호(洪允浩)를 태거(汰去)시키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중종 감처(從重勘處)하도록 명하였다.	直官洪允浩, 令該府, 從重勘處。
정조실록 11권	5년 1781-01-07 庚辰	사직단에 나아가 생기를 살피고 재숙하다	임금이 사직단에 나아가 생기(牲器)를 살피고, 드디어 재숙(齋宿)하였다.	上詣社壇, 省牲器, 遂齋宿。
정조실록 15권	7년 1783-01-08 庚子	사직서에 제사의 의식·제단·유래 등을 편찬하여 비치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사직서 영 윤광호(尹光澔)를 불러 보고 사직서의 의궤(儀軌)를 가져오라고 하자, 윤 광호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사직서의 제거(提擧)에게 명하여 제사지내는 의식·제단·관사 및 유래된 사실을 종류별로 나누어 편찬해서 사직서에 비치해 두라고 명하였다.	上召見社稷署令尹光澔, 徵本署儀軌。 光澔對以無有。 上命本署提擧, 撰次凡祀享儀式、壇壝、館舍及流來事實, 彙分類次, 藏于本署。
정조실록 19권	9년 1785-01-02 壬子	지방 고을의 사직단을 보수하게 하고 매달 말 제사 유무를 보고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단 제사[壇享]는 곧 옛날의 방구단(方丘壇) 제사이다. 질그릇과 표주박에 하잘것없는 제물을 담아놓고 땅을 쓸어내고 제사를 지내지만, 밝은 신령은 세상에 가득차서 물처럼 모여드니, 주·부·군·현에서 사직단(社稷壇)을 모실 책임이 없지도 않다. 일찍이 선왕조(先王朝)에서 지방 고을들의 사직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 번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었다. 근래 들으니, 여러 도에서 사직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제단을 둘러싼 담은 떨어져 나가고 홍살문(紅箭門)은 허물어졌으나, 수령[守宰]들이 여러 성황당(城隍堂)의 제단같이 여기므로, 너무나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땅으로 하여금 나무하고 소 먹이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니, 사체(事體)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심지어 제사 예절을 의식대로 따르지 않고 제품(祭品)을 능히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이것으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대저 수령의 직책은 백성들과 사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 그밖의 나머지 일은 넉넉히 알 수 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거듭 각 고을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게 하여, 사직단을 보수하여야 마땅할 데는 즉시 수리하게 하고, 각각 지키는 군사를 두고 경계 표식을 세워 잡인들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라. 매달 월말에는 사직단에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문(營門)에 통보하고, 영문에서 예조[儀曹]에 전보(轉報)하여 근만(勤慢) 상황을 상고하게 하라. 이 밖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나 제품 같은 것은 판당(判堂)이 기록하여 한통의 비밀 관문을 제출하도록 하라. 이것에 의해서 준행하게 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은 한탄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서 이것을 사직서의 의궤(儀軌)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敎曰: “我國之壇享, 卽古之方丘也。 陶瓠鉶羹, 掃地將事, 而明靈洋洋, 如水之在, 州、府、郡、縣, 莫不有社稷之責。 曾在先朝, 以外邑壇社之欠潔, 屢下飭敎, 而近聞諸路社壇, 多不修治。 壇壝則剝落, 箭門則頹圮, 而守宰輩視之若城隍諸壇, 致使莫重禋祀之地, 鞠爲樵牧之場云, 事體之屑越, 未有甚於此。 至若享禮之不遵儀式, 祭品之不能精潔, 推此可知。 夫守令之職, 民社爲重, 此不致誡, 餘何足觀? 令該曹申明關飭各邑, 社壇之可合修治處, 隨卽葺理, 各置守護校卒, 定其標限, 另禁雜人。 每朔月終, 以社壇有無事論報營門, 自營門轉報儀曹, 以爲考勤慢之地。 外此享禮也、祭品也, 判堂錄出一通粘關。 依此遵行, 俾無如不祭之歎。” 仍命載之社稷署儀軌。
정조실록 33권	15년 1791-12-30 庚午	사직서에 가서 재숙하다	상이 사직서(社稷署)에 가서 재숙(齋宿)하였다.	上詣社稷署, 齊宿。
순조실록 5권	3년 1803-11-04 乙未	사직서의 악기고에 불이 났다. 이에 대한 사후 조치	사직서(社稷署)의 악기고(樂器庫)에 불이 났다.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하고, 난간에 나아가 회주(回奏)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곧 예조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날을 가리지 말고 위안제(慰安祭)를 설행하고, 불탄 풍물(風物)·관복(冠服) 등을 해조로 하여금 속히 개조(改造)하고, 종(鐘)·경(磬)은 청(廳)을 설치해서 조성(造成)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조진관(趙鎭寬)·윤광보(尹光普)를 도감 당상으로 차출하였다.	社稷樂器庫失火。 上遣承旨奉審, 臨軒以待其回奏。 旋因禮曹啓, 慰安祭不卜日設行, 命風物、冠服被燒者, 令該曹, 卽速改造, 鐘、磬設廳造成。 以趙鎭寬、尹光普, 差都監堂上。
철종실록 10권	9년 1858-06-22 丙寅	사직의 신실에 변을 저지른 죄인 김명철을 정배하게 하다	사직(社稷)의 신실(神室)에 변을 저지른 죄인 김명철(金明哲)을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하라 명하였다.	命社稷神室作變罪人金明哲, 配于康津縣。

③ 고종-순종

권명	년월일	기사명	국역	원문
고종실록 33권	32년 1895-04-02 癸卯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중략) 장례원(掌禮院)【궁중 의식, 제사 및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전(殿)과 궁(宮), 각 능(陵)과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종실(宗室) 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경(卿)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례(掌禮)는 3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8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봉상사(奉常司)는 제례(祭禮)를 맡고 악공(樂工)을 감독한다. 장(長)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 협률랑(協律郞)은 2인인데 판임관이다. ○제릉사(諸陵司)는 능, 원, 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정사(宗正司)는 종실(宗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귀족사(貴族司)는 귀족의 사무와 벼슬과 품계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중략)	掌禮院。 【宮中儀式、祭祀及廟、社、殿、宮、各陵、園、墓에 關ᄒᆞᆫ 事務와 宗室、貴族에 關ᄒᆞᆫ 事務를 掌理ᄒᆞᆷ。 卿一人, 勅任; 掌禮三人以下, 奏任; 主事八人以下, 判任。 ○奉常司: 祭禮를 掌ᄒᆞ고 樂工을 監督ᄒᆞᆷ。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協律郞二人, 判任。 ○諸陵司: 陵、園、墓事務를 掌ᄒᆞᆷ。 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宗正司: 宗室事務外御譜修正을 掌ᄒᆞᆷ。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貴族司: 貴族事務와 爵品을 掌ᄒᆞᆷ。 長一人, 奏任; 主事三人以下, 判任。】
고종실록 33권	32년 1895-05-25 乙未	이재면 등에게 관등을 올려 주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면(李載冕)을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고,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김종한(金宗漢)을 칙임관 2등에 서임하여 제용원장(濟用院長)을 겸임시켰으며, 정2품 심상훈(沈相薰)을 장례원경(掌禮院卿)에, 정2품 이재순(李載純)을 시종원경 겸 시종장(侍從院卿兼侍從長)에, 종1품 이승오(李承五)를 규장원경 겸 왕태자궁일강관(奎章院卿兼王太子宮日講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3품 이하 영(李夏榮)을 회계원장(會計院長)에, 종2품 정병하(鄭秉夏)를 내장원장(內藏院長)에, 종2품 김명규(金明圭)를 시종원비서감중승 겸 전의사장(侍從院祕書監中丞兼典醫司長)에, 종2품 김상규(金商圭)를 종묘서제거 겸 사직서제거(宗廟署提擧兼社稷署提擧)에, 종2품 이위(李暐)를 경모궁제거 겸 영희전제거(景慕宮提擧兼永禧殿提擧)에, 정2품 홍순형(洪淳馨)을 왕태후궁 대부(王太后宮大夫)에, 종2품 이경직(李耕稙)을 왕후궁 대부(王后宮大夫)에, 종2품 송도순(宋道淳)을 왕태자궁 첨사(王太子宮詹事)에, 종1품 정기회(鄭基會)를 왕태자궁 일강관(王太子宮日講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3품 이은용(李琅鎔)을 왕태자비궁 대부(王太子妃宮大夫)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二十五日。 宮內府大臣李載冕, 敍勅任官一等; 宮內府協辦金宗漢, 敍勅任官二等兼任濟用院長。 正二品沈相薰任掌禮院卿, 正二品李載純任侍從院卿兼侍從長, 從一品李承五任奎章院卿兼王太子宮日講官, 竝敍勅任官三等; 三品李夏榮任會計院長, 從二品鄭秉夏任內藏院長, 從二品金明圭任侍從院祕書監中丞兼典醫司長, 從二品金商圭任宗廟署提擧兼社稷署提擧, 從二品李暐任景慕宮提擧兼永禧殿提擧, 正二品洪淳馨任王太后宮大夫, 從二品李耕稙任王后宮大夫, 從一品宋道淳任王太子宮詹事, 從一品鄭基會任王太子宮日講官, 竝敍勅任官四等; 三品李埏鎔任王太子妃宮大夫, 敍奏任官五等。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02-13 陽曆	비서원 승과 궁내부 참서관에게 종묘와 경운궁 등을 봉심하고 오라고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영희전(永禧殿)·진전(眞殿)·경모궁(景慕宮)·빈전(殯殿)은 비서원 승(祕書院丞)으로 하여금 봉심(奉審)하게 하고, 왕태후 폐하(王太后陛下)가 계신 경운궁(慶運宮) 행재소(行在所)와 대원군 부대부인궁(大院君府大夫人宮)에는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으로 하여금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十三日。 詔曰: "宗廟、永寧殿、社稷、永禧殿、眞殿、景慕宮、殯殿, 令祕書院丞奉審。 王太后陛下慶運宮行在所、大院君府大夫人宮, 令宮內府參書官問候以來。"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03-08 陽曆	강두흠 등이 상소를 올리다	중추원 원외랑(中樞院員外郞) 강두흠(姜斗欽) 등이 올린 상소(上疏)의 대략에, (중략) 대체로 경장(更張)한 이후 새로 정한 전식(典式) 중에는 알맞게 변통한 것을 이루 다 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그전대로 복구할 것을 들어	八日。 中樞院員外郞姜斗欽等疏略: 竊伏念此際, 玉趾屈駕, 移御俄館, 雖出於大聖人處變達權萬不獲已之擧。 然邊備一往疎虞, 潢兵群起猖獗, 而生靈

			말한다면,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제사 의식 절차를 전에 비하여 줄인 것은 사전(祀典)을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태학(太學)은 수선(首善)의 장소인데 다시는 선비들을 길러내지 않으니 이것도 유교(儒敎)를 내세우는 기본이 아닙니다. (중략)	震慴。 鎭撫懷綏之方, 亶在乎還御, 而勅諭有日, 迄未回鑾, 勞外至此, 此誠百僚、萬姓之所憂焦也。 彼所謂擧義云者, 卽惟曰復母讎、討國賊, 原其彝性, 秉有大義。 然擧義之初, 刦殺長吏, 燒蕩閭里, 漂血積屍, 八路嗷嗷, 若不保朝夕。 其故曷由? 上無道揆、下無法守, 馴致騷亂, 煽動一國, 哀此無辜生民, 擧入於推溝倒懸中。 燎原之火, 誰可撲滅? 滔天之水, 何以隄防? 凡更張以後新定典式之允合變通者, 指不勝僂。 而第以汲汲復舊者言之, 廟社享儀之比前減省, 此非重祀典之道也。 太學, 首善之地, 無復養士, 亦非崇儒術之本也。 內外官方, 紊無階級, 實非澄淸仕路之意也。 上下名分, 掃無餘地, 亦非辨貴賤之要也。 軍旅緩急之要, 惟在講武。 而見今簽餉俱空, 糧餉枵罄, 此豈固圉之良策也? 苟欲進步於文明, 臣謂祀典儀節, 恪遵成憲, 儒宮養士, 修擧規度, 官制焉仍舊, 名分乎截嚴, 軍制則依前政令, 監先不宜忙愒。 至若斷髮之不須更責, 衣笠之從便爲之, 雖自內部, 奉勅訓令, 而奉行之際, 群疑滋惑, 更以中旨, 宣諭多方, 令國家士民咸各知悉, 而冠網依舊, 則縱彼愚頑, 亦當感服聖意, 退而安業。 苟如是也, 搶攘庶可底定, 屯否從以亨泰矣。 批曰: “所陳, 當下付閣議裁處。”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07-24 陽曆	종묘, 전, 궁, 각 능과 원에 지내는 제사와 대, 중, 소사의 날짜는 모두 옛 역서의 예대로 하게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국가에 있어 사전(祀典)은 더없이 엄하고 더없이 공경스러운 것인데 그때 내각(內閣)의 역신(逆臣)이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멋대로 줄인 것부터가 이미 더없이 통탄스럽다. 더구나 새 역서(曆書)와 옛 역서에는 원래 날짜가 차이나니 조심스럽고 신중히 하는 도리로 보아 더더욱 미안하다. 이제부터 종묘(宗廟)와 전궁(殿宮), 각 능원(陵園)에 지내는 제사는 일체 옛 법대로 하며 일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날짜는 모두 옛 역서의 날짜대로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여러 산천(山川)과 제묘(諸廟)의 향사(享祀)는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장례원 경(掌禮院卿)으로 하여금 현재의 형편을 참작하고 예법(禮法)을 상고하여 바로잡게 하며 또한 장례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관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사전이 이미 옛 법대로 회복된 만큼 고유(告由)의 절차가 없을 수 없다.	二十四日。 詔曰: “有國祀典, 莫嚴莫敬。 而伊時內閣之逆臣執命, 恣意裁減, 已極痛迫。 況又新舊曆日字, 原有差互, 其在誠愼之道, 尤爲未安。 自今太廟、殿、宮、各陵、園祭享, 一遵舊式, 凡大中小祀月日, 竝用舊曆。” 又詔曰: “圜丘、社稷、諸山川、諸廟享祀, 其令宮內大臣掌禮卿, 參酌時宜, 考禮釐正, 亦令掌禮院專管擧行。” 又詔曰: “祀典旣已復舊, 不可無告由之節。 遣大臣設行。 告文當親撰以下矣。”

			대신을 보내서 설행하게 하고 고유문은 마땅히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07-24 陽曆	이재순이 대사, 중사, 소사와 고유제에 관한 일을 아뢰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각 제향(祭享)은 모두 옛 법을 따르며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날짜는 모두 옛 역서(曆書)를 사용하라고 봉칙(奉勅)하였습니다. 종묘(宗廟),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능원(陵園), 각 궁묘(宮廟)의 분향(焚香)은 옛 역서로 6월 15일을 시작으로 매달 삭망일(朔望日)에 거행하며 빈전(殯殿)에 지내는 삭망과 속절(俗節)의 제전(祭奠) 때에는 백관(百官)이 규례대로 제사에 참가하여 거행할 것입니다. 제사 규례를 옛날대로 회복한 고유제(告由祭)를 설행(設行)하는 일에 대하여 봉칙하였습니다. 종묘, 영녕전(永寧殿), 빈전(殯殿), 사직단(社稷壇), 경모궁의 고유(告由)는 옛 역서로 15일에 설행하며 빈전의 고유는 같은 날에 지내는 망전(望奠) 때 겸하여 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宮內府大臣李載純奏: "各祭享一遵舊式, 大中小祀月日, 竝用舊曆事, 奉勅矣。 宗廟、永禧殿、景慕宮、陵園、各宮廟焚香, 自舊曆六月十五日爲始, 每月朔望日擧行, 而殯殿朔、望及俗節祭奠時, 百官依例陪祭擧行。 祀典復舊告由設行事, 奉勅矣。 宗廟、永寧殿、殯殿、社稷、景慕宮告由, 舊曆十五日設行, 殯殿告由, 同日望奠兼告, 何如?" 允之。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08-14 陽曆	궁내부에서 대사, 중사, 소사에 관한 별지를 개록하여 상주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삼가 명령 내용을 받들고 종묘(宗廟)와 전궁(殿宮), 각 능원(陵園)의 제향(祭享)은 일체 옛 규정을 따르고,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여러 산천, 여러 묘(廟)의 제향은 신(臣)이 장례원 경(掌禮院卿)과 함께 참작하여 바로잡았습니다. 별단(別單)에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였다.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관한 별단 원구단,【하늘땅에 제사지내는데 바람 귀신, 구름 귀신, 우레 귀신, 비 귀신, 국내의 산천에는 동지(冬至)에 합쳐서 제사지내고 정월 첫 신일(辛日)에는 기곡 대제(祈穀大祭)를 지낸다.】 종묘(宗廟)【네 계절의 첫 달 상순(上旬), 납향(臘享), 세속 명절, 초하루와 보름이다.】, 영녕전(永寧殿)【봄과 가을의 첫 달 상순이다.】, 사직단(社稷壇)【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첫 무일(戊日)이다.】, 대보단(大報壇)【3월 상순이다.】 이상은 대사(大祀)이다. (중략)	十四日。 宮內府大臣李載純以"欽奉詔勅旨意, 太廟、殿、宮各陵、園祭享, 一遵舊式, 圜丘、社稷、諸山川、諸廟享祀則臣與掌禮卿參酌釐正。 別單開錄"上奏。 大中小祀別單: 圜丘【天地從祀風雲雷雨國內山川。 冬至合祭, 正月上辛祈穀。】, 宗廟【四孟朔上旬、臘享、俗節、朔、望】, 永寧殿【春秋孟朔上旬】, 社稷【春秋仲朔上戊】, 大報壇【三月上旬】。 已上大祀。 (중략)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08-29 陽曆	진전과 빈전을 옮길 때 고유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진전(眞殿)을 이봉(移奉)하고 빈전(殯殿)을 이안(移安)할 때 고유(告由)의 절차가 없을 수 없다. 이번 음력 7월 24일에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 사직단(社稷壇), 경모궁(景慕宮)에 대신(大臣)을 보내서 먼저 사유를 고하되 고문(告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이어 빈전을 이안할 때 진발(進發)하는 고유 별전(告由別奠)의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내겠다고 명하였다.	二十九日。 詔曰: "眞殿移奉、殯殿移安時, 不可無告由之節。 今陰曆七月二十四日, 宗廟、永寧殿、社稷、景慕宮, 遣大臣先告事由, 告文當親撰以下矣。" 仍命殯殿移安時, 進發告由別奠祭文, 當親撰以下矣。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12-09 陽曆	궁내부 관제 중 제조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9호, 〈궁내부 관제 중 제조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提調改正件］〉을 반포(頒布)하였다.【'사직서 제거(社稷署提擧)' 아래의 '종묘서 제거 겸(宗廟署提擧兼)'이라는 여섯 글자와 '경모궁 제거(景慕宮提擧)' 아래의 '영희전 제거 겸(永禧殿提擧兼)'이라는 여섯 글자를 삭제하고 봉상사(奉常司)에 칙임관인 제조 5명과 주임관인 부제조(副提調) 10명을 더 두며 종묘와 사직, 전(殿)과 궁(宮)의 제거를 제조(提調)로 고친다.】	布達第十九號, 宮內府官制中提調改正件。 頒布。【社稷署提擧下'宗廟署提擧兼'六字及景慕宮提擧下'永禧殿提擧兼'六字, 竝刪去。 增置奉常司提調五人、勅任副提調十人。 奏任廟、社、殿宮提擧以提調改正。】
고종실록 34권	33년 1896-12-09 陽曆	김영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종2품 김영덕(金永悳)을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조종필(趙鍾弼), 정2품 김세기(金世基)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김완수(金	從二品金永悳任度支部協辦, 中樞院議官趙鍾弼、正二品金世基, 任奉常司提調, 竝敍勅任官三等。 從二品金完秀任

			完秀)를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亨植)을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에, 특진관 조정구(趙鼎九), 종2품 조정희(趙定熙), 종2품 김학수(金學洙)를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社稷署提調, 特進官閔亨植任景慕宮提調, 特進官趙鼎九、從二品趙定熙、從二品金學洙任奉常司提調, 竝敍勅任官四等。
고종실록 35권	34년 1897-04-13 陽曆	조병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조병식(趙秉式)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에,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김완수(金完秀)를 경모궁 제조에, 시강원 부첨사(侍講院副詹事) 이은용(李垠鎔)을 사직서 제조에, 종2품 송도순(宋道淳)을 태자궁 시강원 첨사(太子宮侍講院詹事)에, 종2품 김영목(金永穆)을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3품 주석면(朱錫冕)을 법부 형사 국장(法部刑事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秘書院卿趙秉式任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二等。 景慕宮提調閔亨植任宮內府特進官, 社稷署提調金完秀任景慕宮提調, 侍講院副詹事李垠鎔任社稷署提調, 從二品宋道淳任王太子宮侍講院詹事, 從二品金永穆任秘書院卿, 三品朱錫冕任法部刑事局長, 竝敍勅任官四等。
고종실록 35권	34년 1897-04-14 陽曆	송도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왕태자궁 시강원 첨사(王太子宮侍講院詹事) 송도순(宋道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이은용(李垠鎔)을 태자궁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 서상우(徐相雨)를 사직서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王太子宮侍講院詹事宋道淳任宮內府特進官, 社稷署提調李垠鎔任王太子宮侍講院詹事, 竝敍勅任官四等。 從一品徐相雨任社稷署提調, 敍勅任官三等。
고종실록 35권	34년 1897-05-07 陽曆	한규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2품 한규설(韓圭卨)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이호익(李鎬翼)을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안경수(安駉壽)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채연(李采淵)을 인산(因山) 시 돈체사(頓遞使)에 임명하였다.	七日。 正二品韓圭卨任法部大臣, 敍勅任官一等。 山陵都監提調李鎬翼, 任社稷署提調, 中樞院議官安駉壽任江原道觀察使, 竝敍勅任官三等。 漢城府判尹李采淵, 命因山時頓遞使。
고종실록 36권	34년 1897-10-08 陽曆	사직단의 위판을 태사, 태직으로 고쳐쓰도록 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을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고쳐 써야 하니, 고쳐 쓰는 길일은 음력 9월 14일로 정하되, 응행절목(應行節目)을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差出)하게 하소서. 먼저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와 봉안제(奉安祭)는 때에 맞추어 설행(設行)하소서. 제문은 홍문관 시독(弘文館侍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掌禮院卿金永壽奏: “社稷壇神位版, 當以‘太社’、‘太稷’改題矣。 改題擇吉, 以陰曆九月十四日爲定。 而其應行節次, 令奉常司擧行, 書寫官, 令宮內府差出, 先告事由祭及奉安祭, 隨時設行, 而祭文, 令弘文館侍讀撰出何如?” 制曰: “竝依允。 祭文, 親撰以下矣。”
고종실록 36권	34년 1897-10-13 陽曆	국호를 대한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짐은 생각건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高麗) 때에 이르러서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靺鞨)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라국(耽羅國)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王業)을 세웠으니, 예악(禮樂)과 법도는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	奉天承運皇帝詔曰: “朕惟檀、箕以來, 疆土分張, 各據一隅, 互相爭雄, 及高麗時, 呑竝馬韓、辰韓、弁韓, 是謂統合三韓。 及我太祖龍興之初, 輿圖以外, 拓地益廣。 北盡靺鞨之界, 而齒革queries絲出焉, 南收耽羅之國, 而橘柚海錯貢焉。 幅員四千里, 建一統之業。 禮樂法度, 祖述唐、虞, 山河鞏固, 垂裕我子孫萬世磐石之宗。 惟朕否德, 適丁艱會, 上帝眷顧, 轉危回安, 創獨立之基, 行自主之權。 群臣百姓, 軍伍市井, 一辭同聲, 叫閽齊籲, 章數十上, 必欲推尊

			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上帝)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白嶽山)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쳐 썼다.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이에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노라. (중략)	帝號, 朕揖讓者屢, 無以辭, 於今年九月十七日, 告祭天地于白嶽之陽,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大韓', 以是年爲光武元年, 改題太社、太稷, 冊王后閔氏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惟玆丕釐耿命, 肇稱鉅典, 爰稽歷代故事, 另行大赦。(중략)
고종실록 39권	36년 1899-04-22	전주와 삼척의 능을 봉심할 재신을 소견하다	전주(全州)와 삼척(三陟)〖의 능을〗 봉심(奉審)할 재신(宰臣)을 소견(召見)하였다.【특진관(特進官) 이재곤(李載崑), 특진관 이중하(李重夏)이다.】 하직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상(上)이 이르기를, "이것은 열성조(列聖朝)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니, 선대의 일을 계승하는 도리에 있어 이번에 단(壇)을 설치하고 비(碑)를 세우며 지형(地形)을 봉심(奉審)할 때 의당 충분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단은 마땅히 영역(塋域)에 설치해야 하겠는데 섬돌 아래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형이 불편하다면 혹 좌우 근처의 합당한 곳에 건축하고 길이와 너비도 지형에 따라 해야 할 것인데, 그 높이는 몇 척(尺)으로 마련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각처(各處)에 있는 단은 모두 몇 척 높이로 되어 있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신은 감히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사직단(社稷壇)의 높이는 5척 남짓이 되고 그 밖에 각 단은 2척 7촌(寸) 안팎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의 높이는 3척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지형을 보아 거기에 따라서 건축하라."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정종조(正宗朝)에 나라에서 봉산(封山)을 지키며 보호하는 절목(節目)을 해부(該府)에 두었는데 동서남북이 각각 3,300여 보(步)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해부에 가서 곧 찾아서 상고해 보겠지만, 만약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적을 없애버렸다면 형편상 산의 지형(地形)을 따라 새로 거리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한 거리로 경계를 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묘조(正廟祖)의 수호 절목(守護節目)에 따라 거행하라. 그리고 들으니 탁지부(度支部)에 지척(地尺)이 다만 1개(箇)뿐이라고 하여 지금 몇 개를 만들라고 칙령(勅令)하였으니 곧 당장 내하(內下)할 것이다. 이것으로 거리를 정하라." 하였다. (중략)	二十二日。 召見全州、三陟奉審宰臣。【特進官李載崐、特進官李重夏】辭陛也。 上曰:"此是列聖朝未遑之事, 而其在繼述之道, 今行設壇竪碑, 奉審地形之際, 宜其十分審愼矣。" 載崐曰:"壇所當設於塋域, 疑似處階下。 而若値地形不便, 則或左右近處, 隨宜建築, 長廣隨地形, 而高則以幾尺磨鍊乎?" 上曰:"我國各處壇所, 竝幾尺高乎?" 載崐曰:"臣未敢詳知, 而社稷壇高爲五尺餘, 外各壇二尺七寸內外也。" 上曰:"壇高以三尺爲準, 相其地形, 隨宜建築也。" 載崐曰:"臣聞正宗朝, 以封山守護節目, 成置該府東西南北各三千三百餘步云。 臣到該府, 卽當搜考。 而若爲奸猾輩掩諱滅跡, 則勢將依山形, 新定尺步, 未知以幾步尺定界乎?" 上曰:"依正廟朝守護節目擧行, 而聞度支地尺, 只有一箇, 方勅造數箇, 卽當內下矣, 以此定步也。" 載崐曰:"偸塚堀移, 該道臣似已擧行矣。 臣聞正宗朝, 有以偸塚事大懲創, 而年久幾塚, 特許安徐, 故塚主輩或藉此呼訴。 (중략)

고종실록 39권	36년 1899-12-13	김필제, 윤제보를 한 등급 감하여 유형 보내도록 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재형(權在衡)이 아뢰기를, “방금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조윤승(曺潤承)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김필제(金必濟)와 윤제보(尹濟普)의 안건을 심리하니, 김필제와 윤제보, 조우식(趙宇植), 강영찬(姜永贊) 등이 모의하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불을 지르면 근처의 병정(兵丁)과 순검(巡檢)들이 반드시 모두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갈 것이니, 이 때를 틈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대궐로 들어가 대황제를 업고 경복궁(景福宮)으로 이어(移御)하여 힘껏 보호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휘두르며 부귀를 누려보자.」는 등의 말을 한껏 논의한 사실은 각각의 공초(供招)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김필제는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상(上)에게 저촉되는 불온한 말을 하여 인정과 사리로 볼 때 몹시 해로운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律文)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하며, 피고 윤제보는 같은 율문에 따라 추종자는 한 등급을 감하여 태(笞) 100대를 쳐서 종신 유형(流刑)을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을 원래의 의률(擬律)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특별히 각각 한 등급을 감하라.” 하였다. 또 ‘종신 유형 죄인 김필제, 유십오년(流十五年) 죄인 윤제보를 모두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로 정배(定配) 하소서.’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또 ‘본 년 음력 10월 11일 대사령(大赦令)을 삼가 받들어보니, 평리원(平理院)과 한성부 재판소(漢城府裁判所)의 죄인 가운데서 육범(六犯) 외에 등급을 감해 줄 황만기(黃萬己) 등 21명을 개록(開錄)합니다.’라고 상주하니, 윤허하였다.	法部大臣權在衡奏: “卽接平理院裁判長曺潤承質稟書內開, 被告金必濟、尹濟普案件審理, 則‘必濟與濟普及趙宇植、姜永贊等, 設謀以放火於宗廟、社稷, 近處兵丁巡檢, 必盡赴救火矣。 乘此時率衆入闕, 負奉大皇帝, 移御于景福宮, 竭力保護。 當道用事, 亟圖富貴等說, 爛漫相議之事實, 證諸各供明白。 被告金必濟, 照《大典會通》《推斷條》, ‘凡亂言於上, 情理切害者’律, 處絞; 被告尹濟普, 照同律, 爲從者減一等, 處笞一百, 流終身’云矣。 該犯等各依原擬律處辦何如?” 制曰: “特爲各減一等。” 又以“流終身罪人金必濟, 流十五年罪人尹濟普, 竝定配于莞島郡楸子島”之意, 上奏。 允之。 又以“欽奉本年陰曆十月十一日赦典, 平理院及漢城府裁判所罪囚中六犯外減等秩黃萬己等二十一名”, 開錄上奏。 允之。
고종실록 40권	37년 1900-09-08	궁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64호, 〈궁내부의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원구단(圜丘壇) 사제서령(祠祭署令) 1인(人)을 2인으로, 사직서령(社稷署令) 1인을 2인으로 모두 개정한다.】	布達第六十四號, 宮內府官制中改正【圓丘壇祠祭署, 令一人以二人; 社稷署, 令一人以二人。 竝爲改正。】件。頒布。
고종실록 45권	42년 1905-02-26	내부 관제를 비준하여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5호, 〈내부 관제(內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내부 대신(內部大臣)은 지방 행정, 경찰, 감옥, 토목 공사, 위생, 지리, 사당, 사직(社稷), 사찰, 출판, 호적, 구휼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면서 지방관과 경무사(警務使)를 감독한다. 참서관(參書官)이 7인이다. 지방(地方), 경무(警務), 회계(會計) 3국을 두는데 지방국(地方局)은 1등국이고 경무국(警務局)과 회계국(會計局)은 3등국이다. 기사(技師)는 1인, 기수(技手)가 2인, 주사(主事)가 32인이다. 개국 504년 칙령 제53호, 〈내부 관제〉는 폐지한다.】	勅令第十五號, 內部官制。 裁可頒布。【內部大臣管理地方行政、警察、監獄、土木、衛生、地理、祠社寺、出版、戶籍及救恤所關事務, 監督地方官及警務使。 參書官七人。 置地方、警務、會計三局, 地方局一等局, 警務、會計三等局。 技師一人、技手二人、主事三十二人。 開國五百四年勅令第五十三號內部官制, 廢止。】
고종실록 45권	42년 1905-03-04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여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26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를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중략) 원구단(圜丘壇),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각 능(陵), 원(園), 단(壇), 묘(墓)의 관제【모두 그전대로 둔다. 역대 전과 능의 관제도 같다.】	布達第百二十六號, 宮內府官制。 改正頒布。(중략) 圜丘廟社殿各陵園壇墓官制。【竝仍舊。 歷代殿陵官制亦同。】
고종실록 45권	42년 1905-04-01	일한 통신기관 협정서를 조인하다	【음력 을사년(1905) 2월 27일】 〈일한 통신기관 협정서(日韓通信機關協定書)〉가 체결되었다. 〈협정서(協定書)〉 일한(日韓) 양국 정부는 한국의 통신기관(通信機關)을 정비하여 일본국의	一日。【陰曆乙巳二月二十七日】 日韓通信機關協定書成。 協定書: 日韓兩國政府ᄂᆞᆫ 韓國通信機關을 整備ᄒᆞ야 日本國通信機關과 合同聯絡ᄒᆞ야 兩國

			통신기관과 합동 연락하여 양국 공통의 한 조직을 이룸으로써 한국의 행정상 경제상의 이득이 되는 대책을 위하여 한국의 우편, 전신, 전화 사업을 일본국 정부의 관리에 위탁할 필요에 따라 대한제국 외부 대신(大韓帝國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제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가 각기 해당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아래에 기록한 조항을 의정한다. (중략) 제3조 한국에 통신기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의 토지와 건물은 무상(無償)으로 사용하며 일개 개인의 토지와 건물은 유상(有償)으로 거두어 쓸 수 있다. 국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電), 우(郵) 양사를 제외하고 궁내부(宮內府)가 관할하는 땅과 각 능(各陵), 원(園), 묘(墓) 및 종묘(宗廟), 사직(社稷) 부근의 땅, 그리고 각 관청 건물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광무(光武) 9년 4월 20일에 조회(照會)하여 첨가한다.】 (중략) 광무(光武) 9년 4월 1일 대한국 외부 대신(大韓國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명치(明治) 38년 4월 1일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共通의 一組織을 成홈으로써 韓國의 行政上과 經濟上得策됨을 爲ᄒᆞ야 韓國의 郵便、電信、電話事業을 日本國政府의 管理에 委託ᄒᆞᄂᆞᆫ 必要를 因ᄒᆞ야 大韓帝國外部大臣李夏榮及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 各相當ᄒᆞᆫ 委任을 承有ᄒᆞ야 玆에 左開條項을 議定홈。(중략) 第三條, 韓國에 通信機關擴張을 爲ᄒᆞ야 日本國政府에서 必要로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國有의 土地及建物은 無償으로 使用ᄒᆞ며 及一私人의 土地建物은 有償으로 收用홈을 得ᄒᆞᆯ 事。 國有土地及建物無償使用, 除電郵兩司外, 宮內府所管地段, 各陵、園墓、廟社、附近地及各官廨不在此限。【光武九年四月二十日, 以照會添入。】 (중략) 光武九年四月一日, 大韓國外部大臣李夏榮。 明治三十八年四月一日, 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林權助。
순종실록 2권	1년 1908-01-20	원구단, 종묘, 사직단 치제 때 헌관을 1명으로 줄이다	이제부터 원구단(圜丘壇), 종묘(宗廟), 사직단(社稷壇)에 지내는 대제(大祭) 때에 삼헌관(三獻官)을 1원(員)이 아울러 행하며, 그 아래 여러 집사(執事)들도 혹 아울러 하게 하거나 혹 인원수를 줄여서 적당히 배치하는 문제를 장례원(掌禮院)에 통지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관제를 개정한 뒤에 제사와 관련하여 차임할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이었다.	二十日。 命從今圜丘、廟·社大祭三獻官, 以一員兼行, 其下諸執事, 或兼行或減數, 量宜排差事, 知委掌禮院擧行。 因官制改正後差祭人員窠窄也。
순종실록 2권	1년 1908-05-08	대원왕과 대원비의 묘 이름을 흥원이라고 부르고 수봉관을 두도록 하다	포달(布達) 제175호,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원호(園號)를 '흥원(興園)'이라 부르고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각릉(各陵), 원(園), 단(壇), 묘(墓) 관제 중 흥원 수봉관(興園守奉官) 2인을 판임관(判任官)에 첨입(添入)하는 안건〉을 반포하였다.	八日。 布達第一百七十五號, 大院王、大院妃園號以興園爲稱, 廟、社、殿、宮、各陵、園、壇、墓官制中興園守奉官二人判任添入件。 頒布。
순종실록 2권	1년 1908-07-23	제사 제도 개정에 대한 것을 발표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제사는 나라의 예의 제도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만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절이 번잡하면 말류의 폐단은 근본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당시의 조건에 맞게 예의를 제정한 것은 번잡한 것을 버리고 간소한 것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예라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근본으로 삼아 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의가 지나치게 후하면 분수에 지나치고 분수에 지나친 예는 귀신이 싫어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열성조가 서로 이어가면서 의식을 제정하여 보태거나 덜어 마땅하게 한 것도 이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시운(時運)의 진보가 지난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신(維新)을 국시로 정하여 종묘 사직에 고하였던 것이다. 모든 제도를 혁신하는 이 때를 당하여 어찌 제례(祭禮)에만 옛 제도를 그대로 지키겠는가. 이제 옛 규례를 참고하고 현재의 조건에 알맞게 하여 공경하는 규범을 드러내고 영원히 지켜야 할 표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	二十三日。 詔曰: "祭祀ᄂᆞᆫ 一國禮典之所由興也ㅣ니 不可不崇重也ㅣ라。 然이나 若禮節이 繁縟則其末流之弊蛇返失其本ᄒᆞᄂᆞ니 故로 古昔聖王이 因時制宜ᄒᆞ야 以定其禮ᄂᆞᆫ 所以去其繁而就其簡也ㅣ라。 禮也者ᄂᆞᆫ 以誠敬爲本ᄒᆞ야 適用其制度之謂也ㅣ니 禮過於厚則是ᄂᆞᆫ 濫也ㅣ니 濫禮ᄂᆞᆫ 神明之所以厭之者也ㅣ라。 故로 惟我朝列聖이 相承ᄒᆞ사 制定儀式ᄒᆞ사 增損得宜ᄒᆞ심은 亦不外於此規也ㅣ라。 今此時運之進步ㅣ 非復昔時之因循故로 以維新으로 定國是ᄒᆞ야 誓告于宗社者則當此百度革新之時ᄒᆞ야 奚但墨守舊規를 獨於祭

			이는 실로 조종(祖宗)이 끼치신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오, 짐이 처음으로 내놓은 의견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각과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짐의 뜻을 잘 헤아려 공경히 따라 시행하라. 일체 시행하여야 할 조목은 다음과 같다. 제실(帝室)에 관계되지 않는 제사는 궁내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각각 그 소속된 곳에 넘겨 마련하도록 한다.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 제사는 영영 제사의 거행을 폐지한다. 합사(合祀)할만 한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의 신주는 이안(移安)할 장소를 선택하여 봉안하게 한다. 대제(大祭), 별제(別祭), 속제(俗祭), 삭제(朔祭), 망제(望祭)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은 제사는 생략한다. 신당(神堂) 정사보는 날마다 고하는 제사 같은 것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사에 쓸 짐승과 제물은 재정에 따라 되도록 절약한다. 천신(薦新) 물건의 종류는 지방에서 공물로 바치는 것을 폐지하고 사서 하되 그 지방에 없는 것은 대용 물건을 거행하도록 한다. 의식은 허례(虛禮)를 없애고 정성과 공경심으로 기본으로 하여 제사를 숭엄하게 지낸다." 하였다.	禮哉아。 今에 參考古式ᄒᆞ고 量適時宜ᄒᆞ야 以表崇敬之軌範ᄒᆞ고 乃定永遠之準規ᄒᆞ노니 是ᄂᆞᆫ 實由乎祖宗所以遺訓而非出於朕所以創意也ㅣ라。 內閣과 宮內府ᄂᆞᆫ 克體朕意ᄒᆞ야 欽遵施行哉어다。 所有應行條目을 開列于左ᄒᆞ노라 帝室에 不關ᄒᆞᆫ 祭祀ᄂᆞᆫ 宮內府에셔 祀典擧行ᄒᆞᆷ을 止ᄒᆞ고 各其所屬에 移ᄒᆞ야 磨鍊케홈。 時宜에 不叶ᄒᆞᆫ 祭祀ᄂᆞᆫ 永히 祀典擧行을 廢止케홈。 合祀ᄒᆞ기 可ᄒᆞᆫ 廟社殿宮은 移安ᄒᆞᆯ 處所를 選擇ᄒᆞ야 奉安케홈。 大祭別祭俗祭朔望祭中重要치아니ᄒᆞᆫ 祀典은 省略홈。 神堂衙日告祀의 類ᄂᆞᆫ 永히 廢止케홈。 犧牲과 祭物은 財政을 隨ᄒᆞ야 節約을 務케홈。 薦新物種은 外貢을 廢ᄒᆞ고 貿運케ᄒᆞ되 其地에 不在ᄒᆞᆫ 者ᄂᆞᆫ 代物로써 擧行케홈。 儀式은 虛禮를 去ᄒᆞ며 誠敬을 本ᄒᆞ야 祀典을 崇嚴케홈。"
순종실록 2권	1년 1908-07-23	개정한 제사 제도 칙령을 발표하다	〈개정한 제사 제도［享祀釐正］〉 원구단(圜丘壇)에는 1년에 두 번, 사직단(社稷壇)에는 1년에 두 번, 종묘(宗廟)에는 1년에 네 번 지내고, 또 두 번 고유제(告由祭)를 지낸다. 영녕전(永寧殿)에는 두 번, 경효전(景孝殿)에는 1년에 네 번, 의효전(懿孝殿)에는 1년에 네 번, 문묘(文廟)에는 1년에 두 번, 계성사(啓聖祠)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묘(肇慶廟)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단(肇慶壇)에는 1년에 한 번, 경기전(慶基殿)에는 1년에 두 번, 선원전(璿源殿)에는 1년에 두 번 지낸다. 함흥본궁(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영흥본궁(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저경궁(儲慶宮)는 1년에 두 번, 대빈궁(大嬪宮)에는 1년에 두 번, 연호궁(延祜宮)에는 1년에 두 번, 육상궁(毓祥宮)에는 1년에 두 번, 선희궁(宣禧宮)에는 1년에 두 번, 경우궁(景祐宮)에는 1년에 두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능, 원, 묘에는 1년에 한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다만 체천(遞遷)할 신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연산군묘(燕山君墓)와 광해군묘(光海君墓)도 다같이 적용한다. 독신묘(纛神廟)에는 1년에 한 번 지낸다. 영희전(永禧殿), 목청전(穆淸殿), 화녕전(華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에 봉안한 수용(睟容)을 선원전(璿源殿)에 이안(移安)하고, 옛 전각의 경우 냉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移屬)시킨다. 다만 수용을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것을 정한다.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享祀釐正。 圜丘一年二次, 社稷一年二次, 宗廟一年四次及二次告由祭。 永寧殿一年二次, 景孝殿一年四次, 懿孝殿一年四次, 文廟一年二次, 啓聖祠一年二次, 肇慶廟一年二次, 肇慶壇一年一次, 慶基殿一年二次, 璿源殿一年二次, 咸興本宮一年二次, 永興本宮一年二次, 儲慶宮一年二次, 大嬪宮一年二次, 延祜宮一年二次, 毓祥宮一年二次, 宣禧宮一年二次, 景祐宮一年二次及忌辰祭陵園墓一年一次及忌辰祭但祧遷의 位에ᄂᆞᆫ 一年一次만 擧行홈。 燕山墓光海墓에도 亦同홈。 纛神廟一年一次。 永禧殿、穆淸殿、華寧殿、冷泉亭、平樂亭、誠一軒에 奉安ᄒᆞᆫ 睟容을 璿源殿에 移安ᄒᆞ고 舊殿閣은 冷泉亭을 除ᄒᆞᆫ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但睟容移安의 節次ᄂᆞᆫ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儲慶宮、大嬪宮、延祜宮、宣禧宮、景祐宮에 奉安ᄒᆞᆫ 神位ᄂᆞᆫ 毓祥宮內에 各別히 位室을 設ᄒᆞ야 合祀ᄒᆞ고 廢宮은 延祜宮을 除ᄒᆞᆫ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神位移安에 節次ᄂᆞᆫ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의 신위는 사직단(社稷壇)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산천단(山川壇), 산천 악독단(山川嶽瀆壇), 우사단(雩祀壇), 사한단(司寒壇), 옥추단(玉樞壇), 칠사사현사(七祀四賢祠), 여단(厲壇), 성황단(城隍壇), 마조단(馬祖壇),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선무단(宣武壇), 정무단(靖武壇)의 제사는 이제부터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대보단(大報壇), 만동묘(萬東廟), 숭의묘(崇義廟), 동관묘(東關廟), 남관묘(南關廟), 북관묘(北關廟) 및 지방 관묘(地方關廟)의 제사를 폐지하고, 대보단의 터는 궁내부에서 관할하며 숭의묘와 북관묘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및 지방 관묘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이 칙령(勅令)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宜嬪宮、慶壽宮、永昭廟、文禧廟에 奉安ᄒᆞᆫ 神位ᄂᆞᆫ 埋安ᄒᆞ고 該宮廟ᄂᆞᆫ 宜嬪宮을 除ᄒᆞᆫ 外에 竝히 國有에 移屬홈。 但宜嬪宮慶壽宮의 墓所에ᄂᆞᆫ 永昭廟、文禧廟의 園所例에 依ᄒᆞ야 一年一次祭를 設行ᄒᆞ고 埋安의 節次ᄂᆞᆫ 宮內府에셔 別로히 此를 定홈。 先農壇、先蠶壇의 神位ᄂᆞᆫ 社稷에 配享ᄒᆞ고 該壇基址ᄂᆞᆫ 國有에 移屬홈。 山川壇、山川嶽瀆雩祀壇、司寒壇、玉樞壇、七祀四賢祠、厲壇、城隍壇、馬祖壇、武烈祠、旌忠壇、宣武壇、靖武壇의 祭祀ᄂᆞᆫ 自今廢止ᄒᆞ고 該壇祠의 基址ᄂᆞᆫ 國有에 移屬홈。 大報壇、萬東廟、崇義廟、東關廟、南關廟、北關廟及地方關廟의 祭祀를 廢止ᄒᆞ고 大報壇基址ᄂᆞᆫ 宮內府에셔 保管ᄒᆞ며 崇義廟、北關廟ᄂᆞᆫ 國有에 移屬ᄒᆞ고 萬東廟、東關廟、南關廟及地方關廟ᄂᆞᆫ 該地方官廳에 下付ᄒᆞ야써 人民의 信仰홈을 從ᄒᆞ야 別로히 管理ᄒᆞᆯ 方法을 定홈。 歷代廟殿陵祠及地方에 設置ᄒᆞᆫ 社稷壇、文廟ᄂᆞᆫ 總히 政府에 所管으로홈。 本令은 頒布日로붓터 施行홈。
순종실록 3권	2년 1909-02-20	심상한, 김영전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정2품 관리 심상한(沈相漢)을 사직 전사(社稷典祀)에, 정2품 관리 김영전(金永典)을 종묘 전사(宗廟典祀)에, 종2품 관리 이재덕(李載德)을 경효전 전사(景孝殿典祀)에, 종1품 관리 민종묵(閔種默)을 의효전 전사(懿孝殿典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二十日。 正二品沈相漢任社稷典祀, 正二品金永典任宗廟典祀, 從二品李載德任景孝殿典祀, 從一品閔種默任懿孝殿典祀, 竝敍勅任官三等。
순종부록 2권	4년 1911-02-20	환구단, 사직서의 건물과 부지를 총독부에 인계하다	원구단(圜丘壇), 사직서(社稷署)의 건물(建物)과 부지(敷地)를 모두 총독부(總督府)에 인계(引繼)하였다.	二十日。 圜丘壇社稷署建物及敷地, 竝引繼于總督府。

부) 사직서의궤

사직서의궤 3권 경란사실(經亂事實) 고사상(古事上)	인조 14년. 1636.丙子	

仁祖十四年丙子十二月初十日淸兵猝迫京城十四日朝先奉廟社主移入江華午時大駕繼發至崇禮門聞淸騎已到弘濟院旋入南漢山城十五日夕山城被圍

十五年丁丑正月二十二日清兵渡甲串
陽江都廟社都提調尹昉率宗廟奉事池鳳遂社稷
祭奉李震行等埋安廟社主被清兵掘出再埋再掘
蒼黃之際社主四位趺方見失尹昉等僅得收奉二
十九日奉至南漢城下已而大駕還都御昌慶宮權
安廟社主於時敏堂(東宮書筵所) 尹昉因臺啓罷職三月
初三日禮曹啓社稷位版無一位完全令奉常寺改
造何如 上曰廟社神位觸傷油染之位仍為奉安
殊極未安並為改造以盡情禮十六日禮曹以別單
啓曰廟社神位更為奉審則國社位前面多有微痕
而不至大段后土氏位前面亦有微痕而不至大段
前上面有些少油染處國稷位前面亦多有微痕而
不至大段後面有些少油染處后稷氏位前左邊之
隅微有凹處而不至大段並不當改矣 上曰大臣
六卿會議稟定禮曹啓領議政金瑬右議政李聖求
兵曹判書申景禛工曹判書具宏吏曹判書崔鳴吉
戶曹判書李景稷議以為遭此無前之變未有古禮
可據臣等之始為持難者蓋出慎重之意而既見有
傷痕則依聖教改之宜當以奉審單子言之則廟社
神位未有完全之位並與其所謂不當改者而改之

乎抑但改其所見未安之位乎敢稟　傳曰以不當改懸錄之位勿為改造二十二日禮曹啓當初提調奉審時雖以不當改懸錄而且有前面多有微痕之語故三公六卿以為社主位版四位並當改未知何如　傳曰問于大臣定奪禮曹啓大臣議以為社稷位版前面既有傷痕趺方又為改造則仍存位版果涉未安並改恐為宜當左議政洪瑞鳳議以為臣當初以提調奉審時目覩位版前面微有傷痕而不至大段且慮三百年位版不至於汚衊毀傷則全改重難只請改造趺方矣今三公六卿以有傷痕並改宜當入啓云臣何敢更進別見　傳曰依議四月初二日修理都監啓社稷位版四位今方改造尺數問於禮曹則回報內長廣尺數不載於五禮儀本曹亦無可考之地移文京畿監司處道內大邑完存位版使之見揉圖送則水原位版及趺方見揉来到而比諸時敏堂奉安位版見揉則國社稷位版稍長稍廣今此改造趺方亦稍長稍廣於水原見揉似為宜當事入啓　傳曰依啓事啓下之意移文矣國社稷位版長二尺二寸五分廣四寸六分厚九分水原位版見揉長一尺八寸七分廣四寸厚七分則不可謂稍長

況國社稷位版下端有入趺方四寸六分之痕趺方
高應為四寸六分而水原位版趺方則高只一寸七
分其高如是不同則其長廣亦難斟酌請令禮曹更
為商確明白定奪以為造作之地何如　傳曰依啓
初四日禮曹啓取奉常寺所藏風雲雷雨位版見揉
比諸國社稷位版則身長厚廣及趺方之高少無差
殊趺方長廣之不異據此可知以此移文都監之意
敢啓　傳曰知道閏四月十九日宗廟都提調李弘
胄提調尹墀社稷都提調崔鳴吉提調韓汝稷啓今
日宗廟神主奉審時社稷位版並為奉審則略有沙
痕而本不大段二百餘年虔奉之位輕為改造極涉
未安不如只造見失趺方仍為奉安之為便敢陳所
見　傳曰依啓廟社主洗沐及改題吉日五月初四
日卯時廟社主奉移吉日同月初六日卯時啓下 宗廟儀軌

備邊司啓變異之作皆天地神祇之譴怒而土屬於
社農本於稷今我國家遭此無前之變祈禳之方亦
不可廢請令詞臣別構祭文虔禱以求神明之佑從
之 文獻備考